

# 시대의소리

제3호

2004·3·1

||| 교양사회

人  
C  
...

### 여성의식

조선의 여성의식 - 김경미 .....	6
여성과 환경교육 - 임선희 .....	22
페미니즘으로 문화읽기 - 양현미 .....	39

### 여성정치

여성 의정참여의 현황과 과제 - 김경숙 .....	64
제17대 총선 - New Trend의 明과 暗 - 김경숙 .....	82

### 여성정책

일하는 여성, 평등한 여성, 행복한 여성 - 문유경 .....	99
한국의 독신모 정책 - 백미연 .....	113

### 외국여성

러시아의 젠다 - 박창규 .....	132
이슬람과 젠다 - 中西久枝 .....	159

### 특 집

## 한국의 여성세계

### 시대의 논단

독재자의 의자에 앉은 해방자 .....	168
-----------------------	-----

### 포커스

중국의 신국방정책 .....	170
-----------------	-----

### News Relay

사담 후세인 체포 .....	173
-----------------	-----

(서문 / 부시연설문 / 브레머 이라크행정수반 사담 체포 기자회견 /  
사담체포의 의미 - Q & A / 사담의 일생 / 전쟁의 경과)

### Archive

여성차별철폐 국제협약 .....	191
여성차별철폐 국제협약 의정서 북경선언	



특 집

## 한국의 여성세계

### <여성의식>

조선의 여성의식 / 김경미  
여성과 환경교육 / 임선희  
페미니즘으로 문화읽기 / 양현미

### <여성정치>

여성 의정참여의 현황과 과제 / 김경숙  
제17대 총선 - New Trend의 명과 암 / 김경숙

### <여성정책>

일하는 여성, 평등한 여성, 행복한 여성 / 문유경  
한국의 독신모 정책 / 백미연

### <외국여성>

러시아의 젠다 / 박창규  
이슬람과 젠다 / 中西久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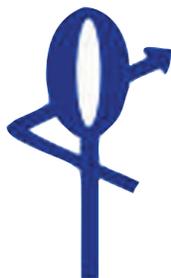


특 집 한국의 여성세계 <여성의식>

## 김려(金鑣)의 한시(漢詩)에 나타난 여성정서의 표출양상

김 경 미 (연세대 연구교수 한문학)

여성주의적 연구의 일환으로, 예교(禮敎)를 중시하던 유교적 관념과 가치로부터 근대적 이념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의 한 시작품군(漢詩作品群)을 규명하는 것은 유용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문학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 머리말

김려(金鑣)는 1766년부터 1821년까지 살았던 시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조 후기는 우리 역사상 일대의 전환기였다. 사회 각 방면에 걸쳐 기존의 질서체계에 혼란이 야기되고, 심각한 재정적 위기와 농촌의 황폐화를 맞게 되자 주자학(朱子學)의 말기적 폐단을 지적하면서 실학(實學)이 흥기하게 되었고, 사민평등(四民平等)을 표방하며 부(富)를 축적한 서민계층이 대두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문예면에서도 큰 변동이 있었다. 국문학에서 사설시조, 국문소설, 판소리 등 일련의 서민문학이 다수 등장하는 한편, 한문문학에 있어서는 한문단편 또는 야

담계 단편소설이 형성되고, 무조건적인 학당(學唐), 학송(學宋)에서 탈피하려는 시의식으로 새롭고 자유로운 내용을 추구하게 된다.

즉 인간의 정감을 거리낌 없이 표출한다든지, 우리의 역사나 풍속을 소재로 한 악부(樂府)·죽지류(竹枝類)가 성행하고, 민요적 정취를 담은 한시(漢詩)들이 이 시기에 다수 창작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민족적 자각에 바탕을 둔 문학정신이나 현실적인 언어관, 또는 문학적 평등의식이 근대문학적 성격의 한 양상으로 파악되어 우리 문학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지니게 된다.

그간 국문학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주목하여 실로 괄목할 만한 연구업적을 내었으나 한국 역사상 최고의 작가라는 연암(燕巖)박지원(朴趾源)이나 최대의 학자로 평가되는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에게로 연구가 집중되어 그 이외의 작가나 작품들은 상대적으로 다소 소홀히 다루어졌던 듯하다. 본고는 위에 든 몇 가지 현상들에 주목하면서 바로 이 시기를 살았던 담정(潭庭) 김려(金鑣)의 작품 세계를 인간의 감정(感情) 또는 여성 정서의 표현방식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여성주의적 연구의 일환으로, 예교(禮敎)를 중시하던 유교적 관념과 가치로부터 근대적 이념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의 한시작품군(漢詩作品群)을 규명하는 데 유용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생애와 교유문인

담정 김려의 관향(貫鄉)은 연안(延安)으로 1766년, 부친 재철(載七: 1737-1799)과 모친 전주 이씨(1741-1778)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13대조 김자지(金自知)가 형조판서를, 11대조 김우신(金友信)이 영의정을 지냈고, 7대조 김제남(金悌男)이 연흥부원군으로 봉해지는 등 대대로 빛나는 거족(巨族)이었으나 광해군 때 이이첨(李爾瞻)의 무고사건에 연루되어 온 집안이 화를 당했다. 그때 5대조 김군석(金君錫)을 하인들이 몰래 데리고 나와 겨우 종사(宗嗣)를 잇게 된다.

또한 조부 때에 다시 신임사화(辛壬史禍)를 겪게 되는데 그의 가정이 이렇게 거의 멸족(滅族)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당시 정국이 시(時)·벽(僻)파로 나뉘어 있던 상황 속에서 그의 집안은 노론계 중 시파 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부친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강직한 성품으로 자식들을 엄격히 교육시키고 몸소 검약한 생활을 실천하였다.

부친의 법도 있는 가르침을 받은 담정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면을 보였으며 15세에 성

군관으로 들어가 수학하면서 여러 인사(人士)들과 교유하게 된다. 이 무렵은 정조(正祖)가 학술과 문예를 장려하며 인재교육에 힘을 기울이던 때로, 경전(經典)을 연구하고 이에 근본을 둔 문장을 써야 할 것을 강조하던 시기이다.

그러나 그때 이미 김려의 문체는 특이하다고 평가되었고, 정조도 그를 가리켜 ‘원래 소품(小品)을 하던 사람’<sup>1)</sup>이라 했으니 그의 문체는 이전에 쓰여지던 것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새로운 것으로서 인식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가 젊은 시절부터 야사(野史), 패설류(稗說類)에 큰 관심을 지니고 있었던 점도 주목된다. 그의 문집 곳곳에서 ‘어릴 적부터 패사를 즐겨 읽었다.’는 기록이 보이고, 1792년에는 식년시(式年試)에 급제함과 동시에 김조순(金祖淳)과 함께 『우초속지(虞初續志)』라는 패사집을 편찬하기도 한다.

이 시기에 여러 벼들과 더불어 전국의 명산에서 공부했던 것으로 보이며, 31세 되던 1796년에는 임금의 명으로 오언십운고시(五言十韻古詩)를 지어 올려 야임을 받는 등 문명(文名)을 얻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강이천(姜彝天)의 비어사건(飛語事件)에 연루되고 또 패사소품을 즐겨 썼다는 이유로 문체 문제에 뒤얽혀 10여 년의 유배생활이 시작된다.

1797년부터 1801년까지는 부령에서, 1801년부터 1806년까지는 진해에서 생활하였다. 그는 유배지에서 그 지방 출신 자제들을 모아 가르치는 한편, 창작활동에도 힘을 써 상권 147편, 하권 143편의 악부시집 『사유악부(思牖樂府)』와 『우해이어보(牛海異魚譜)』등을 완성한다.

1806년에 아들의 상소가 받아들여짐으로써 해배(解配)된 그는 궁핍한 현실 생활 속에서 저작을 계속하여, 신변잡물을 읊은 『만선와잉고(萬蟬窩媵稿)』와 229수의 악부시 『간성춘예집(艮城春藝集)』을 이 시기에 창작하였다. 또한 그의 평생의 대업인 『담정총서(潭庭叢書)』의 편찬작업이 1818년부터 1821년까지 진행되었으며, 1821년 함양군수로 재직하던 중 56세를 일기로 임소(任所)에서 세상을 마쳤다.

한편 담정이 교유했던 인물들과 그들의 문학적 성향을 알아보기로 한다. 이는 다음에 언급될 그의 문학관을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의 작품과 평소에 아끼던 주변 문인들의 작품을 수집·편찬한 『담정총서』의 수록 인물들을 살펴볼 때, 그와 절친했던 인물로 김우순(金愚淳), 이우신(李友信), 김조순(金祖淳), 정언학(鄭彦學), 이옥(李鈺) 등을 들 수 있다.

김우순은 호를 소석(小石)이라 했는데 김려는 그를 가리켜 ‘김우순이 시로 자부하지 않아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는으나 질박하고 맑으며 그윽하고 깨끗한 오고시(五古詩)

1) 『正祖實錄』, 권 47, 장 42

가 매우 좋다.’고 했고 독고자(篤古者)가 아니면 알아볼 이가 드물다고 평하였다.

이우신은 학행(學行)으로서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며, 호가 수산(睡山)이다. 담정은 그를 가리켜 ‘별개심안(別開心眼)’하여 크게 이룬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우신 자신은 은밀한 규방(閨房)의 일들을 묘사하는 ‘옥대춘림지영(玉臺春畚之咏)’을 즐겨 했었다고 술회한다.

김조순은 김려와 더불어 일찍이 두터운 교분을 맺고 패사집을 함께 만드는 등 문학적 경향을 함께 했던 인물이다. 그는 호를 풍고(楓皐)라 했으며, 안동 김씨 영의정 창집(昌集)의 4대손이다.

자신의 딸이 순조의 비(妃)로 봉해지자 국구(國舅)가 되어 안동 김씨 세도정치의 기틀을 마련했던 인물인데, 담정과는 ‘형제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할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다.

다음 정언학은 호를 농오(農塢)라 했다. 칠순의 나이에도 갈건(葛巾)에 포의(布衣)를 입고 몸소 밭을 갈아야 할 정도로 곤궁한 현실에 처했던 사람이지만, 그의 시는 궁하면 궁할수록 더욱 공교로워졌다고 평가된 인물이다.

이옥은 담정의 교유관계를 살피는 데 가장 관심을 기울일 만한 사람이다. 그는 호를 문무자(文無子)라 했으며, 정조 16년에 소설문체를 썼다는 이유로 제재(制裁)를 받고 불우한 생애를 보냈다. 정조는 당시의 문체가 비리(鄙俚)해졌다고 해서 이른바 문체반정을 기도하였고, 이에 패관체의 대표적 인물로 이옥이 지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담정은 이옥의 글이야말로 오늘날 사용될 수 있는 진정한 고문(古文)임을 역설하고 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이옥이 다루었던 작품의 소재들은 대개가 남녀간의 연정(戀情)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며, 담정은 어릴 적부터 그와 함께 배우고 벗삼은 사이였으나 문장으로는 꽤나 자부하는 자신도 솔직히 이옥의 사부(辭賦)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음을 고백하였다.

이처럼 이전의 문장가들이 꺼려오던 ‘분지군차지사(粉脂裙釵之事)’나 ‘옥대춘림(玉臺春畚)’ 등을 문학의 소재로 즐겨 채택했던 이들과의 사귀는 그의 문학세계가 인간 감정의 진솔한 묘사를 특징으로 하고, 나아가 인간성의 긍정이라는 근대지향적 성격의 문학으로 발전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학(西學)과 실학관계 서적이 청(淸)으로부터 유입되고 명말청초(明末淸初)의 문풍(文風)이 널리 퍼지게 되자 문단을 바로 잡고 고문으로 회순(回醇)시키려는 정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체는 점점 패관체로 기울게 된다.**

이들은 사대부적인 품위나 전아함을 갖추기보다는 질박하고 간결한 문장을 위주로 한다고 평가되는 자들이며, 현실권 밖으로 밀려나온 불우한 계층-실세(失勢)한 사대부층, 서얼, 한미(寒微)한 인물 등-과의 교유는 담정으로 하여금 서민의 생활상에 보다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게 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다.

## 문학관

김려의 문학관을 통해 그가 문학의 본질을 무엇으로 파악했으며, 그러한 인식이 그의 작품세계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우선 새로운 문체의식과 야사(野史) 편찬에 관한 것을 들 수 있다. 서학(西學)과 실학관계 서적이 청(淸)으로부터 유입되고, 명말청초(明末淸初)의 문풍(文風)이 널리 퍼지게 되자 문단을 바로 잡고 고문으로 회순(回醇)시키려는 정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문체는 점점 패관체로 기울게 된다. 담정 역시 소품체 문장을 적극 옹호하는 입장을 취한다.

고문 본래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사(用事)나 도습(蹈襲)을 일삼는 의고적(擬古的) 태도로는 인간의 삶을 생생하게 그려낼 수 없다. 곧 담정은 그 시대와 풍속에 적합하며, 새롭고 개성적이며 지금 세상에 쓰임이 될 수 있는 현실적 문체를 고문으로 이해하였다. 이는 재도지기(載道之器)라는 전제 하에 문학을 여기(餘氣)로 보았던 종전의 문학관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문학의 고유한 가치를 평가하게 된 조선조 후기 문학관의 뚜렷한 흐름이다.

한편 담정은 자기 주변의 모든 대상-가족으로부터 권문세족, 하급관리, 자신의 문학생, 기녀, 농민, 어민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장신구, 문방구, 서적, 그릇 등의 일상용품, 또 과일이나 화초, 채소, 물고기 등의 자연물에 이르기까지 그가 보고 느끼는 모든 사물들을 시의 소재로 채택하고 있다.

이는 일상적 소재를 가지고 사실적이고도 진솔하게 작가의 감정을 표현하는 태도가 중시된 데에서 연유한 것이다. 주변 세계와의 접촉에서 느껴진 정서적 반응을 그대로 시로 옮기는 과정에 용사나 도습이 끼어들 수 없으며, 무절제한 의고적 태도나 조각(彫琢)만을 일삼는 관습도 지양된다. 그가 스스로 말했듯이<sup>2)</sup>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하고 느낀 바가 곧 소리가 되고 시가 된다고 한 담정의 문학관은 조선조 후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작가의 개성을 존중하던 새로운 문학관과 궤적을 같이 한다.

2) 『濼庭遺稿(담정유고)』, 권 6, 장 62

다음으로는 시에 대한 그의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본다. 조선조의 유가적인 시인들은 시를 자신의 지(智)나 발현수단으로 보는 표현론적 입장에 서거나, 시의 가치를 성정(性情)의 순화에 두는 효용론적 입장에서 시를 논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관(詩觀)은 점차 조선조 후기로 내려오면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개성주의적 시관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정서적 반응은 시적 대상물에 대한 깊은 애정이나 천착 없이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그의 시가 일상적인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곧, 자연스럽고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것을 중요시한 사실성에의 천착이다.

이렇듯 정(情)과 흥(興)을 따라 쓰여지는 시는 자연히 도학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사변은 적어지며, 시인의 직관과 개성에 한층 의존하게 된다. 담정의 이러한 인식은 그의 『사유악부(思牖樂府)』 서(序)에 잘 드러나 있다.<sup>3)</sup> 생각하여 느껴지는 것에 소리가 없을 수 없고, 이 소리를 따라 운율이 생겨나 곧 시가 된다고 했다. 결국 생각하는 바가 스스로 울려 소리나는 것이 시라고 하겠는데, 이 생각이란 일상적인 상상력의 범주이다.

이는 앞에서 말한 정서의 자연스러운 발흥과도 상통하는 것으로 도학적(道學的)인 명상이나 교도적(教導的)인 관념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각을 따라 읊는 시는 자연 비리(鄙俚)한 음조를 지녀 관현(管絃)으로 엮어지기엔 부족할 수 있지만, 오(吳)나라나 채(蔡)나라 노래와 견줄 수 있다<sup>4)</sup> 고 했다. 자신의 정서적 대응을 따라 읊은 개성적이고 독자적인 시편들이기 때문이다. 결국 김려의 이러한 시 인식이 그로 하여금 현실 생활 속에서 겪는 감정과 삶의 모습을 핏진하게 그려내게 한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 인간 정감의 자유로운 표출

조선조(朝鮮朝)의 한문학(漢文學)에서 인간의 적나라한 감정을 자유롭게 드러내놓은 시는 기녀(妓女)에 의해 창작된 작품 군을 제외하고는 매우 드물었다. 이는 전통적으로 예교(禮敎)를 중시하던 유교적 관념 하에 '남녀지정(男女之情)'이라는 일언(一言)으로 간과되어 왔었기 때문이다.<sup>5)</sup>

그러나 조선조 후기에 이르러서는 제도화된 윤리규범의 중요성이나 남성 위주의 권위

3) 『濶庭遺稿(담정유고)』, 권 6, 장 74

4) 『濶庭遺稿(담정유고)』, 권 12, 장 20

5) 이동환, '조선 후기 한시에 있어서의 민요 취향의 대두', 『한국한문학연구』, 3·4집, 52쪽

6) 안정복, 『順庵集』, 권 17, 장 11에서 인용.

7) 박지원, 『燕巖集』, 권 8, '廣文者傳(광문자전)'

의식으로부터 점차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곧, 인간성의 긍정이라는 측면으로 발전하여 남녀 정욕(情欲)은 천(天)이 부여해 준 본성이니 이를 어길 수 없다고 한 허균(許筠)<sup>6)</sup>이나, 정욕을 느끼기는 남녀가 모두 마찬가지라고 한 연암(燕巖)<sup>7)</sup>의 긍정적 인간관 등이 문학 작품에 적극 수용되는 것이다. 김려에게서도 이러한 인간의 정(情)·욕(欲)이나 여류 감정을 다룬 시편들이 다수 발견된다. 이는 그와 교유했던 인물들이 ‘분지(粉脂)·군차(裙釵)의 일’이나 ‘옥대춘렴(玉臺春廼)’을 즐겨 읊었다는 사실과 함께, 타고 난 자연 그대로의 인간 본성을 긍정하려는 개성있는 시 정신의 결과라고 하겠다.

이제 이와 같은 경향의 시들을 차례로 살펴본다.

郎住錦江岸	남주금강안	涼廳一夕吹	양표일석취
農住錦江磯	농주금강기	榮耀暫時違	영요잠시위
錦江春水綠	금강춘수록	陽平全盛日	양평전성일
雙雙鴛鴦飛	쌍쌍원양비	美色當世稀	미색당세희
江口春花艷	강구춘화염	金堂置西施	금당치서시
江頭春草肥	강두춘초비	璧殿貯南威	벽전저남위
花艷似農貌	화염사농모	桑田變滄海	상전변창해
草肥似郎衣	초비사낭의	零落今安歸	영락금안귀
郎悅青春氣	낭열청춘기	但見陽平墓	단견양평묘
農惜青春輝	농석청춘휘	松柏碧四圍	송백벽사위

『담정유고(潭庭遺稿)』<sup>8)</sup> 권 3, 장 6, ‘春宿錦江代題情人藥欄(춘숙금강대제정인약란)’

당나라 시인 유희이(劉希夷)의 ‘春女顏如玉(춘녀안여옥)’의 운(韻)을 빌어 지었다는 이 시에는 이제는 세상을 떠나고 없는 정인(情人)을 그리워하는 한 여인의 절절한 심정이 잘 묘사되어 있다. 언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랑을 나누었던 낭군을 그리는 시다. 시적 화자는 강가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봄꽃을 자신의 젊은 날의 아름다웠던 모습에, 강 머리에 무성하게 우거진 봄풀을 그리운 낭군의 옷자락에 대비시키고 있다.

郎悅青春氣(낭열청춘기) 農惜青春輝(농석청춘휘)에서는 젊은 남녀의 뜨거운 애정이 꽤나 솔직하게 그려지고 있다. 한창 시절, 보기 드물 정도의 미색(美色)을 지녔던 낭군의 빛나던 얼굴도 건듯 부는 찬 바람으로 순식간에 일그러져 버렸다고 했다. 상주(常住)하는

8) 이하 ‘유고(遺稿)’로 칭함.

것은 없다고 했으니 세상일이란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이렇듯 덧없이 변하는 것임을 화자는 새삼스럽게 깨닫는다. 세상을 떠난 님은 흘러간 강물이 되돌아 올 수 없듯이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푸른 솔과 잣만 둘러 쳐 있는 님의 외로운 무덤 앞에 선 여인의 가느다란 한탄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소재의 영역이나 시간적·공간적 상황으로 볼 때, 여성의 가장 보편적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일을 가장 여성다운 묘사방식을 택해 시화한 점이 주목된다.

다음 시에서는 섬세한 여성의 감정을 더욱 성공적으로 포착하였다.

조선조 후기에 이르면 제도화된 윤리규범의 중요성이나 남성 위주의 권위의식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곧, 인간성의 긍정이라는 측면으로 발전하여 남녀 정욕은 천(天)이 부여해 준 본성이니 이를 어길 수 없다고 한 허균의 긍정적 인간관 등이 문학작품에 수용되는 것이다.

白露結金井 백로결금정  
 風落梧桐葉 풍락오동엽  
 哀雁數聲來 애안수성래  
 驚起紅樓妾 경기홍루첩  
 朝成土袖襦 조성사수우  
 暮成木棉襪 모성목면접  
 單衫繡鴛鴦 단삼수원앙  
 夾衫畫蛺蝶 협삼화협접  
 心心念裁縫 심심염재봉  
 脈脈付寬狹 맥맥부관협

浮州四千里 부주사천리  
 郎作商人業 낭작상인업  
 一往斷音信 일왕단음신  
 風波夢難步 풍파몽난보  
 只自斂青眉 지자렴청미  
 何曾開素匳 하중개소렴  
 霜冷幽簾重 상냉유렴중  
 月滿空房慟 월만공방겁  
 夜久耿不眠 야구경불면  
 獨坐啼紅頰 독좌제홍협

『유고(遺稿)』, 권 3, 장 6, 『就屋西隣有商婦幽潔自守者(취옥서린유상부유결자수자)』

이 시에는 당나라 교지지(喬知之)의 시를 차운(次韻)하여 지었다는 주(註)가 붙어 있다. 한 번 집을 떠난 뒤 소식조차 끊기고 돌아오지 않는 어느 장사꾼 아내의 독수공방(獨守空房)하는 외로운 모습이 사실적으로 그려진다. 오동잎 떨어지는 소리, 늦가을 구슬픈 기러기 울음 소리에도 여인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서곤 한다. 남편은 원앙을 쌍쌍이 수놓

고, 호랑나비를 그려 넣어 정성을 다해 만들어 준 깨끼적삼을 입고 장사를 나갔다. 이미 길 떠난 지 오래지만 누구 편에 소식 한 자 보내오지 않는다. 까만 눈썹을 홀로 간직한 채, 언제나 되어야 남편이 돌아와서 보조개 지으며 환히 웃어 보느냐며 탄식한다. 빈 방에 달만 가득히 차 올라와도 혹 인기척인가 하여 겁이 덜컥 나는데 긴긴 겨울밤을 어떻게 잠들 수 있겠느냐고 했다. 홀로 앉아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젊은 아낙의 절실한 심회(心懷)를 핏진하게 묘사함으로써 정서적 진실성을 끌어내었다.

(前略)

鐵城良家姬 철성양가희  
自比魯秋胡 자비노추호  
不怨郎飄蕩 불원랑표탕  
只恨妾睽孤 지한첩규고  
委身空閨中 위신공규중  
潔誠奉舅姑 결성봉구고

舅姑千年享 구고천년향  
妾命在須臾 첩명재수유  
既自失怙恃 기자실호시  
寧可沈江湖 영가침강호  
至今滄波赤 지금창파적  
怨血凝不枯 원혈응불고

『유고(遺稿)』, 권 3, 장 6, ‘高翥 壘蒼壁刻梁玉蘭沈水處(고저암창벽각양옥란침수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는 양옥란(梁玉蘭)이라는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나머지 강물에 몸을 던졌다는 이야기를 기사(紀事)하였다. 기본 운(韻)은 당 최국보(崔國輔)의 ‘泗水入漚處(사수입리처)’ 라는 시로 하였다. 양여인은 본래 철성(鐵城)의 양가집 처녀였으나 남편이 방탕하여 아내를 돌보지 않았고, 그래서 외로이 빈 방을 지키며 시부모님을 정성껏 모시는 세월을 보냈다고 했다.

그러다가 마음을 부칠 곳도, 더 이상 의지할 곳도 없어지자 물살이 소용돌이치는 강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이다. 일상의 삶에서 겪고 견디고자 했던 정서적 체험은 고통을 혼자 안아보려는 노력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었던 시점에서 마무리된다. 마지막 두 구절인 ‘至今滄波赤(지금창파적) 怨血凝不枯(원혈응불고)’에서는 푸르려야 할 물결이 붉다고 했으며, 그때의 원혈(怨血)이 마르지 않은 때문이라면서 양녀(梁女)의 죽음을 애답아 한다.

위에서 인용한 두어 편의 시에서 보이는 바대로 답정은 여성의 섬세한 감정을 마치 여성의 손으로 지어낸 듯 기미를 포착하여 사실적으로 그려낼 뿐 아니라 여성의 욕망과 욕구를 표현하는 등 종래의 한시(漢詩)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대담한 묘사도 등장시킨다.

寧家西巖樵	영가서암초	不寄一行書	불기일행서
莫嫁南瀼漁	막가남양어	但覺法聖船	단각법성선
漁富苦無涯	어부고무애	始知法聖居	시지법성거
樵貧樂有餘	초빈락유여	法聖養漢兒	법성양한아
今春七山洋	금춘칠산양	口口湧倭譽	구구용영예
郎去販鮐魚	낭거판시어	白晝迷人魄	백주미인백
別時榴花盛	별시류화성	郎心窈窕女	낭심요조녀
別後榴房疏	별후류방소	錢盡情應盡	전진정응진
公然斷消息	공연단소식	庶改望狂且	서개망광차

『유고(遺稿)』, 권 3, 장 14, ‘秋宿青松鹹述主家漁婦怨(추숙청송함솔주가어부원)’

당나라 장조(張潮)의 ‘擘貧如珠玉(서빈여주옥)’을 본떠지었다는 이 시는 청송함(青松鹹)에 사는 한 어부(漁婦)의 원망어린 녀두리를 대신하여 시화(詩化)한 것이다. 고기잡이 생활이 비교적 넉넉하긴 하지만 늘 마음걱정 끊이지 않는 삶이다. 차라리 가난해도 부부가 함께 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나무꾼에게 시집가는 게 나을 것이라고 했다. 올 봄, 석류꽃 필 때 고기 팔러 떠난 남편이 이젠 석류열매가 다 떨어져 성글어졌어도 돌아오지 않는다. 편지 한 줄 부쳐주지 않는 야속하기 이를 데 없는 남편을 생각하면 애간장이 타는 듯하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머리 빗고 곱게 단장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다가 화자는 법성(法聖)이란 곳에서 온 배를 만났다. 남편이 그 곳에서 새살림을 시작해 아들까지 낳고 살고 있다는 얘길 접하고 보니 대낮에 정신이 혼미해진다. 게다가 아무 것도 모르는 그곳 주민들은 ‘口口湧倭譽(구구용영예)’, 즉 보는 이마다 남편을 칭찬까지 한다고 했다. 그토록 정숙했던 남편이건만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처지이다 보니 일어난 일이다. 하지만 마지막 두 구절을 보자. ‘錢盡情應盡(전진정응진) 庶改望狂且(서개망광차)’라고 했다. 곧 지금 만난 여인네야 돈 떨어지면 정(情)도 이내 떨어질 터이니 미친 짓 그만 하고 제발 돌아 와달라는 어촌 아낙의 절절한 호소이다. 이전의 전통적(傳統的) 유가(儒家) 윤리의식(倫理意識)으로는 생각하기조차 쉽지 않았을 반응이다. 설령 생각했다 하더라도 마음 속 일을 과감히 꺼내 놓기 힘들었을 여류감정(女流感情)의 대담한 표출이다.

김려에게 있어서 이러한 면모는 부령(富寧)으로 유배(流配) 갔던 시절에 가까이 지내게 되었던 연희(蓮姬)라는 여자와의 사귀를 통해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問汝何所思 문여하소사	自持一箇篋香口 자지일개감향구
所思北海湄 소사북해미	問道脣紅與櫻紅 문도순홍여앵홍
井上朱櫻千萬顆 정상주앵천만과	潭園老夫竄慌谷 담원노부찬황곡
壓重長朶復頭朶 압중장타부두타	三年拾實充饑腹 삼년습실충기복
蓮姬手摘盛筠籠 연희수적성균롱	今日但見花開時 금일단견화개시
水晶均圓光玲瓏 수정균원광영롱	開花結子應爛熟 개화결자응난숙

『유고(遺稿)』, 권 5, 장 2, [思牖樂府(사유악부)]

우물가에 서있는 한 그루 앵두나무에는 긴 가지 짧은 가지 할 것 없이 빨간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다. 연희는 스스로의 무게를 못 이기어 축축 늘어진 가지 사이사이를 비집고 연꽃 같은 발걸음을 이리저리 옮긴다. 바구니 가득하게 따 담아 놓고 보니 앵두 알은 수정처럼 동그랗고 영롱하기까지 하다. 반짝반짝 빛나는 앵두 알을 바구니에 따 담기도 하고 때론 한 알씩 자기 입 속으로 가져가면서 앵두 빛깔과 자기 입술 중 어느 쪽이 더 붉으냐고 묻는 연희의 교교(嬌嬌)한 모습을 그린 것이다. 시름으로 세월을 보내야 하는 귀양살이 이 삼 년 동안에 앵두로 배속을 꽉 채우기도 했다고 술회했다. 여성적 정서를 묘사하는 데는 사뭇 거부하는 태도를 지녀왔고, 때론 인식하기까지 했던 종래의 한시적 경향과 비교하면 일종의 파격(破格)이라고 볼 수 있는 대담한 정서적 노출이다.

問汝何所思 문여하소사	水色澄清澈底冷 수색징청철저냉
所思北海湄 소사북해미	上有雲氣一道靑 상유운기일도청
六月流頭月似甕 유월유두월사옹	我先脫衫跳水內 아선탈삼도수내
蓮姬沐髮玉瀑洞 연희목발옥폭동	蓮姬窈手淖我背 연희국수요아배
洞中蒼壁繞似屏 동중창벽요사병	蓮姬端坐水邊石 연희단좌수변석
瀑水噴飛建萬瓶 폭수분비건만병	水中月色照翠黛 수중월색조취대

『유고(遺稿)』, 권 6, 장 38, [思牖樂府(사유악부)]

유두날 아낙네들이 냇가에 나가 머리 감는 풍습을 소재로 한 시이다. 유월 보름, 마치 항아리를 엮어 놓은 듯 둥근 달이 휘영청 떠있는 밤에 연희는 옥폭동 냇물에 머리를 감는

다. 푸른 절벽은 병풍을 두른 듯 우뚝 서 있고, 얼음같이 찬 물이 내리 쏟아지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방불하게 한다. 화자는 먼저 적삼을 훌훌 벗어 던지고 물 속으로 훌쩍 뛰어든다. 그를 따라 들어간 연희는 그 작고 앙증맞은 고운 손으로 찬 물을 한 움큼씩 쥐어 그의 잔등에 뿌려 준다. 검푸른 눈썹으로 대표되는 연희의 자태는 냇가에 단정하게 앉은 채 교묘한 달빛을 받아 시냇물에 비추인다고 했다. 이러한 일련의 시편들에선 관념적이고 신분적인 편견을 떠난 그의 진실한 우정과 사랑까지도 언뜻 느껴진다.

問汝何所思 問여하소사  
 所思北海湄 소사북해미  
 旅館孤燈今宵夢 여관고등금소몽  
 夢到蓮姬樓上弄 몽도연희누상롱  
 蛾眉不展遠山低 아미불전원산저  
 蓮姬獨立欄干西 연희독립난간서

階上石竹花已落 계상석죽화이락  
 只有雙雙鶉鳩啼 지유쌍쌍발구제  
 我從欄梯上欄曲 아중난계상난곡  
 喧呼且召杯中醞 흰호차소배중은  
 蓮姬不答若不聞 연희부답약불문  
 覺來曉月縈 牖 矚 각래효월영유축

『유고(遺稿)』, 권 5, 장 20, [思 牖 樂府(사유악부)]

꿈에 본 연희를 그린 시다. 여관방을 희미하게 비추는 외로운 등잔불이 화자의 현재 심사를 대변해 준다. 가물가물 타 들어가는 등불 밑에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다 잠을 들게 된 작가는 누대 위에 장난치며 놀고 있는 연희를 만나게 된다. 여인을 그리워하는 절절한 심경(心境)이 꽤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다락 위 누대에 비껴 서서 한 가락 곡조를 타는 연희의 고운 모습과, 계단 위에 꽃잎이 다 떨어져버린 석죽화(石竹花)가 좋은 대조를 이룬다. 또 쌍쌍이 날아다니며 울어대는 비둘기도 화자의 공간적 배경을 두드러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술잔을 가득 채워 놓고 아무리 큰 소리로 불러 보아도 연희는 못 들은 양 대답하지 않는다. 너무나 안타까워 소리치다가 문득 깨어 보니 어슴프레 새벽달만 창문에 걸려 있더라고 했다. 누구나 한두 번은 경험하게 되는 꿈속의 일과 그 안타까운 심사를 꾸밈없이 사실적으로 묘사해 내었다.

問汝何所思 問여하소사  
 所思北海湄 소사북해미  
 蓮姬戒我作文字 연희계어작문자  
 人世紛紜易觸忌 인세분은역촉기

是時雪霽風力緊 시시설제풍력긴  
 碧天如水月色深 벽천여수월색심  
 忽聞庭前枯葉墜 홀문정전고엽추  
 淒然却生離合意 처연각생리합의

長宵不眠擁寒衾 장소불면옹한금  
評古談今共霑襟 평고담금공젼금

北燕南鴻天一角 북연남홍천일각  
與誰更論傷心事 여수갱론상심사

『유고(遺稿)』, 권 5, 장 25, [思牖樂府(사유악부)]

이 역시 자신과 깊은 개인적 교분을 가졌던 연희(蓮姬)를 그리는 시다. 고금사(古今事)를 함께 이야기하던 연희를 생각하니 긴긴 겨울밤에 잠을 이룰 수 없다. 눈 걷히고 나자 바람이 급히 불어치는 차가운 날씨, 물빛같이 찬 하늘과 그윽한 달빛에 마른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니 마음은 더욱 처연해진다. 연희를 북쪽에 두고 떠나 왔으니 뉘와 더불어 상심사(傷心事)를 이야기하겠냐고 반문한다. 연희는 어지러운 세상일에 김려의 날카로운 글 솜씨가 촉기(觸忌)되지나 앓을까 염려하고는 미리 경계를 하라고 했다. 어차피 세상일이란 시끄러운 것이니 스스로 몸을 지키라는 근심어린 충고를 해 줄 줄 아는 여인이었다. 겨울밤은 유난히 길고, 귀양 온 처지이다 보니 잠자리엔 냉기가 서려 있지만 들은 이런 저런 세상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忽聞庭前枯葉墜(홀문정전고엽추) 淒然却生離合意(처연각생리합의)’에서 볼 수 있듯이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하다 보니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 또 어느 부분에 가서는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게도 된다.

담정은 남녀 사이의 애정을 넘어서 미천한 신분이지만 이들 여인들과도 일정한 정도의 인간적인 교의(交誼)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늘 개인적으로는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대외적으로는 그들을 옹호하는 입장에 서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한다.

問汝何所思 문여하소사  
所思北海湄 소사북해미  
玉嫂平生恨徹骨 옥수평생한철골  
每夜吞聲淚不歇 매야탄성누불혈  
如何天賦薄命人 여하천부박명인  
不作聰明男子身 불작총명남자신

牆花路柳八字惡 장화노류팔자악  
誰謂荼苦甘如蓴 수위도고감여순  
切痛人間柳氏子 절통인간유씨자  
三生冤讐寧非爾 삼생원수녕비이  
寂寞芳閨深掩處 적막방규심엄처  
怨緣愁江空沒齒 원록수강공몰치

『유고(遺稿)』, 권 6, 장 71, [思牖樂府(사유악부)]

이 시의 주된 정조는 ‘비탄(悲嘆)’이다. 옥수(玉嫂)라는 한 부기(府妓)의 한탄을 시로

형상화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한탄이나 비탄은 화자가 처한 상황과 화자의 인식이 불일치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그녀가 뼈에 사무치도록 평생을 한스러워 하는 이유는 왜 자신이 총명한 남자로서 태어나지 못했는가 하는 점 때문이다. 남들이 노류장화(路柳墻花)로밖에 여기지 않는 박명한 팔자로 태어난 것이 하도 한스럽고 서러워 옥수는 매일매일 눈물로 날을 보낸다. 흔히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든지, 그대와 나와는 아무런 차별이 없는 동등한 존재라는 이야기를 말로는 하기 쉽다. 그러나 현재적 삶에서는 이러한 무차별상이 모습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누구나가 다 안다. 누가 쓰디 쓴 씌바귀를 달콤한 순채와 같다고 했냐고 힘주어 말한다. 작가는 부질없이 혼자 이를 갈아 그만 이가 다 빠지게 될 정도가 되어버린 이 여인의 탄식을 듣고 진정으로 그녀의 처지를 동정한다. 그리고 당시 작은 지방의 한 모퉁이에서 미미한 권력으로 이들을 내리 누르던 유도호(柳都護)라는 자를 책망한다. 옥수의 한숨소리가 눈물 마를 길 없는 그녀의 삶과 함께 실려 오는 듯하다.

위에서 몇 편의 시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정(情)·욕(欲)의 세계를 긍정하여 적극적으로 자기 시에 흡수시킨 그의 의식은 예교적(禮敎的) 질서(秩序) 아래 억압되어왔던 여성의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本性)을 주체적으로 실현하여 시에 담아내려는 창작의지로 보여 진다. 또한 인간의 감정을 자유로이 표현하는데 머물지 않고, 종래 천시되어 오던 낮은 신분의 여인들에게도 고결한 인간성과 자의식이 있음을 역설하는 태도 등은 인간의 삶과 자존감을 중시하는 긍정적 인간관으로서 근대의식의 발로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 맺음말

위에서 담정 김려의 생애와 문학관, 그리고 그의 시세계를 살펴보았다. 그는 명문(名門) 연안(延安) 김씨(金氏)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나 거듭되는 사화(史禍)와 당쟁(黨爭)으로 집안은 거의 몰락의 위기에 처하였다. 그런 중에도 부친의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학문에 전념하다가 비어사건(飛語事件)으로 십 여 년에 걸친 참담한 유배생활을 보내고, 말년에 미관(微官)으로 보내다가 56세를 일기로 그리 길지 않은 삶을 마감한다.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34권 17책에 달하는 방대한 『담정총서(潭庭叢書)』를 편찬하였고, 12권 6책의 『담정유고(潭庭遺稿)』를 저술하는 등 철저한 작가의식을 소유한 문인이었다. 그의 시편들을 검토하여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그는 사실적이고도 구체적인 표현을 위주로 시작(詩作)에 임했다. 그가 시의 제재로 삼은 것들은 일상적 대상의 재현(再現)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섬세한 감각과 풍부한

상상력을 통해 생명력을 갖게 된다. 곧 시각과 청각의 조화, 원경(遠景)과 근경(近景)의 대비 등으로 선명한 회화성을 띤 새로운 작품으로 참신하게 재구성된다.

둘째, 한미(寒微)한 계층의 여인들과 교유하기도 하고, 그 자신이 직접 유배생활을 겪었던 그는 서민들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이들의 생활상을 여실히 그려내고 있다. 밖에서 본, 위에서 본 서민 또는 천한 신분의 여인들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어울려 생활하면서 체득해 낸 반응양식을 시로 구성한다. 이러한 이들에게의 깊은 관심과 애정은 빈부나 귀천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근대적 의미의 인간평등사상에로 발전하게 된다.

셋째, 사회 현실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그의 시는 자연히 일정한 정도의 비판적 성격을 띠게 된다. 관리들의 횡포나 과중한 조세 등으로 민중의 삶이 극도로 곤궁해진 조선조 후기 사회에서 김려는 철저히 고통 받는 이들의 편에 서서 시작(詩作)을 통해 이러한 모순들을 지적하게 된다.

넷째, 김려의 시에서는 이전의 예교적 관념 하에 ‘남녀지정(男女之情)’이라 하여 간과되었던 인간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표출되고 있다. 즉, 남녀간의 정욕이나 여성적 감정이 대담하게 묘사되는 한편, 관념적이고 계층적·계급적 편견을 떠나 ‘긍정적 인간관’이라는 근대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다섯째, 삶의 정취가 담겨있는 소박하면서도 해학적인 한시(漢詩)를 다수 창작하고 있다. 그는 이들 시편들에서 우리의 풍속을 소재나 제재로 했을 뿐 아니라, 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시어(詩語)로 활용한다. 이는 김려의 주체적이고 민족자각적인 문학정신의 소산으로 여겨진다. 요컨대 김려 한시의 이러한 특질들은 조선조 후기에 새롭게 대두된 개성적 문학관과 맥락을 같이 하며, 근대적 이념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근래 들어 여성 담론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을 계기로 하여 우리 문학사에서 그가 새로운 연구 대상으로 부각되고, 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본다.

## 참고자료 및 연구논문

- 김려(金鑣), 『담정유고(潭庭遺稿)』, 계명문화사 영인본  
 김려(金鑣), 『담정총서(潭庭叢書)』, 통문관 소장본  
 김조순(金祖淳), 『풍고집(楓臯集)』, 연세대 도서관 소장본  
 안정복(安鼎福), 『순암집(順菴集)』, 연세대 도서관 소장본  
 박지원(朴趾源), 『연암집(燕巖集)』, 경인문화사 영인본

- 허균(許筠), 『허균전집(許筠全集)』, 대동문화연구원 영인본  
한국학문헌연구소(韓國學文獻研究所), 『推案及鞫案』, 아세아문화사, 1978  
국사편찬위원회(國史編纂委員會),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탐구당, 1970  
이동환(李東歡), '조선 후기 한시에 있어서 민요 취향의 대두', 『한국한문학연구(韓國漢文學研究)』, 3·4집, 1978  
김경미(金景美), 『濶庭 詩 研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5  
김경미(金景美), '대보름 풍속시 [上元俚曲] 25수에 대하여', 『우리문학 연구』, 제 6·7집, 우리문학연구회, 1987



**민족정치론의 체계화를 위한 정지작업**

# 현대정치와 민족문제

〈 주요 목차 〉

**제 1 부**

1. 새로운 정치환경과 민족문제
2. 개념 정의
3. 네이션
4. 내셔널리즘
5. 국민국가론

**제 2 부**

1. 중국 :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건설
2. 華僑 : 落葉歸根에서 落地生根으로
3. 러시아연방 : 마트로시카적 중층성
4. 미국 : '멜팅 포트'에서 '샬러드 볼'로
5. 일본 : 단일민족 신화의 허구
6. 캐나다 : 다문화주의의 실천장
7. 북한 : 통일정책과 민족정책

**||| 교양사회** 조정남 저 / 값 15,000원

## 여성과 환경교육

임 선 희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환경분야에 더 많은 여성들이 진출하고 과학자, 전문가로서의 여성과 지역의 여성들, 의사결정자로서의 여성들이 연대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의 연대를 통하여, 여성환경운동 및 교육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



### 환경문제와 여성

**환** 경은 인간의 생계를 해결하고 공동체적 삶의 기반인 동시에 지속가능한 개발에 필수적인 자연자원이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지구환경의 온실화, 각종 폐수와 화학물질, 방사능 물질 등으로 토양과 수질이 오염되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로 인해 인간의 생활기반이 붕괴되고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환경위기는 과학혁명 이후 산업화과정

에서 물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면서 인간위주의 세계관으로 자연을 남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각종 환경 문제로 여성들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사회적 유대, 문화적 정체성 등 위협에 직면해 있다. 특히 여성들은 자연과 직접 접촉하고, 가족의 의식주를 담당하고 있고,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환경파괴로 인한 영향을 더 받게 된다.

최근 전지구적 질서 속에서 경제의 세계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건강한 환경에 다국적 기업이 아무런 규제없이 적절한 환경계획과 관리 없이 들어옴으로 인간과 환경을 황폐화시킨다. 글로벌 자본주의화에 의한 경제문제에서 환경의 악화와 여성의 빈곤화문제는 제3세계 여성의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그동안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여성들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 그동안 리우 환경회의와 베이징 여성회의를 계기로 여성환경운동은 지역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활동을 발전시키고, 지역적·세계적 차원으로 교류하고 여성 환경세력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에 관련한 많은 사안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각종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시행에서 여성들의 참여는 여전히 제한되어 있고, 지역개발이나 환경 피해를 복구 위해 지역구성원들에게 제공되는 신용과 교육기회에서도 여성들은 소외되고 있다. 여성 발전과 직결되는 여성환경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여성환경 전문가들의 활동과 여성의 환경 교육은 여성환경 활동을 여성발전 조류에 통합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 환경과 여성

### 여성과 환경과의 관계

인류역사 이래 여성은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자연과 지구를 모성에 비유하거나, 자연과 여성이 동일시되기도 하였다. 자연에 대한 모성적 이미지가 많이 흐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은 물이나 식량, 에너지의 제공 및 절약, 저장·관리의 문제를 담당하면서 자연과 밀착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연에 대한 경험을 축적해 왔다.

오티너(Ortner)는 범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중속에 대하여 관찰한 결과 여성의 자연과의 밀접성을 지적하였다. 즉, 여성이 자연과 가깝게 인식되는 이유는 여성의 몸과 기능의 생명과의 관련성, 여성을 가정에 위치시키는 사회적 구조, 여성심리

〈표 X-1〉 여성이 자연과 가깝게 인식되는 이유

1. 출산과 관련되는 여성의 몸과 기능 : 생명과의 깊은 관계
2. 여성을 가정에 위치 지우는 사회적 역할구조
① 자연의 일부로 인식되는 신생아의 양육
② 생물학적 기능이 강조되어 자연집단으로 여겨지는 가족이라는 맥락에 여성을 제한 시킴
3. 여성심리 : 감성적 · 관계지향적 · 주관적 특성
- 사회적 역할에 의해 강화되고 재생산되어 옴

등을 들고 있다(여성개발원,1998).

“베이징 행동강령” 중 ‘여성과 환경’ 부문에서도 여성은 천연자원의 관리와 이용을 통하여 자신의 가족과 공동체에 생계를 제공하며, 여성은 소비자 및 생산자, 가족관리자 및 교육자로서 현재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환경행동에 관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자들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잘 실천되고 있는 환경 행동은 물이나 전기를 절약하는 것, 의식적으로 음식찌꺼기를 남기지 않는 것,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것, 재활용품을 모으는 것, 합성세제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 비닐봉지를 덜 받는것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일곱가지 환경관련 문항 중 음식찌꺼기와 세

〈표 X-2〉 환경행동의 성차

문 항	남성평균	여성평균	t	df	p
의식적으로 음식찌꺼기를 남기려 하지않는다.	4.0282	4.1429	-1.54	488.59	.124
합성세제, 샴푸, 거품나는 물비누 사용을 억제한다.	3.5654	3.5153	0.60	902	.548
물이나 전기를 절약한다.	4.2571	4.4016	-2.33	898	.020
신문지, 우유팩, 알루미늄캔을 따로 모은다.	3.3865	3.7347	-3.25	902	.001
물건을 살 때 될수 있으면 비닐봉지를 덜 받는다.	2.7473	3.0835	-3.29	902	.001
비싸더라도 환경오염을 덜시키는 물건을 산다.	2.9184	3.1059	-2.01	903	.045
종이컵 등의 1회용품을 억제한다.	3.5230	4.2777	-8.78	459.93	1.000

※출처 : 한국여성개발원(1993), 환경과 여성의 역할, p. 122

제 사용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환경행동을 더 잘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여성개발원, 1993)

여성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시각은 이제까지는 여성을 자원의 소비자로 보는 관점, 여성을 환경오염의 피해자로 보는 관점, 여성을 환경 개발의 수혜자로 보는 관점들이 주가 되었다. 그러나 여성을 수동적인 환경의 피해자로 보는 시각에서 여성을 자연과 환경의 제외시킨 의사결정자들이 모성의 원리를 무시하고 양육보다 지배하고, 지속보다 파괴하는 가부장적 악개발을 지속시켜 오늘의 환경위기와 여성의 피해가 초래되었다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다(한국여성개발원 1993).

### 환경운동과 에코페미니즘

60년대 이후 환경위기에 대한 인식과 함께 생태문제의 중요성과 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다.

에코페미니즘은 여성운동, 평화운동, 환경운동 등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까지의 다양한 사회운동으로부터 성장해 나온 것이다(Maria and Vandana, 1993). 에코페미니즘은 삶의 기본욕구로부터 출발한 시각으로 보며, 여성이 남성보다 이 시각에 더 근접해 있다고 본다.

이러한 환경문제의 본질과 그 해결방안에서 다양한 관점들이 제기되었다.

첫째로 환경관리주의적 관점으로 환경문제를 자연세계의 불균형을 생태위기로 규정하고 이것이 인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환경문제로 정의하여 자연세계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술과 과학의 발달에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전통적 접근이다. 환경에 대한 관리주의적 관점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착적 야생자연을 파괴시키기 위하여 산업화된 사회의 정치 및 행정의 틀에서 다루려는 계량주의적 접근방법이다.

둘째로 근본생태론적 관점으로 환경문제는 과학기술적 차원을 초월한 근본적인 지배적 세계관과 그 문화적 함의를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환경오염, 멸종, 생태계 파괴, 핵문제등의 환경위기를 서구문화의 발전과정에서 발생된 필연적 결과로 인식한다. 따라서 환경문제의 해결은 근대 서구문명의 근간이 되어온 인간중심적인 지배적 세계관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 수정이나 정치제도의 개혁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문제의 본질을 규명하여 새로운 생산방법과 소비생활에 의한 새로운 생활양식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등 인간과 자연의 분리되지 않은 생태적 자각과 신념이 강조된다.

셋째로 생태위기의 중요한 원인이 자연의 가치,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표상등 관념적 차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역사적으로 불변하는 요소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현실

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환경문제의 해결은 사회적 모순에서 출발한 접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 전제된다.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생태운동과 여성해방운동의 접목인 에코페미니즘이 나타나게 되었다. 여성해방운동과 생태운동은 각각 여성과 자연에 대한 지배와 착취를 벗어난 새로운 가치창조와 사회구조를 제안한다는 특징에서 평등주의적 관점을 갖는다.

에코페미니즘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의 요인이 위계적, 군사적, 기계적 가부장제 문화라고 규정하는 급진적·문화적 페미니즘, 서구철학과 문화가 인간중심이기 때문에 자연을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자연관과 세계관을 전환시켜야 한다는 근본생태론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운동과 생태운동은 시장경제의 산물인 경쟁, 공격성, 지배 등에 대해 비판적이다. 착취로부터 자연을 해방시키며 동시에 소외되고 주변인화 되는 여성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에코페미니즘은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인간이 경쟁관계에서 생활하는 현대사회에 긍정적 인간관계와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문화적 패러다임으로 발전되었다.

킹(King)은 에코페미니즘의 기본 신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서구 산업화 사회의 자연에 대립하는 문화는 여성을 자연과 연결짓고 여성에 대한 종속을 강화한다. 둘째, 인간의 위계는 사회적 지배를 정당화 시키기 위해 만든 것이며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여성적 생태론은 자연에 대한 지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위계를 반대한다. 셋째, 인간과 생물을 포함하여 건강하고, 균형된 생태계는 다양성을 유지해야 한다. 넷째, 종의 생존을 위해서 인간과 자연과의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고, 생태학적 원리에 의한 인간사회의 재구조화를 강조한다(King, 1989).

### 세계화와 여성 환경의 빈곤화

20세기 후반부터 대두된 세계화는 탈냉전 이후 국가간 관계에서 경제가 이데올로기보다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화는 인류사회의 진보를 가져올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신유주의적 이념에 토대를 둔 세계화 정책은 개도국이나 제 3세계는 더욱 주변화되고 금융자본의 이동에 의해 더욱 예측되게 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부정적 측면도 보이고 있다. 즉 세계화는 경제의 양극화, 인간착취, 환경의 황폐화등을 초래하고 있다.

경제적 세계화가 환경을 어떻게 파괴시키는가?

지구환경의 파괴는 자본주의의 소비가 미덕이라는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 성과 환경 문제를 논의 할 때 여성들은 자본주의 발달에서 오는 물질만능주의와 대량생산에 따른 조직의 가부장적 위계에 회의적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생태여성주의는 여성운동, 반전운동, 환경운동 등에 배경을 두고 인간의 자연파괴와 환경문제에 대한 반성으로 여성의 사회문제와 생태계 문제와의 관련성 속에서 대두되게 된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환경이 고려되지 못하고, 환경친화적이지 못하다. 제 3세계의 발전계획들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으로 토양, 물, 식물의 체계를 파괴함으로 자연 자체의 생산성과 회복성이 파괴되게 된다. 또한 제 3세계의 여성들과 소작농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땅과 자연을 훼손 할 수 밖에 없어서 생태계파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Bello, 1994). 즉 제 3세계의 발전계획들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발전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담당해 오던 토지와 물, 숲등을 관리하고 통제하지 못하게 되어서 여성들의 생산성이 파괴된 다는 점이다.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책들은 복지를 축소시키고, 이로 인해 여성과 같은 소외 집단의 빈곤은 심화되고 있다. UN의 '여성을 위한 10년' 이 끝날 무렵 여성운동가와 조직자,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집단 보고서를 발표했다.

10년 동안의 연구 끝에 나온 거의 일률적인 결론은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경제적 자원, 소득, 고용에 대한 여성의 상대적 접근 기회는 줄어든 반면, 노동의 부담은 늘어났고, 상대적인 건강 혹은 심지어 절대적 건강과 영양상태는 악화되었으며, 교육수준은 낮아졌다는 것이다(Maria and Vandana, 1993)

## 주요 여성환경활동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최근 20여년 동안 여성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킨 일들이 있었다.

1975년 멕시코에서 열린 “세계여성의 해”의 회의에서 최초로 여성과 환경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여성과 환경이 중심주제는 아니었다.

1985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세계여성회의”에서 환경과 개발에서의 여성의 근본적 역할의 강조되었고, 2000년을 향한 여성발전 전략의 발전 부분에 기본전략 수행을 위한 국가차원의 조치에 환경 분야의 4개 조항, 에너지 분야의 6가지 조항이 여성과 환경에 관한 조항으로 명시된 바 있다.

1991년 마이애미에서 열린 “여성과 환경에 대한 지구회의”에서는 세계 각국의 여성들이 환경관련 성공사례 발표를 통해 환경관리에서의 여성의 지도력과 가능성을 과시하였다. 또 “건강한 지구를 위한 세계 여성회의”에서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의사 결정과 프로그램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Women’s Action Agenda 21’을 제안하여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 지구정상회담에서 채택되어 ‘지속적이며 평등한 개발을 향한 여성의 지구적 활동’으로 유엔환경개발회의의 의제 21의 24장을 구성하게 되었다. 24장에서 국가 정부에 제안하는 사항들로 국가차원의 생태계의 관리와 환경침해에 대한 통제에 있어 여성의 참여를 고려 할 것, 환경과 개발부문에 있어 정책결정자, 기획자, 기술자, 전문가, 관리자와 현장근무자의 여성비율을 높힐 것등을 제안하고 있다.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서는 1997년 41차 위원회 회의의 핵심영역을 여성과 환경 분야로 결정하고, 1996년 “여성과 인구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전문가회의”에서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발전을 위해 각종 회의에서 채택된 전략을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세계 여성회의로부터 진전되었던 풀뿌리 차원의 여성환경활동은 북경회의를 통해 여성운동의 주류에 통합되면서 활성화되었다.

여성환경활동은 여성의 환경에 대한 역할을 증진시키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가치를 부여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이를 위한 구체적 활동은 다음과 같이 여러 차원에서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환경보호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분별한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생태계가 교란되고 여러 환경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생태계 균형에 의존하던 지역주민들의 생계는 유지되기 힘들고 사회생활과 문화적 정체성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으며, 이를 위해 여성들은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생태계 파괴 이외에,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각지에서는 각종 공해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소음 등의 공해문제는 특히 도시 지역에서 심각한데, 여성들은 공해를 추방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직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이외에도 환경보호를 위한 여성들의 활동에서 중요한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핵발전소 건립이나 유해폐기물 등 지구환경과 관련된 활동들이다.

### 생활환경개선

환경문제는 주요 생활공간과 작업장, 지역생태계, 도시, 국가, 나아가 전지구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여성들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성의 거주지와 주변 주거환경 등의 일차적 생활공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다.

특히, 개도국들에서는 인구는 급속히 늘어나고 오염요인은 증가하는 데에도 이를 처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환경관리 서비스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에 더 노출되게 된다. 각종 쓰레기와 생활폐수, 인분 등으로 오염된 환경 속에서 여성들은 삶은 고달프고 무엇보다도 건강문제는 심각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개발사업에는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일부 지역에는 이러한 활동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수 있으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정부기구나 비정부단체의 활동이 가장 활발 분야이다.

### 대안적 생산 및 소비

환경활동은 궁극적으로는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방식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데 있고, 그 관건은 자원이용방식과 경제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생산영역에서 환경친화적 방향으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적 지위도 향상시키려는 활동들이 있다. 지속가능한 경제체계는 생산영역에서의 변화와 더불어, 소비형태의 변화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

환경문제의 소비자 차원의 대응은 기존의 소비자 운동 단체들이 운동의 쟁점 주제로 환경문제를 포괄하면서 전개하는 운동과 환경운동 단체들이 운동전략의 하나로서 소비자들을 동원해내고자 시도하면서 전개되고 있다(이득연, 1998). 소비자 환경운동에는 환경정향적 소비 생활 양식 운동, 대기업 압력 운동, 대정부압력 운동 등이 있다.

여성들의 녹색소비운동은 개인의 소비행동 등을 변화시키는 것에서부터 소비자로서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체계 자체를 변화시키는 활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 환경의식 증진

환경문제해결에서 여성들의 환경의식과 역할을 증진시키는 것은 여성환경활동의 중요한 과제이다. 성인대상 환경교육에서 성인들의 환경의식을 깨우치고, 이들이 환경과 관련

된 계획과 정치적 결정에 참여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중요한 목표가 된다.

환경교육대상자들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주변을 환경보존에 부응하도록 만들고 환경친화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환경관리자로서 미래세대의 교육자로서 여성들은 환경의식을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각국의 정부기구나 비정부단체들은 환경교육을 발전시키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 글로벌 환경문제에 대한 여성참여

21세기를 향하면서 여성의 참여가 지속적인 개발, 건강, 공정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지구를 만들 수 있는 핵심 힘으로 점점 인식되고 있다. 1992년의 Earth Summit Agenda 21과 그에 따른 국제회의의 협약들(1995년의 Women's Conference Platform for Action을 포함)에서 각국 중부들은 정책과 프로그램 수립에서 남녀각각에게 주는 영향의 차이를 볼 수 있는 성 분석의 필요성에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책결정에서 "성 관점의 주류화"가 실천되지도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의사결정 과정에서 동등한 파트너로 여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각국 행정기구에 여성참여율이 증가해 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평등적 참여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지방관리와 국제기관원들은 지역사회의 관심사에 대해 대처능력이 관료적이고, 비효율적이며 그들은 문제에 직면한 지역사회와 적절한 수준의 상의없이 행동하고, 예방의 원칙들을 지키지 않고 행동을 취한다. 정부의 모든 차원에서 환경적으로 건강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확립하는데 여성의 전문성과 경험의 반영이 필요하다. 그런데, 성불평등한 의사결정의 구조는 수질 악화 등 환경의 위기에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성분석은 환경적으로 건강한 개발을 이룩하는데 여성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선언하는 것 이상의 일이다. 실제로 성 분석은 자원을 공유하고 통제하는 방식에서 남녀의 차이를 노출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할 것이다.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는 어떤 유형의 활동에 누가 관여하는지를 알게되고, 또한 특정 지역의 전체 문화적 맥락이 민주적 참여를 위한 넓은 기제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방식을 파악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남녀간에 자원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이해시키고, 여성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정책들을 제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의 주제들이 여성환경활동의 주요 주제들이다.

여성환경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내외 여성환경정책 현황은 1970년대부터 여성복

지 차원에서 여성의 건강, 소득증대,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심을 가지고서 각국 정부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여성환경이슈 자체가 정책의 주요관심사가 아니었으며 국가개발차원에 부수적인 과제로 다루어졌을 뿐이다. 이후 UNCED를 계기로 환경 및 개발분야에서 여성을 세력화하기 위한 통합적 시도로서 여성환경정책이 자리매김되었다. 특히, 개발과 환경분야의 여성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각국정부는 여성환경정책의 의의와 기본방향을 인식하고 여성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여성과 환경분야를 통합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997년 UNCED 5주년을 맞이해 각국 정부는 “UN지속가능위원회 제5차 회의”에 국가정책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 중에서 ‘제24장 지속적 균형 발전을 위한 여성활동’의 내용을 중심으로 각국 정부가 생태계관리와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진하고 이를 가로막는 제한요소들을 철폐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현황을 살펴보면,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여성환경정책의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여성환경정책은 정책의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수립하는 준비단계에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실행 수단을 수

〈표X-4〉 아태지역 국가별 주요 여성환경정책의 과제

주요 정책 과정	
네팔	문맹, 건강, 빈곤, 여성에 대한 보수적 태도
인디아	경제분야의 여성세력화, 환경보전 및 자원관리에 여성참여 및 여성의 관점통합, 여성(특히 농촌여성)의 환경과 삶을 증진하기 위한 과학 기술적용
파키스탄	인구증가 통제 위한 가족계획에 여성참여
타일랜드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활성화, 환경 및 에너지문제에 대한 정보제공, 여성환경세력화, 여성의 일과 관련된 환경 및 자연문제에 대한 각종 훈련참여,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공적표현.
필리핀	개발 및 환경정책·프로그램의 실행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할 기제마련,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가계획발전에 여성참여 증진, 환경 및 자연자원분야에 등등한 참여 및 발전의 성과 공유
몽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여성참여보장 위한 정책마련
일본	여성의 지식과 경험활용한 대중환경교육, 에코마르케, 정책 및 의사결정에 여성참여 증진, 국제협력활동 증진, 환경조사 및 연구에서 여성의 지식과 경험통합
한국	환경과 개발분야 의사결정직의 여성참여 증대, 환경과 여성보전, 여성환경네트워킹 지원

※출처 : 한국여성개발원(1998), 아·태지역 여성의 환경활동에 관한 연구. p 59

립, 시행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다.

## 우리나라 여성의 환경 활동 현황

### 환경활동 현황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른 삶의 질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게 되었다. 1992년에 환경청이 환경부로 승격되고 지방의 환경지청이 지방환경청으로 승격되어 환경행정도 정비되었다.

여성들은 1986년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가 설립되어 공해추방운동연합을 거쳐 환경운동연합으로 발전되기까지 교육과 홍보사업을 실시하면서 환경문제에 참여하였다(한국여성개발원(1997)). 그후 여성민우회, 대한YWCA 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여성단체연합, 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 등 여성단체들이 우리 환경문제에 대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은 60년대부터 소비자 단체활동을 통하여 환경문제에 관여해왔고, 80년대 후반 부터는 환경과 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공동체생협운동에 참여하였다. 또 90년대에는 여성단체들이 중점사업으로 환경문제를 주제로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우리사회에서 여성들은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환경관련 활동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정부의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과 언론사들의 지속적인 캠페인의 영향으로 거주지를 중심으로 이웃간의 자원재활용 및 쓰레기 분리를 위한 작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성공사례를 보면 주로 대도시의 아파트의 경우 동별 분리수거를 하여 생활 쓰레기를 20-30%까지 감량시킨다든가 재활용품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불우이웃 돕기 등의 활동으로 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둘째, 시민운동차원에서의 지역환경운동이 있다. 그 한 예로 강동구 명일동의 대명초등학교 어머니회를 중심으로 출발한 '푸르게 사는 모임'의 경우에는 지역환경문화의 정착을 목표로 가정과 학교에서 학부모와 학생, 교사가 하나가 되어 환경교육, 환경행동 실천, 자원재활용을 위한 정보 제공, 정기적인 알뜰시장 및 환경전시관 운영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환경이벤트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모임으로 발전시키고 매월 1회 동사무소에 모여 환경활동 사례를 나누고 지역의 환경문제를 논의하며 활동전략을 구상하기도 한다.

셋째, 80년대 후반부터 도시 주부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생활공동체 생협운동을 들 수

있다. 한국여성민우회의 함께 가는 생활협동조합, 부천 YMCA, 서울과 원주, 창원 등지의 한 살림, 경실련 정농생협, 구로동의 녹원생협 등에서는 유기농산물을 생산자로부터 직거래하기 위한 소모임을 통하여 주부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공부와 토론을 하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실천으로 옮기고 있다.

넷째, 환경전문단체는 아니지만 기존의 여성단체에서 9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각종 캠페인과 공청회, 세미나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92년도에는 리우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한YMCA, 전문직여성클럽 한국연맹,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이 많은 환경관련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상과 같은 여성들의 환경활동은 환경위기에 대한 국민적 의식을 제고시키고, 실천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계몽적 측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된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 여성환경활동의 동향은 환경활동 참여 증대, 다양한 환경활동의 전개, 교육홍보활동의 증가, 환경활동간 연대 활동의 모색 등으로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7).

즉 첫째, 환경활동 참여 증대는 환경운동단체의 여성상근자수가 증가하고 여성만으로 구성된 환경운동조직체의 생성, 환경단체의 여성회원의 현저한 증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둘째, 다양한 환경활동의 전개되고 있다. 이는 가정뿐 아니라 일터에서의 환경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환경파수꾼의 역할이 강화되고 지역환경운동과 의정감시활동의 수행, 환경실천을 위한 구체적 지침자료의 제작, 녹색소비자운동의 전개, 생협활동의 활발한 전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셋째, 홍보활동이 증가하고 있는데,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세미나와 전시회 등의 행사가 증가하고 있다.

넷째, 환경활동간 연대 활동의 모색으로 여성들간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 여성환경교육의 사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많은 여성단체들이 우리 환경의 위기를 인식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환경문제에서 여성은 소비자, 관리자, 감시자 그리고 지역주민으로서의 역할을 자각하면서 이에 따른 실천과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성환경교육활동은 공공기관 및 일반 환경단체 그리고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

고 있다. 여기서는 여성환경교육의 대표적 사례를 몇 가지 제시한다.

〈여성민우회〉

-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강사훈련 교육  
환경운동과 여성의 역할  
쓰레기 문제의 원인과 실태, 그 해결 방안  
재활용 실천 사례 및 분리배출 방법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범 사업의 성과와 개선 방안  
강의 기법과 시연

- 지역소그룹 교육  
환경운동과 여성의 역할  
쓰레기 문제의 원인과 실태  
쓰레기 분리 배출과 재활용 방법

- 생협활동  
생협운동의 전망과 생협사업 안내  
우리 식품의 안전도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생활협동 사업안내  
놀이지도

영역	하위영역
1) 우리의 생태계 현실	-우리의 산림 -우리의 동식물 -우리의 녹지, 공원 -우리의 갯벌
2) 지속가능한 개발 (지역에서의 개발과 환경보호)	-지방자치제 시대의 환경행정 -지역환경운동과 아젠다 21 -지역사업의 갈등: '개발'과 '환경보전' 간의 갈등 -넘비(NIMBY)현상의 이해
3) 지방자치제 시대의 지역환경보호 참가방안	-지역의 주민운동사례(지역의 구체적인 개발과 보호간의 갈등 사례)
4) 여성의 환경행정 참여	-여성의 지방환경행정 참여 -의정감시활동
5) 내가 알고있는 우리지역사회 환경문제 및 나의 역할	-토의

저공해 재생비누 만드는 방법 및 실습.  
 <여성단체협의회>

□ 여성환경학교

· 사업개요 : 환경운동의 주역할은 여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지역내 여성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여 작년에 이어 보다 나은 내용의 교육을 계획함.

· 사업목적 : 실천력이 강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자각 시켜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환경의 감시자로 엮어내고 이후 여성모임을 구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함.

<한국여성개발원>

□ 환경활동가, 환경단체, 혹은 여성단체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 여성환경활동 교육을 위한 과제

### 성인여성을 위한 환경교육의 확충

현재 우리나라 성인세대는 수출 중심의 경제정책이 우선시 되던 시대에서 생활하였고,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세대이므로, 환경위기의 시대에 부응 할 수 있는 인식전환을 위한 환경교육이 더욱 요청되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환경단체를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 교육기관, 행정조직 등에서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세미나, 각종 교육, 캠페인 등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한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 성인남녀 79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 87.7%가 환경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어 환경교육의 부재를 알 수 있다(녹색서울시민위원회, 1996). 이와 같은 점에서 특히 사회인의 인식전환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환경 교육 기회의 확충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여성회관, 시민회관, 구민회관, 종합복지관, 대학교의 평생교육원 및 사회교육원, 백화점 문화센터 등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들에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확충되어야 한다. 아울러 평생교육기관들의 환경교육을 운영을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제공됨으로써 환경교육의 확충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 여성을 위한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북경에서의 제 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한 전략목표와 행동조치에 맞춰 제시한 한

국여성환경운동의 전략과 과제로, 환경과 개발의 정책결정과정에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과 계획 수립시 여성적 관점의 통합이 채택된 바 있다. 이러한 여성적 관점을 수립하는 것을 위시하여, 여성의 참여 기회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전략이 요구된다. 환경과 개발계획 수립에 여성적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행동지향적 참여 연구를 통해 자원을 관리하는 방식과 보존에 관련 짓기, 경험, 전문성의 확보와 능력개발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주부, 미혼여성,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더 나아가 교육전담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환경운동단체 혹은 민간운동단체의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재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지원체계의 구축 및 전담교육기구의 설립이 요청된다. 특히 우리농촌환경의 변화에 따른 친환경 농업의 시행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수행할 필요성에 대응하여 농촌지역여성과 여성농업인들을 중심으로 녹색 생산·녹색 소비를 주도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업·농촌 공간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 여성 환경 전문가의 육성

그동안 여성환경 활동이 소비자로서 역할에 중점을 두었고, 환경문제에 대한 감시와 대안제시를 위한 전문적·정치적 활동은 미약하였다.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보다 환경친화적이라는 주장을 인식할 때, 환경전문가로의 여성을 육성하는 일은 중요하다.

현재 환경운동단체의 실무담당자들의 여성비율이 높고, 여성환경운동 단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여성전문가들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한다. 또한 환경정책의 수립 및 환경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적 관점을 통합시키기 위해서도 많은 여성 환경전문가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생태교육장의 조성 및 이를 효율적이고 교육적으로 안내해 줄 전문요원의 양성이 필요하다. 여성 전문 공원안내자 및 해설요원을 양성하여 자연과 친화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교육 실시도 요청된다.

### 여성단체의 환경교육 실시 및 운영지원 확충

환경운동연합, 배달녹색연합과 같은 민간환경운동 단체의 활발한 구체적인 환경보전 활동과 정부와 언론의 홍보활동으로 인해 국민의 의식이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여성의 환경과의 밀접한 연관성으로 인해 여성의 환경보전활동이 활발하고, 특히 민간여성단체들의 환경활동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기관들의 특성에 기반한 다양

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여성단체에 대한 환경교육 실시 및 운영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체계의 마련이 요청된다.

여성은 소비자로서, 자녀교육주체로서, 지방자치시대 지역주민으로서, 생산자로서 환경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소비와 맺고 있는 긴밀한 관계로 환경보전을 위해 많은 부분을 실천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특히 녹색소비자운동과 같은 새로운 소비자운동은 우리의 생활환경을 건전한 방향으로 조성하기 위해 중요한 영역으로 이러한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단체의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지원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

### 여성 환경운동 및 교육을 위한 연계망 구축

환경분야에 더 많은 여성들이 진출하고 과학자, 전문가로서의 여성과 지역의 여성들, 의사결정자로서의 여성들이 연대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의 연대를 통하여, 여성환경운동 및 교육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 국내 여성운동, 환경운동단체 활동가들의 교류 및 전문가와의 워크샵, 해외여성운동단체 방문 등을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

여성환경운동은 다른 부문의 운동에 비해 역사가 짧으므로 서로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일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의 경우, 독일 녹색당과의 인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다국가간의 협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 남북협력관계의 증진과 관련하여 특히 남북간의 환경 협력과 통일 후 환경교육 및 환경 교과과의 통합방안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므로 여성환경운동의 발전을 위해 연계망을 구축하는 일도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양희 · 김이선(1993), 환경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 강수영 · 김선미 · 안지영(1995), "한국여성환경운동의 평가와 전망", 한국여성연구회 ·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과 환경 심포지움 자료집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외(1996), 서울시민의 환경에 대한 의식과 실천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 마리아 미스 · 반다나 시바지움(2000), 에코페미니즘, 창작과 비평사
- 이득연(1998), 환경운동의 사회학, 민영사
- 임선희 · 이영세 · 권정숙(2000), 농촌지역 양성평등 실현 방안
- 정무장관(제2)실(1994), 나이로비 여성발전전략 이행 국가보고서

최소영(1996), 환경운동과 여성의 정치적 주체 형성-에코페미니즘과 여성환경운동,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한국성인교육학회(1998), ANDRGOGY TODAY, 학지사

한국여성개발원(1994),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과 우리나라 여성단체 활동

한국여성NGO위원회 여성과 환경분과(1995), 여성과 환경문제에 대한 국내외 논의 동향  
브라이도티, 로지 외(1995), 여성과 환경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 - 이론적 종합을 지향하며, 한국여성 NGO위원회 여성과 환경분과 옮김, 서울: 도서출판나라사랑

Agarwal, Bina(1992), "The Gender and Environment Devate: Lessons from India." Feminist Studies 18, no. 1(Spring).

Agarwal, Bina(1997), "Enviromental Action, Gender Equity and Women's Participation." Development and Change vol. 28

Walby, Sylvia(2000), "Gender, Globalisation, and Democracy." Gender and Development vol. 8, no. 1, March.



민족문제와 민족정책을 통해 본  
일본정치의 실제 규명

# 일본의 민족문제

## ■ 주요 목차 ·

- 일본의 민족상황
- 일본민족의 형성
- 일본민족론의 전개
- 재일외국인 정책
- 재외일본인 정책
- 일본의 민족적 과제
- 부록 / 일본인해외이주년표



||| 교양사회

조정남 저 / 값 15,000원

## 페미니즘으로 문화읽기

- 영화<피아노>와 단편<하나코는 없다>를 중심으로

양 현 미 (중부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여성의 현실을 바꾸어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여성주체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주체형성의 가능성 모색해야 한다. 또한 주체를 형성하는 법과 사회제도를 포함해 문학, 영화 등에 나타나는 상징체계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다.



### 서론

성에 따라 구분된 생활세계와 차별적 지위를 부여하는 가부장제는 ‘남성에 의한 문화의 독점’에서 그 본질을 찾을 수 있다. 그 안에서 여성은 각종 문화적 수단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생활과 생활관은 개인적인 것에 불과하며 공개적으로 표현할 가치조차 없는 하찮은 것으로 여겨졌다. 그 결과 자신의 세계를 진정한 문화의 형태로 생산할 능력이 부재한 병어리집단으로 보여졌다.

하지만 여성주의 문화론은 모든 문화영역에서 여성이 ‘타자’로 분류된 채 ‘주체’가 되지 못한 것을 인식하고, 여성이 종속된 위치에서 벗어나 여성이 주체가 되는 문화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에 주안점을 두게 되었다.

그동안 다양한 페미니즘 이론은 무엇이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과 인식론의 차이를 만드는가의 문제를 연구해왔다. 그것은 생물학적 토대를 가질 것인가, 아니면 문화적으로 구축된 것인가? 사실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문화적 성(gender)을 구분하는 현대 페미니즘 작업은 시몬느 드 보봐르(Simone de Beauvoir)로부터 시작되었다.

보봐르는 남녀의 차이는 생물학적 차이로 설명되지 않는다며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생물학적 결정론을 비판했다. 그녀는 『제2의 성』(The Second Sex)에서 어떻게 해서 성적계급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남자들은 여자를 여자자체로서가 아니라 자기와의 관계에서 정의하였고, 여자를 상대적인 존재, 남자에게 있어서 의탁적인 존재, 그리고 비본질적인 타자로서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인간은 어떠한 집단도 자기가 주체로서 파악되기 위해서는 그와 대립되는 타자를 대치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가부장제 문화에서는 남성이나 남성다움이 긍정적인 것 혹은 규범적인 것으로 설정되고, 여성이나 여성다움은 부정적인 것, 비규범적인 것, 즉 타자로 간주된다고 주장한다(x x iii). 그녀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에 따라 여성을 타자화하고 대상화하는 데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이분법에서는 남성/여성, 이성/감성, 현존/부재, 주체/타자 등 이항대립구조가 나타난다. 남성과 여성의 이원론적 대립관계는 엘렌 식수(Helene Cixous), 뤼스 이리가라이(Luce Irigaray),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같은 신 프랑스 페미니스트(New French Feminist)들의 주된 공격대상이 되어왔다. 1980년대 신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남성의 동등함, 평등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남성·여성의 이분법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하며 남성의 이성중심·논리중심주의를 거부하고 이런 남성성과 차이를 지닌 여성성을 긍정적 원칙으로 찬양한다.

이들은 여성에 대한 억압이 정치적, 경제적 혹은 사회적 구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만들어 내는 미묘한 언어과정과 논리과정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남성에게 의해 구성된 상징질서를 표현하는 남성적 글쓰기를 거부하고, 남성과의 차이가 분명한 여성의 언어를 가진 여성적 글쓰기를 주장하였다. 비록 여성적 글쓰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존재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지배담론을 전복시키려는 시도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신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해지려고 노력한 초기자유주의자들의 페미니즘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들은 여성성을 억누르고 거부하고 정복하려는 남성의 위계질서 위에 세워진 근대남성중심의 문명을 거부한다. 그러므

로 이들은 그동안 이항대립구조에서 열등하게 여겨져 왔던 여성성을 오히려 장점으로 내세워 남성중심문화에 대항한다. 즉 현존하는 주체인 남성보다 부재하는 타자인 여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더욱 강화시킨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여성작가에 의해 여성의 침묵과 부재라는 여성성을 전면에 내세운 제인 캠피온(Jane Campion)의 영화<피아노>와 최윤의 단편소설「하나코는 없다」를 택해서 여성주의적 고찰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 영화<피아노>에 나타난 여성주의

### 배경

<피아노>(The Piano, 1993)는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 식민지였던 뉴질랜드를 배경으로 한 여성의 삶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가부장제에서 억압당했던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그려낸 작품이다. 이 영화는 칸 영화제와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수상함으로써 이 영화를 만든 뉴질랜드 태생 오스트레일리아 여성감독 제인 캠피온은 세계적인 감독으로 부상했고, 특히 오스트레일리아라는 영화산업의 지역적 변방성에 여성이라는 성적 변방성이 지운 이중의 한계를 극복한 대표적인 여성감독이 됐다.(변재란 304)

상징성이 풍부한 피아노와 열정을 소유한 병어리 여주인공의 결합은 캠피온 영화의 문학적 특성에 대하여 언급하도록 만든다.<sup>1)</sup> 영화<피아노>의 메타포들은 항상 열려있으며 다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비키 릴레이(Vikki Riley)는 캠피온의 영화를 “기호와 상징을 가진 하나의 완전한 체계”로 보고 문학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한다.(Gelder 161 재인용)

이러한 영화 읽기는 억압된 여성적 자아를 회복해나가는 방식에 대한 영화라는 <피아노>에 관한 페미니즘적 논의를 시도해 볼 것이며, 또한 뉴질랜드라는 특수한 공간을 배경으로 싹트는 여성의 자아의식과 관련한 탈식민주의적 해석을 시도해 볼 것이다.

### 침묵/섹슈얼리티

영화<피아노>는 여성의 억압된 성과 사랑을 다룬 페미니즘영화로 높이 평가되어왔다. 이 영화는 남성담론체계에서 그 동안 침묵을 강요당해온 여성을 상징하는 여주인공 에이

1) 영화가 나온 다음해 1994년 캠피온은 케이트 풀링거(Kate Pullinger)와 함께 소설 『피아노』(The Piano)를 썼는데, 이 소설은 영화에서 드러나 있지 않은 모호한 점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특히 영화에서는 빠져있는 앞부분에서 에이다가 어머니가 없는 점, 아버지 재산의 쇠락, 에이다의 16세까지의 삶, 음악선생 등과 관련한 이야기를 쓰고 있다. 이러한 소설의 명확성으로 인해 영화가 오히려 실제 소설보다 더욱 소설같다고 켄 젤더(Ken Gelder)는 말하고 있다.(157)

다(Ada)가 육체적인 사랑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 영화에서 에이다와 그녀가 말을 못하는 상황은 모든 여성의 곤경으로 확대된다. 영화 <피아노>에서 캠퍼온은 남근 중심적 상징계에서 억압되고 침묵되어 온 여성의 자리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남성담론에서 구분지어 온 남성성/여성성, 주체/타자, 문명/자연, 상징계/기호계 등의 이항 대립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여성의 차이를 긍정적으로 제시한다. 19세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피아노>는 남성 중심적 사회구조가 여성에게 부여한 '위치'를 조명해주는 작품이다.

영화<피아노>의 중심인물은 에이다라는 스코틀랜드인 여성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병어리다. 영화가 시작되면, 에이다의 아버지는 에이다를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남자와 결혼시키기로 결정하고 그녀를 딸 플로라(Flora)와 함께 떠나면 낯선 땅 뉴질랜드로 떠나 보낸다. 그녀의 결혼은 그녀의 자유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요된 것이다. 그녀는 아무런 선택권도 갖지 못한 채 19세기의 이상적인 여성상에 맞추어 수동적이고 온순하게 아버지와 새 남편 사이에서 이루어진 결혼을 승낙한 것이다. 그녀가 뉴질랜드 해안에 도착해서 여러 명의 남성들에 의해 둘러져 해변으로 옮겨져 왔을 때, 그녀는 마치 제단에 바쳐지기 위해 실려가는 "희생 제물"(Campion 12)처럼 보여진다. 그리고 낯선 땅에 도착한 첫날밤을 새로운 '소유주'를 기다리며 황량한 해안에서 지낸다.

에이다는 새 남편과 아버지 사이에서 교환되는 존재다. 이러한 에이다의 종속은 경제력에 기인한 것이다. 가부장제에서는 경제력이 그 체제의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지배와 종속의 결과를 낳게 된다.(Engels 105) 특히 남자에게만 경제력이 집중되어있는 가부장제에서 남녀간의 경제력의 차이는 남성의 지배와 여성의 종속을 가져온다. 이러한 남성지배사회에서 여성의 유용가치는 남성에게 의해 결정되며, 여성은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된다.(Irigaray 31) 에이다의 상품성은 새 남편이 에이다가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고 함으로서 그녀의 결혼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사실 에이다의 침묵은 남성중심담론에서 배제된 것이다. 여성의 욕망을 억압하는 상징계의 언어질서에서 여성은 부재, 침묵의 자리를 차지한다. 가부장제 문화에서 침묵하는 여성의 이미지는 하나의 기표로서 남성의 타자로서 있다. 남성은 상징적 질서 속에서 언어적 지휘권을 통해 침묵하는 여성의 이미지 위에 자신의 환상과 강박관념을 부과함으로써 여전히 여성의 위치를 의미의 생산자가 아니라 의미의 담지자로 묶어두고 있다.(Mulvey 834)

여성이 담론에 접근하는 것은 남근중심주의, 남성성, 상징계에 굴복하는 것을 내포한다.(Jacobus 51) 에이다의 남성담론에 대한 거부는 에이다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고모들에게, 플로라는 “엄마가 말씀하시길, 사람들은 쓸데없는 말만 하니까 들을 가치가 없대요”(Campion 56-57)라고 말하는 데서 드러난다. 실제로 에이다는 비언어적 세계에 거주하고 있다. 플로라가 자신의 친 아빠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하면서, 엄마는 아빠와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었느냐고 묻는다. 에이다는 “나는 말할 필요가 없었단다. 아빠 마음 위에 내 생각들을 그릴 수 있었거든. 마치 종이에다 그리는 것처럼.”(Campion 51)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남성담론에서 침묵은 하나의 저항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자기표현에 있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불구화된 전략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캠프온은 영화<피아노>에서 남성중심담론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의미들을 피아노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에이다가 자기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피아노다. 그녀에게 피아노는 마치 몸의 일부가 되어 신체적 발성기관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의미들을 확장시킨다. 그녀에게는 피아노 음악이 언어가 되고, 그녀의 가장 깊은 정서와 그녀의 전체 영혼은 피아노 화음 속에서 노출된다. 영화<피아노>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여러분이 듣는 목소리는 내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의 마음의 소리다... 이상한 것은 나 스스로 침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나의 피아노 때문이다.(Campion 9)

피아노 음악은 언어로 설명할 수도 없고 재현할 수도 없는 코라(the chora)의 상태다. 그러므로 여기서 피아노는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기호계’와 연결된다.(Gelder 162) ‘기호계’는 전 외디푸스 단계(pre-Oedipal stage)로 ‘상징계’, 즉 금기, 질서, 검열을 의미하는 ‘아버지의 이름’ (the Name of the Father)에 의해 지배되는 단계로 들어서면, 무의식으로 억압되어, ‘상징계’의 이면에 놓인 채 분출의 기회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Moi 161-162) 피아노 음악이 주는 시적 음향은 에이다의 억압된 무의식을 표현해 준다.

캠프온이 영화<피아노>에서 보여주는 무의식과 시의 이미지는 신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여성적 글쓰기를 이미지화시키고 있는 듯하다. 신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은 아버지의 이름과 팰러스로 인해 작용하는 상징계를 절대화시킴으로서 여성을 겉여로 설명하는 남성주의 이론을 공격하고 있다. 이들은 남성에 의해 구성된 상징질서를 표현하는 남성적 글쓰기를 거부하고, 남성과의 차이가 분명한 여성의 언어를 가진 여성적 글쓰기를 주장하였다. 특히 엘렌 식수는 남성적 상징질서에 의해 억압받아온 여성의 육체를 회복시켜, 이제까지 침묵을 강요당한 무의식과 시의 세계인 여성적 글쓰기를 주장한다.

여성이 상징계안에 그리고 상징계에 의해 마련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 즉 침묵이 아닌 장소에서 여성을 확인하는 것은 여성으로부터의, 그리고 여성을 향한 글쓰기에 의해서이고, 펠러스에 지배 당해온 언어에 대한 도전에 착수함에 의해서이다.(Cixous, "Laugh" 285)

해변에서 남편 스투어트의 집이 있는 숲으로 가는 험난한 여정은 에이다를 비사회적, 비정치적 존재로 운명지워 놓은 것처럼 보인다. 에이다는 그저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되기 위한 존재로서 여성이 부여받은 천부적인 역할에 충실한 것으로 비취진다. 결혼을 통해 에이다는 스스로를 가부장제에 의해 형성된 허구적 존재로 만들고, 본래적 자아를 잃고 오히려 존재를 상실한 결여된 존재로 남게 되는 것이다.

사실 진정한 가부장인 스투어트에게는 아내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열등한 타자가 필요할 뿐이다. 에이다는 남편의 소유물로서 그의 타자에 불과한 존재이다. 스투어트는 에이다의 짐을 가져가면서 피아노는 너무 무거워 운반하기 어려우니 그냥 놓고 가자고 한다. 에이다가 "저는 피아노가 필요해요"라며 피아노를 가져갈 것에 집착하자, 스투어트는 "부엌용품이나 옷은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요? 그런 의미요?"(Campion 23)라고 되묻는다. 피아노와 떨어지게 된 에이다는 마치 몸의 중요기관을 떼어낸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참다 못한 에이다는 테이블에 건반을 그려놓고 피아노처럼 쳐보기도 하지만 이 모습을 본 스투어트는 그녀의 뇌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질 뿐 에이다의 감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오히려 스투어트는 에이다의 표현수단인 피아노를 그녀의 허락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판다. 에이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피아노를 땅과 바꾼다. 자산가로서 물질적 욕망을 가진 남편에게 땅은 에이다의 피아노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녀에게 희생을 강요할 뿐이다. 그는 오로지 땅을 사는 데만 열중하여 원주민들에게 담요와 총을 주고 땅을 모은다. 그에게는 에이다의 피아노 또한 다른 물건들과 다를 바 없다. 땅만 집착하는 그는 베인스가 나중에 피아노를 돌려보냈을 때도 이유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땅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한다. 가시적인 가치만을 중시하는 스투어트에게 에이다는 부재할 뿐이다.

에이다를 처음 본 스투어트가 그녀가 생각보다 왜소하다고 말하지만, 어차피 그에게는 자신을 비취줄 열등한 타자로서 아내의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왜소한 여성이 필요했던 것이다. 남성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데 있어서 여성은 열등한 타자로서 존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는 『자기만의 방』(A Room of One's Own)에서 남성이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열등한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역설한 바 있다. 울프의 표현을 빌리면,

여성은 이 모든 세기동안 남성의 모습을 원래 크기보다 두 배로 확대·반사시켜주는 마술적이고도 유쾌한 능력을 가진 거울로서 공헌해왔습니다. …문명화된 사회에서 그 용도가 무엇이 될 수 있든 지간에 거울은 난폭하고 영웅적인 행위에 필요한 것입니다. 나폴레옹과 무솔리니가 여성의 열등함을 것처럼 강력하게 주장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지요. 여성들이 열등하지 않다면 그들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으니까요. 이러한 사실은 여성이 그렇게 종종 남성에게 필수적인 존재가 되는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거울의 환영은 활력을 불어넣고 신경조직을 자극하기 때문에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Woolf 35-36)

그러므로 에이다는 가부장적 질서에 희생된 여성인 것이다.

가부장제는 여성의 목소리를 억압함으로써 자신의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지만 궁극적으로 억압이란 반드시 반작용으로서 반항적인 힘을 배태하기 마련이다. 영화<피아노>에서 에이다의 일탈은 여성의 (성적) 정체성의 추구로 이어지게 된다. 피아노를 해변에 두고 온 에이다는 스투어트가 며칠 집을 비우게 되자 베인스를 찾아가 피아노가 있는 해변가로 데려가 달라고 사정한다. 해변가로 간 에이다가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지켜본 베인스는 그녀에게 관심을 가진다. 에이다는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그녀는 피아노와 합일되는 만족감을 보여주는데, 베인스의 감수성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는다.

에이다에게 피아노는 사랑의 대상이다. 그녀는 마치 애무하듯 피아노를 다룬다. 그녀는 자신의 상실과 욕망을 피아노로 표현한다. 그러므로 그녀가 피아노치는 것을 들으면 다른 사람들이 치는 것과는 달리, 이상하게 “감정이 옮겨오는 것 같다”(Campion 92)고 느낀다.

에이다의 피아노치는 모습에 열정을 느낀 베인스는 스투어트로부터 피아노를 사온 뒤 피아노교습을 받겠다며 에이다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다. 피아노에 대한 에이다의 열정을 알고 있는 베인스는 에이다에게 성적 접촉을 허락하면 그 대가로 피아노를 돌려주겠다고 제안한다. 이 때 피아노는 잠시 에이다에게 이중적 존재가 된다. 그녀의 목소리를 대신하며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로부터 도피를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해주는 피아노가 결혼관습을 위반하도록 그녀를 위협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만남을 거듭할수록 에이다를 향한 베인스의 사랑은 깊어가지만, 에이다의 사랑을 얻지 못한 베인스는 피아노를 에이다에게 돌려보내고 만다. 베인스는 자신을 찾아온 에이다에게 그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고통받으며 먹지도 자지도 못한다고 고백한다. 베인스를 향한 그리움을 품고 찾아왔던 에이다는 마침내 베인스와의 육체적 만남을 통해 진실한 남녀관

계를 경험한다. 왜냐하면 “그녀의 육체가 진실을 말하기”(Irigaray 110) 때문이다. 여기에서 여성의 몸은 여성의 정체성 탐구를 위한 출발점이 된다. 에이다는 이제까지 침묵된 육체에 갇혀있었던 자아에 눈을 뜬다.

에이다가 베인스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된 스투어트가 에이다를 붙잡아 집에 가두지만, 에이다의 저항은 시작된다. 에이다는 “사랑하는 조지, 당신께 저의 마음을 드려요”(Campion 94)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자신의 몸과 같은 피아노 키에 새겨 베인스에게 보낸 것이다. 스투어트는 잔혹하게도 에이다의 손가락을 잘라 그녀의 섹슈얼리티를 힘으로 저지하려 한다. 그녀의 섹슈얼리티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부정하는 문화 속에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에이다는 남성중심사회의 희생자가 된다. 에이다는 여성은 스스로 욕망에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아버지의 법’을 어긴 것이다.

영화<피아노>에서 현실적인 의식세계의 거주자인 스투어트는 마침내 에이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상상한다. 에이다의 말을 듣는 것은 의식의 경계를 넘어서는 언어를 듣는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스투어트가 에이다의 말을 들었다고 상상하는 것은 의식 속에 억눌려 있던 무의식이 비집고 들어온 것이다. 그녀가 실제로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머리속에서 “저는 가야만 해요..., 베인스가 저를 데려가게 해주세요..., 저는 제 의지에 놀래고 있어요..., 제 의지는 매우 낮설고 강해요”(Campion 115)라고 울려 퍼진다.

이제 지배담론이 붕괴된 혼돈으로부터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진다. 이 공간은 남성담론으로는 알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공간이다. 영화<피아노>에서는 물 속의 공간으로 이미지화된다. 이것은 여성성을 특징짓는 흐름의 이미지로 형상화시킨 것이다. 에이리얼 샬러(Ariel Salleh)는 여성의 생리·임신·분만·양육 같은 생물학적 특성을 들어 “여성은 이미 자연의 체계와 함께 흐른다”고 말한다. 여기서 ‘흐른다’는 말은 시냇물이나 강물처럼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전통적으로 물은 여성이나 여성성을 상징한다. 결국 이러한 고정되지 않은 유동적 공간은 타자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상징질서를 창조해내는 공간으로 확대된다.

마침내 스투어트는 에이다를 보내기로 결심하고 베인스에게 그녀를 데리고 떠나라고 제안한다. 베인스와 에이다는 떠나면서 피아노를 배에 싣지만 에이다는 피아노를 배 바깥으로 버리라고 말한다. 에이다가 피아노를 버린다는 것은 상실된 욕망을 표현해주던 피아노로부터 해방된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에이다에게 이제 피아노는 필요 없게 된 것이다.

선원들이 로프를 풀고 피아노를 내려놓으려 할 때 에이다도 함께 물에 빠진다. 바다 밑

으로 피아노를 묶은 로프에 발이 묶여 밑으로 밑으로 가라앉던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발에 묶인 로프를 풀고 수면위로 떠오른다. “내 의지가 삶을 택한 것인가?”(Campion 121)

넬슨에 정착한 에이다는 잘린 손가락에 금속제 손가락을 끼고 피아노교습을 하며 생활한다. ‘다시 태어난’ 에이다는 마지막 장면에서 말문이 트여 말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이제 진정한 의미의 독립체로 주체성을 획득한 그녀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직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신 소리가 난다. 그녀는 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엘렌 식수가 말한 대로, “모든 여성은 크게 말하기 시작하는 고통을 안다”.(Cixous, “Sorties” 110)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여성은 말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화<피아노>는 우리에게 익숙한 상징질서가 얼마나 남성위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 상징질서 속에서 여성은 또 얼마나 스스로를 표현할 매체로부터 차단 당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비록 에이다가 남성담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해도 그녀는 끊임없이 남성담론을 해체할 것이다. 또한 그녀가 만들어내는 여성적 담론이 무의식만큼이나 모호한 형태로 잘 포착하기 어렵고, 아직 미흡하다해도 기존의 남성담론과는 다르게 여성의 자리가 있는 새로운 상징질서를 만들어낼 것임에는 틀림없다.

### 탈식민성/주변성

영국의 식민지인 19세기 뉴질랜드를 배경으로 한 영화<피아노>는 피식민지적 존재이자 근본적으로 하위존재인 여성의 위치와 맞물려 탈식민주의적 관점을 불러일으켜 왔다. 뉴질랜드의 거대한 나무들과 질척질척한 진흙땅이 보여주는 야생적 거칠음은 자연의 에너지를 강렬하게 발산함으로써 그 동안 억눌려 왔던 에이다의 감성과 섹슈얼리티를 자극하였고, 마침내 베인스와의 사랑을 성취함으로써 타자성을 제거해 냈기 때문이다. 이러한 뉴질랜드의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의 힘은 무의식적 에너지를 발산하며 반계급적이며 평등적인 세계를 지향한다.

그렇지만 영화<피아노>에서 뉴질랜드와 원주민인 마오리족은 이항대립관계에서 열등한 위치에 있다. 이들은 자연의 리듬과 생산력을 지닌 주체적 세력이라기 보다 단지 배경 역할을 하면서 야만성과 원시성을 드러낼 뿐이다.<sup>2)</sup> 식민주의하에서 존재와 의미는 백인 중심부만의 전유물로 주변부에는 단지 부재의 가능성만이 포진할 뿐이다.(Ashcraft et al. 90) 식민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는 대립적 이중구조로 파악되거나, 지배자의 일방적인 힘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때 피지배자는 본래적 주체를 이루고 있는

2) 에이다가 처음 해변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에이다를 가두어두려고 문 바깥에 빗장을 달았을 때 등 뚜렷한 이유없이 원주민으로부터 공격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실체가 아닌 지배자의 타자로서 그들의 지배담론에 의해 인위적으로 규정된다.

특히 마오리족의 역할은 영화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주로 집단적으로 그저 주변 인물로 동질화되어 모호하게 나타남으로써 비평가들 사이에서 논쟁의 원인이 되었다. 독립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 그들은 ‘타자화’라고 부르는 재현체계를 보여준다. 가부장적, 유럽중심적인 문화에서 그들은 타자성과 비존재의 어두운 영역에 위치해 있어 있는 것이다. 즉 스튜어트같은 제국적 자아에 의해 타자로 규정된다. 이 때 타자는 제국적이고 초월적인 ‘하나One’의 결핍이나 부정으로 이해된다. 이런 행위를 추진하는 제국적 자아는 식민적 언술체계내에서 타자의 가치와 의미에 제한을 두며, 그들 체계 내에서의 타자들은 유럽의 정통성밖에서, 발견과 정복과 동화와 해석을 기다리는 그러한 요소로만 이해된다.

### 여성 영화/해체적 영화

영화<피아노>는 현존하는 남성위주의 상징질서를 여성의 자리가 마련된 새로운 질서로 재구성하려는 여성감독과 여성제작자의 의지가 잘 나타나 있다. 이 영화는 성차별사회에서 겪는 여성의 곤경을 드러내면서, 남성중심이데올로기를 전복시키는 “해체적 영화”(deconstructive cinema)로서의 여성영화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다. 즉 여성의 침묵을 대항기제로 삼아 문명과 가부장제로 상징되는 억압과 자연, 섹슈얼리티로 상징되는 자유를 이항 대립시켜 남성중심의 상징질서의 전복을 시도한 것이다. 특히 영화<피아노>는 여성성을 상징하는 유희적이고 무의식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는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 최윤의 「하나코는 없다」에 나타난 여성주의

#### 배경

최윤의 소설이 전통적인 소설 양식을 뛰어넘으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물과 사실의 불투명성에 의해 드러난다. 최윤 소설의 주체들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주인공이 아니다. 즉 뚜렷한 성격과 행동 양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이 아니다.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렇다 할 행동을 보여주기보다는 주로 인식의 변화과정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인물의 역동적인 대화보다는 한 인물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자아의 음성이 그의 대부분의 소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반성적 거울로서의 타자가 되어, 작가는 그 타자들의 복잡한 생각들을 드러내 보여준다. 최윤에게 삶

의 진실은 한 시점의 현재성 속에 객관적인 것으로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들을 되살리는 주관적 행위 속에서 새롭게 형성된다. 과거의 기억 속에서 실로 인물들은 현존으로서가 아니라 차라리 부재로서 존재한다.

이러한 최윤의 작가적 특성은 1994년 이상문학상 수상작품 「하나코는 없다」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 소설은 남성화자가 끊임없는 의식의 미로를 헤쳐 나가면서 자신의 삶과 인간관계에 대한 탐색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때문에 이 작품은 화자의 <자아발견과 사색>이 주요골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미지의 도시를 여행하는 공간적 탐색과 <하나코>를 찾아가는 존재론적 탐구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배경열 492)

이 소설은 하나코라는 여자주인공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이 아니라, ‘그’의 눈에 비친 하나코에 대한 기억을 통해 그녀의 가치가 부각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코가 없는 “텅빈 중심”에서 글이 이어지고 있다. 남성중심사회에서 확실성과 통일성은 남성성과 연결되고, 불확실성과 탈중심성은 여성성과 연결된다. 하지만 ‘그’의 기억의 구심점에, 또한 ‘그’ 주변 남자들의 중심에 그녀가 있기에 그녀는 이 소설의 진정한 중심인물이 된다. 따라서 하나코에 대한 ‘그’의 서술은 타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남자들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 작품은 결국 부재의 이야기이며, 타자에 대한 이야기다.

신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은 성의 차이를 긍정적으로 제시한다. 이들은 남성/여성의 이분구조를 해체하는 듯하지만 오히려 그 이분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다시 말해 여성의 차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이제까지 부정적으로 또는 지나치게 이상화되어온 여성성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이상화한다. 예를 들어 비합리성, 부드러움, 모성 등 여성성의 일부를 긍정적으로 정립한다.

최윤의 글은 남성담론의 이성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모호하면서도 모성이 깃든 글로 나타난다. 이러한 최윤의 글쓰기는 신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여성적 글쓰기와 연결된다. 신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은 상징계를 절대화시킴으로써 여성을 결여(결핍)로 설명하는 프로이트식 남성주의 이론을 공격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최윤의 「하나코는 없다」에 나타난 부재의식과 타자성, 그리고 여성적 글쓰기를 중심으로 여성중심비평<sup>3)</sup>을 시도해보려고 한다. 최윤은 이 소설에서 남성담론에서 구분지어온 여성성의 특징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전략적으로 해체시키고 있다. 즉 남성중심주의에 들어가 그 담론을 모방하면서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통과하는

3) 일레인 쇼왈터(Elaine Showalter)는 페미니스트 비평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독자로서의 여성(woman as reader)과 작가로서의 여성(woman as writer)이라는 입장과 관련지어, 각각 남성작가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평인 여성적 글읽기(feminist critique)와 여성작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삼는 여성중심비평(la gynocritique)으로 나누고 있다.(479)

것이다. 그런 경유과정을 통해 남근이성중심주의가 남기고 있는 공백, 빈틈, 다양성, 생략을 포착함으로써 기존의 '합리적 언어'가 담아내지 못했던 침묵, 속삭임, 모호함의 의미를 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다. 그 희미함 때문에 아직은 확실히 말할 수 없더라도 그 영역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하나코는 없다」에서 하나코라는 여성의 자리를 찾아보려는 노력으로, 안개 속으로 길을 찾아 나서는 일이다. 하지만 그 자리는 분명히 존재하며, 차이를 지닌 영역이다. 여기에서 여성성은 이분법이 해체된 차이의 공간이 되기도 하는 동시에 남성성보다 우월한 차이를 지닌 개념이 되기도 한다.

### 부재/현존에의 탐색

「하나코는 없다」에서는 대학을 나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고 결혼해서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가 등장한다. 하지만 결혼생활에서 적당한 습관적 태도를 지속하다가 일상성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서울에서 그는 베네치아로 떠난다. 그가 떠난 이유는 가정생활에서 오는 권태와 가식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아래의 인용문은 분명하게 보여준다.

만약 그런 불화가 없었더라도, 아무 것도 아닐 수 있는 가장 진부하고 지루한, 서로의 약점이 가장 비하되어 드러나는 그런 불화가 없었더라도 그는 이탈리아 출장을 서둘러 맡았을까. 아침에 출근한 그 차림으로, 집에는 알리지도 않고, 몰래 도망치듯이 엉성하게 채워진 여행가방을 들고 출장을 떠났을까. 그는 작게 고개를 흔들었다. 만약 그랬더라도 그는 하나코의 소식을 기억해 냈을까. 그리고 아주 비밀스럽게, 그가 알고 있던 그녀의 친지를 수소문하고, 여러 날 여러 사람을 거쳐서 그녀의 이탈리아 주소를 알아냈을까.<sup>4)</sup>

그는 출구를 찾아 예전에 알았던 여자친구를 찾아 여행을 떠난다. 여행은 이전의 익숙했던 세계를 떠난다는 점과 새로운 세계와 맞선다는 점에서 일종의 정신적인 일탈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여행을 떠나는 자의 마음속에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내재적이고 초월적인 욕망이 자리해 있기 쉽다. 부정적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곧 여행이기에 그러한 여행에 변화와 거부, 저항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행은 단순히 하나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는 공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삶과 사회를 탐색하면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한 정신적인 여행을 포함한다는 의미가 된다.

4) 최윤, 「하나코는 없다」, 『열세가지 이름의 꽃향기』(문학과 지성사, 1999), 19쪽. 이후 이 소설의 인용은 본문에 쪽수만 표기함.

하지만 베네치아에서 시작하는 그의 하나코찾기는 미로 속에서 헤맨다. “미로 속으로 들어가라. 그것을 두려워할수록 길을 잃으리라.”(9) 하지만 미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출구를 찾는 그 여행은 그의 환상의 허구와 관계의 왜곡을 드러내 주는 아주 불편한 여행이 된다. 그가 도착한 베네치아는 물과 안개의 도시이다. 베네치아에 들어서면서 그는 방향감각을 잃은 채 환상의 세계와 같은 최면의 상태로 빨려 들어간다. 피로에 쌓인 채 잠이 든 그는 다음날 아침 도시가 온통 안개로 휩싸고 있음을, 그곳이 안개의 도시임을 확인한다. 안개 속에서 헤맬 망정 미로 속에 뛰어 들어갈 때라야만 그 곳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 베네치아에서 미로를 찾아라. 그러자 미로가 안개 속에서 떠오른다. 이성의 언어로는 다가갈 수 없는 그곳, 거기에 가지 못한 주체들이 아우성치며 안개를 이루는 곳.(김인호 1699) 그는 “허구에 가까운 여행의 시간”을 거쳐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베네치아에 와 있었다”.(10)

사실 그는 이 곳에서 대학시절 모임에 참가했던 여인 하나코와의 만남을 계획한다. 하지만 하나코는 독자 앞에서 단 한번도 분명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하나코는 과거의 기억 속에서, 전화음의 목소리에서, 친구들에 의한 풍문에 의해서만 이야기될 뿐이다. 그녀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알고자 했던 독자의 기대는 처음부터 좌절되게끔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코는 없다.

신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은 남근이성중심주의가 남성과 여성을 이성과 남성, 능동성과 수동성, 현존과 부재 등의 이항대립으로 나누고 있다고 주장한다.(Stanton 73) 즉 이성, 능동성, 현존은 남성의 영역으로, 남성, 수동성, 부재는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어왔다는 것이다. 최윤은 오히려 남성담론을 이용하여 부재해 있는 여성의 자리를 그대로 차용하면서 새로운 의미의 글쓰기를 시도한다.<sup>5)</sup>

하나코는 바로 이러한 부재의 여성이기에 하나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주인공의 무의식의 해체적 서술 속에서 여러 파편으로 떠오른다. 이리가는 「하나가 아닌 성(This Sex Which Is Not One)」에서 문명이 “남근형태주의”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보고 남성의 쾌락은 일원적으로 통일되어 있고 남근으로 대표되는데 여성은 하나가 아니고 다원적이라고 주장한다. 일원적이 아닌 여성의 언어는 끊임없이 흐르고 그 언어를 듣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남성 사유와는 다른 그 무엇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Irigaray 28)

하나코에 대한 모든 정보는 가려진 채 제시된다. 인물에 관한 정보를 키우는 것은 독자

5) 최윤이 남근이성중심주의가 주장하는 남성성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전쟁들: 집을 무서워하는 아이」에서 주인공과 남편이 아이를 갖기 위해 병원에 찾았을 때 정자가 난자를 공격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의사의 표현과 남편이 신문에서 읽고 있는 걸프전 이야기가 유사한 형태를 띠도록 의도하고 있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열세가지 이름의 꽃향기』 179)

의 상상의 영역이다. 주인공이 기억하는 과거의 기억들은 절대적 진실성을 거부한 채 모호함으로 전달된다. 그러므로 최윤에게서 결정적인 언어는 모호함이다. 남성중심이론에서는 소설이 합리성이나 로고스를 추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 그리고 독자들은 작가의 목소리를 찾기 위해 작가나 텍스트에 예속된다. 이 때 텍스트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최윤은 그런 글쓰기를 거부한다. 상징계의 담론으로는 읽어 낼 수 없는 '틈새'가 있고, 그것으로부터 내적 자율성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텍스트를 원한다. 최윤은 바로 그러한 것을 최대한 분출해낼 수 있는 글쓰기를 원한다.(김인호 1694) 최윤은 열린 텍스트의 공간에서 주체들이 서로 뒤엉키고 컨텍스트의 틈새에서 유희하는 그런 글쓰기를 원한다.

부재로서 실존하는 인물의 존재태, 사건들의 끝없는 모호함은 강력한 시적 효과<sup>6)</sup>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암시와 환기는 그 자체로서는 사실을 마이너스로 보여줄 뿐으로, 의미의 결여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그것은 인간적인 것의 박탈을 향해 있다기보다 의미의 무한을 향해 있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의 무한은 그 정수, 즉 가장 축약된 형태에서조차 오히려 결여의 양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정과리 297-298)

최윤의 글쓰기는 하나코의 부재를 채워가는 글쓰기가 된다. 정당한 기표울 갖지 못한 하나코에게 장진자라는 정당한 그녀의 이름을 찾아주는 것. 다시 말해 그녀의 부재를 현존으로 만들어야 하는 글쓰기이다. 이렇듯 부재는 최윤의 글을 있게 하는 이유이며 힘이 된다. 최윤에게 있어 존재의 탐색은 부재에의 탐색이다. 부재하지만 강력한 힘으로 현존하고 있는 것, 실제로 그것은 텍스트의 논리적 원인이며 존재 이유이다. 원인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텍스트를 존재하게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재이며, 그 부재가 또한 가장 긴요한 것이다.(김용희 1678)

### 타자성/주변적 주체 찾기

도시의 안개와 미로에서 '그'가 헤매는 것은 남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여성적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성의 언어로는 다가갈 수 없는 그곳은 남성담론의 질서를 벗어나지 못한 주인공에게는 길을 찾기가 쉽지 않은 곳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타자의 세계로 들어간다.

수로와 골목과 다리들의 무한한 변주. 그는 그 변주에 흔들리는 걸음을 내맡겼다. 한번 우연히 시

6) 아드리엔느 리치(Adrienne Rich)는 『거짓말, 비밀, 그리고 침묵에 대하여(On Lies, Secrets and Silences)』에서, 무의식의 세계에서 나오는 시의 에너지를 믿는다며, “시는 언어가 가지는 힘을 집중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시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것과 궁극적인 관계를 갖는 힘이다. 엘렌 식수는 이러한 시의 본질을 여성성의 특징으로 보고 있다.

선에 잡힌 거리의 팻말은 그가 리알토 다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만을 알려 주는 막연한 지표가 되었을 뿐이었다. 낯선 도시에서 지도 없이, 목적도 없이 걷는 낙망한 자의 자유, 말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이국의 말을 쓰는 나라에서 침묵으로 미로를 헤매는 자의 안식에 그는 음울한 미소를 지으면서 빠져들었다. 몇 번인가, 하나코, 아니 스코베니회사 소속, 인테리어 디자이너, 장진자의 목소리가 가볍게, 이 도시의 배움처럼 울렸다. 그렇게 날 몰라요? 그렇게도? 그것은 함정이 많은 수수께끼처럼 점점 더 깊이 그를 미로 투성이의 한 도시 속으로 이끌었다.(34-35)

하지만 그의 하나코찾기는 결국 실패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하나코라는 기호는 기표와 기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코라는 기호는 일상의 권태가 만들어낸 가상의 명칭일 뿐, 영원한 타자로 묶어두려는 집단의 욕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 집단의 남성들은 하나코를 하나코로 유지하기 위해 그녀를 늘 부재의 상태로 놓아둔다. 따라서 그녀는 개체가 상실된 비실재의 존재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하나코. 그것은 그들만의 암호였다. 한 여자를 지칭하기 위한 그들 사이의 암호.

한 여자가 있었다. 물론 그 여자에게도 이름이 있었다. 그 이름은 그들의 도시적 감성에는 그다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름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그 때문에 암호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하나코 앞에서 그녀를 별명으로 부른 적도 없다. 그들끼리만 모였을 때, 지루하고 전망 없는 하루 저녁 술 자리에서 그녀를 지칭하느라 우연히 튀어나온 농담조의 이 별명이 암호가 되었다.(12-13)

서로가 서로에 대해 익명의 타인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 비현실적인 것이 현실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인간관계는 불가능하다. 그들 각자의 편의적 욕구만을 위해 존재하는 여성의 상징으로서 하나코를 만나고 사귀었기 때문에 어느 날 그녀의 신상에 관한 의문이 생겼을 때 그들은 그녀에 대해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음이 드러난다.

그들은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어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다는 것 외에 그녀가 그림을 그리는지, 조각을 하는지, 혹은 이런 모든 것을 다하는지, 알지 못했던 것이다……그녀의 집안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단지 그녀의 전화번호와 가끔 도착하는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뿐이었다.(15)

『나와 너』(I and Thou)에서 마틴 부버(Martin Buber)는 모든 인간 관계를 나-그대(I-Thou)의 관계와 나-그것(I-It)의 관계로 나누고 있다. 나-그대의 관계는 우리가 맺는

타자와의 관계 중에서 가장 긴밀한 인격적인 것으로 이러한 인간 관계에서는 인격으로서의 자신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격으로 만난다. 부버는 나-그대의 '나'와 나-그것의 '나'는 같은 말이며서도 전혀 다른 '나'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근원어 나-그대의 '나'는 인격으로 나타나고 자기를 주체성으로 의식한다.”는 것이다.(Buber 111-112) 다시 말해, 나-그대의 관계는 타자로 대상화되기를 거부하고, 상대방의 존재를 확신하며, 다른 유기체적 생명이 살아있음을 감지하고 있는 관계이다. 그와 반대로 나-그것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은 그것 즉 비인격적인 존재로 나타나게 되며 결국 나의 수단으로 이용될 뿐이다. 그러므로 나-그것의 '나'는 타자와의 결합성을 잃은 채 자기의 개별성에서 있는 자아주의적 인간을 가리킨다.

「하나코는 없다」에서 주인공은 현재 가족을 비롯해서 주변사람들과 나-그대의 관계를 갖지 못하고, 나-그것의 관계에 있다. 특히 주인공과 하나코와의 관계는 나-그것의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주인공을 포함한 남성들은 여성인물들과 진실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그들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거나, 괴상한 사람으로 만든다.

여행 중 낙동강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있었던 광란의 밤은 하나코가 다시 모임에 나오지 않게 된 이유가 되었다. 그들은 취기를 가장하고 하나코와 그녀의 여자 친구를 모욕한다. 부르지 않겠다는 노래를 강제로 부르도록 하는 그들의 광기에 가까운 강요는 그녀들의 의견과 자존을 무시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다. 이 때 그녀들은 과감히 그곳으로부터 탈출한다. 즉 그들의 무모한 행동을 참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의견 묵살과 무례함은 그녀들의 자존을 손상시켰고 인격의 존중을 고려하지 않는 모임에 다시 참가할 이유는 없었던 것이다.

시몬느 드 보바르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주인공을 비롯해서 남성들은 주체이고, 하나코는 타자이다. 이러한 타자의 개념은 『존재와 무』(Being and Nothingness)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서 사르트르(Sartre)는 “자아에 대하여 타자는 하나의 대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자아는 자신을 주체로 구성하기 위해서 타자를 하나의 대상으로 파악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자아는 타자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모든 부정적인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게 된다.(Donovan 223-224)

보바르는 타자성을 “인간 사고의 한 근본적인 범주”라고 믿고 있다. 실제로 그녀는 『제2의 성』에서 문화상태로의 전이는 이원적인 대립에 대한 인식의 발전으로 특징지어 진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이 현상을 헤겔의 변증법과 관련시키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우리가 만일 의식 그 자체 속에서 모든 다른 사람의 의식으로 향하는 근본적인 적개심을 발견

한다면, 주체는 대립되는 존재 속에서만 자리를 잡을 수 있다—주체는 자기 스스로를 타자, 비본질적인 것, 대상과 대립되는 본질적인 것으로 규정짓는다”고 한다.(Beauvoir 17) 그러므로 남성적인 주체의 관점을 통해서 타자로 규정된 것이 여성이다.

남성중심적 시선 속에서 여성은 남성의 타자로서 위치한다. 이항대립의 구조에서 남성/여성, 있음/없음, 현존/부재. 여성을 남성이 아닌 것, 남성의 부정성 속에서 읽으려 한다. 그 속에서 여성은 남성의 반영적 상이 되어 남성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남성이 있다는 것은 남성과는 다른 여자를 배제하는 것이다. 이 때 배제되는 여자는 바로 남자와 다른 여자의 있음이 아니라 바로 남자의 있음의 진실을 보증하기 위해 배제된 것, 즉 타자로서의 여자이다.(서동진 137)

소외된 여성은 곧 타자로 확대될 수 있다. 이는 제 18회 이상문학상 수상작 선정 이유서에서도 나타난다.

〈하나코는 없다〉는 제목 그대로 타자(他者), 또는 집단의 시선 속에서 소외되고 증발되어 버린 한 여성의 존재 상실을 그리고 있다. 이 소설은 도시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인간의 익명성(匿名性)과 모래알처럼 원자적 개인화하는 현상을 다시 한번 날카롭게 확인해 주는 뛰어난 작품이다.

‘하나코’는 집단 앞에 놓인 개개의 ‘나’ 라는 존재다. 이 소설의 감동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나 자신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18』 4)

한 여성이 환상으로서가 아닌 현실로서 드러나는 여정. 자신의 타자에 대한 방식이 얼마나 파행적이었는가를 알려주는 여정. 그러나 그에게 그 현실을 현실로 인정할 용기가 있을 리 없기에 그는 마지막으로 그 현실적 모습에서 도망친다. 베네치아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도망치듯이.(『수줍은 아웃사이더의 고백』 96) 그가 이탈리아에 사는 하나코를 찾아가 간 것은 아내와의 불화로 인해 막혀버린 일상적 삶에 어떤 돌파구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하나코를 만나지 않고 귀국하는 것은 돌파구를 마련하는 능력마저 없음을 보여준다.(김치수 277)

하지만 하나코는 근원·질서를 잃어버린 세계 속에서 진정한 중심일 수 있는 존재이다. 그들이 방황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게 하는 존재, 부르면 언제나 나타나 그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미로와 같은 그들의 삶에 방향을 제시해줄 것 같은 존재이다.

그들 모임에 채신이 필요할 때라든가, 각자 사귀고 있던 여자와의 까다로운 심리전에 지쳐 있을

때, 또는 그렇고 그런 각자의 얼굴에 조금은 싫증이 나지만 안 볼 수 없는 관성 때문에 만나서 술잔이나 기울이게 되는 그런 모임이 있을 때 그들은 하나코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으면 그녀는 늘 흔쾌히 그들과의 만남을 수락했으며, 기억하건대 한번도 설득되지 않을 만한 이유로 그들의 제안을 거절한 일이 없었다.(15)

하나코는 주인공의 기억 속에 누이와 같은 애정의 공급원이다. 그녀는 모임의 균형을 깨지 않으므로써 그 모임에서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한다. 그녀는 드러나지 않게 늘 남자 친구들 옆에 있었다. 하지만 항상 그들을 타자가 아니라 존재적 실체로 대하던 그녀가 한번도 그녀를 그들과 같은 주체로 인정한 적이 없던 남성들에게서 받은 것은, 그들의 남성적 폭력성과 견고한 담론이 결합해서 만들어 낸 하나코라는 별명뿐이다.

이튿날 둘, 셋으로 나누어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은 무겁고 조용했다. 하나코는 이렇게 해서 그들의 모임에서 사라졌다. 그 후, 그들 사이에서 그녀, 장진자가 언급될 때 그녀는 하나코로 명명되었다. 그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자제하고 싶은 두 가지의 상반된 욕구가 교묘하게 절충되면서 그런 별명이 붙여졌던 것이다. 가끔 그 별명으로 그녀가 술자리의 객담으로 등장하는 일은 있어도, 그날, 모두가 낙동강가로 표류했던 그날,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린 그림자의 실상에 대해서는 굳건히 침묵했을 뿐이다.(40-41)

하지만 ‘그’의 담론의 틈새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코의 실체를 종합해 볼 때, 그녀는 결코 뿌연 이미지나, 텅빈 영사막같은 존재는 아니다. 남성들은 남성중심적인 사유와 가치관 속에서 끊임없이 그녀를 없게 하고자 의미했지만, 하나코는 있다. 사실 있음이란 초월적이고 보편적인 본질도 아니고 속성도 아니다. 다시 말해 있음은 구체적인 사건, 우발적인 행위 속에 있다. 하나코는 잡지의 귀국 인터뷰 기사를 통해 구체적인 있음으로 되고 그것은 동시에 알 수 있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있다는 것은 그것을 아는 주체 ‘그’를 출현시킨다.

구체적으로 있는 것이 알 수 있는 것으로 된다는 것은 그것이 의미를 얻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의미화를 통해 있음은 <다시 있게(re-present)>된다. 따라서 안다는 것은 재현한다는 것이고, 또한 (다시) 있게 하는 것이다. 이제 하나코가 있기 위해서는 남성들의 <지금 여기 있음>과 분리되어 <다른 있음>으로 존재해야 한다. 즉 그녀는 지금 여기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기 위해 <있음>으로 되어야 한다.(서동진 133참조) 그러므로 하나코는 있다.<sup>7)</sup>

하나코는 남성중심적이고 남성본위적인 그 이기적 습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행동함으로써 여성주체로서 자아실현을 시도한다. 여성의 자립적 존재 확인은 잡지를 통해서 ‘그’가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나지만, 장진자가 아니라 하나코로 만들었던 그 역시 오히려 이지적이면서 독창적인 장진자의 자기만의 세계를 강렬하게 드러내는 방편으로 쓰이고 있다. 하나코는 하나코에 의해 다시 있게 된다. ‘오뎅하게 돌아난 코가 더욱 부각되어’ 찍힌 그녀의 디자이너로 성공한 사진이 바로 그것이다.

‘동양의 매력을 의자에 담은 한 쌍의 한국인 디자이너, 귀국 전야의 인터뷰.’ 이런 제목이 붙은 기사를 대동한 사진 속의 한 명은 하나코의 얼굴이었고 그 옆의 활짝 웃고 있는 얼굴은 지금은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하나뿐인 것 같던 그녀의 여자 친구였다. 거기에는 그들이 우연히 참여한 이탈리아 주최 국제 인테리어 디자이너 대회에서 시작해, 촉망받는 독창성을 지닌 한 쌍의 디자이너로 독립하기까지의 과정이 대담 형식으로 쓰여져 있었다. 바로 그들과 가까이 지내던 시절의 하나코, 하나부터 끝까지 생소할 뿐인, 그녀의 학창시절의 약력도 소개되어 있었다. 언제, 어떻게 하나코는 그들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살았던 걸까.(42-43)

하나코는 어떤 악조건이라도 곧 긍정적으로 내면화하여 삶의 에너지로 환원시킨 것이다. 그녀가 지키고 유지하고 있는 그 위치는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모든 여성들이 걸어야만 하는 길임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리고 장진자는 진정한 올바른 여성의 길과 위치를 스스로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남성과 동등하게 위치를 세울 수 있는 여성의 그 자리는 남성과의 대립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이해와 화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성 친구임을 내세워 한 여성의 진정성을 왜곡 시켜온 남성들과는 달리, 개개인의 인격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길을 헤쳐나간 장진자는 현대 여성이 정립해야 할 긍정적이고 자립적인 여성상이다.(이명희 31-35참조)

## 여성적 글쓰기/해체적 글읽기

최윤 소설의 주된 관심은 왜곡된 관계의 해체이다. 일상과 생활이 관계들에 의해 구성

7) 최윤의 있음/없음에 대한 탐색은 『겨울, 아틀란티스』에서도 나타난다. 이 소설에서 한진영은 이학에게 그녀와 ‘그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장기영의 소설에 쓰여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 “만약 그가 어딘가에 살아 있다면 우리들의 얘기를 이런 식으로 썼을 리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들의 얘기가 누군가에 의해 이렇게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분명히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도 소설가였어요. 그가 바로 내가 찾는 사람이에요.” 나는 할말을 잃었다. 대체, ‘있다’와 ‘없다’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한진영은 내게 ‘있는데 없다’를 ‘없는데 있다’로 바꾸어달라는 어려운 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164)

된다는 점에서 관계의 왜곡은 주체의 상실을 불러온다. 따라서 주체는 부재의 유동체(fluidity)가 되므로 “과정 속의 주체”(subject in process)로서 무의식의 해체적 서술 속에 여러 파편으로 독자에게 떠오르게 된다.(Kristeva 120) 독자는 이를 “파편화된 주체”(fragmented subject)로 받아들여 탈중심화되고 분열된 파편위에서 주체를 재건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므로 「하나코는 없다」에서 서사구조는 직선적, 연대기적 흐름을 따르지 않고, 중요한 기억의 흐름이 끊임없이 피상적, 인위적인 시간의 구분을 중단시킨다.

「하나코는 없다」에서 최윤은 남근중심적 상징계에서 억압되고 침묵되어온 여성의 자리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글쓰기를 하고 있다. 최윤은 남성담론에서 주장되어 온 남성/여성, 현존/부재, 중심/주변의 역학관계를 전치시켜, 하나코의 부재는 오히려 타인에게 그녀의 존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의미전도는 언어체계가 절대적인 의미영역과 통일된 하나의 확정된 의미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전제를 전복시킨다.

또한 주변 남성들에 대한 하나코의 태도는 여성섹슈얼리티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여성섹슈얼리티의 다중성과 풍요로움은 남성과 달리 주위 세계를 흡수하는 것도 아니며 동화시키거나 축소시키거나 삼켜버리지도 않는, 다중적이고 복수적이며 분산적이며 흘러넘치는 것이다. 포착하기 어렵고 자립적이며 유동적인 이미지 속에서 하나코에 대한 실제 파악은 해체적 글 읽기를 요구한다. 마틴 그레이(Martin Gray)에 따르면 “해체”란 용어가 근래에 오면서 “텍스트 안에 숨겨진 의미의 파헤침”(Gray 82)을 가리킨다고 하는데, 중앙에 위치했던 인물을 밀어내고 그 대신에 주변에 가려졌던 인물로 대치시켜 또 다른 의미를 구축하는 일을 의미한다.

「하나코는 없다」의 그는 이제 절대적인 이념과 가치가 사라진 일상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사실 일상적인 삶이 중요한 문제다. 그 일상으로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삶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것이야말로 ‘최윤’이라는 작가가 보여줄 수 있는 글쓰기의 중요한 방식이다.(최윤·최성실 1716) 그리고 일상성은 하나코에 대한 기억의 파편처럼 실지로 파편의 형태로 흩어져 있을 뿐이다.

이제 몽상의 미로 속에서 비현실적 존재였던 하나코가 이제 현실적인 존재로 다가온다. 그러므로 최윤의 소설은 ‘리얼리티란 사실은 하나의 허구’이고 비현실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진리란 결코 이성중심주의로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페미니즘적 탐색이 된다. 최윤의 글쓰기는 모든 이항대립의 의미를 지워나가며 경계를 해체시킨다. 이렇게 본다면 최윤에게서 언어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침묵의 메음이지만 동시에 결여이다. 그래서 작가는 이 보편적인 목소리를 희생시키고자 한다.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자기 고유의 언어에 목소리를 주기 위함이다. 언어를 통해 명명될 수

도, 드러나는 것도 아닌 만큼 언어 사이사이에 숨겨진, 감추어진 그것을 표현하려는 최윤의 말은 명확하지 않은 속삭임으로 나타난다.

여성적 글쓰기란 다분히 남성의 성적 특성을 암시하는 명확하고 일관성있는 기존의 담론에 의해 억압된 글쓰기로 유동적이고 다원적인 여성의 성활동과 신체적 특징을 글쓰기에 새겨 넣으려는 욕구를 반영한다. 이에 대해 식수는 모체의 “하얀 잉크(모유)”로 쓰여진 글을 남성 담론(검은 잉크로 쓰여진 글)의 대안으로 제시한다.(Cixous, “Laugh” 279-297 참조)

이런 모성적 글쓰기는 최윤이 「속삭임, 속삭임」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어린 시절의 과수원에 대한 기억과 현재 엄마가 되어 가족과 함께 바캉스차와 있는 과수원의 일상을 이탤릭체와 명조체로 교차시켜 쓰고 있다. 이탤릭체로 육체화되어 보여지는 엄마의 속삭임은 명조체로 보여주는 현실의 추상적 담론과는 다른 언어이다. 가장 규약적인 세계에 대항하는 이 여성 언어는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야생적이며 원시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이탤릭체로 된 배넷언어의 이야기가 명조체로 된 현실의 언어를 포함 관계로 감싸고 있다는 형태적 방식에서도 잘 드러난다. 아버지나 아재비의 속삭임이라는 남성의 속삭임을 모태 안에서 태아와 엄마의 속삭임이 감싼다는 이 시각적 장치는 그야말로 여성 신체의 복제로서의 글쓰기를 전형화 한 것이다.(김용희 1683) 소설 첫 부분에 나타난 이탤릭체의 내용이 경계의 해체와 모태를 이야기한다.

……해질녘의 호수를 둘러싼 숲가에 오랫동안 앉아 본 사람은 알지. 낮과 저녁이, 물과 하늘이, 말과 말의 경계가 어떤 순간 흐려져 버리는 것을. 바로 그 경계가 흐려지는 곳.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겠느냐. 그럴 때면 눈물이 나온다……

아, 좋은 거지. 모든 사람이 울 만할 때에 울 수 있는 솔직함만 있다면 이에, 내 뱃속에서 꽃이 피겠다. 왜 뱃속이냐고. 그건 뱃속만큼 솔직한 것이 없다는 말이다……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18』46)

식수와 이리가라이는 남성적 질서에 의해 억압받아온 여성의 육체를 회복시켜, 여성의 몸으로 말하라고 주장한다. 이리가라이에게 몸이란 생물학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이 교차하는 장소로서, 여성이 육화하는 차이는 기존 담론체계에서는 그냥 지워져왔고 그저 주어지지 않으므로 구축되어야 하는 정치적인 것이다. 여성들은 “이미 몸안에서 시스템 내부로 코드화된 습관적인 담론에 빠져들지 말고, 그들의(남성들의) 언어 밖으로 나와야 한다.”(Irigaray 206)그리고 그동안 대상으로만 존재해온 여성들이 스스로 보고 스스로에

대해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남성담론에 의해 배제되어온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여성의 몸으로 말하기의 예는 『겨울, 아틀란티스』에서 보여지는데, 주인공 이학이 성악가 한진영에게 종잡을 수 없는 산책로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아무 길도 선택한 적이 없어요. 어떤 길로 가야 하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갈 뿐이에요. 내 속의 무언가가 매순간 나한테 명령하죠. 지금 바로 이 길로 가라, 하고 말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매일 아침, 나는 내 몸이 시키는 대로 걸어요. 내 몸이 기억하는 대로 말이죠. (『겨울, 아틀란티스』187-188)

사실 이 소설에서는 글읽기/글쓰기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준다. 이학의 글읽기가 새로운 글쓰기로 변모한다. 장기영의 소설 읽기 속에서 이학은 Z와의 경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글읽기와 글쓰기라는 반대영역의 인접성 역시 이리가라이가 「우리의 입술이 함께 말할 때」(When Our Lips Speak Together)에서 표현하고 있는 ‘두 음순’의 메타포를 적용시켜 볼 때 이러한 특징은 완전한 분리와 경계를 지시하는 이분법과는 다르며 이질적인 것이다. 즉 서로가 차단되어 있지 않고 봉쇄되어 있지 않으며, 열려있는 것이다.

또한 이런 메타포는 여성이 남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자신의 존재성을 갖는다는 생각을, 여성 편에서의 자기애와 나아가 여성들 사이의 인접성을 상징화하려는 시도로도 볼 수 있다. 여성들 사이의 인접성의 강조는 「하나코는 없다」와 『겨울, 아틀란티스』에서 자매애(sisterhood)로 나타난다. 하나코 옆에는 항상 여자친구가 있었고 함께 성공의 길을 걸었으며, 실연 당한 여자 이학은 또 다른 실연 당한 여자 한진영을 보살피며 함께 현실로 걸어온다.

사실 자매애는 여성이 남성의 부차적인 존재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주체적인 존재로서 세 해 준다. 주체로서의 여성 존재를 구체화하려면 우선 여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언어가 필요하다. 또한 말해지지 않은, 형상화된 적이 없는 성차를 나타낼 여성적 상징계를 창조해야 한다. 이러한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새로운 상징체계를 창조하려는 노력을 우리는 최윤의 소설에서 읽어 볼 수 있다.

## 결론

여성의 현실을 바꾸어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여성주체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주체형성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체를 형성하는 법과 사회제도에 대

한 개선도 중요하지만 문학, 영화 등에 나타난 상징체계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다. 여기에서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분석에서는 사회가 어떻게 성적 가치, 성적 상징체계를 구축하며 이러한 성적 구조가 어떻게 문화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는지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남성중심적 문화론으로는 성적 구조에 관한 분석이 어렵다. 특히 여성 주체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주의 문화론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페미니즘으로 문화읽기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디어나 영화, 문학에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여성이 어떻게 재현되어있는지에 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영화<피아노>와 단편소설「하나코는 없다」에서 에이다와 하나코라는 여성 주체의 구현은 오히려 여성이라는 속성을 더욱 강화시키면서도 남성/여성의 이분법적 경계의 와해와 다양한 차이성의 공존을 도모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분법적 구도의 이용은 남성담론이 주장하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오히려 활성화시킴으로서 여성적 자아나 목소리를 회복하려는 기획이 본질론에 기초하는 남근중심주의를 역으로 본받는 인식론적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크리스테바는 “페미니즘이 일종의 전도된 남녀 차별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녀는 모든 권력에 저항한 운동들이 그들의 투쟁의 대상이었던 사회 또는 권력을 그대로 복사하여 또 다른 대체 권력이 되는 것을 제시하면서 페미니즘도 다른 “폭력 행위”의 전형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은 신 프랑스 페미니스트를 비롯한 페미니즘 이론가들이 종래의 이항대립에 의한 남녀이분법을 해체하고자 하면서 오히려 여성성을 찬양함으로써 또 하나의 이항대립을 구축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해당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가치의 우열이 배제되지 않은 현실에서 페미니즘이 “전도된 남녀 차별주의”가 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타자를 품어 안는 하나코의 열린 세계관, 여성적 세계관에 대한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며, 작가 최윤의 「하나코는 없다」에 대한 고백으로 이 글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관계란, 미로만큼 조심스럽게 탐사해야 출구가 찾아지는 것이며, 공간만큼 세심하게 가꾸어져야 할 것이다. 한번쯤 하나코적인 현실로서 관계를 생각하고 실현한 듯한 하나코적인 세계관, 하나코가 대변하는 여성성의 세계관이 꼭 한번쯤 대안으로 등장해야 할 단계에 우리는 다다라 있지 않은가. (『수줍은 아웃사이더의 고백』96)

## 참고문헌

- 김용희. 「아틀란티스는 없다」. 『문학과 사회』. 1997. 겨울.
- 김인호. 「기다림과 삶의 서사학」. 『문학과 사회』. 1997. 겨울.
- 김치수. 「소설의 반성, 반성의 문체」. 『문학동네』. 2000. 봄.
- 도노반, 조세핀. 『페미니즘 이론』. 김익두 · 이월영 역. 서울: 문예출판사, 1993.
- 배경열. 「개성적인 세계인식과 실험의식」. 『현대문학』. 1996. 8.
- 변재란. 「피아노」. 『세계영화 100』. 안병섭 외 지음. 서울: 한겨레신문사, 1996.
- 서동진. 「얼룩, 반복 혹은 차이」. 『작가세계』. 2000. 봄.
- 이명희. 「떠남과 돌아옴, 여성의 문학적 의미」. 『현대문학과 여성』. 서울: 깊은샘, 1998.
- 정과리. 「나날의 전쟁: 일상의 역사 만들기」. 『열세가지 이름의 꽃향기』.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9.
- 최윤. 「속삭임, 속삭임」.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18』. 서울: 문학사상사, 1994.
- \_\_\_\_\_. 『수줍은 아웃사이더의 고백』. 서울: 문학동네, 1994.
- \_\_\_\_\_. 『겨울, 아틀란티스』. 서울: 문학동네, 1997.
- \_\_\_\_\_. 「하나코는 없다」. 『열세가지 이름의 꽃향기』.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9.
- 최윤 · 최성실. 「근은살 빼기로서의 소설」. 『문학과 사회』. 1997. 겨울.
- Ashcroft, Bill & Gareth Graffiths, Helen Tiffin. *The Empire Writes Back*. London: Routledge, 1994.
- Beuavoir, Simone de. *The Second Sex*. trans. H.M.Parshley. London: Lowe and Brydone Ltd., 1968(1949).
- Buber, Martin. *I and Thou*. trans. Walter Kaufmann. Edinburgh: T.&T.Clark Ltd., 1970.
- Campion, Jane. *The Piano*. New York: Miramax, 1993.
- Cixous, Helene. "The Laugh of the Medusa." ("Laugh") *Signs*(Summer 1976): 279-297.
- \_\_\_\_\_. "Sorties: Out and Out: Attacks/Ways Out/Forays." ("Sorties") *The Feminist Reader*. eds. Catherine Belsey & Jane Moore. London: Macmillan, 1989.
- Engels, Friedrich. *The Origin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 New York: Penguin Books, 1985(1884).
- Gelder, Ken. "Jane Campion and the Limits of Literary Cinema." *Adaptations: From Text to Screen, Screen to Text*. London: Routledge, 1999.
- Gray, Martin. *A Dictionary of Literary Terms*. Essex: Longman, 1992.
- Irigaray, Luce. *This Sex Which Is Not One*. trans. Catherine Porter & Cardyn Burk. Ithaca: Cornell UP, 1985.

Jacobus, Mary. "The Difference of View." *The Feminist Reader*, eds. Catherine Belsey & Jane Moore. London: Macmillan, 1989.

Kristeva, Julia. *Desire in Language: A Semiotic Approach to Literature and Art*. New York: Columbia UP, 1980.

Moi, Toril. *Sexual/Textual Politics*. London: Routledge, 1985.

Mulvey, Laura. "Visual Pleasure and Narrative Cinema." *Film Theory and Criticism*, eds. Leo Braudy & Marshall Cohen. Oxford: Oxford UP, 1999.

Showalter, Elaine. "Toward a Feminist Poetics," eds. Chung Chung-Ho & Lee So-Young, *Feminism & Women's Literature*. Seoul: Hanshin Publishing Co., 1994.

Stanton, Domna C. "Language and Revolution: The Franco-American Dis-Connection." *The Future of Difference*, eds. Hester Eisenstein and Alice Jardin. Boston: G.K.Hall, 1980.

Woolf, Virginia. *A Room os One's Own and Three Guineas*. New York: Penguin Books, 1993(1929 & 1938).

**도서안내**

# 사상과 혁명

역사의 한 장면으로서  
러시아와 중국 혁명이 갖고 있는  
진면목과 혁명의 뒤에 존재하고 있었던  
마르크스주의와 마르크스의 사상적 맥락

**주요 목차**  
제1부 프랑스 혁명사상과 유토피아  
제2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생애  
제3부 러시아혁명  
제4부 중국혁명

**교양사회**  
조정남 편역 / 값 10,000원

## 여성 의정참여의 현황과 과제

김 경 숙 (공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여성들로서도 여성의 사회적인 특수한 요구와 이익이 고려된 여성의 생존과 복지가 정치적 역학 구도 속에서 형성되므로 "여성은 정치적 무능력자"라는 스스로의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서 론

**권**력의 타락을 예방하기 위해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 장치를 강구하고 특정인, 특정 집단, 특정계급이 정치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대비책을 마련해 왔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대의제를 담당하는 대표들이 사회 각 부문을 균형 있게 대표할 수 있도록 충원구조를 합리화하는 일과 권력이 특정 사회 세력에 의해 독점 되거나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제한장치 및 유인책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소수집단의 대표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가의 문제는 권력의 정통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필

수적인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노예, 빈민,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사회의 소수집단, 여성 등 많은 사람들이 권력의 정통성이 도출되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여성은 인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정치적 측면에서는 소수로 분류되는 특별한 소수집단이 되어왔다. 해방 이후 한국의 정치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를 채택하면서 1948년부터 남녀가 동등하게 참정권을 가지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독립운동 당시 여성의 공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참정권이 오히려 퇴보하면서 억압당했고, 프랑스에서도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된 시기가 1946년이라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한국 여성의 참정권 부여는 그리 뒤늦지 않은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개발계획(UNDP)이 발간한 「인간개발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이미 1999년도에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는 174개국 중 30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정치, 경제 활동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이 참여한 점수를 환산한 여성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는 78위에 머물렀다.<sup>1)</sup>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 역시 스웨덴 42.7%, 덴마크 37.4%, 핀란드 37%, 노르웨이 36.4%, 네덜란드 36%, 아이슬란드 34.9%, 독일 30.9%, 남아프리카공화국 30%에 비해 한국은 3.7%로 99위에 그쳤다. 이러한 수치는 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제도적 변화만으로는 여성의 의정 참여 확대가 명실상부하게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본 글에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사를 개괄해 보면서 여성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되짚어 보고, 의회, 고위공직, 정부 위원회, 정당 등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세계 여성의 참여 양상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해 본 후 한국 정치에 있어서의 여성의 과소 대표성 문제의 이유와 과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 민주주의와 여성의 참정권

국제의원연맹(IPU)은 “민주주의란 인구의 양쪽 절반으로서의 동등한 이해관계와 능력이 고려된 남성과 여성이 공동으로 그 나라의 정책과 입법에 함께 참여할 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정의하면서 민주주의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의 상관성을 강조하였다.<sup>2)</sup> 즉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성의 독점적 지배가

1) 1999년 UNDP(유엔개발계획)의 「인간개발보고서」에 나타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와 여성 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2) IPU, 『Men and Women in Politics : Democracy Still in the Making, a World Comparative Study』, (Geneva : IPU, Jan. 1997), p. 3.

아니라 ‘수가 많은 소수자’<sup>3)</sup> 인 여성의 힘도 균형 있게 사회에 투사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5년도 UN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절반인 여성인력은 세계 노동시간의 2/3를 충당하면서도 세계 수입에서는 1/10 밖에 안 되는 혜택을 받고 세계 자산의 약 1%만을 소유하며 정치요직의 6%에 그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sup>4)</sup>

1776년 미국 독립전쟁 직전에 토마스 제퍼슨이 차와 인지에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려는 영국정부에 대해 “대표 없이 과세 없다”(No Representation, No Taxation)라고 항변하면서 시작된 대표성 논쟁은 대의민주주의 정립에 기본이 되는 쟁점이다. 그러나 여성의 과소 대표성 문제는 21세기의 오늘날에도 세계 여성들이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다.

여성 차별의 역사는 인류 역사의 길이만큼이나 길다. 평등개념을 제기했던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여성은 정치적 장으로부터 제외되었다. 공공의 영역에서 여성이 소외되는 것은 본성에서가 아니라 관습에서 유래되는 것이라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이나 민주주의는 정치권력이 몇몇의 소수가 아닌 시민 전체에 있고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강조한 페리클레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는 시정되지 못했다. 여성을 포함한 만인의 보편적 평등관이 역설된 중세에도 도시공동체 운영에는 여성의 참여가 배제되었다.

이러한 남녀 차별적 구조에 대한 도전은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1789년 바

〈표-1〉 여성인력기여활동 및 수입현황

인간개발지수 (순위와 국가명)	여성권한척도(순위)	여성전문인력과 기술인력비율(%)	여성고위공직자 및 경영자비율(%)	여성 1인당GDP(\$)
1위 캐나다	4	51.1	42.2	17,254
2위 노르웨이	1	58.5	30.6	20,872
3위 미국	8	53.1	44.3	23,540
4위 일본	38	44.1	9.3	14,625
5위 벨기에	17	50.5	18.8	15,249
6위 스웨덴	2	63.7	27.9	17,829
7위 호주	9	25.5	43.3	16,526
8위 네덜란드	10	44.8	16.8	14,483
9위 아이슬란드	7	53.2	23.1	19,183
30위 대한민국	78	45.0	4.2	8,388
98위 중국	40	45.1	11.6	2,485

3) 손봉숙, 박의경, 『한국민주주의와 여성정치』, (폴빛, 2000), p.19.

4) Chou Biher et al., 『Women in Taiwan Politics』, (London : Lynne Rienner, 1990), pp. 1-2.

스티유 감옥의 점령에 파리의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면서 메리꾸르(T. de Mericourt)와 로자 라콤부(Rosa Lacombe)는 국민의회에 “정치상 남녀가 동권이어야 한다”는 건의를 하였다. 이듬해에는 규주(Olympe de Gouges)가 “여성 공민권의 승인에 대하여”라는 글을 발표하고 국가의 정치는 국민 전체의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것이므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는 “여성 권리 선언”을 제출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프랑스의 여성운동은 1세기 반이 지난 1946년에야 여성의 참정권을 법률상으로 보장받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울스턴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가 1790년에 남녀평등, 교육과 직업의 평등, 여성의 경제적 독립, 여성의 참정권 등을 강조한 “여권 옹호론”(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an)을 발간하면서 여성운동이 시작되었다. 1867년에는 “여성 참정권협회 국민동맹”이 설립되어 하원에서의 여성 참정권 획득을 목표로 한 입헌운동이 전개되었다. 또한 1903년에는 팡크힐스트(Emmeline Pankhurst)를 중심으로 “여성사회정치동맹”이 결성되어 여성의 정치적 소외가 악의 근원임을 역설하면서 1918년 국민대표법의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영국은 그 뒤 1928년에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을 여성에게 부여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1848년에 뉴욕에서 처음 여권대회를 개최하고 여성의 참정권, 법률상의 남녀평등, 아내의 재산권 인정, 이혼에 관한 평등권을 내용으로 한 여권 강령을 채택하였다. 이후 전 여성단체는 안토니(Susan Anthony)를 중심으로 전 미국 여성참정권협회를 결성해 의회에 여성 참정권 법안을 제출하는 등 체계적인 운동을 진행하여 1919년 여성 참정권 법안을 통과시켰다.

독일에서도 1843년에 루이제 오토-페터스(Louise Otto-Peters)가 여성의 참정권은 권리라기보다는 의무이며 독일 여성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여성의 정치적 운동이 시작되었다. 1865년에 루이제 오토 중심으로 창설된 “범독일여성연맹”과 1902년에 아니타 아우구스푸르크(Anita Augspurg) 중심으로 창설된 “독일여성참정권협회”를 구심체로 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독일은 1919년 독일 역사상 최초의 민주주의 헌법인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 “남성과 여성은 원칙적으로 동등한 공민적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라는 조항을 삽입하고 이듬해 제국의회에 463명의 의원 중 37명의 여성 의원을 배출하였다<sup>5)</sup>

이상에서 개괄한 각국의 여성 참정권 획득 과정을 보면 투표권 획득과 참정권 확보를 위한 여성운동이 활발했던 국가일수록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5) 장공자(외), 『새로운 정치학-Gender Politics』, (인간사랑, 1998), pp.8-19.

대비해 볼 때 우리의 경우는 독립과 정치적 제도의 도입 및 여성의 참정권 부여가 한국 여성의 힘과 투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외부에 의해 이루어진 측면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점이 여성 참정권이 인정된 시기는 그리 뒤늦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적 과소 대표성 문제가 초래된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즉 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제도 변화만으로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현황

현대의 여성 정치 참여 운동은 UN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1945년 UN 헌장에서”인종, 성별, 언어, 종교로 인한 차별이 없는 모든 인간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존중”을 천명한 이래 1946년 “여성지위위원회”설치, 1967년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에 대한 선언” 채택, 1975년의 “여성의 해”와 1976년의 “평등, 발전, 평화의 세계 여성 10년”선포, 1979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협약”발표, 1980년 코펜하겐 세계 여성회의, 1985년 나이로비 세계 여성회의 개최, 1993년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공표, 1995년 북경 세계 여성회의 개최 등 일련의 작업을 통해 시도된 UN의 여성 주류화 정책은 양성 평등 문제를 세계의 의제로 부각시켜 많은 나라에서의 여성 정치 참여율을 제고시켰다.

또한 1960년대에 미국에서 흑인 인권운동과 더불어 시작된 여성 해방 운동은 성별 역할 분담을 고정화하는 직업구조 타파, 취업 기회 보장, 임금의 성차별 폐지, 여성의 정치 참여 증진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여성 정치 운동으로 전 세계 여성의 공감대를 형성해 갔다. 뿐만 아니라 1970년대 이후 유럽에서는 환경운동, 평화운동, 반전, 반핵운동에 여성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선진 민주국가에서의 여성 참여의 물결은 대의제 민주정치가 남성 중심으로 제도화된 상황에서의 민주주의 한계 상황 극복을 위한 여성 참여의 필요성 역설과 여성들의 정치적 자아 발견으로 발전되어 갔다.

이러한 흐름과 더불어 진행된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 역시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상당히 신장시켰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정치적 영역은 아직도 여성의 참여가 매우 부진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한 연구 조사 결과에서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정치적 지위, 접근 기회, 영향력을 가진 나라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sup>6)</sup> 각국에서의 여성의 정치 참여 현황을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6) Barbara J. Nelson and Najma Chowdhury(eds.), 『Women and Politics Worldwide』, (New Haven : Yale Univ. Press, 1993), p.3.

### 의회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는 양성 평등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 그 중에서도 여성의 의회 진출 양상은 정치적 대표성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이다. 여성의 참정권 획득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45년부터 1995년까지 50여 년간의 세계 여성의원 비율 증가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7)</sup>

또한 2000년 IPU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여성의원 비율은 평균 13.9%이다.<sup>8)</sup> 이를 상, 하원 별로 보면 하원이 13.4%, 상원이 10.7%이다. 다시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북구의 여성의원 비율이 가장 높아 평균 38.9%이며 다음으로 북구를 제외한 기타 유럽과 미주지역이 각각 15.4%와 15.3%를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 아시아가 14.8%, 태평양국가들이 12.2%, 아프리카 11.5% 그리고 아랍국가가 3.6%이다.

개별 국가별로 살펴보면 스웨덴의 여성의원 비율은 42.7%에 달해 현재 세계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가장 높은 나라이고, 다음으로는 덴마크 37.4%, 핀란드 37.0%, 노르웨이 36.4% 순으로 여성의원 비율이 높다. 서구에서는 네덜란드가 36.0%로 가장 높고(세계 5위), 아이슬란드 34.9%(6위), 독일 30.9%(7위), 오스트리아 26.2%(11위), 벨기에 23.3%(15위), 스페인 21.6%(19위), 스위스 21.0%(21위), 영국 18.4%(26위) 등의 순이며, 미주지역에서는 아르헨티나와 쿠바가 27.6%로 각각 10위와 11위, 캐나다와 미국이 각각 20.6%, 13.3%이다. 아시아에서는 베트남이 26%로 12위이며, 중국이 21.8%, 북한이 20.1%, 필리핀이 12.4%, 한국은 5.9%로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다.<sup>9)</sup>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북구 국가들의 상황이 나올 뿐 전 세계 여성들은 여전히

〈표-2〉 1945년-1995년간의 세계 여성의원 비율

연도	의회수	여성의원(하원)	여성의원(상원)
1945	26	3.0%	2.2%
1955	61	7.5%	7.7%
1965	94	8.1%	9.3%
1975	115	10.9%	10.3%
1985	136	12.0%	12.7%
1995	176	11.6%	9.4%

7) IPU, Series Report and Documents No.23, 『Women in Parliament : 1945-1995』, (Sept. 1995)

8) 한국여성개발원, 『해방 후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향후 과제』, (2001)

9) 세계의 여성 국회의원 현황 (IPU 자료, 1999년 9월 30일자)

권력의 지위에 있어서 매우 불균등한 상황을 감내하고 있다. 즉 어디에서나 여성은 소수집단이며 이러한 성별 간 정치적 대표성의 격차와 불균형이 쉽게 줄어들 것 같지도 않아 보인다. 그러나 여성의 의석 점유율은 종교 등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서부터 정치체제, 경제발전 정도 등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국가마다 격차를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요인들이 모두 여성의 정치 참여에 부정적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투표권 획득과 참정권 확보를 위한 여성운동이 활발했던 나라들에 비해 여성들의 적극적 역할도 미약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의회에서는 16대(2000)의 5.9%에 불과한 여성의원을 배출하는데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의 역대 여성의원의 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10)</sup>

이러한 한국 여성의 의회 내 과소 대표성은 여성들의 정치 참여에 새로운 장을 여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지방의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1991년에 실시된 제1기 지방선거에서 여성의원의 비율은 기초, 광역 각각 0.9%로 1%조차 넘지 못했다. 1995년의 제2기 4대 동시 지방선거에서도 그 진출 정도는 크게 신장되지 못해 기초의회 1.6%, 광역의회 선출직 1.5%에 그쳤다. 이에 비례대표직에 당선된 여성의원 42명을 합하면 광역의 여성의원은 55명으로 전체 광역의회 의원 중 5.5%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표-3〉 1945년-1999년간의 세계 여성의원수 순위와 비율

순위	국가명	하원 또는 단원제국회				상원			
		선거 시기	전체 의석수	여성 의석수	비율 (%)	선거 시기	전체 의석수	여성 의석수	비율 (%)
1	스웨덴	1998	349	149	42.7	-	-	-	-
2	덴마크	1998	179	67	37.4	-	-	-	-
3	핀란드	1999	200	74	37.0	-	-	-	-
4	노르웨이	1997	165	60	36.4	-	-	-	-
5	네덜란드	1998	150	54	36.0	1995	75	17	22.7
6	아이슬란드	1999	63	22	34.9	-	-	-	-
7	독일	1998	669	207	30.9	1999	69	13	18.8
8	남아프리카공화국	1999	400	120	30.0	1999	90	17	31.5
18	중국	1998	2979	650	21.8	-	-	-	-
23	북한	1998	687	138	20.1	-	-	-	-
94	일본	1996	500	23	4.6	-	-	-	-
99	대한민국	1996	299	11	3.7	-	-	-	-

10) 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총람』(1996), 한국여성개발원, 『1995 여성통계연보』

단 1명의 여성 시장이 배출되었다.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는 기초단체장 8명, 광역의원 48명, 광역 비례대표 116명, 기초의원 222명 등 394명의 여성들이 출사표를 던졌으며 이 중 142명이 당선되었다. 이는 1998년 여성당선자 96명에 비해 수적으로는 증가한 것이다. 1998년 선거에서 단 1명만 당선됐던 기초자치단체장에는 모두 8명이 출마해 이 중 부산 남구와 해운대구에서 여성이 구청장으로 선출되었다.

1998년에 38명이 당선됐던 광역의원에는 48명이 출마, 14명이 당선되고, 비례대표에 116명이 출마, 49명이 당선되어 여성 광역의원 총 당선자는 63명으로 1998년의 38명에 비해 50% 이상 늘었다. 기초의원도 1998년에는 57명이 당선되는데 그쳤으나 2002년에

〈표-4〉 한국의 역대 여성의원 비율

국회	총의원수	총여성의원수	직선에 의한 여성의원수	전국구 여성의원수	통일주체 국민회의 진출여성의원수	국회내 전체 여성의원 비율	직선 여성의원 비율	전국구및 통일주체 국민회의 여성의원 비율
1948	200	1	1	-	-	0.5%	0.5%	0%
1950	210	2	2	-	-	0.9%	0.9%	0%
1954	203	1	1	-	-	0.5%	0.5%	0%
1958	233	3	3	-	-	1.3%	1.3%	0%
1960	233	1	1	-	-	0.4%	0.4%	0%
1963	175	2	1	1	-	1.1%	0.6%	0.6%
1967	175	3	1	2	-	1.7%	0.6%	1.1%
1971	204	5	0	5	-	2.5%	0%	2.5%
1973	219	12	2	-	10	5.5%	0.9%	4.6%
1978	231	8	1	-	7	3.5%	0.4%	3.0%
1981	276	9	1	8	-	3.3%	0.4%	2.9%
1985	276	8	2	6	-	2.9%	0.7%	2.2%
1988	299	6	0	6	-	2.0%	0%	2.0%
1992	299	8	1	7	-	2.7%	0.3%	2.3%
1996	299	9	2	7	-	3.0%	0.6%	2.3%
합계	3,532	78	19	42	17	2.2%	0.5%	1.7%

11) 중앙선관위, 「6.13 지방선거 당선자 통계」, 2002년 6월 15일자.

12) 1995년 지방의회 여성 후보자별 당선자 수는 기초의회의 경우 서울이 90명 중 35명, 경기 40명 중 15명, 인천 9명 중 2명, 부산 7명 중 2명, 대구 7명 중 4명, 광주 9명 중 4명, 대전 8명 중 2명, 충북 7명 중 2명, 전북 5명 중 2명, 전남 6명 중 1명, 경북 2명 중 1명, 경남 11명 중 2명이다.

13) Raymond Lloyd, 『Women in the Governments of the World』, (New Delhi, Feb., 1997), p.2.

〈표-5〉 북구 국가들의 여성장관 및 차관 비율 (1994년)<sup>14)</sup>

	여성장관	여성차관
덴마크	29%	11%
핀란드	39%	17%
노르웨이	35%	49%
스웨덴	30%	4%

는 222명이 출마해 77명이 시, 군, 구의원으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례대표와 여성의 사회 진출로 1998년에 비해 여성 당선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지만 아직도 전체 당선자 4,415명 중 여성은 3.2%인 142명에 불과하여<sup>11)</sup> 30% 진출 목표에는 턱없이 미달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에서의 여성의 정치적 과소 대표성은<sup>12)</sup> 노르웨이의 경우 1994년도 지방의회의 38.6%, 시의회의 28.5%가 여성이었으며 핀란드가 37%, 덴마크 29%, 영국 25%, 미국 18.2%, 일본 11.8%와 비교해 볼 때에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 고위공직

UNDP 통계에 의하면 세계의 행정 고위직과 관리직 여성의 평균 대표성은 14.1%이며 선진국은 27.4%, 개발도상국은 10%, 한국은 4.2%로 나타났다. 각료급만의 통계를 보면 1991년도에는 103개국 중 여성장관이 278명이었으며 1997년에는 167개 중 411명이 여성이었다.<sup>13)</sup>

북구의 노르웨이는 노동당의 그로 할렘 브룬트랜드(Gro Harlem Brundtland) 여성 총리 시절 내각에 할당제가 도입되어 1986년에는 각료 17명 중 8명인 44%를 여성으로 임명했으며 이후 보수당 정권에서도 33% 내지 50%를 유지하고 있어 고위공직에서도 북구 국가들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보수당의 대처(Margaret Thatcher) 수상 시절에는 여성 장관이 없었으나 뒤를 이은 메이저(John Major)수상 때는 여성장관이 2명이었다. 그 후 노동당의 블레어(Tony Blair)수상은 22명의 각료 중 5명을 여성으로 충원했다. 프랑스도 1/3을 여성 후보로 할당할 것을 공약한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26명의 각료 중 8명을 여성 각료로 임명했다. 미국은 1991년에 18명의 장관 중 2명이 여성으로 11.1%였으며 1994년에는 장관급에 14%, 차관급에 26%가 임명되었다. 독일의 경우 주 내각에서의 여성장관 비율이 연방

14) UN, 『The World's Women 1995, Trends and Statistics』, (1995), p. 153.

내각 보다 높는데 특히 사민당과 녹색당 연정의 주정부에 여성장관들이 많다. 1995년에는 연방 내각의 18명 장관 중 가족"노인"여성"청년부와 환경부, 법무부에 3명의 장관이, 그리고 주 정부 전체에는 42명의 여성장관과 21명의 여성차관이 임명되었다.

클린턴 대통령의 제1차 집권기간 동안에는 장관직에 27%인 4명이 입각했으며 1997년 초에 매들린 울브라이트(Madleine Ulbright)가 국무장관에 임명됨으로써 고위 공직에서의 여성에 대한 장벽이 사라졌다. 캐나다의 경우는 1957년에 엘렌 페어클러프(Ellen Fairclough)가 장관으로 입각한 후 30여 년 뒤 1992년에는 연방정부 장관의 16.7%가 여성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이들은 보건, 여성, 교육부문 등에 국한되지 않고 법무부, 상무

〈표-6〉 20세기의 여성 국가수반<sup>15)</sup>

직 위	국 가	이 름	기 간
대통령	아르헨티나	이자벨라 페론	1974-1976
"	아일랜드	메리 로빈슨	1979-1980
"	볼리비아	리디아 게일러 테자다	1979-1980
"	아이슬랜드	비그디스 핀보가도티에르	1980-1984, 1984-
"	말타	아가사 바바라	1988
"	필리핀	코라손 아키노	1982-1987
"	니카라과	비오레타 코모로	1986-1992
"	아이티	에타 파스칼 투루이로	1990
수상, 총리	스리랑카	시라마보 반다라나이크	1990-1991
"	인도	인디라 간디	1960-1965, 1970-
"	이스라엘	골다 메이어	1977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엘리자베스 토미티엔	1966-1977, 1980-
"	포르투갈	마리아드 굴드핀타스질로	1984
"	영국	마가렛 대처	1969-1974
"	도미니카	유제니아 찰스	1975-1976
"	노르웨이	그로 할렘 브룬트랜드	1979
"	네덜란드안티리스	마리아 리미에라 피어스	1979-1990
"	파키스탄	베나지르 부토	1980
"	리투아니아	밀카 프레닉	1981, 1986-1989
"	방글라데시	카리다 지아	1984-1985, 1988
"	프랑스	에디트 크레송	1988-1990
"	폴란드	한나 슈초카	1990

15) V. Spike Peterson & Anne Sisson Runyan, 『Global Gender Issues』, (Westview Press, 1993), p.48.

부 등 주요 부서의 장관도 배출하였다.

아시아에서는 여성 각료들의 비율이 저조하여 중국의 경우 1988년에 방직장관과 가족 계획장관 등 여성 관련 분야에 2명의 여성 장관이 재직했다. 일본은 1960년 이래 현재까지 여성각료가 12명으로 1994년 호소카와 내각에서 3명, 하타 내각에서 2명, 자민당과 일본사회당, 사키가케의 연립 야당 측이 1명의 여성 각료를 임명했다. 그리고 고이즈미 내각에서는 주요 부처에 5명의 여성 각료가 입각해 30%를 차지했다.

여성 대통령이나 총리는 서구보다 아시아에서 남편이나 부친의 정적에 의한 암살로 권좌에 앉게 된 여성들을 중심으로 먼저 배출되었다. 1960년대 이래 스리랑카의 반다라나이크(Sirimaavo Bandaranaike)와 그의 딸 쿠마라통가(Chandrika Kumaratunga), 파키스탄의 부토(Benazir Bhutto), 방글라데시의 웨에드(Hasaia Wehed) 등이 국가 수반을 지냈다. 이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여성 국가 수반이 배출되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반면 우리의 경우는 1993년에 각료 24명 중 정무제2장관, 환경처장관, 보건복지부장관 3명이 여성으로 12.5%였으며 1994년에는 정무제2장관, 교육부장관 2명의 8.3%였다. 여성 차관은 정무제2장관 보좌관 1명이었으며 2001년에는 노동부 차관 1명이 입각했다. 2004년 2월말 현재는 2명이 여성장관이다.

## 위원회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북구의 경우 의회나 고위 공직에의 여성 참여가 다른 지역보다 매우 높지만 이러한 북구 국가들에서도 정부위원회에의 여성 참여는 저조할 뿐 아니라 주로 사회, 교육 등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여타 지역에 비해서는 여전히 비율이 높아 핀란드의 경우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1974년에 6.9%, 1982년에 9.5%였으며 이 기간 동안 위원장들 중의 여성 비율은 2%에서 5%로 증가했다.<sup>16)</sup> 스웨덴에서는 여성대표위원회가 “Every Other Seat for a Woman”이라는 보고서에서 정부위원회와 협의회 등에서 여성들의 비율을 30%로 증가시키고 1998년까지 남녀간 균형을 50:50으로 하는 목표를 제안했다.<sup>17)</sup>

영국 역시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확대를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 실시함으로써 여성의 원의 비율이 1987년에 20.6%, 1988년 21.4%, 1989년 23.0%, 1990년 23.2%로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16) Helga Maria Hernes, 『Welfare State and Women Power』, (Norwegian University Press, 1987), p.96.

17) Maud L. Eduards, “Toward a Third Way : Women’s Politics and Welfare Policies in Sweden”, 『Social Research』, Vol.58, No.3 (Fall 1991), p.695.

일본은 1977년 “부인의 정책결정 참여를 촉진하는 특별활동 추진 요령”을 책정하고 당시 국가 방침에 관한 결정에 참여하는 심의회에서의 여성 비율이 3%였던 것을 10%까지 제고시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로써 심의회 위원 중 여성 비율이 1990년 8.2%, 1991년 9%, 1994년 12.2%로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 서의 여성위원 비율 증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로써 2002년 12월 말 정부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은 30.1%로<sup>18)</sup> 1998년 6월 말의 10%에 대비해 약 3배 정도 증가하였다. 그리고 여성 참여 위원회의 수도 꾸준히 늘어나 2002년 12월말 현재 전체 위원회의 95.0%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여성이 참여하였다. 여성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까지 정부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40%(위촉직 기준) 달성을 적극 추진하고<sup>19)</sup>, 여성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여성위원 위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여성인명 DB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하였다.<sup>20)</sup> 그리고 여성위원의 양적인 확대 뿐 아니라 여성위원 개개인이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능력을 발휘하여 국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 중이다.

## 정당

정당정치에서의 여성의 과소 대표성은 정치 참여의 시작부터 여성이 소외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여성 정당원의 비율은 선거에서의 부녀당원들의 활동 등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당내 고위결정기구에서의 여성의 과소 대표성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여성의 정당 참여율은 민주주의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 즉 선진 민주주의 국

18)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www.kwdi.re.kr, (2002. 12.)

구분	위원회수	여성참여 위원회수	비율	위촉직 위원회수	여성 위원회수	여성 참여율
전체	1,274	95.0	95.0	16,956	5,093	30.1
중앙	279	94.6	94.6	4,378	1,146	26.2
지방	995	95.1	95.1	12,548	3,947	31.5

19) <연도별 위원회 여성참여 목표율> 제1회 여성정책조정회의 보고자료 (2003. 9)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목표율 (위촉직기준)					

20)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정책포럼』, (2003), p.42.

〈표-7〉 고위 당직자의 남녀 비율<sup>21)</sup>

	남	여
당 총재 또는 제1서기장	89.2%	10.8%
당 부총재 또는 부서기장	82.3%	18.7%
당 사무총장	92.4%	7.6%
당 대변인	91%	9%
여성 당직자가 1인 이상 또는 없는 정당	최소 1인의 여성 당직자가 있는 정당 286개 (33.1%) 여성 당직자가 없는 정당 585개 (67.2%)	

가일수록 여성의 정당 활동이 더 활발하다. 그리고 선진 민주주의 정당들은 당내 여성의 대표성 보장을 위해 당 운영기구에서 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의 노동당은 전국 집행위원회의 1/3을 여성에게 할당하고 있으며, 녹색당은 창당 후 남녀 50% 비율 원칙을 당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는 여성 후보 공천 및 선거 전략에 관한 좌파정당과 녹색당이 여성 후보 공천과 당선에 적극적인 양상을 보였다.

이 외에도 여성문제를 담당하는 당내 기구로서 여성위원회나 여성부를 설치한 정당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당 지도층의 보수적이고 남성 우월주의적 시각으로 인해 여성의 당직 진출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성 후보 공천자 수, 당선율, 당선 후 의회 고위직 비율에서도 여성의 과소 대표성은 여전하다. 1996년도 조사에 따르면 여성 후보 공천율의 세계 평균은 17.9%이며 여성 후보의 공천율이 높은 아이슬란드는 50%, 스위스 34.8%, 스페인 32.5%, 영국 12.26%, 프랑스 23.0%로 나타났다. 그 밖의 미주 및 태평양권 국가들도 20% 이상인 것에 비해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은 10% 이하이며, 특히 한국의 경우는 3.1%의 낮은 공천율을 보였는데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046명의 입후보자 중 공천을 받은 지역구 여성 후보는 14명이었으며 14대 선거에서는 1,052명 중 19명,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389명 중 21명이 여성이었다.

1991년 시, 도의회 의원 선거에서도 2,885명의 입후보자 중 63명, 구, 시, 군의회 의원 입후보자 10,159명 중 123명이 여성이었으며 1995년도 시, 도, 의회 의원 입후보자는 2,644명 중 119명만이 여성이었을 뿐이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도 전체 후보 등록자 중의 여성 비율은 2.6%에 불과했다.

21) 이범준(외), 『21세기 정치와 여성』, (나남출판, 1998), p. 44.

## 여성의 정치적 과소 대표성의 원인

우리나라에서도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활발해진 여성의 정치 참여 운동 및 여성권의 활동으로 여성의 이익을 정치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가시화되었고 정당도 여성이라는 세력화된 집단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각 정당은 여성을 비례대표로 영입하고, 여성들 또한 정당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국제적 환경의 변화와 여성계의 지속적인 요구에 힘입어 정당법을 개정함으로써 전국구 국회의원과 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에 여성을 30% 이상 할당할 것을 명문화하였다. 이는 오랫동안 여성계가 요구해 온 기존 정치권에 대한 요구가 관철된 결과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매우 낮은 형편이다. 이는 그 동안 줄곧 지적해 온 문화적, 제도적 요인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선, 전통적으로 정치를 남성의 고유 영역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정치문화가 여전히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오랜 정치사회화 과정을 통해 정착된 가부장적 관념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능력을 잣대로 판단하지 않고, 여성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지 않는 정향은 여성 후보들로서는 여전히 뛰어넘기 힘든 벽이다.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종전에는 대부분의 여성 유권자조차도 남성 후보를 선호하고 여성에게는 투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여성의 적이 여성”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의 여성정책 의식 조사 등에서 대부분의 여성이 여성 후보자가 남성 후보자와 능력과 자질이 동등하다면 여성을 지지하겠다고 답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은 서서히 해소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sup>22)</sup> 따라서 그 동안 노력해 온 것과 같이 여성 지도자를 장기적으로 육성하고 여성 유권자들의 의식 교육을 심도 있게 실시하며 여성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연계를 이루어 여성 후보를 지원하면서 기존의 남성 중심 구도를 변화시켜 간다면 여성의 정치 세력화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둘째,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정당의 인식 부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정당 정치에서는 정당의 공천이나 지원이 없이 선거에서 당선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

22) 대전시가 여성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대전시 거주 여성 1,1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성정책 의식 조사를 보면 지방선거에서의 여성 후보자 지지와 관련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6.4%가 능력이 동등하다면 여성을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또 여성 후보를 무조건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2.7%, 여성은 정치를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5.6%로 나타나 이제는 여성 후보에 대한 여성들 스스로의 인식이 합리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도일보, 2002년 5월 8일자.

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선거 때마다 대 여성 공약을 내걸고 여성 표를 모으는데만 급급했지, 실제로 여성 후보자의 체계적인 양성 및 발굴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성정책을 제시하며 여성 표 확보에 나서면서도 실제 공천과정에서는 경험 부족이나 당선 불가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 여성들 스스로도 당내 인맥과 조직 중심의 과열되고 타락한 선거풍토와 지도부에 대한 충성도 등 구시대의 기준으로 후보를 평가하는 정치의 장에 들어가기를 주저한다. 이처럼 각 정당이 여성 정치 지도자 육성에 힘쓰지 않고 자격과 능력을 갖춘 여성 후보를 찾기 어렵다며 여성 후보난의 원인을 여성의 탓으로 돌리기 급급한 것은 문제이다. 여성 후보를 찾아내기 어려운 것은 여성의 자질 문제 보다는 정치 참여의 벽이 높기 때문이다. 정당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치 개혁을 위해 힘쓰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여성 후보 발굴을 위해 여성 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더욱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정치 참여에 관심을 가지는 여성들도 비례대표에만 출마하려고 하고 지역구 출마는 여전히 기피한다는 점이다. 이는 비례대표가 도입된 1995년 이래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비례대표로 경험을 쌓은 여성들이 다음에는 지역구에 과감히 도전해 경험을 계속 살려 나가며 역량을 쌓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비례대표 출신 여성들이 그 경험을 살려 직선제에 출마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가 연대를 강화해 조직적으로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에서도 후보 경선제가 도입되어 한편으로는 선거문화에 변화가 시도되기도 하였으나 그동안 정치적 장에서 제대로 훈련받고 경험을 쌓을 기회가 없었던 여성들에게는 단기간에 경선에서 승리를 이끌어 내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후보 경선이 정당 내 상향식 공천을 정착시켜 참여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당초 의도와 같이 능력이나 비전을 기초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돈과 인맥, 그리고 조직에 의해 좌우됨으로써 여성 후보자에게는 여전히 넘기 어려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성 후보자들이 본 게임에 나설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하는 후보 경선제의 개혁이 필요하다.

다섯째, 할당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조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총선에서 여성 후보가 전체의 39%를 차지하게 된 것은 정당에 남녀 각각 50%씩 공천하도록 규정한 신규 법률이 효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그만큼 국가보조금을 삭감 당하도록 했다.<sup>23)</sup> 우리나라에서도 정당법 개정 시 비례대표 여성 30% 할당을 법제화하였다. 그리고 2002년 지방선거에서 여성단체들이 후보 등록에 앞서 각

23) 여성부, <http://www.moge.go.kr>, 일일신문보도, 2002년 6월 10일자.

정당에게 여성 할당제를 지킬 것을 촉구하였다. 이로써 1998년 선거 당시 여성 후보가 2%였던 것에 비하면 조금 나아지기는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률 내용은 프랑스와 비슷하지만 할당제가 권고 조항으로 되어 있다. 바로 이러한 불이익 조항의 유무에 따라 프랑스 총선에서는 여성 후보 비율이 39%였는데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에서는 여성 후보 비율이 3.5%에 그치는 차이를 보인 것이다.

또한 2002년 2월에는 각 정당이 정치관계법 개정 시 지역구의 30%에 여성을 공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부터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는 지역구의 할당제도 법제화해 강제성을 부여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섯째, 선거 공영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지방선거에서도 6명의 광역단체장, 54명의 기초단체장, 39명의 광역의원 당선자가 입건되고 선거법 위반 신고가 1998년의 4배인 1,122건에 이르는 등 아직도 선거법 위반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선거 풍토는 선거자금 경쟁에 있어 자금 조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이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되는데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헌법 11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선거공영제부터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곱째, 1998년 선거 직전 임시국회에서 선거구제를 비롯한 의원 정수,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한 것이 개정되었다. 당시 선거구제의 경우 여야간 중, 대선지구로의 개정 논의도 있었으나 종전과 같이 소선거구 다수 득표제를 골격으로 하면서 지방의회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선에서 일단락되었다. 그리고 기초의회의 경우 소선거구제의 채택이 기본이나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제26조 제2항) 실제 일부 선거구에서는 2인 내지 4인이 선출되었다. 그런데 1995년 기초의회 선거를 보면 당시 여성 후보의 경우 1인 선거구에 출마한 여성 후보보다 2인 이상 선거구에 출마한 여성의 당선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소선거구제보다는 중선거구제가 여성의 당선율이 높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그 동안 주장되어 온 선거구제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결론

정치란 국가와 대립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소망과 성취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 조직의 도구로서의 국가를 통해 활동하는 만민의 문제이다. 미국의 건국 지도자 존 애담스가 “대의 기구는 전체 인구의 정확한 축소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듯이 인구의 절

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 실현의 가장 기초적인, 그러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전제이다. 정치적 장에서 소외되어 온 억압 대상이 정치적 장으로 복귀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남여의 평등한 정치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주의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되며 이를 통해 강력한 국가의 기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여성들로서도 여성의 사회적인 특수한 요구와 이익이 고려된 여성의 생존과 복지가 정치적 역학 구도 속에서 형성되므로 “여성은 정치적 무능력자”라는 스스로의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의 대표성 증대로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면 사회 통합과 정통성에 강력한 힘을 부여함으로써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를 주도하는 활력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특성이 요구하는 리더십 역시 다양성 속에서 총체성을 확보해 가는 대안적 리더십으로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모성성 등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여성의 정치 참여는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UNDP, 『인간개발보고서』, (1999)
2. IPU, 『Men and Women in Politics : Democracy Still in the Making, a World Comparative Study』, (Geneva : IPU, Jan. 1997)
3. 손봉숙, 박의경, 『한국민주주의와 여성정치』, (풀빛, 2000)
4. Chou Biher et. al., 『Women in Taiwan Politics』, (London : Lynne Rienner, 1990)
5. 장공자(외), 『새로운 정치학-Gender Politics』, (인간사랑, 1998)
6. Barbara J. Nelson and Najma Chowdhury(eds.), 『Women and Politics Worldwide』, (New Haven : Yale Univ. Press, 1993)
7. IPU, Series Report and Documents No. 23, 『Women in Parliament : 1945-1995』, (Sept., 1995)
8. 한국여성개발원, 『해방 후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향후 과제』, (1991)
9. 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총람』, (1996)
10.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 (1995)
11. 중앙선관위, 『6.13 지방선거 당선자 통계』, (2002. 6. 15.)
12. Raymond Llyod, 『Women in the Governmets of the World』, (New Delhi, Feb., 1997)
13. UN, 『The World's Women 1995, Trends and Statistics』, (1995)
14. V. Spike Peterson & Anne Sisson Runyan, 『Global Gender Issues』, (Westview Press, 1993)

15. Helga Maria Hernes, 『Welfare State and Women Power』, (Norwegian Univ. Press, 1987)
16. Maud L. Eduards, "Toward an Third Way : Women's Politics and Welfare Policies in Sweden", 『Social Research』, Vol. 58, No. 3, (Fall, 1991)
17. 이범준 (외), 『21세기 정치와 여성』, (나남출판, 2001)
18. 중도일보, 2002년 5월 8일자.
19. 여성부, <http://www.moge.go.kr>, 일일신문보도, 2002년 6월 10일자, 6월 11일자, 6월 14일자.



도서관내

# 사상과 혁명

**역사의 한 장면으로서  
러시아와 중국 혁명이 갖고 있는  
진면목과 혁명의 뒤에 존재하고 있었던  
마르크스주의와 마르크스의 사상적 맥락**



교양사회

조정남 편역 / 값 10,000원

**주요 목차**

제1부 프랑스 혁명사상과 유토피아  
제2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생애  
제3부 러시아혁명  
제4부 중국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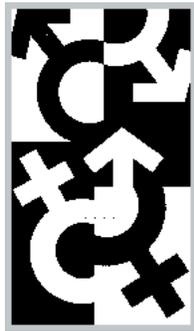
특 집

한국의 여성세계 <여성정치>

## 제17대 총선과 여성- New Trend의 명과 암

김 경 숙 (공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여성의 정치 세력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이란 다름 아닌 우리나라 정치 발전의 낮은 수준과 직결되어 있는 것들이다. 최근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면 남성의원들 보다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 서 론

“각 당서 러브콜 ‘好好’, 구색용 비난엔 ‘묵묵’”. 성난 민심의 입장에서는 ‘물갈이’가,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총선 올인’이 화두인 요즘 어느 일간지 기사의 제목이다. 각 당이 비례대표 의석 50%를 여성에 할당하겠다는 약속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여성의원 비율이 전 세계 104위에 불과한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제고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부패로 얼룩진 남성 중심의 정치를 대신할 참신한 인물의 필요성도 이러한 분위기를 한층 달구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례대표와 지역구 후보 공천의 게임 룰이 정립되지 못한 채 유력 여성들에 대한 각 당의 영입 경쟁으로 “후궁 간택”설까지 이어졌고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 수요 초과’에 의한 거품 현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 여성계가 ‘지역구 30% 여성 공천 보장’, ‘여성 기획 공천’ 등을 정치권에 요구했지만 지역구 공천 희망자 가운데 여성 비율은 미미해 1차 공천 신청을 마감한 결과 한나라당 3.7%(27명), 민주당 4.5%(19명), 열린우리당 2.5%(13명)에 불과했다.

올해가 ‘여성 정치 참여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구두선(口頭禪)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17대 총선에서 여성계와 정당은 여성의원 비율 증대를 위한 노력이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 제고라는 측면에서 제17대 총선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 여성정치의 원년 선언

### 과소 대표성 문제의식 공유

17대 총선은 역대 선거 중에서 각 정당이 여성의 정치적 과소 대표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을 표방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UNDP가 발간한 2003년도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를 보면 우리나라는 교육수준(문맹율),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을 기초로 산출하는 인간개발지수(HDI)는 175개국 중 30위, 남녀분리 통계에 따른 문자 해독율, 남녀 취학율, 평균수명 등을 기초로 산출하는 여성관련개발지수(GDI)는 144개국 가운데 30위이다. 반면 여성의원 비율, 여성의 고위행정관리직 비율, 여성의 전문기술직 비율 등을 기초로 산출하는 여성권한척도(GEM)는 70개국 가운데 63위이다. 그리고 2003년 현재 여성의 정치참여는 국회가 5.9%(16명), 기초자치단체장 0.4%(2명), 광역의회 9.2%(63명), 기초의회 2.2%(77명)로 전 세계 국회의원 평균비율 15.8%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인간개발의 측면에서는 남녀평등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으나 정치 등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대표성은 아직도 매우 낮은 것이다.

이처럼 여성의 정치참여가 낮은 이유는 제도적, 정치문화적 요인들이 많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정치를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온 보수적 정치문화를 들 수 있다. 이로써 여성들은 정치사회화의 기회도 적고, 여성 스스로도 정치참여에 소극적이어서 입후보하고자 하는 여성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 둘째, 입후보 의지를 가진 여성도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공천권자가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거나 당선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정당

의 공천을 받기가 어렵다. 셋째, 공천과정을 통과하더라도 유권자의 의식이 아직도 남성후보를 선호하기 때문에 지지를 얻기가 어렵다.

이에 17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 각 정당들도 우리나라가 인간개발의 측면에서는 남녀평등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으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미미한 현실을 바로잡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추구하는 인간운동이자 정치를 올바르게 세우는 민주화 운동이며 편중된 권력을 재편하려는 형평운동임을 인식하고 여성 정치참여의 저해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 것이다.

여성의 정치참여 제고는 첫째, 소수집단의 대표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가의 문제가 권력의 정통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필수적 요건이라는 점, 둘째, 여성 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sup>1)</sup>, 셋째, 높아진 여성의 교육 수준과 사회참여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점, 넷째, 여성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를 통해 깨끗한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17대 총선은 정치권의 부정, 부패에 대한 성난 민심의 반란이 예견되고 있어 여성 후보들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다. 2001년도 세계은행 보고서는 여권이 신장될수록 경제 성장이 빠르고 부패가 줄어든다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시하였다. 또 국제투명성협회가 발표한 2001년도 국가별 부패인지 지수와 국제의원 연맹이 발표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비교해 보면 상위 10개국 중 7개국이 겹쳐져 있다.<sup>2)</sup> 이는 국가와 정치의 투명성과 청렴도가 높아질수록 여성의 정치참여가 제고된다는 것이기도 하고<sup>3)</sup>, 역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 제고가 부패 정치 청산의 한 방법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1991년 4월의 일본 의회 선거에서는 여성이 121명이나 당선되었다. 이로써 역대 3% 미만이던 일본의회의 여성 대표성은 11.7%까지 급상승했다. 당시 여성 당선자들의 선거운동원들은 대부분 가정주부인 자원 봉사자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편 선거운동은 폐유로 무공해 비누를 만들어 '정치세탁용 비누'라는 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전략이랄 것도 없는 이 방법이 정치권의 검은 돈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로부터 폭발적인 지지를 받은 것이다. 우리도 17대 총선에서 이러한 지지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 세계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는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54%에 불과한 고학력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90%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2) 여성의 정치 참여도와 부패의 상관관계

3) 이러한 결과는 2003년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1인당 국민소득이 상위 25%에 속하는 나라(\$6,866이상)는 여성의원이 17%인데 반해 하위 25%에 포함되는 나라(\$1,169 이하)는 7%에 불과했다. 또 나라의 반(反)부패지수를 0부터 6까지 분류했을 때(6에 가까울수록 부패가 적다) 여성의원이 많은 국가는 4.64인데 반해 여성의원이 적은 국가는 2.74였다(세계 평균은 3.35).

### 비례대표 성별 교차식 할당 실현

17대 총선에서는 각 정당이 여성 정치참여 제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당헌, 당규 개정을 통하여 비례대표의 성별 교차식 50% 여성할당과 지역구 30% 할당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2004년 1월 30일 정개특위 정당법 소위도 비례대표의 여성후보 50% 이상 공천의 무화를 법안에 명시키로 함으로써<sup>4)</sup> 여성계가 추진해 온 바람 중의 하나가 실현되었다.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제4조 1항은 “양성간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채택한 잠정적 특별 조치는 본 협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한시적인 적극적 조치로서 2000년 2월에 개정된 정당법에서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에 여성 후보를 30% 이상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15대 여성의원 비율 3.0%를 16대에 5.9%로 끌어 올릴 수 있었다. 또 2002년 지방선거에서도 정당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법에 여성의 비례대표 공천 비율 확대와 보조금 지급에 관한 내용들을 규정하였다.<sup>5)</sup>

〈표-1〉 세계 여성의원수 비율과 국가별청렴지수

국가	국회의원 중 여성비율(%)	국가별 청렴지수
스웨덴	1위 (4.27)	6위 (9.0)
덴마크	2위 (38.0)	2위 (9.5)
핀란드	3위 (36.5)	1위 (9.9)
독일	7위 (31.7)	20위 (7.4)
벨기에	26위 (23.3)	24위 (6.6)
필리핀	45위 (17.8)	65위 (2.9)
태국	78위 (9.2)	61위 (3.2)
인도네시아	84위 (8.0)	88위 (1.9)
<b>한국</b>	<b>97위 (5.9)</b>	<b>42위 (4.2)</b>
잠비아	98위 (5.7)	75위 (2.6)
방글라데시	115위 (2.0)	91위 (0.4)

자료 : IPU (2002년 6월), 국제투명성기구 (2001년)

4) 여성신문, 2004년 1월 30일자.

5)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시·도의회 의원선거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 시 정당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을 후보자 등록접수 거부사유와 등록무효사유로 규정하였다(제47조 제3항, 제49조 제8항, 제52조 제1항). 정당법에서는 정당은 비례대표 선거구 시·도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중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1조 제5항 및 제6항).

## 여성 후보 명단 제시

그동안 여성계의 할당제 주장에 대해 정치권은 여성 정치인 후보가 없다는 주장을 해 왔다. 또 여성 할당제가 여성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장치로 제대로 작동하려면 각 정당이나 지역구에 인맥이 있거나 공천 현금을 하는 여성이 의석을 할당받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여성을 위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여성들이 정치권에 진입하여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에 여성 후보가 될만한 인사들을 검증하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여성 인사 102인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각 정당에 후보로 추천한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의 활동은 주목할 만한 것이었으며<sup>6)</sup> 앞으로도 여성계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공천심사위 여성 대표성 확보

여성이 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이 선거에 당선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주장<sup>7)</sup>이 있을 정도로 정당이 여성을 공천하지 않는 현실은 여성 정치 세력화의 주요 저해 요인이 되어 왔다. 또 당직자들이 여성에게 결코 더 적대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있지만<sup>8)</sup> 정당이 여성을 공천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없는 곳에 공천함으로써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주장<sup>9)</sup>도 제기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당은 아직도 지역성을 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지역에 따라서는 특정정당의 공천이 당선에 유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여성을 공천하는데 있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다.<sup>10)</sup>

2002년 지방선거의 경우를 보더라도 정당공천이 여성의 원내 진출에 얼마나 중요한 변수가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 여성후보 48명 가운데 14명이 당선되었다. 그런데 낙선한 34명의 후보 중에서 무소속후보는 1명만 당선되고 9명이 낙선

6) 추천된 102인 후보의 활동 분야를 보면 정당·정치인이 35명으로 가장 많고, 학계·여성단체·공직자가 10~20명이었다. 그 밖에 기업·문화예술·법조계·연구전문직·의료계 등 각 분야를 망라했다. '부패·무능정치 청산'을 내건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여성후보를 선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도덕성'과 '참신성'을 꼽아 기본자격이 되는 도덕성을 오·엑스로 걸러냄으로써 부정·부패에 연루된 인사는 엄격히 제한했다"고 밝혔다. 또 전·현직 의원들도 추천후보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새얼굴 발굴'에 애를 쓰는 한편, 진보와 보수 성향을 염두에 두지 않아 특정 정당 편향 시비를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사회발전과 공익적 경력·전문성·민주적 리더십·양성평등 및 시민 의식 등이 선정기준으로 작용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맑은정치 여성기금 조성운동'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7) Susan Gluck Mezey, "Does Sex Make a Difference? A Case Study of Women Politics", 『Western Political Quarterly』, (Dec. 1978), pp. 492-501.

8) Jean Graves McDonald & Vicky Howell Pierson, "Female Country Party Leaders and the Perception of Discrimination: A Test of the Male Conspiracy Theory", 『Social Science Journal』, (Jan. 1984).

9) Jo Freeman (ed.), 『Women: A Feminist Perspective』, (Mayfield, 1975).

하였다. 또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 중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특정지역에서는 당선이 거의 불가능한 정당의 공천을 받았거나 신생정당의 후보였다. 이에 여성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구 후보 30% 할당, 공천심사위원회에의 여성위원 30% 할당, 여성 후보 가산점 부여, 신규·사고 지구당 여성 우선 공천, 여성의원 수만큼의 보조금 추가 지급 등 강제조항과 보완책 도입을 주장하여 왔다.

17대 총선에서는 각 정당이 공천 물갈이를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면서 공천심사위원회에 일정 비율의 외부인사를 포함하였다. 그 과정에 열린우리당 지역구 심사위원 중 25%인 5명, 민주당 16.7%인 2명, 한나라당 4명의 여성 공천심사위원들이 임명되었다.

## 남아있는 과제

### 여성의 지역구 출마 여건 조성

17대 총선에서 노정된 가장 큰 문제점은 그동안 여성계가 지역구 후보 공천 30% 할당과 여성기획 공천을 주장해 왔으나 정작 공모에 응한 여성들이 적어 지역구 공천 할당제가 실현되지 못하고 이의 책임이 여성계로 되돌아오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1. 2차 공천 신청 마감 결과 여성 신청자는 한나라당 3.7%(27명), 민주당 4.5%(19명, 1명 중도하차), 열린우리당 3.2%(16명)에 불과했다.

이는 그 동안 여성의 사회 참여가 일반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참여는 부진한 이유로 꼽혀왔던 제반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우선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다. 전현직 대통령과 의원들 그리고 각 정당의 천문학적 정치자금 비리와 무차별한 폭로 전 및 흑색선전으로 얼룩지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 정치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여성들도 정치 이외의 방법으로 사회에 참여하겠다는 의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여성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도 높아지나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교육수준은 높아졌으나 깨끗하지 못한 정치풍토 때문에 정치참여 의욕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71%의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희망하

10) 2002년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기초단체장에 여성 후보를 2명 공천해 모두 당선되었다. 직선 광역의원직에는 전체 공천자 540명 중 2.4%인 13명을 여성으로 공천하였으며 9명이 당선되었다. 한나라당은 1998년 선거에서는 10명을 공천해 2명이 당선되었다. 새천년민주당은 기초단체장으로 2명의 여성 후보를 냈으나 당선은 되지 못했다. 직선 광역의원 후보로는 전체 409명 중 2.9%인 12명을 여성으로 공천했으며 4명이 당선되었다. 민주당은 1998년 선거에서 17명을 공천해 12명이 당선되었다. 이 외에도 민주노동당이 7명, 사회당이 5명, 한국미래연합이 1명의 광역의원 지역구 후보로 여성을 공천했으나 당선되지는 못했으며 무소속 1명이 당선되었다. 무소속은 기초단체장 후보로 4명이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비례대표는 한나라당이 22명, 민주당이 15명, 민주노동당이 9명, 자민련이 3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기초단체장과 광역의회 여성 당선자들을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33명, 민주당 19명, 민주노동당 9명, 자민련 3명, 무소속 1명이다.

면서도 정치활동을 희망하는 여성은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1)</sup>

둘째, 17대 총선에서 정치개혁법 개정을 통해 금권 타락선거 풍토 개선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 중이며 각 정당이 공정한 공천을 표방하고는 있으나 정작 국민들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금 가동력이 없는 정치 신인들, 특히 남성에 비해 자금 조성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이 현직 지방의원의 84%, 지방자치단체장의 79%가 정당 공천제를 반대할 정도로<sup>12)</sup> 정당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부터 천문학적 정치 자금이 요구되어 온 선거에 도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셋째, 유권자의 성차별 의식이다.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정치는 남성영역으로 간주하는 유권자의의식이 잔존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여성의 생활 정치에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유권자들도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면서도 정작 여성후보의 득표로는 연계되지 못하는 것이다.

넷째, 정당의 여성에 대한 지원 부족이다. 총래 정당들은 불법 선거운동에 여성을 동원하거나 여성 표 모으기에 급급했을 뿐 정당내의 여성지도자 육성과 여성후보 확보를 위한 노력은 부진했다. 최근에 와서 각 정당들이 여성후보 발굴 및 교육지원 등 많은 정책을 펴고 있으며 중앙당 주요 당직의 1/3이 여성인 정당도 있으나 아직도 정당내의 여성 고위당직자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게다가 17대 총선 과정에 “당내에 준비된 여성 정치지도자가 즐비한데 정당들은 새로운 외부 여성 영입에만 경쟁적으로 몰두하고 있다.”는 자체 비판이 제기될 정도로 여성당료에 대한 정당의 지지는 미약하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이념·정강·정책보다 지도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정당의 수명도 짧아 여성들이 정당에서 정치적 훈련을 받을 기회도 제한되었다.

다섯째, 소선거제도 하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여성 후보들이 당선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 대선이 끝난 뒤 정치권은 당이나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대선거구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안, 중선거구제안,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안<sup>13)</sup> 등을 둘러싼 선거제도 개정 논의를 계속해 왔다. 그리고 여성계에서는 소선거구제의 문제점들이<sup>14)</sup> 여성의 원내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평가해<sup>15)</sup> 중·대선거구제가 여성에게 유리<sup>16)</sup> 하

11) 백영옥, “2004 총선과 여성참여 확대방안”, 『21세기여성정치연합 대선시지부 토론회 자료집』, (2004. 1. 27)

12) 대한매일, 2002년 3월 19일자.

13) 박찬옥, “국회의원 선거구제와 선거구 획정방식의 개혁방안”, 『국가전략』, (1997); 조기숙, “새로운 선거구제도 선택을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 『의정연구』, (1998); 장훈, “한국 선거제도의 현실과 개혁”, 『의정연구』, (2000).

14) 소선거구제는 후보가 난립할 경우 과반수도 득표하지 못한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커 대표성에 있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현직 의원이나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이 높다는 점, 우리나라와 같이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의 의사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정당 형태로 발전함으로써 전국적인 정책이슈들의 중요성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 기존의 거대정당에는 유리한 반면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에는 장애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다는 주장을 해 왔다. 또 남녀를 번갈아 지퍼식으로 명부를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스웨덴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인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sup>15)</sup>

선거구제 문제는 17대 총선에서도 당초 헌법재판소가 개정 시한으로 못 박은 연말을 넘기면서도 합의를 쉽게 도출하지 못할 정도로 각 정당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린 문제이다. 그러나 유럽의 국가들이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거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병행하여 소선거구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있는 점이나, 중·대선거구가 여성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온 점에서 18대 총선에서는 선거구제에 관한 보다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뒤베르제(Maurice Duverger)는 여성의 정계진출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유권자들의 남성선호 성향, 정당을 장악한 남성들이 여성의 진입을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남성음모론, 선거제도의<sup>16)</sup> 3가지를 들었다. 여성들이 지역구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반 요인들부터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계도 지역구 후보 발굴 및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할당제 불이행시 불이익 조항 규정

그 동안 여성계는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 뿐 아니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조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제기해 왔다. 왜냐하면 16대 총선의 경우 비례대표제 여성공천 30% 할당제가 정당법에 도입되었으나 할당비율을 지키지 않은 정당에 대한 제재 장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당들이 당헌, 당규에 의무규정을 두지 않고 할당비율을 30%보다 낮게 하거나 또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순위에 배치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비례대표제 30%를 지킨 정당은 한 정당뿐이었으며 또 당선된 비례대표 중 여성비율은 23.9%에 그쳤다. 또 지역구 광역의원 후보로 여성을 30% 이상 공천한 정당에게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지방선거에서 전체 후보 등록자 중 여성비

15) 물론 이러한 지적에 대한 반론도 제기된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적은 것은 선거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입후보율 자체가 낮기 때문이라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입후보율이 낮은 것은 정치적 장을 오랫동안 남성들이 전유해 온데서 기인하는 측면이 더 크다는 점에서 볼 때 선거구제는 여성의 정치 세력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엄태석, “6·13선거와 여성”, 한국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2002), p.12.

16) 미국의 경우 소선거구제인 연방의회 선거 보다 1구에 2-3명을 선출하는 주 의회 선거에서 더 많은 여성 후보가 당선된다는 점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 지방의원 선거 당시 1인 선거구에서 당선된 여성후보의 비율은 19%인 반면 2인 선거구에서 당선된 여성후보의 비율은 42%이었다. 또 1995년 기초의회 선거에서도 여성 후보의 경우 1인 선거구에 출마한 여성 후보 보다 2인 이상 선거구에 출마한 여성의 당선율이 높았다.

17) 김원홍 “김혜영 “ 김은경, “정당의 여성공천할당제 활성화 방안”, 『2002 연구 보고서 210-6』, (한국여성개발원, 2002).

18) R. 달시, 수잔 웰크, 자네트 클라크(저), 김현자, 주준희(역), “여성, 선거, 의회진출”, (한국여성개발원, 1990), p.20.

율은 2.6%에 불과했다. 이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의 권고조항이 명실상부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여성 공천율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비례적으로 삭감하는 방식이나, 당선 여성의원의 수에 비례하여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보완해 나가는 방안이 제기되었다.<sup>19)</sup>

17대 총선과정에서도 여성계는 할당제에 대한 이러한 보완책들이 필요함을 절감하였다. 각 정당이 할당제 실천을 공약했으나 2003년 12월 15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당법 소위에서는 '정당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방안이 정당법 개정에서 배제되고 16대 총선부터 적용된 비례대표 30% 여성할당 의무화 조항만 현행대로 유지되는 안이 논의되어 1월 20일 '총선여성연대'와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가 <정치개혁규탄여성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역구 여성 30% 이상을 할당한 정당에 대해 추가로 국가보조금을 주기로 잠정합의했지만, 선례로 봐서 이 같은 인센티브 조치도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하였다. 또 지역구 조정과정에서 분구된 지역구 수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어 비례대표의 비중이 큰 여성의원의 수가 줄어들 것에 대해 여성계가 이의 제기를 하기도 하였다.

### 비례대표 총원방식의 정립과 증원

아직까지는 여성이 정치권에 진입하는데 있어 비례대표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채널이다. 따라서 신인 여성 정치지도자들도 비례대표로 진출할 수 있도록 공개 공모를 하여야 하며 공천심사의 객관적 기준을 확정하여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7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의 공모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영입의 비중이 높아 40대 앵커 중심 영입 경쟁이 벌어지면서 "당내 준비된 여성정치 지도자가 즐비한데 외부에서 1회용만 찾는다."는 당내 자체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 비례대표의 경우 공천권자가 자의적으로 공천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는 경우 비례대표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가 선정한 102인 여성 후보 중 한명이 "정당에 나를 팔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 역시 비례대표 공천 게임 룰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이다.

19) 프랑스는 지난 총선에서 여성 후보가 전체의 39%를 차지했다. 그런데 이러한 프랑스 여성들의 약진은 정당이 남녀 각각 50%씩 공천하도록 규정하고, 이 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그만큼 국가보조금을 삭감하도록 한 '남녀동수법안'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권고 조항과 불이익에 관한 조항의 차이가 프랑스 총선에서는 여성 후보의 비율이 39%였는데 비해 우리나라 지방선거에서는 2.6%에 그치는 차이를 가져 온 것이다. www.moge.go.kr, 2002년 6월 11일자.

그리고 비례대표의 대표성도 지역별, 연령별, 정치정향별로 안배되어야 한다. 17대 총선에서는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와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에 투표하는 1인 2표제안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중앙 정치무대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의 독무대가 될 수밖에 없는 현행 전국 단위 비례대표는 이 시대의 화두인 지방분권과도 동떨어진다. 비례대표에 지역 할당제가 도입된다면 지방 여성계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또 지난 대선 이후 우리나라 전반에 세대교체의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의 평균 연령도 15대 53.4세, 16대 52.6세, 17대 40대 후반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 한나라당이 여성 비례대표 1번으로 20대 후반 여성공학박사 영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성 의원의 경우 지나친 연경화(年輕化)는 바람직하지 않다.

전 여성들을 대표하는 여성 비례대표 의원들은 전문성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여성사를 잘 알고 여성운동의 경험도 풍부한 여성계의 대표적 원로가 다수 포함된 노(老), 장(壯), 청(靑) 결합 형태로 충원되어 입법에 성 인지적 관점을 반영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17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논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우리나라는 인구, 공무원 수, 경제발전속도에 대비해 볼 때 OECD 국가들에 비하여 지극히 낮은 수준이므로 의원 정수를 330명-360명 수준으로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sup>20)</sup> 그리고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는 고비용, 저효율정치 타파를 위해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또 하루 만에 거부되기는 했으나 노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정치개혁' 편지에서도 비례대표를 지역구의 20%에서 5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뒷거래에 의한 전국구(錢國區)가 아닌 직능대표로서의 의미를 제대로 살린 비례대표 증원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해서 뿐 아니라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 여성전용 선거구제의 공론화

17대 총선과정에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는 17대, 18대 총선에 한해 여성전용 광역선거구 26개<sup>21)</sup>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기되었으나 무산되었다. 즉 기존 소선거구제에 따른 지역구 투표와 신설되는 정당별 투표에 여성전용선거구 투표를 덧붙여 1인 3표를 실시하는 방안이었다.

이는 현행 소선거구 하에서 여성이 지역구를 통해 의회에 진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20) 김도중, "바람직한 국회의원 정수에 관한 연구", 『2003년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자료집』, pp.200-211.

21) 4당 간사들은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5개 권역, 부산과 경남은 2개 권역, 나머지 12개 시도는 각각 1개 권역으로 간주기로 했다.

어렵고 비례대표의 수도 제한적이며 특히 이번 17대 총선에서는 분구되는 지역구로 인해 오히려 비례대표가 줄어들게 되므로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제기된 것이었다.

그러나 여성전용 선거구제는 선거에 임박해 급조된 전형적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역주민에게 특정 성만을 선출하도록 강제하는 것,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등에 있어서의 평등권 침해, 1인 3표제로 인한 선거관리와 투표 절차의 혼선, 의원 정수 늘리기 편법, 여성후보들을 여성전용선거구에만 출마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부작용, 진보 정당 의석 수 줄이기의 정략적 의도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sup>22)</sup> 정개특위에서는 대신 비례대표를 증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현재 19개 국회 상임위에 여성의원이 1명씩도 배정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여성전용선거구제에 대한 논의도 한시적 적극 조치로서의 할당제 도입과 같은 논리에서 접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와 여성계, 정당이 위헌 소지 논란을 최소화할 법적 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를 공론화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겠다. 그리고 이번 17대 총선에서는 여성계에서조차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이를 주장하는 정당내의 여성의원들도 반대 의견을 낸 반면 이를 반대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여성계의 낙선운동을 주장하는 여성의원도 있었다. 정당에서의 정략적 논의 이전에 여성계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전용 선거구제 뿐 아니라 각 정당들이 합의하여 한 선거구에 모두 여성 후보들을 공천하여 여성 당선자를 배출하는 방법을 도입할 수도 있다. 영국의 노동당은 1993년 전당대회에서 노령으로 은퇴하는 지역구 위원장과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 후보 공천에 있어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후보자 명단'을 작성할 것을 결의하여 1997년 총선에서 여성을 우선적으로 공천한 결과 선거에서 승리하였을 뿐 아니라 여성 의원 비율도 증가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당시 영국 하원 여성의원 수는 1992년 9%(60명)에서 1997년 18.2%(120명)로 거의 배가 증가했다.<sup>23)</sup>

22) 여성전용선거구제 쟁점 대비

쟁점	반대론	찬성론
위헌 여부	성별 차별 금지한 헌법위배 후보자의 참정권 및 유권자의 선거권침해	약자보호 위한 합리적 차별 여성공직할당제와 같은 맥락
관리절차	1인 3표제 따른 비용증대 및 관리복잡화	적극 홍보교육으로 혼선극복 가능
효과유무	여성정치역량 확대와 무관	여성의원 비율 대폭증대
부작용	비례대표제 축소 유명무실화 기존지역구 도전 여성후보에 대한 형평성 위배	한시적으로 적용

23) 김원홍, 김은경, "2004년 총선, 상향식 공천제와 여성후보 확대방안", 『한국여성개발원 제17차 여성정책포럼 자료집』, (2003. 10. 14.)

## 정당 추천 여성후보 선정 기준 정립

제17대 총선에서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의 여성후보 추천에 대해 각 정당들은 이러한 여성후보 추천에 대해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당 차원에서 명단에 포함된 여성인사의 출마를 권유하거나 이러한 여성계의 운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보이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한계였다. 또 각 정당들이 “후보 선정이 특정대학 출신과 성향으로 편파적으로 이루어졌다.”라든가 “선정된 102명이 여성계를 고루 대변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도 있었다.<sup>24)</sup> 정당에 여성후보를 추천하는 일은 1회성 이벤트 행사로 그치지 말고 18대 총선에서는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전여성단체의 범연합체를 조직하고 각계각층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여성후보 발굴과 선정을 위한 보다 객관적인 채널과 잣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천자의 자격과 기준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고 여성 후보 명단에 대한 모든 정당의 공인과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내는 것 역시 다음 총선에서 여성계가 해야 할 일들이다. 또 여성정치기금을 지원할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대한 논의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운동을 하는 전여성단체의 범연합체를 상설기구화하여 차기 대선 및 지방자치선거와 총선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공천심사와 경선제 보완

차기 총선에서도 공천의 여성 대표성 확보를 위해 공천심사위원회에 여성의 30% 이상 참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공천심사위원은 공천되기를 희망하는 당사자가 아닌 여성계 전체의 신망이 두터운 전직 여성 국회의원 또는 NGO 활동 경험이 풍부한 원로가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행 상향식 공천제는 지역기반과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성들에게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구당 위원장이 선출한 소수 당직자들이 밀실야합을 하거나, 국민선거인단 구성의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제로 일반 당원이 참여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경선이 치루어지기도 하고, 능력이나 비전을 기초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 경선자금과 인맥, 조직에 의해 좌우되는 경선포토는 여성들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 2002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한나라당의 기초단체장 후보로 공천 신청한 9명 여성 가운데 공천 받은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광역의원 후보 57명 중에서도 여성 공천자는 7명에 그쳤으며 그나마도 모두 합의 추대 형식에 의한 것이었다. 민주당은 기초단체장 후보로 나선 11명의 여성 가운데

24) 한겨레신문, 2004년 1월 15일자.

데 2명이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을 받았으며, 광역의원 가운데는 6명이 공천을 받았으나 광역의원 모두가 경선을 통해 공천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17대 총선에서 총선 후보 경선(당원 경선, 국민참여형 경선, 여론조사 경선) 때 여성에게 득표수의 20%를 가산해주는 방안을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에 명문화한 것, 경선과정 중 남녀 후보자가 동일 득표시 여성을 후보자로 확정, 경선에서 여성이 2위를 차지할 경우 중앙당이 1위를 차지한 후보자와 함께 자격을 재심사하는 방안이 제기된 것, 지역구 당선 여성의원에게 3배의 정당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것 등은 여성의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로 더욱 구체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17대 총선에서는 공천심사 과정에 서류심사, 면접, 집단토론이나 지역 여론조사 방법 등 보완되었다. 그러나 토론도 제한된 시간에 후보들을 평가하는 문제와 토론 주제 설정 문제 등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다. 또 지역 여론 조사도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기나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심사 대상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기도 했다. 객관적 조사를 위해 여론조사 시기 및 방법 등을 공개하고 공인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여성 당료에 대한 정당 지원 강화

여성의 정당 참여율은 민주주의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정당정치에서 여성의 과소 대표성은 정치 참여의 시작부터 여성이 소외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주요 정당의 여성당원 비율은 전체적으로 50%가 넘는데 비해 여성당직자의 비율은 직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평균 10 - 20%미만 수준이었다. 그러나 선진 민주주의의 국가일 수록 여성의 정당 활동이 활발하며 당내 여성의 대표성 보장을 위해 당 운영기구에서도 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호주의 노동당은 전국집행위원회의 1/3을 여성에게 할당하고 있으며, 녹색당은 창당 후 남녀 50% 비율 원칙을 당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당 지도층의 보수적이고 남성 우월주의적인 시각으로 인해 여성의 당직 진출에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여성들은 여성국이나 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경향이 있어 주요 당무나 국정운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으며, 여성 당료들이 공천과정에서 배제되어 여성 의회진출의 장애요인이 되어왔다. 17대 총선에서는 공천 공모에 여성 당료들의 지원이 괄목할 만큼 증가했다. 그러나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아직도 영입 사례가 더 많다. 각 정당은 여성당료들을 장기적으로 육성해 공천하여야 하며, 여성들도 정당 조직 활동을 통해 정치적 역량을 키워 출마해야 한다. 그리고 정당들은 정당법에 명시될 수 있는 여성당직 할당제에 근거하여 사무총장 및 부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등의 고위당직에 성균형화 정책을 도입하고 고위당직에 여성할당 30%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또 여성당직자의 지도력 향상을 위한 정당 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 청년층에 대한 정당 인턴제도나 여성정치인 인력은행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폐쇄적이고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문화를 개혁하여 지역정당이 아닌 정책정당이 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30%를 정책개발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일부를 여성정치지도자 육성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여성정당 창당도 본격화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비록 활동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으나 우리나라 여성들도 미군정기에 대한 여자국민당을 결성해 1946년 남조선과도입법의회에 박현숙을 관선의원으로 배출한 적이 있다. 모든 선거에 대비하는 상설기구로서의 여성정치세력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전자정당의 형태로 운영해 나간다면 창당 및 운영이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 하겠다.

### 여성정치발전기금 조성

여성들이 출마하기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돈과 조직의 부족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선거공영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정당은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해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GOP여성정치행동연맹과 엘리너 루즈벨트재단 등을 설립,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였듯이,<sup>25)</sup> 여성정치발전기금을 설립하여 여성 후보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가 미국 민주당의 여성을 위한 정치현금전국네트워크(EMILY List)와 같은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떠한 여성후보를 위해 어떠한 기준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잣대가 미처 마련되지 못한 문제를 노정했던 것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또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여성후보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여성정치발전기금 설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 보조금의 일부를 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정하여 선거가 없는 평년에는 여성정치인 육성 기금으로, 선거가 있는 당해연도에는 여성후보선거지원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하였는데 성인지적 예산 중의 성평등 예산 개념을 도입한다면 실현 가능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제도이다.

25) R. 달시, 수잔 웰크, 자네트 클라크(저), 김현자, 주준희(역). 『여성, 선거, 의회진출』, (한국여성개발원, 1990), p.215.

## 결론

여성의 정치 세력화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추구하는 인간운동이자 정치를 올바르게 세우는 민주화 운동이며 편중된 권력을 재편하려는 형평운동이다. 그러나 이미 1945년에 인간의 기본 인권이자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가치로서의 남녀평등권이 UN헌장에 명기되고 우리나라에서도 헌법 제11조 1항에 “성별에 의해 정치적 생활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기된 이래 반세기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여성들은 정치의 장에서 ‘절반의 절반’이 아닌 ‘절반의 소수’라는 특이한 위상으로 살아 가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소외되어 온 여성이라는 억압 대상이 정치적 장으로 복귀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문화적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해 그 동안 여성계가 노력해 왔던 운동들이 17대 총선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총선과정에서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적 과소 대표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례대표 성별 교차식할당제를 도입하고 여성후보 명단을 제시하며 공천심사위원회에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구 공천 후보자 발굴, 비례대표 증원과 공천방식 정립, 경선제 보완, 여성당료 육성, 여성정치발전기금 조성, 여성친화적 선거구제 공론화 등을 둘러싼 논의를 보다 심화해 실현해 나가야 하는 과제들이 남아있다.

물론 우리가 이 글에서 지적한 여성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과제들을 알지 못해서 우리 사회의 대의 기구가 전체 인구의 정확한 축소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과 참정권 투쟁이 시기적으로 뒤쳐지긴 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성 인지적 관점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인식의 정도는 선진국 못지않다. 그리고 이미 새로운 정치학으로서의 성 정치학(Gender Politics)에 관한 많은 이론과 연구 업적들이 누적되어 왔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동안 성 인지적 관점에서 정치를 분석하고 이론화해 왔던 많은 노력들이 아직도 현실 정치의 장에서는 여전히 제대로 자리매김 되지 않고 실천되지 못한 채 늘 그 문제점들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의 정치 세력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이란 다름 아닌 우리나라 정치 발전의 낮은 수준과 직결되어 있는 것들이다. 최근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면 남성의원들 보다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일례로 2003년 8월 27일 현재 16대 국회 여성의원들의 법안 대표발의 건수는 평균 5.4건으로, 전체 의원의

평균 대표밭의 건수(5.1)보다 다소 많다. 여성 의원들은 본회의 등의 출석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004년 총선을 계기로 말만 요란한 정치개혁이 아닌 진정한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고 여성정치의 원년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이범준 외, 『21세기 정치와 여성』, (폴빛, 2000)  
 장공자 외, 『새로운 정치학』, (인간사랑, 1998)  
 김정숙(편), 『여성과 정치(Ⅱ)』,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1997)  
 손봉숙, 박의경, 『한국민주주의와 여성정치』, (폴빛, 2000)  
 손봉숙, 조기숙, “지방의회와 여성엘리트”, (집문당, 1995)  
 R. 달시, 수잔 웰크, 자네트 클라크(저), 김현자, 주준희(역), “여성, 선거, 의회진출”, (한국여성개발원, 1990)  
 한국여성개발원, 『해방 후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향후 과제』, (2001 연구보고서 210-4)  
 이화여대 정치학회, 정치학 자료 총서, 『한국여성단체에 대한 조사 보고서』, (제3집, 1973).  
 여성단체협의회, 『UN 여성 10년 평가』, (198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13 지방선거 당선자 통계』, (20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6대 국회의원선거총람』, (2000)  
 백영옥, “2004 총선과 여성참여 확대방안”, 『21세기여성정치연합 대전시지부 대토론회 자료집』, (2004)  
 김경숙, “여성 정치세력화의 제도적, 문화적 저해요인 분석”, 『한국정치학회 충청지회 추계 학술세미나 자료집』, (2003)  
 김원홍, “17대 총선, 지역구 여성 진출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방안”, 『여의도연구소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3)  
 김원홍·김은경, “2004년 총선, 상향식 공천제와 여성후보 확대방안”, 『한국여성개발원 제 17차 여성정책포럼 자료집』, (2003)  
 조현옥, “여성의 참여 없는 정치 개혁 없다.”, 여성총선연대 토론회 자료집, (2003)  
 라미경, “여성정치세력화와 정당의 역할”, 『한국정치학회 충청지회 추계학술세미나 자료집』, (2003)  
 김도중, “바람직한 국회의원 정수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자료집』, (2003)  
 김원홍·김혜영·김은경, “정당의 여성공천할당제 활성화 방안”, 『2002 연구보고서 210-6』, (한국여성개발원, 2002)  
 엄태석, “6·13 선거와 여성”, 한국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2002),  
 백영옥, “여성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1989)

David Buttler & Freeman Jennie, 『British Political Facts 1900-1967』, (London, 1968)

Freeman (ed.), 『Women : A Feminist Perspective』, (Mayfield, 1975).

Janet A. Flammang (ed.), 『Pol. Women』,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s, 1984)

IPU, 『Men and Women in Politics : Democracy Still in the Making, a World Comparative Study』, (Geneva : IPU, Jan. 1997)





**민족정치론의  
체계화를 위한 정지작업**

# 현대정치와 민족문제

〈 주요 목차 〉

**제 1 부**

1. 새로운 정치환경과 민족문제
2. 개념 정의
3. 네이션
4. 내셔널리즘
5. 국민국가론

**제 2 부**

1. 중국 :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건설
2. 華僑 : 落葉歸根에서 落地生根으로
3. 러시아연방 : 마트로시카적 중층성
4. 미국 : '멜팅 포트'에서 '샬러드 볼'로
5. 일본 : 단일민족 신화의 허구
6. 캐나다 : 다문화주의의 실천장
7. 북한 : 통일정책과 민족정책

**||| 교양사회** 조정남 저 / 값 15,000원

특 집

한국의 여성세계 <여성정책>

# 일하는 여성, 평등한 여성, 행복한 여성

문 유 경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여성내부의 계층화, 서열화도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다. 향후의 여성노동문제는 계급에 따라 혹은 공공부문 / 민간부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므로, 보다 세분화된 부문에서의 연구가 요청된다.



**연** 초에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난 이후 하루건너 정부의 정책발표와 연이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지, 누구를 위한 어떤 일자리여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여성과 관련해서는 여성들을 위한 별도의 일자리 즉 여성일자리 창출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일자리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일자리라는 용어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현재 상치되고 있다. 전자는 일자리 창출정책이 성인지적인 입장을 견지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여성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

하다는 주장임에 반해 후자는 일자리 자체가 여성일자리와 남성일자리로 구분될 수 없으며 여성을 위한 혹은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라 함은 기존에 여성들이 담당해왔던 주변적이고 한계적인 직종을 의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성일자리란 용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이 일자리의 질보다는 양적인 증가를 중요시하는 즉 취업률의 증가자체를 우선시하는 입장과 일자리의 양보다는 괜찮은 일자리에 비중을 두는 입장과의 견해차이라 볼 수 있다. 여성노동은 이와 같이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 자체가 노동시장내의 지위 향상과 직결되기 어려우며, 이 두 변수는 자주 길항관계에 놓이게 된다.

지난 40여 년간 1997년의 외환위기를 제외하고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1963년의 37.0%에서 2003년에는 49%로 증가하였다. 일하는 여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대접은 세금을 내는, 다시 말해 돈을 버는 사람들만이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을 상기할 때,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증가율은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일이다.

그러나 과연 일하는 여성들이 제대로 사회와 가정에서 일하는 남자들만큼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들이 일하지 않는, 다시 말해 집에서 일하는 여성들보다 행복지수가 높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일과 여성이라는 두 영역이 한국사회에서 현재 어떻게 맞닿아 있으며, 그것이 여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에 대해 쟁점을 위주로 살펴보겠다.

## 일하는 여성, 일하고 싶은 여성

### 일하는 여성의 규모

2003년 한해 평균 한국의 여성취업자는 총 910만 8천명이다. 이는 15세 이상 여성인구의 47.4%이며,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의 참가율은 48.9%로 나타난다. 또한 남녀를 합한 전체 취업자 2213만 9천 명 중 여성의 비중은 41.1%이다.

그러니까 전체 여성중 2명 중 한명은 일을 하고 있으며, 취업자 10명 중 4명은 여성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수치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 즉 일부 여성들만이 일하고 있으며, 취업자의 대부분은 남자라는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다. 이같이 오해는 아마 일하는 여성들이 대부분 일부 직종에 몰려 있으며, 직장에서 대부분 하위직에 이름 없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여성전체 취업자 중 서비스판매 종사자가 37.2%에 해당하며, 가장 고위직인 의회의원, 행정관리직의 여성비율이 5.9%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 여성의 낮은 실업률과 높은 비경제활동 인구비율

취업 여성의 대부분이 그다지 좋은 일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취업을 원한다. 학교를 졸업한 미혼 여성들은 '취업은 필수, 결혼은 선택' 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취업을 하고 싶어 하지만 이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에 취업을 할 수 있는 확률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2003년의 남자실업률은 3.6%, 여자실업률은 3.1%로 여자가 낮지만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여자들의 상황이 더 좋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첫째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집단간의 이행율을 볼 때 남자는 실업자에서 취업자로 가는 비율이 높은 반면 여자는 실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출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안주엽, 2002) 이는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을 원하는 미혼여성들이 여성들의 낮은 취업률과 차별 등에 쉽게 구직을 포기하는 실망실업자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여성들이 여전히 결혼을 취업의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결혼과 육아로 인해 취업상태에 있던 여성들이 일을 그만두는 경력단절 경험이 병존하고 있다. 여성의 생애사건과 취업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결혼과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이 여전히 높다. 결혼이 미취업 미혼여성들에게 대안이 되고 있지만 동시에 취업기혼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초래하는 위협요인이 되고 있는 모순적 현실이다.

최근 들어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는 다소 긍정적인 지표로, 대도시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전형적인 M자형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과(민경희 연구),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최저점이 조금씩 상승하면서 동시에 늦추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결혼과 무관하게 계속 일을 하는 여성들과, 결혼과 출산을 미루면서 일을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일을 원하는 두 번째 여성 집단은 육아를 마친 30대 후반, 40대 중반의 기혼여성들이다. 이들은 오랜 공백기로 인해 경력은 단절되고, 직무능력이 뒤떨어져 있어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처음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되어 보인다. 실제로 이들 기혼여성들이

여성의 생애사건과 취업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결혼과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이 여전히 높다. 결혼이 미취업 미혼여성들에게 대안이 되고 있지만 동시에 취업기혼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초래하는 위협요인이 되고 있는 모순적 현실이다.

중사하고 있는 직장은 할인매장 계산원, 음식점 종업원 등 소수 직종에 한정되어 있다. 이들이 구직활동을 함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점이다. 첫째 일반적으로 알려진 여성의 구직행위의 소극성과 비 효과성은 결과적으로 공식 실업자의 선정에서 곧잘 누락되는 결과를 도출한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실업률은 1)지난 1주일을 기준으로 돈버는 일을 하지 않으며, 2)구직활동을 했고, 3)취업이 된다면 일할 능력이 있는지의 세 가지를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특징은 취업을 원하면서도 구직활동과 일할 능력이 되지 않는 비중이 높아, 실업자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여성취업실태조사」(1997) 결과에 의하면 15세에서 64세 여성의 52.8%가 비경제활동자로 나타나며, 취업자는 44.4%, 실업자는 2.9%로 나타난다. 특이한 점은 정부의 발표범주에서 제외되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희망자”가 14.1%로 실업자의 5배정도 된다는 것과, 이들의 85.8%가 기혼여성이라는 점이다. 즉 실업자에 비해 비 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희망자는 그 규모가 크고, 기혼의 비율이 높으며, 연령 대 역시 30-40대의 비중이 높다. 이는 이들이 취업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구직활동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여건을 발해준다고 볼 수 있다.(문유경, 1998) 최근에만 취업 전문 업체의 조사에 의하면(2004.2 스카우트) 기혼 여성 구직자는 91.9%가 결혼 및 출산 때문에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육아기를 마친 기혼여성들의 실질적인 구직의사와 강도를 측정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노동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다면 노동력 부족의 상당부분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원하는 직종과 임금수준이 매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이 이들의 두 번째 문제이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는 더 이상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며 공단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는 집단화되기 시작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30·40대의 기혼여성들의 활용이 거론되고 있으나, 실제로 이들 여성이 원하는 직종은 사무직이나, 서비스직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직으로 취업하려 하지 않는다. 육아기를 마친 기혼여성들은 구직행위부터 소극적이며, 이들의 노동시장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와 막연한 기대로 이들이 만족할만한 일자리는 그다지 많지 않은 형편이다.

## 차별 혹은 선호

### 차별의 측정

경제학자 베커(Gery Becker)가 1960년대에 발표한 「차별의 경제학」 이후 경제학자들

은 차별의 원인과 정도, 결과에 대해 실증적인 접근을 통해 계량화하기 시작하였다. 경제학 이론에서 차별은 간단하게 동일한 생산성에 대한 다른 대우로 정의된다. 오아사까(Oaxaca)는 남녀근로자의 임금차이를 차별분과 비차별 분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즉 생산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여러 변수 예를 들어 학력, 나이, 경력, 자격증 등이 동일할 때 남녀집단의 임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봄으로써 생산성과 관련된 변수의 차이로 인한 임금격차는 비차별분, 나머지 임금격차는 차별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생산성과 관련된 변수의 차이로 남녀임금격차가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계량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차별이론의 진전을 가져왔다. 한국에서도 1980년대 이후 몇 편의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이 연구들은 나름대로 설명되는 부분과 되지 않는 부분 즉 잔차 부분에 대한 규모를 발표했으나 문제는 잔차 부분에 대한 해석이다. 생산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을수록 과연 차별이 심하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측정이 되지 않지만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수들은 측정이 어려운 주관적이거나 일상적인 변수들로 업무에의 헌신도, 다른 직원과의 협조정도 등이 있을 수 있다. 토니(Tony)는 생산성과 인적자본과의 관계에서 인적자본의 개념을 더욱 확장하여 인적 자본을 일반적인 인적자본과 특수 인적 자본으로 분류한 후 지금까지 일반적인 인적 자본(학력, 연령, 경력 등)만이 고려되었으나, 특수 인적 자본인 숙련도를 추가로 고려할 경우 잔차 분이 감소될 수 있다는 주장하였다.

###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과 그 이후

차별의 시정을 위해 1987년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근로자의 지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졸 여성들은 연고 없이 입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대기업의 공채시험에 적어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시작했다. 결혼정년제의 폐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확보, 여자교환원의 차별적인 정년연령의 시정 등 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중요한 사안들이 해결되었다. 특히 금융권의 은행들은 막강한 노조의 조직력과 능력 있는 여성 조합원들의 지지로 여행원 제를 폐지하고 남녀 단일 직급 제를 적용하게 되는 큰 효과를 보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후발은행에서 신인사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남녀로 직군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업무와 기능으로 직군을 구분하는 것이다. 신인사제도가 과연 차별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의 와중에 간접차별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국내에 소개되었다. 간접차별이란 어떠한 인사제도가 조치가 여성을 직접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여성이 불리한 상황에 많이 놓이게 되는 것을 지칭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으로 직접

차별이 불가능해지자 결국 간접차별의 형태로 차별의 외양이 바뀐, 차별형태 변환의 대표적인 현상이다.

### 기존 여성 직원의 차별철폐는 신규 직원의 고용차별로

이러한 제도를 은행 측이 도입하는 배경을 보면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차별의 폐지에 대한 한계를 볼 수 있다. 즉 평등법에 의해 단일 직급제를 채택하고 여직원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지만 이면에는 기업의 여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의 부담이 상승하여 여직원의 채용 기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여행원제 폐지 이후 사실상 은행권에서 여성들의 채용경향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이전의 고졸여성의 채용을 거의 하지 않고, 남성들과 동일하게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예상되는 소수의 대졸 여성만을 채용하는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하여 직원들의 퇴직을 유도한 후 이들을 다시 임시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들의 인건비와 승진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결국 은행권의 예에서 보듯이 기업들이 차별의 철폐로 인한 손실이 생길 때 이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있게 마련이며, 이러한 반동은 기존의 여행원들에 대한 임금과 승진에서의 차별에서 신규 여성 졸업자들이 정규직으로 입사할 기회가 적어지는 고용차별로 귀결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도입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법에 의한 차별의 금지는 당사자간의 충분한 이해가 없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에 한계가 있다. 노동부에서 최근 도입준비를 하고 있는 적극적 조치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치이다. 적극적 조치의 정의와 구체적인 내용은 약간의 불일치가 있지만 이 조치의 기본정신은 기업에게 차별을 강제적으로 금지하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차별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미연방국과 조달계약을 원하는 기업들은 기업의 고용평등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행정도를 계약 선정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차별금지법보다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기업의 상황을 고려한 자발적인, 실현가능한 방법의 모색이라는 점에서 그 실효성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의 선호는 민주사회에서 존중되어야 할 가치이다. 그러나 집단적인 선호는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고용주의 선호는 피고용인에 대한 차별로 나타나기가 쉽다. 적극적 조치는 자발적인 범위 내에서 소수집단의 능력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차별자의 선호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긍정

적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의 적극적 조치는 반대론자들로 하여금 역차별 논쟁을 야기 시켰으나, 오히려 이와 관련된 많은 법정판례를 축적함으로써 차별해소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다. 찬성론자들조차 채용과 승진 시 남성과 동일하게 능력 있는 여성을 채용한다는 원칙에 적용될 수 있는 여성들이 소수라는 점을 지적한다. 미국의 연구들은 이 제도가 고학력의 백인 중산층 여성들이 흑인이나 다른 여성 집단보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또 하나의 비난은 적극적 조치의 혜택자라는 낙인이 오히려 토크니즘으로 작용하여 여성의 능력을 평가절하 하도록 만든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들이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시행된다면 가능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출산기의 높은 육아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취업을 중단할 경우 당장은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퇴직이전의 수입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고소득이 보장되는 전문기술직일수록 능력마모가 심해 전 직장의 복귀가 어렵다고 본다.**

## 집에서 직장에서

### 출산이 여성경력단절에 가장 큰 요인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여성들의 퇴직시기가 과거 결혼보다는 첫출산을 전후해서 더욱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김영옥 2002; 은기수?박수미 2002) 이는 여성들의 경력지속에 결혼은 그다지 단절요인이 되지 않지만 출산 이후까지 지속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의 출산율저하에 대한 원인 분석을 보면 미혼 여성의 증가, 결혼시기 연장, 출산시기 연장, 무 자녀 선택 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전광희 2002) 결국 여전히 가정일과 직장 일을 병행하는 것이 여성에게는 어려운 일이며, 이 어려움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가 여성 노동정책의 주요 숙제이다.

### EU국가의 모성보호제도

EU국가의 모성보호제도는 그 유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C. Fagan and Jill

Rubery, 1996) 첫째는 약한 부양가구주 국가유형(Weak breadwinner states)로 스웨덴과 같이 부모양육휴가를 유연하게 부여하거나 덴마크와 같은 자녀양육지원수장을 지급하는 유형을 말한다. 둘째는 강한 부양가구주 국가유형(Strong breadwinner states)로 여성을 일차적으로 부인이면서 어머니로 취급하는 국가이다. 독일이 대표적인 국가로서 부모양육휴가나 공적인 보육서비스는 제한적으로만 제공하고, 자녀가 어린 시기에 어머니들이 집에 있거나 파트타임 일자리를 갖는 것을 조장하는 국가이다. 셋째는 수정된 부양가구주 국가유형(Modified breadwinner states)이다.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주장하는 평등주의자와 여성이 고용상태를 유지하면서도 보다 아이를 많이 낳도록 해야 한다는 인구증가정책제안자 및 전통적인 가족주의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가족정책을 절충하는 것으로 프랑스가 그 예이다.

이러한 각종 모성보호와 직장가정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평가를 보면 결국 여성의 일생을 종합하여 가장 유리한 근무형태는 중단 없이 전일제근무를 지속하여 경력을 쌓아가는 것이라고 한다. 출산기의 높은 육아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취업을 중단할 경우 당장은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퇴직이전의 수입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고소득이 보장되는 전문기술직일수록 능력마모가 심해 전 직장의 복귀가 어렵다고 본다.

### 한국의 모성보호제도

한국은 지난 2002년 출산휴가를 국제요구기준에 맞추어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였다. 출산을 하는 여성근로자는 약3개월의 휴가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실효성의 확보라는 근본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우선 출산휴가비용의 출처이다. 기업 측이 60일, 고용보험에서 나머지 30일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 현재의 재원방안은 궁극적으로 기업이 출산을 앞 둔 여성근로자를 회피할 수 밖에 없는 제도이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여성 집중 직종이 있는 기업의 부담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여성의 출산이 국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면 이는 기업이나 고용보험 가입자의 돈이 아닌 국민 전체의 돈에서 지원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의 재원방안에서 점차 전액을 사회 부담 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모성보호의 또 하나의 문제는 이 혜택의 대상이 큰 기업이나 공공부문의 정규직에 국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여성사업체 여성근로자들의 경우 사실상 거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정착 이 제도의 혜택이 절실한 집단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표-1〉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별 가사노동시간

단위: 시:분

연령대	가정 관리				가족 보살피기				연령대			
	하루 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하루 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하루 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20대 취업	2:19	2:10	2:23	3:02	1:15	1:12	1:20	1:30	3:35	3:22	3:43	4:32
비취업	4:06	4:12	4:07	3:41	3:04	3:12	3:00	2:34	7:11	7:24	7:07	6:15
30대 취업	2:52	2:44	2:59	3:27	0:55	0:58	0:54	0:47	3:48	3:42	3:53	4:14
비취업	4:38	4:42	4:41	4:16	2:22	2:33	2:09	1:46	7:01	7:15	6:50	6:02
40대 취업	2:57	2:51	3:00	3:25	0:14	0:15	0:15	0:14	3:12	3:06	3:15	3:39
비취업	5:06	5:11	5:19	4:29	0:36	0:40	0:34	0:24	5:43	5:51	5:53	4:53
50대 취업	2:53	2:48	2:57	3:20	0:12	0:12	0:16	0:14	3:06	3:00	3:13	3:34
비취업	4:44	4:51	4:48	4:08	0:40	0:43	0:39	0:31	5:25	5:34	5:27	4:39
60대 취업	2:41	2:41	2:38	2:49	0:12	0:13	0:13	0:12	2:54	2:54	2:51	3:01
비취업	3:12	3:16	3:10	2:56	0:27	0:29	0:27	0:20	3:39	3:45	3:37	3:16

출처: 통계청, 「1999 생활시간조사보고서」(2001)

### 직장과 가정양립의 지원체제

육아휴직, 탄력근무제, 보육시설 확충 등으로 대표되는 가정과 직장양립의 지원체제는 기본적으로 보살핌노동에 대한 성 역할 모델이 바뀌지 않는 한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보살핌노동이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에서 남녀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이 제도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이 전제가 되지 않는 한 여성만이 이 제도의 사용자가 될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경력개발에 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경우 육아 휴직 시 수당을 현실화하고, 복귀를 보장함으로써 남성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너무나 바쁜 우리나라 취업여성

우리나라의 보살핌노동이 여성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여성의 몫이라는 것은 생활시간조사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별로 가사노동시간을 비교하면 평일에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많지만 휴일에는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이 늘어나 총량은 큰 차이가 없다. 더구나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을 비교하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평일에는 많지만 휴일에는 다시 감소함으로써 결국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의 총량은 아내의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매우 적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이 일을 갖는다는 것은 곧 이

〈표-2〉 가사노동시간과 시장노동시간의 국제비교

단위: 분

	한국		일본		미국		핀란드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가사노동	32분	237분	28분	243분	110분	192분	117분	217분
일	356	208	361	185	276	179	308	221
합계	388	445	389	428	386	371	425	438

출처: 이기영, "국민생활시간 활용의 국제비교," 통계청, 「1999 생활시간조사 종합분석 사업결과」 (2001)

중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하며, 가사부담으로 인해 직장에서도 남성과 동등한 수준의 직장몰입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은 생산성이 높은 남성근로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왜 한국이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률이 특히 높은 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여성이 가사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경제적으로 맞벌이를 해야 하는 현실을 뒤따르지 못하는 즉 문화적 지체현상이 하나의 원인이 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남성의 노동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길어, 집에서까지 가사노동을 할 시간적 여유가 적다는 것이다. 이 설명은 노동시간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볼 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취업을 하지 않는 남학생이나 노인 등 남성들의 가사노동시간도 여전히 매우 낮은 것을 볼 때 이 주장이 갖는 설명력은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 비정규직의 증가, 대안인가 착취인가: 차별 없는 파트타임.

비정규직의 증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더불어 피할 수 없는 추세이다. 과거와 같은

〈표-3〉 성과 종사상의 지위별 비중

단위: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남자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용	64.6	64.7	59.9	59.2	60.3	58.8
	임시 및 일용	35.4	35.3	40.1	40.8	39.7	41.2
여자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용	38.4	34.8	31.1	31.1	33.2	33.6
	임시 및 일용	61.6	65.2	68.9	68.9	66.8	66.4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표-4〉 성과 종사상의 지위별 임금과 근로시간(2001)

단위: %

	남자			여자			여자 / 남자 * 100		
	임금	근로 시간	시간당 임금	임금	근로 시간	시간당 임금	임금	근로 시간	시간당 임금
전체	81	102	81	70	98	76	58	91	65
상용	99	100	99	99	100	99	67	94	70
임시	57	107	55	64	102	67	75	90	85
일용	47	95	52	41	85	57	58	85	7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01. Workshop on Using statistics for Gender-responsive Policy Analysis and Advocacy, UNESCAP/UNIFEM주최, 2003(미발간 자료)에서 재인용

고용관행으로는 기업이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 인건비의 지출이라는 측면에서 기업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혼용하여 운영할 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비정규직에 대한 대우가 정규직에 대비해 혹은 이들의 생산성에 대비해 지나치게 열악한 경향이 있고, 이들의 고용불안정이 사회적 불안요소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근로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4대보험이 완전하게 적용되지 않아, 사회안전망에서 유출이 되며, 사회적 비용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성과 관련하여서 첫째는 여성들에게 제공되는 대부분의 일자리가 비정규직이며, 이 직종은 승진, 훈련 등에서 제외되는 주변적인 지위로 여성들이 경력개발의 기회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상시적인 성격의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란 일의 번만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원래의 목적인바 상시적으로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와 근로시간으로 일을 하면서 비정규직대우를 받는 여성근로자가 비정규직에 많다는 점이다.

〈표 3〉은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종사상의 지위의 변화이다. 이 표에 의하면 남녀보두 상용직의 비율이 줄어드는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율은 상당히 증가하였다. 특히 여성근로자는 2002년 상용직인 33.6%로 전체 여성근로자의 1/3에 불과하다. 이는 여성근로자 3명중 2명이 비정규직 근로자로 고용상태가 불안정함을 보여 준다.

〈표4〉는 상용근로자와 임시, 일용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비교한 표이다. 이 표에서 여성과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지는 내용은 첫째 여성상용자와 임시직, 일용직의 근로시간의 차이가 예상만큼 크지 않다는 것이다.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00이라 할 때 임시직은 102, 일용직은 85로서 오히려 임시직의 근로시간이 더 많게 나타난다. 즉 많은 여성들이 시간제 근로를 원하고 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비정규직은 시간상 전일제근무에 가까운 형태이다. 둘째 임금수준이 근로시간을 통제했을 경우에도 여전히 일용직과 임시직이 상용

〈표-5〉 성과 종사상의 지위별 각종 수당(2001)

	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전체	남자	여자									
퇴직금	49.3	59.7	34.2	93.1	93.7	91.5	10.2	12.2	8.4	1.0	1.0	1.1
상여금	51.2	59.0	34.3	91.4	92.2	89.5	11.6	13.2	10.2	1.0	1.0	1.2
시간외 수당	38.9	47.0	27.0	73.4	74.1	71.6	7.4	8.4	6.6	2.0	1.6	2.4
세가지 모두	36.0	44.4	23.7	71.4	72.3	69.1	2.6	3.3	2.0	0.3	0.3	0.4
모두 비해당	46.3	36.5	60.8	4.4	3.9	5.8	81.6	79.2	83.6	97.0	97.6	96.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01. Workshop on Using statistics for Gender-responsive Policy Analysis and Advocacy, UNESCAP/UNIFEM주최, 2003(미발간 자료)에서 재인용

직의 50-6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용직은 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41%, 시간당 임금수준을 계산했을 경우에는 57%로 일용직의 근로시간이 적다하더라도, 임금수준은 여전히 시간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남녀별 임금수준을 비교하면 전체적으로는 남성 100%일때 여성은 65%로 낮은 수준이다. 이를 종사상의 지위별로 비교하면 시간당 임금은 임시직이 가장 높으며, 일용직, 상용직의 순서로 나타난다. 이는 임시직과 일용직의 절대 임금수준이 낮지만 상용직내에서의 남녀차이가 더욱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에서의 차별은 기본임금 외에 각종 수당에서도 나타난다.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세 가지 수당의 적용률을 보면 상용직 남자의 경우 퇴직금과 상여금은 90%이상을 대부분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임시직의 경우 퇴직금은 남녀 합하여 10.2%, 상여금은 11.6%, 시간외 수당은 7.4%로 10명중 1명꼴로 혜택을 받고 있다. 일용직은 1%내외로 거의 해당되지 않고 있다. 세 가지 수당을 모두 받고 있는 비율은 남성 상용직은 72.3%임에 비해 여자 상용직은 69.1%, 남자 임시직은 3.3%, 여자 2.0%, 남자 일용직 0.3%, 여자 0.4%로 성별보다는 고용상의 지위별로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여성근로자의 비정규직비율이 2/3이고, 비정규직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성들이 각종 수당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음이 나타난다.

사회안전망의 구축의 필수정책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역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혜택이 적게 나타나, 이 부분에서 차별이 있음을 보여 준다. 2004년부터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협조할지 혹은 근로자 개인에게 도움이 될지 등 향후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비정규직의 근로조건과 사회지원에서의 차별적인 대우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은 여성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또한 증가할 전망이다. 학교를 졸업하

〈표-6〉 성과 증사상의 지위별 보험적용률(2001)

	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전체	남자	여자									
국민연금	51.8	61.6	37.3	91.7	92.8	91.1	18.4	21.4	15.9	2.4	2.1	2.5
건강보험	54.3	64.4	33.9	94.3	95.0	92.4	22.2	26.5	18.6	2.9	2.8	3.0
고용보험	46.9	55.1	34.9	80.0	80.7	77.9	21.0	23.7	16.7	3.2	3.0	3.5
세가지 모두	43.5	52.3	30.6	77.5	78.7	74.0	15.2	18.0	12.9	1.7	1.5	1.8
모두 비해당	43.4	33.8	57.5	4.3	4.0	5.2	73.7	69.4	77.2	95.9	96.1	95.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01. Workshop on Using statistics for Gender-responsive Policy Analysis and Advocacy, UNESCAP/UNIFEM주최, 2003(미발간 자료)에서 재인용

고 전일제취업을 원하는 미혼여성들과 육아기를 마치고 시간제 취업을 원하는 기혼여성들이 계속 늘고 있지만 이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대체로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의 규모가 커지는 한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노동시장내의 남녀차별은 더욱 그 격차가 커질 전망이다. 고용상의 남녀차별과 근로조건에서의 남녀차별이 또다시 충돌하는 지점이다.

##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한국 여성의 노동문제를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과연 일하는 여성들이 자신의 몫을 가족과 일터에서 찾고 있는지, 이들이 일자리를 갖고 있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행복한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전개된 이 글에서 결론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첫째 일하는 여성들의 모성보호와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은 여성만을 별도로 분리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 모성보호 정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며, 가정과 양립지원 정책 역시 여성근로자만을 염두에 두고 실시할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다. 남성들의 근로시간의 감소와 자발적인 가사노동의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 한 여성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여성들이 가사와 육아부담자라는 것을 새삼 확인시켜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는 결국 이중역할을 하는 피곤한 여성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일하는 여성들이 행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서비스산업의 확대와 기업의 노동 유연성 추구로 이 분야의 비정규직과 파트타임에 여성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규직의 차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여성들의 비정규직 참여는 노동시장내의 성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노동시장에 편입되는 많은 여성들은 가정과 직장에서 성별 역할(직종)분리와 성별 서열화를 이중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일하고 싶은 여성들의 실업문제가 남성만큼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욱 심각하며, 이에 대한 표면화작업이 필요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에 대한 성격규명과 이들을 실업자 군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차별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이 차별간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차별의 시정을 위해 두 가지 차별을 초래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여성 또한 더 이상 동질적 집단이 아니며, 여성내부의 계층화, 서열화도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다. 향후의 여성노동문제는 계급에 따라 혹은 공공부문 / 민간부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므로, 보다 세분화된 부문에서의 연구가 요청된다.

## 참고문헌

- 김영옥(2002). “여성의 동태적 노동공급: 취업연속성과 첫 노동시장 퇴출행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주최, ?여성의 생애와 취업?
- 문유경(1998). 「여성 실업자와 취업희망자의 구직행위와 조건」. 한국여성개발원.
- 민경희(2002). “노동력” 통계청 주최 「한국의 인구 및 주택심포지움」
- 안주엽, 홍서연(2002).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과 재취업과정」 200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문.
- 은기수, 박수미(2002). “여성 취업이행 경로의 생애과정 씨퀀스 분석” 한국여성개발원 주최, 「여성의 생애와 취업」
- 전광희(2002). “한국의 출산력” 통계청 주최 「한국의 인구 및 주택심포지움」
- Becker, G. (1971). *The Economics of Discrimin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unter Schmid et al (eds.)(1996) *International Handbook of Labour Market Policy and Evaluation*, Cheltenham: Edward Elgar.
- Tem, tony. “Sex segregation and Occupational Gender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DEvaluation or Specialized Training?” *AJS*, vol.102 no.6 (May 1997).

## 한국의 '독신모' 정책을 중심으로

백 미 연 (고려대 대학원)

차이를 부정한다고 해서, 차이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도 아니며,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질화될 수는 없다. 차이를 모두 제거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일이다. 차이를 인정하며, 그들을 배려하는 정책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서론

**한** 국사회에서 '독신 모' (single mother, solo mother)란 지극히 생소한 개념이다. 한국에서는 독신 모라는 용어보다 여성가구주, 여성세대주, 편모가정, 모자가정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독신 모의 범주에 속하는 여성은 '부양해야 할 18세미만의 자녀를 혼자 키우며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미혼여성, 별거중인 여성, 이혼여성, 사별한 여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독신 모로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공통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불이익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러한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조직화하고 세력화할 필요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들은 파편화된 개인들이 아닌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가구주, 여성세대주, 모자가정 등의 용어보다는 보다 강력한 연대감을 확보할 수 있는 '독신 모집단'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독신 모의 비율은 가족형태의 변화와 함께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들 집단의 구성원들은 국가정책의 부적절성과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전보다 더욱 취약한 집단으로 변해가고 있다. 한국의 독신 모들은 한국여성이 여성으로서 겪고 있는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차이와 배제 문제와 더불어 독신 모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정치, 경제, 문화적인 측면의 복합적 부정의를 모두 경험하고 있는 '차이집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도 차이집단으로서 인식된 독신 모집단에 대해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기보다는 사회전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적 전환이 요구된다.

독신 모 집단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오랫동안 주요정책쟁점으로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 혹은 위험집단으로 표출되어왔다. 특히 미국사회에서 독신 모는 공적 부조로 살아가는 복지 제도의 기생자, 혹은 사회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쓸모없는 인간으로 사회적 경멸과 도덕적 낙인을 받고 있다. 또한 독신 모 집단은 자신이 관련된 국가정책 특히 복지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복지 관료들의 비인권적인 감독과 조사에 항상 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미국사회에서 독신 모들이 겪고 있는 부정의와 한국사회에서 독신 모들이 겪고 있는 부정의간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미국 독신 모들은 1930년대부터 이미 복지제도의 수혜를 받으며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불평등과 문화적 부정의를 겪어 왔지만, 한국 독신 모들은 아직도 복지제도의 수혜자격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복지제도의 수혜를 받는 한국의 독신 모들의 비율은 미미한 상황이다. 독신 모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과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은 1990년대 들어서이며, 이러한 체계조차 완벽한 형태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의 복지정책은 미국식 복지정책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복지정책의 결함을 그대로 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독신 모 정책이 갖고 있는 젠더부정의(gender injustice)를 비롯한 다차원적인 부정의를 비판하는 것은, 독신 모 정책의 초창기에 있는 한국의 독신 모 정책의 발전적인 모습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양국 모두에서 독신 모 정책은 새로운 차이의 정치이론에 기반 하여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 차이의 정치

‘차이의 정치’(politics of difference)를 논하기에 앞서, 차이의 정치이론과 이전 시기 동안 진행된 차이에 대한 논쟁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2물결 페미니즘 특히 미국 페미니즘 운동에서 진행되어 왔던 ‘차이’(difference)에 대한 논쟁의 역사를 개략하고자 한다. ‘차이’에 대한 논쟁의 역사는 미국 페미니즘 운동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대략 3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 단계는 196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젠더 차이’(gender difference)에 초점을 둔 논쟁이다. 두 번째 단계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로 ‘여성들 간의 차이들’(differences among women)를 중심으로 한 논의이다. 세 번째 단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합적으로 교차되는 차이들”(multiple intersecting differences)에 대한 논의이다(Fraser, 1997).

### 젠더 차이: 평등 페미니즘 vs. 차이 페미니즘

첫 번째 단계의 ‘젠더 차이’에 대한 논쟁은 ‘평등 페미니즘’(equality feminism)과 ‘차이 혹은 문화 페미니즘’(difference/cultural feminism)간에 이루어졌다. 양 입장은 첫째, 젠더 부정의(gender injustice)의 원인과 본질, 둘째 젠더 부정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통한 젠더 정의(gender equity)를 성취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논쟁하였다. 평등 페미니스트는 성차별적 사회에서 젠더 차이란 남성 지배의 도구이며 여성의 종속을 합리화하는 기제라고 보았다. 따라서 젠더 차이에 대한 강조는 여성을 열등한 가사 일에 묶어두고 진정한 인간의 자아실현을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으로부터 여성을 주변화 시키고 배제시킨다고 지적하였다.

평등주의적 견해에서, 페미니즘의 목표는 젠더차이를 벗어 던지고 남녀 양성 모두에게 공통의 기준을 적용하여 평등을 성취하는 것이었다. 자유주의 페미니즘, 급진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 공히 이러한 평등을 성취하는 최선의 방법을 두고 지난한 논쟁을 벌였지만, 젠더 차이를 최소화하고 젠더평등을 이루고자하는 공통된 모습을 보였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후반에 걸쳐 지배적이었던 평등주의 전략은 1970년대 후반 들어 차이 페미니즘 혹은 문화 페미니즘에 의해 도전 받기 시작하였다. 차이 페미니즘은 평등주의가 기존의 남성의 활동만을 진정한 인간적 활동으로 간주하는 남성주의적 사고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여성의 활동을 평가 절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새로운 페미니즘은 젠더차이를 인정하고 여성성에 재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평가절하에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은 실제로 남성과 다르지만, 그러한 차이가 열등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차이 페미니즘의 견해는, 한편에서는 양육을 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여성은 경쟁적이고 호전적인 남성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입장과, 다른 한편에서는 우월성과 열등성의 논의를 벗어나서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 모두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양분되었다. 그러나 양 입장 모두 여성들의 잠재된 연대성을 동원 화하기 위해서 여성성(femininity)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젠더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젠더 정의를 달성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 여성들 간의 차이들

이렇듯 평등 페미니즘과 차이 페미니즘은 문제해결을 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1980년대 중반 두 번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젠더차이가 다른 차이들 특히, 인종, 종족, 섹슈얼리티, 계급의 차이들과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 자체가 거부되었다. 논의의 중심은 '젠더 차이'에서 '여성들 간의 차이들'의 문제로 이동하였다. 레즈비언 페미니스트와 유색(아프리카계, 라틴계, 유대계, 아시아계, 인디언) 페미니스트는 미국의 주류 페미니즘 운동은 모든 여성을 위한 유일한 페미니즘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때까지 페미니즘 운동을 주도해온 백인-앵글로-이성애-중산 계급 여성의 견해는 다른 여성들에게는 부적절하고 심지어 위험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여성의 젠더 정체성이 보편적이라고 가정한 차이 페미니즘은 실제 존재하는 다양하고 서로 다른 여성의 목소리에 곤혹스러워했다. 평등주의 페미니즘은 또한 모든 여성이 모든 남성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정도로 종속되어있다는 가정 하에, 백인-중산계급-이성애자 여성의 특수한 상황을 보편화하고 계급, 인종, 섹슈얼리티에 의한 현실의 위계질서를 은폐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결국 남성과 여성간의 유사성을 주장한 입장과 남성과 여성의 차이성을 주장한 입장 모두 여성들 간의 차이들을 간과했다는 공통된 비판에 직면하였다. 결과적으로 '젠더 차이'에 배타적인 초점을 맞추어 '자매 애'(sisterhood)를 성립하려는 시도는 1980년대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의 활성화라는 상반된 결과를 맞이하였다. 이제 정치의 장은 다양한 차이들을 정치화하려는 새로운 사회운동들의 각축장이 되었다. 동성애자 집단은 이성애주의(heterosexism)에 맞서 투쟁하였고, 흑인, 인디언, 그 밖의 유색인 여성은 인종적 억압에 맞서 투쟁하였다. 배타적으로 젠더차이에 주목하여 여성들의 연대를 주장하는 페미니즘 운동은 다양한 차이집단들의 등장과 더불어 그 존립근거 자체가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종속과 억압에 항거하는 투쟁의 전 영역에서 젠더투쟁은 계속되고 있었다.

## 차이의 정치

세 번째 차이에 관한 논쟁의 초점은 1990년 들어 '여성들 간의 차이들'에서 '다양하게 교차하는 차이들'로 옮겨졌다. 여성과 남성간의 차이 그리고 여성들 간의 차이에 대한 관심은 다양하게 교차되는 차이들과 젠더와의 관계에 대한 관심으로 이동하였다. 정치화된 전 영역의 차이들은 페미니즘 논의의 재료가 되었고, 종속과 억압에 관련된 모든 투쟁은 페미니즘과 연결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다양하게 교차하는 차이들'에 대한 인정을 주장하는 '차이의 정치'(politics of difference)는 자유주의 정치이론 속에 내장된 지배집단과 차이가 나는 집단에 대한 배제의 논리를 비판하고 있다(Young, 1990). 자유주의는 차이를 본질적인 것으로 가정하고 그러한 차이에 근거하여 그들을 평가절하하고 배제해왔다. 따라서 자유주의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차이를 제거하고 보편적이고 중립적인 기준에 의해 모든 사람을 평가한다고 지적한다. 자유주의의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분명히 성별, 인종, 문화, 연령, 경제적 상황, 섹슈얼리티 등의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나는 사람들에게 천편일률적인 기준과 규범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들 간의 차이를 간과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들에게 심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차이의 정치는 지배집단과는 다른 차이를 지닌 집단의 구성원들이 자신들만의 경험, 목소리, 분노, 필요를 공유하고, 부정의와 억압을 제거하기 위해, 차이집단의 정치 권력화(empowerment)를 주장하고 있다. 차이의 정치는 차이에 대한 긍정적 인정과 배려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정책을 요구하고 있다(Fraser, 1997).

차이의 정치는 자유주의의 개인주의에 대항하여 집단연대성을 발전시키고 있다. 자유주의는 모든 사람들을 인종, 성별, 종교, 민족적 차이와는 무관한 개인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특권집단과 차이집단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차이의 정치는 정책결정과정에 집단대표성의 인정과 모든 사람들을 경쟁하게 만드는 위계적 보상구조의 종식을 위해 집단 연대감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한다.

차이의 정치는 지배집단의 제도와 규범을 비판할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차이의 정치는 지배문화가 멸시하도록 가르쳐왔던 바로 그 정체성을 요구하고 그것의 가치를 긍정하고 있다. 차이집단의 속성과 특수성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주장은 결과적으로 지배문화의 상대화를 가져오고 있다. 페미니스트가 여성의 감수성과 양육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했을 때,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의 동성애혐오를 편견으로 묘사했을 때, 흑인들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전통을 긍정했을 때, 지배집단과 그들의 문화 역시 특수한 것으로 발견되었

다. 억압받아온 집단이 자신의 특수한 경험과 문화를 긍정하는 정치투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지배집단의 문화에 보편성을 부여하고 차이집단의 문화를 열등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어려워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 차이의 정치는 차이에 의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억압받고 불이익을 받는 모든 집단 구성원들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받고 동시에 정치, 사회, 경제적 평등 즉 새로운 사회정의(social justice)를 누리며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차이의 정치는 차이집단들의 연대와 다차원적인 정치세력화만이 여성의 억압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그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여성의 직접참여(empowerment)와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와 동시에 여성들 간의 차이를 배려한 노동권과 재분배 정책(redistribution), 그리고 다양한 정체성의 긍정적 인정(recognition)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의 도출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의 정치이론을 사회정책의 차원에서 구성해 볼 수 있는 적절한 사례로서 독신 모(single mother)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독신 모는 하나의 정체성 집단으로 볼 수는 없지만, 독신 모라는 상황 자체가 하나의 차이집단으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부정의를 모두 경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례연구의 이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미국사회 차이집단으로 독신모집단

### 미국사회에서 독신 모의 지위

미국사회에서 독신 모집단은, 성(gender), 인종, 계급, 문화, 정치적 억압과 부정의에 노출된 채, 사회적 관심밖에 위치해 있다. 독신 모에 대한 문제는 미국사회에서 여성을 비롯한 차이집단이 겪고 있는 부정의와 억압을 보여주는데 매우 적절하며, 차이를 가진 모든 억압받는 집단이 억압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유의미성을 지닌다. 이러한 독신 모집단에 대한 다차원적인 부정의는 미국복지정책의 주요근간인 AFDC프로그램의 성립과 그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과정을 통해 가장 잘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복지의존'은 '독신 모'와 등치되어 왔다. '복지의존'(dependency)은 남 성부양자 없이 공적 부조에 의존해 자녀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가난한 독신 모를 일컬어 왔다. 최근 들어 "복지의존"이란 용어는 "복지 어머니(welfare mother)"로 통용되고, "어린 흑인 미혼모"라는 이미지로 구체화되었다. 경제적 의미에서 타인이나 원조기구에 의존하고, 기혼여성이 갖고 있는 법적, 공적 정체성이 결핍된 사회적 지위를 가지며, 정치적으로 외부적 지배권력에 종속되어 있고, 도덕적·심리적 성격상 권력의지가 부족하고 과도하게

감정적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

### 산업사회에서 '의존'의 의미

산업사회 이전에 '의존'(dependency)이라는 용어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종속된 상황을 의미하였으나, 도덕적, 심리적 의미는 담고 있지 않았다. 이 시기 '의존'은 재산의 소유를 의미하는 '독립'(independence)과 상반된 용어로서, 타인에게 고용되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했다. 농노, 노예, 임금노동자, 여성, 남성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경제적 의존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의존은 일탈적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었다(Hill, 1972). 따라서 대체로 경제적 의존을 의미했던 "의존"의 개념은 경멸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었다.

산업자본주의의 등장과 더불어, '의존'의 의미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이 기간동안 백인남성노동자들은 '의존'의 상대어인 '독립'의 개념에 정치적, 경제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백인남성노동자들은 참정권 투쟁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독립을 요구하였고, 임금노동을 경제적 독립과 연결시켰다.

이제 경제적 독립이란 '가족임금'(a family wage) 즉 아내와 자녀를 충분히 부양할 만큼 돈을 버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독립'의 개념은 재산의 소유와 더불어 임금노동체계에 포함되는 경제적 독립을 의미하게 되었다. 결국 임금노동은 규범적(정상적)인 것이 되었고 임금노동체제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의존적으로 비춰지게 되었다. '의존'의 개념은 경제적 의존을 의미하며, 낙인과 일탈의 조건이 되었다.

따라서 산업자본주의에서 '의존'의 첫 번째 이미지는 자선이나 공적 부조에 의존하는 사람들로서 '구호에만 의존하는 사람들, 구호대상자'(the paupers)이다. 구호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은 가난할 뿐만 아니라 열등하며, 타락하고 자선에 대한 의존이 그들의 의지를 더욱 약화시킨다고 한다(Gordon, 1992). 따라서 구호대상자들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로 간주되었고, 구호대상자를 의미하는 의존은 도덕적/정신적 열등함을 포함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미지의 '의존'은 '식민지 원주민'과 '노예'를 함축한다. 원주민과 노예의 본질적 의존은 정치적 종속을 의미하며 "야만", "어린 아이 같은", "종속적인" 등의 심리적 이미지를 동시에 담고 있다. 세 번째 산업화시대 의존은 '주부'(the housewife)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출현시켰다. '가족임금'의 신화 이후, 백인남성은 임금노동을 통해 독립을 성취하였고, 임금노동체제에서 제외된 여성에게는 '의존'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었다. 이제 여성은 "파트너에서 기생자"로 전락하였고, 경제적 독립은 흑인들과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이야기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성 한 명의 임금만으로 가계를 책임질 수

있는 가정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에서 여성과 아동의 노동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임금의 이상은 미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가족임금의 신화로 인해, '의존'은 백인여성과 유색인종에게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제 의존은 일탈과 낙인의 조건이 되었고, 이전시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도덕적 열등성의 의미를 새롭게 갖게 되었다.

### ‘복지의존’의 탄생: AFDC 프로그램

미국에서 의존을 복지와 연결시킨 ‘복지의존’은 1890년부터 1945년 사이에 등장하였다. 구호대상자에 대한 19세기 후반의 논의는 진보주의 시대(Progressive Era)에 발전하여 뉴딜기간동안 정착되었다. 19세기 말 ‘의존’은 여성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제된 “좋은” 가정 내 의존과, 구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나쁜” 자선적 의존을 의미했다.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되며,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만이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낙인 되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복지대상자에 대한 도덕적 공격은 계속되었다. 게다가 뉴딜 정책은 두 개의 복지체계를 공고화함으로써 복지수혜자들에 대한 도덕적 열등함에 대한 낙인을 강화시켰다. 첫 번째 복지프로그램인 사회보험(social security) 즉 실업연금과 노령연금의 대상자는 도덕적 낙인 없이 수혜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복지라는 이름이 아니라 수혜를 받는 것이 당연한 명예로운 지위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백인 남성노동자의 가족임금의 대체를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백인여성과 대부분의 소수자(minorities)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와 반대로 두 번째 복지프로그램인 공적 부조(public assistance)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극빈자들에 대한 수혜라는 자선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이러한 공적부조프로그램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바로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of 1935) 제정과 함께 시작된 부양아동생계보조, ADC(Aid to Dependent Children)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가 없거나 무능력하거나 또는 실업상태에 있어서 지원이나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아동에게 재정지원을 하고자 만들어졌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여성의 역할에 대한 당시의 분위기를 반영하여 어머니들이 어린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 머무르면서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는 1962년 가정이라는 단위를 강조하기 위해 부양아동가정생계보조,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로 명칭이 바뀌면서 함께 바뀌었다. 그 이후 AFDC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의 가치관의 변화

와 함께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격려하는 경향이 강화되어 가정생활뿐 아니라 자활을 강화하는 목표를 중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와는 달리, AFDC는 그 실행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그러한 문제점은 AFDC정책의 근간이 되는 사상적 배경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AFDC는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 하여, 모든 인간은 각자의 경제적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할 것이 기대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는 일은 낙인(stigma)의 요인이 되는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사고에 기반 한 많은 공적부조 담당자들은 부조를 제공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무의식적으로 수혜자들에게 표현함으로써 수혜자들의 도덕성을 파괴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sup>1)</sup>

현재 미국에서 의존의 개념은 이전시기보다 더욱 심각한 도덕적 열등함을 의미하며, 여성화되고 인종 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의존 개념은 주요한 사회변환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첫째, 정치적, 법적 의존(종속)이 많은 부분 폐지되었다. 주부, 극빈자, 원주민, 노예의 후손들 모두 더 이상 시민권 혹은 정치적 권리에서 배제되지 않게 되었다. 둘째, 경제적 차원에서 가족임금의 이상은 남성 실업의 증가와 여성의 저임금노동으로의 편입 증가로 인해, 더 이상 규범이 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동시에 이혼이 일반적이 현상으로 자리 잡았고, 동성애자 운동으로 인해 전통적 가족형태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의존을 주로 경제적 의미로 연관시키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이제 의존의 의미는 정치, 경제적 차원보다는 도덕적/심리적 차원과 깊이 관련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변화된 복지이존의 의미는 '의존' 과 '가난한 독신 모' 를 정신분석학적으로 연결시키려는 시도에 의해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연구에 의하면, 미성숙한 집단으로서 독신 모는 의존적이고, 무반응 적이며, 불안정하며 어린아이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정신적 차원의 의존에 대한 논의는 '의존' 의 개념이 여성과 보다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인식을 공고화시켰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시작된 백인중산층 여성이 주도한 제2물결의 페미니즘 운동의 선전은 미국 내 공적원조의 일반적인 확대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남부지역에서

1) 공적부조의 정책결정자들은 가능한 한 부조의 이용을 줄이고 복지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수혜자들을 불쾌하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공적부조는 현금보다는 현물이나 교환권으로 제공되거나 욕구를 지속적으로 재평가하거나, 긴급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제공되거나, 불법이 발견되면 즉각 원조를 중단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현물로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수혜자가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자기결정능력에 대한 회의를 갖도록 만들었다. 둘째, 공적부조의 수혜자들은 사회보험 수혜자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조건 하에서 수혜가 주어졌다. 이들은 자격조건이 되는 자산검사와 더불어, 심리검사, 도덕적 차원의 감시감독, 가택방문을 감수해야했다.

이전 시기 배제되었던 소수집단을 AFDC에 참여시켰고, 백인여성들이 공적 부조 프로그램이 아닌 사회보험 프로그램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그러나 백인중산층 여성 중심의 운동은 백인이 아닌 다른 여성들의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복지의존의 개념은 여성 중에서도 흑인여성에게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1965년 존슨대통령의 비서였던 모이니한(Moynihan)의 흑인가정에 대한 보고서로 인해, 복지의존과 인종 그리고 도덕적/정신적 결함과 의 관계를 주장하는 입장이 힘을 얻게 되었다. 그 결과 복지의존에 대한 논의는 의존과 인종의 의미를 더욱 밀접하게 만들었고, 1970년대까지 '흑인독신 모'의 이미지가 복지의존의 이미지로 굳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복지의존은 복지라는 뜻에 걸린 "십대 흑인 미혼모" 혹은 "아이를 키우는 아이"의 이미지로 전환되었고, 복지가 이들을 계으르고 수동적으로 만든다고 여겨지게 되었다.

### 복지의존 개념의 악화: TANF프로그램

1990년대 들어, 복지의존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미국사회의 주요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보수진영의 학자 및 정치인들은 공적 부조가 근로양식, 결혼행태 및 자녀양육 행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하고 있다(Esping-Anderson, 1990). 일반적으로 부조가 자녀의 출산을 촉진시키고, 그에 따라 부조를 받는 가정을 대가족인 경향이 있다고 가정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부조를 받는 가구의 평균 가족 수는 일반가구의 전국평균인 3명이다. 결국 부조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빈곤여성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자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Abramovitz, 1995). 또한 보수진영은 공적 부조가 자녀가 있는 경우에 생활비를 제공하기 때문에 혼외출산을 증가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연구는 이와 다른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이 되었던 부조수혜 여성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부조를 받을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했다고 응답하지 않았다(Williams, 1992).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다른 연구들도 부조의 수혜와 혼외 출산 간에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Jencks&Edin, 1990).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진영은 복지가 미혼 임신율 유인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가정 하에, 복지정책의 장기 수혜자, 십대 임신, 높은 미혼 출산율간의 관계를 정책 입안 시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어린 미혼모들의 출산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AFDC의 수혜기간을 제한하는 입법을 통과시켰다. 1994년 제정된 근로 및 책임에 관한 법률(Work and Responsibility Act)은 AFDC수혜자들이 18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는 현금 보조를 2년으로 제한하였다. 어린 미혼모들의 개인적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혜 2년 후 일방적으로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미혼모와 아동의

빈곤을 초래하게 되었다.

1996년 클린턴 행정부는 60여 년간 지속되어온 AFDC, JOBS<sup>2)</sup>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근로연계복지정책인 빈곤가구한시부조,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을 실시하였다. 연방정부로부터 주정부로 모든 책임을 이양하며 복지수급자와 제공자에게 강력한 요구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수급자는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하고 주정부도 복지수급자의 근로요구를 충족시킬 책임을 갖도록 하였다.<sup>3)</sup> TANF의 수급기간은 가족당 5년으로 제한되며, 성인수급자는 급여수급 2년 이후 또는 주정부가 정하는 시기에 주당 20-30시간 근로해야하며, 6세 이하의 아동을 둔 독신 모의 경우 20시간을 근로해야 한다.

JOBS프로그램과 달리 TANF는 탁아서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독신 모의 노동시장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복지급여가 중단되기 때문에 여성과 아동은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독신 모 정책은 잔여주의 적 복지정책으로 수혜대상자의 제한, 제한된 서비스 실시기간, 열등처우의 원칙, 민간주도의 서비스 등을 특성으로 가진다. 최근 실시되고 있는 독신 모 정책은 복지와 노동을 연계하여 독신 모의 자립을 추구한다는 명분과는 상반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독신 모의 노동체계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양육프로그램이 철저히 지원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양육보조가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독신 모는 노동도 양육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여전히 경제적 독립을 할 만큼의 노동소득도 확보할 수 없고, 동시에 양육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무책임한 엄마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미국의 독신 모 정책은 미국사회에서 차이집단을 취급하는 사고와 방식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2) 1988년 제정된 가정지원법(The 1988 Family Support Act)으로 직업기회?기본기술(JOBS: Job Opportunities and Basic Skills)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이 프로그램으로 AFDC는 독신 모가 가정에 머무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프로그램에서 근로를 의무화하는 프로그램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일반노동자에 비해 교육과 기술의 측면에서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1980년대와 같이 사회실업률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취업은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 또한 일자리를 구한다할지라도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이 구하는 직장이란 최저임금의 직장으로 이들이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직장에서는 AFDC에서는 제공되는 의료보호혜택이 부재했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취업보다는 의료보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조가 더 유리했다. 또한 부조의 주요 대상자인 여성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양질의 육아서비스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부조를 받는 여성들이 대거 취업한다는 것은 어려웠다.

3) TANF프로그램의 근간이 되는 복지개혁법은 부조에 사용될 수 있는 재정을 동결한 상태이고 주정부가 참여요건을 달성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의 제한으로 인해 주정부가 빈곤한 가구에 효율적으로 부조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돕기보다는 단순히 부조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데 있다. 복지개혁법의 규정 가운데, 담당건수 감소신용(caseload reduction credit)라는 규정은 부조담당건수가 감소되면 원래의 부조수혜자들이 취업을 했는지와는 상관없이 감소된 만큼의 주정부 참여요건을 감소시켜주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부족한 반면, 근로참여요건에 대한 규정은 부조를 받는 가구의 수를 줄이는 것이 유리하도록 되어 있어 주정부가 효과적인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조를 줄일 위험이 크다.

이러한 결과는 근본적으로 차이로 인해 억압받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억압을 부정의로 간주하지 않는 지적전통에 기인한 것이다. 차이는 열등하고, 일탈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사고에서 차이집단이 경험하는 부정의를 제거하기 위한 배려가 나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차이집단에 대한 재분배 정책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정의 결합만이 이러한 부정의를 제거할 수 있다. 독신 모 정책에서도 독신 모들이 겪는 경제적 불평등과 문화적 불평등은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문제라는 인식하에, 이를 해소하려는 인식론적 전환과 정책대안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차이집단으로 독신 모집단

미국사회에서 독신 모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치, 경제, 문화, 도덕적 불이익과 부정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차이집단이 겪게 되는 억압의 유형인 착취, 주변화, 무력화, 문화적 제국주의, 폭력 등은 모두 미국사회에서 독신 모집단이 겪고 있는 상황과 일치함을 보이고 있다.

첫째, 독신 모집단은 경제적 착취와 성적착취의 구조적인 억압(exploitation)을 받고 있다. 독신 모들은 적절한 양육서비스가 부재한 상황에서,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또한 양육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에만,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가사노동이 국가제도에 의해 착취되는 공적 가부장제 속에 살아가고 있다. AFDC대상자인 독신 모가 임금노동체계에 편입되는 경우, 그들은 공적인 경제적 지원을 박탈당하게 된다. 따라서 독신 모들은 부족한 생계비를 보완하기 위해 음성적으로 저임금노동을 하게 되며, 그들의 노동은 적절한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독신 모들은 독신 모가 되기 이전에도, 교육, 직업훈련,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경우가 크기 때문에, 고임금 노동체계에 편입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접대부, 청소원, 보모, 가정부 등과 같은 저임금의 파트타임 노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양육과 노동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전일제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 결과 독신 모집단은 대체로 극단적으로 빈곤한 삶을 살고 있으며, 빈곤의 상황은 계속해서 악순환되고 있다. 독신 모집단이 가난의 순환적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독신 모라는 구조적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하에, 사회에 의한 공적인 양육서비스와 적극적인 고용촉진 정책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저학력의 미숙련 노동자들이 주로 갖게 되는 보호제 공직업(간호사, 보모, 접대부, 점원, 가정부, 청소원) 등과 같은 육체적 돌봄을 행하는 직업에 대한 가치평가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독신 모집단은 주변화(marginalization)의 억압을 겪고 있다. 주변화는 일차적

으로는 경제적 주변화이지만, 그 결과 나타나는 사회적 주변화가 이들을 더욱 괴롭히고 있다. 기존의 노동체계에 현재에도 미래에도 진입하지 못하며, 사회생활에 대한 참여가 거부됨으로써, 심각한 물질적 결핍에 빠져 있다. 이들의 물질적 지원은 주로 복지서비스에 의한 재분배정책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에게 지원되는 복지는 극단적인 빈곤을 해결할 만한 수준에서 진행되기 보다는 자선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복지서비스의 실행과정에서 관료들에 의한 자의적인 결정과 프라이버시의 심대한 침해를 경험하고 있다. 독신 모들은 지속적으로 정신감정, 자택조사를 당하고,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료의 감시와 감독을 받고 그들의 결정에 따라야만 한다. 그러나 국가복지프로그램 속에는 체계적인 자활프로그램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켜 주변화된 상황을 탈피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독신 모들의 주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한시적으로 보살핌과 의존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있고, 이는 비난받을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타인에게 보살핌과 의존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결정의 자유와 자존감을 박탈하는 것은 부정의한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존이 인간 삶의 기본조건임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적인 재분배정책을 통한 경제적 지원 또한 필수적일 것이다.

셋째, 독신 모집단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됨으로써 무력함(powerlessness)을 겪고 있다. AFDC에 대한 60여 년간의 문제점 노출과 그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지만, AFDC의 직접적인 대상자들의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논의에서 항상 배제되어 왔다.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은 개선되기보다는 더욱 악화되게 되었다. 1996년 TANF로의 정책변환 과정 속에서도 독신 모집단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개인적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수혜기간 감소와 노동을 위해 필수적인 양육서비스의 부재 등은 독신 모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주변화 되고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독신 모에게는 어떠한 삶의 대안도 존재하지 않는다. 독신 모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무력할 수밖에 없으며, 국가의 결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독신 모집단이 겪고 있는 삶에 대한 그녀들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줄 통로가 필요하다. 자신의 상황을 직접 말하고, 논의하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넷째, 독신 모집단은 문화적 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의 가장 큰 희생양이다. 사회의 지배집단의 문화와 경험과 다른 문화와 경험을 공유한 차이집단으로서 독신 모집

단은 일탈적이고 열등한 집단으로 낙인 되고, 문화적인 지배를 받는다. 지배집단이 만들어 낸 고정관념에 의한 희생자로서, 독신 모는 경제적 문제와 그 보다 더 중요하게 정신적/도덕적 결함을 가진 사람들로 비난받고 있다. 독신 모는 성적으로 문란하며, 무능력하고, 게으르고, 복지에 의존에 살아가는 기생적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고정관념 지어져 있다. 타인에게 의존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서 자존감을 박탈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정의한 일인 것이다. 차이를 가진 사람들의 차이를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차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의 독신 모 정책

한국에서 독신 모는 모자가정이라고 칭하고 있다.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모자가정의 여성가구주(이하 독신 모)는 대부분 저임금의 불안정한 직종의 종사자이며, 그들이 겪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 빈곤이며, 그 외에 자녀문제, 사회 심리적 문제로 밝혀졌다. 한국의 모자가정은 요보호여성으로 구분되어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로 규정되어 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 법, 모자복지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생계비를 지원받거나 자녀교육보호, 의료보호, 취업알선, 시설보호 등의 공적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보호수준이 낮고 보호기준이 다양하여 모자가정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모자복지관련 정책은 주로 저소득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식의 잔여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인숙, 1997).

한국에서 모자가정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과 정책은 1989년 모자복지법이 제정된 후 1991년부터 시작되었다. 모자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모자가정의 범위가 생활보호대상자에서 7등급까지 확대되었고, 이혼녀와 미혼모까지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모자가정에 대한 정책은 여전히 저소득 모자가정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부 재정도 부족하고 프로그램의 전문성도 미흡하여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지원을 받는 가정은 99년 말까지 54, 426세대이며, 이들에게 자녀학비(자녀1인당 월 3만8천3백원), 6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양육비(자녀1인당 월 1만1천7백 원), 생업자금 융자(연리 8.0% 1200만원이내)가 지원되고 있다(박영란, 2002)<sup>4)</sup>.

한국에서 여성가구주와 자녀로 구성된 모자가정은 전체가구의 6.1%를 차지하며 이들 가운데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저소득모자가정세대는 5.6%으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전체모자가정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소득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빈곤모자가정이 전체 모자가정 중 어느정도를 차지하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는 상황이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2).

최근 들어, 저소득 독신 모들은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반 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계층의 생계비 급여와 취업교육, 취업 및 창업 지원의 복지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 독신 모에 대한 지원도 독신 모집단이라는 특수한 현실적 상황에 대한 지원 이라기보다는 저소득층의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지원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 독신 모집단이 차이집단으로서 겪고 있는 억압과 부정의 자체에 대한 검토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부재한 현실이다.

### 한국사회에서 차이집단으로서 독신 모

한국사회에서 차이집단으로서 독신 모집단은 착취, 주변화, 무력화, 문화적 제국주의의 측면에서 배제와 부정을 경험하고 있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독신 모집단은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로서의 위치와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로서의 이중적 존재규정에 의해 구조적 착취를 받고 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데리고 살고 있는 독신 모에게 있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은 가장으로서 필수 생계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내 성차별구조의 모순을 그대로 담보하게 된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노동시장 내에서 저임금, 파트타임, 용역직과 같은 비정규직 노동에 집중되어 있고, 서비스직, 단순노무직과 같은 낮은 지위에 집중되어 있다.<sup>5)</sup> 이러한 구조적 성적 노동 분화에 독신 모집단은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독신 모집단은 대부분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자립적인 경제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저소득 독신 모집단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90%에 이르고, 이들 중 2/3 는 피고용자로, 1/3은 영세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sup>6)</sup> 또한 많은 여성들은 자녀양육기간동안 노동시장에서 빠져나와 있다가 재취업을 할 경우, 주로 하향취업을 수용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중년층 여성의 취업에 상대적으로 더욱 닫혀있기 때문에,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독신 모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하여, 노동시장의 성차별과 저임금에 더욱 취약한 실정이다.

독신 모집단은 노동자로서의 제약과 동시에 어머니라는 지위로 인해 제약을 받는다.

5) UNDP에 의하면, 영국, 미국은 소득수준이 남성의 61%, 스웨덴 68%, 호주 67%이지만, 한국 여성의 경우,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해 소득수준이 남성의 45%에 불과하다(UNDP, 2000). 남녀 임금격차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여성노동자의 평균임금은 남성노동자의 63% 수준에 머물러 있다(통계청, 2001).

6) 저소득 모자가정의 독신 모의 직종을 살펴보면, 식당일 21.2%, 파출부 10.6%, 공장일 9.4%, 자영업 7.3%, 보험설계사 5.9%, 판매직 5.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모자가정의 한달 평균 수입은 51.8%만원으로, 이들 80%이상이 항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정책연구회, 2002).

수많은 독신 모들은 일을 하면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내노동이나 파트타임 서비스, 판매직, 식당, 파출부 등 노동조건보다는 두 가지 역할을 최대한 소화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자녀양육비와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늦은 밤이나 새벽시간을 이용해 이중삼중의 노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독신 모집단의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내 성차별과 주변화된 노동직업에 대한 적절한 가치평가와 그에 따른 임금이 보장되는 구조로의 개편이 요구된다. 또한 양육과 노동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독신 모들의 노동착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양육서비스와 교육지원체계가 필수적일 것이다.

둘째, 한국사회에서 독신 모집단은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을 통해 영속적인 주변화의 위협에 처해 있다.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장기간 노동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모 등은 남성가장을 중심으로 편재되어 왔던 가족구조로 인하여 일차적으로 자원접근이 제한되거나 통로자체를 상실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이들의 경제적 빈곤을 심화시킨다. 이들은 생계곤란은 물론 아동양육에 대한 기본적인 투자마저도 제약을 받게 되어, 장기적으로 빈곤의 재생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셋째, 한국사회에서 독신 모집단은 자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결정과정에 소외되고 있다. 한국의 많은 독신 모들은 자신이 복지수급의 대상자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결정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독신 모집단은 정치적인 무력함(powerlessness)을 보이고 있다. 결국, 한국의 독신 모집단에 대한 정책은 행정 관료들의 불명확하고 임의적인 판단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

독신 모집단의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감안 없이, 저소득층이라는 불명료한 카테고리 안에 독신 모집단을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독신 모집단에게 공적 부조를 제공하는 근거가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모자복지법은 이들이 겪고 있는 구조적인 억압이나 부정의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극소수의 절대빈곤층에 대한 최후의, 최소한의 보호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잔여주의 복지국가의 대표인 미국보다도 한국의 독신 모집단에 대한 지원은 훨씬 미흡하다. 미국의 독신 모들은 AFDC하에서 기본적으로 생계급여와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나, 한국의 독신 모는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에 한정된 복지급여만을 받고 있으며, 아동을 부양하고 보호하는 노동에 대한 어떠한 경제적 보상급부도 받고 있지 못하다.

넷째, 한국사회에서 독신 모집단은 공적인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자녀를 키우

며 생계를 유지하는 이중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인식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이혼한 여성들, 미혼모 등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편모슬하', '애비 없는 자식' 등과 같은 사회통념은 한국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제국주의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다. 지배집단의 문화와 생활방식만이 정상적 혹은 규범적이고, 지배집단과는 다른 문화와 생활양식을 가진 집단은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인 것으로 낙인하고 배제하는 사회에서, 독신 모집단과 같은 차이집단은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도덕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치부될 것이다. 차이집단이 가지는 차이는 우열을 판단하여 차별할 수 있는 종류의 문제가 아니다. 독신 모집단은 양부모가족에 비해 혼자서 자녀양육과 생계를 책임지는 그 리고 사회의 많은 배려를 받아야 함이 당연한 집단이지, 절대로 도덕적 비난과 부정적 인식을 당해야 하는 집단이 아니다. 한국사회에서는 독신 모집단의 차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 ‘차이의 정치’에 기반한 정책 재구성을

지금까지 차이집단으로서 독신 모집단이 경험하는 부정의와 억압에 대해 살펴보았다. 독신 모집단은 물리적인 조건과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의 모든 측면에서의 배제와 무관심으로 소외 받아왔다. 독신 모집단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집단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유동적인 의미에서 차이집단일 뿐이다. 독신 모집단은 경제구조 적 측면에서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집단으로서, 부정적 낙인과 방치가 아닌 배려가 필요한 집단이다. 타인에 대한 의존과 배려가 근본적인 인간조건으로 인식되고, 이러한 인식에 기반 하여 사회경제적인 배려가 진행되는 것이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회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독신 모집단의 세계적인 증가추세와 더불어, 이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사회부정의의 문제는, 한국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사고와 변화된 여성관간의 괴리, 경제적 곤란 등에 기인하여 증가하는 이혼율, 결혼관계에 대한 새로운 사고에 의한 미혼모의 증가 등은 현재 한국사회가 경험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전통적인 남성중심의 가족형태의 회복만이 진정으로 바람직하고 그 이외의 가족집단은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이기 때문에, 지배적 가족집단과 차이가 나는 모든 집단을 배제하는 것은 부 정의한 것이다. 변화된 현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배려가 훨씬 정의로울 것이다. 차이를 부정하며, 동질화만을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합과 사회정의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차이를 부정한다고 해서, 차이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도 아니며,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질화될 수는 없

다. 차이를 모두 제거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일이다. 차이를 인정하며, 그들을 배려하는 정책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수립과 사회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독신 모집단을 차이집단으로 인정하려는 노력과, 독신 모집단 자신의 목소리와 경험을 정치에 반영할 통로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자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정책의 수립과 실행과정에 직접 목소리를 냄으로써, 진정으로 필요하고 발전적인 정책 배려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나경희, “미국사회복지정책의 동향: AFDC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통권 제23호, 1994.
- 박병현·최선미, “사회적 배제와 하층계급의 개념 고찰과 이들 개념들의 한국빈곤정책에의 함의,” 『한국사회복지학』제45집, 2001.
- 박영란,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8.
- 박영란 외,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0.
- 송다영, “사회적 배제 집단으로서의 저소득 모자가족과 통합적 복지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54집, 2003.
- 여성부, 『2003-2007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부 정책총괄과, 2002.
- 이선우, “미국의 사회복지: 1996년의 복지개혁에 대한 쟁점과 분석,” 『동향과 전망』97년 봄호, 1997.
- 테레사 콜라빅 외, 한국여성연구회 역,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새물결, 2000.
- 한국여성정책연구회, 『한국의 여성정책』, 미래인력연구원, 2002.
- Abramovitz, M.,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in NASW, *Encyclopedia of Social Work*,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1995.
- Amott, T., “Black Women and AFDC: Making Entitlement out of necessity,” in L. Gordon(ed), *Women, the State and Welfare*,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90.
- Asen, Robert, “Women, Work, Welfare: A Rhetorical History of Images of Poor Women in Welfare Policy Debates,” *Rhetoric & Public Affairs* vol.6 no.2, 2003.
- Esping-Anderson, G.,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 Fraser, Nancy, *Justice Interruptus: Critical reflections on the “postsocialist” Condition*, Routledge, 1997.
- Gordon, Linda, “Social Insurance and Public Assistance: The Influence of Gender in *Welfare Thought in the United States, 1890-1935*,”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97, no.1., 1992.

Graebner, William, "The End of Liberalism: Narrating Welfare's Decline, from the Moynihan Report(1965) to th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Act(1996)," *Journal of Policy History*, vol.14 no.2, 2002.

Heidenheimer, Arnold, *Comparative Public Policy*,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3.

Hill, Christopher, *The World Turned Upside Down: Radical Ideas During the English Revolution*, New York: Viking, 1972.

Jencks, C. & Edin, K., "the Real Welfare Problem," *American Prospect*, vol. 1, 1990.

Morgen, Sandra, "The Politics of Welfare and of Poverty Research," *Anthropological Quarterly*, vol.75 no.4, 2002.

Tong, P. R., *Feminist Thought*, Westview Press, 1998, 이소영역, 『페미니즘 사상』, 한신문화사, 2000.

Williams, L. A., "The Ideology of Division: Behavior Modification Welfare Reform Proposals," *Yale Law Review*, vol. 102, 1992.

Young, Iris Marion,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Young, Iris Marion, *Intersecting Voices: Dilemmas of gender, political philosophy, and polic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도서안내

정치 이데올로기라는 기제를 통해 규명한 현대의 정치현상

## 현대정치의 이념구조

■ 주요목차

- 현대의 정치이념
- 소련의 정치이념
- 중국의 정치이념
- 개도국의 정치이념

조정남 저 / 값 15,000원

 교양사회



## 러시아의 여성성과 여성문제

박 창 규 (고려대 평화연구소조교수 러시아지역학)

새로운 변화는 스탈린 사후 많은 수의 가족에 관한 법률과 칙령이 폐지되고 합법화되었다. 그밖에도 여성의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수단이 강구되었으며, 여성들 자신과 자녀, 그리고 노동여건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



### 서론

1991년 구소련의 해체와 이에 따른 시장경제체제로 전환과 정치적 민주화는 새로운 사회 질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간을 양분시켰을 뿐 아니라,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를 위시한 탈공산주의 국가들은 과거 공산주의 체제가 제공한 사회보장제도가 축소, 소멸함에 따라 구제도의 수혜자였던 여성들은 새로운 체제전환기에는 상실자로 자리 잡게 되었다. 문제는 여성이 과거 소련 시절에 비해 얼마나 많이 여성성을 상실했느냐, 아니면 여성이 남성보다 얼마나 더 지위를 잃었는가 하는 문제에 도달하게 된다.

소련 초기, 여성의 정치적 입지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이었다. 볼셰비키혁명 이전의 짜르체제 아래서 가축과 다름없는 취급을 받아온 농노계층의 여성까지도 혁명적인 변화



▲ 러시아의 크렘린궁 전경

속에서 단시일 내에 시민계급으로 급상승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10월혁명이 이룩한 공로 중의 하나로 인정된다. 여성 불평등조항이 일거에 폐지되고, 모든 여성에게 참정권이 부여되어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그 후 여성의 사회진출은 급진전하였고, 학계, 예술계, 전문직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많은 여성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혁명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련여성들의 가사노동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여성의 가사노동을 대신해 줄 기관 및 체제의 성립도 매우 미약한 것이었고, 가족 내의 문화 역시 가사는 전적으로 여성의 부담으로 생각하는 전통적 사고에서 탈피하지 못하였다. 소련여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소련여성의 가사노동이 높은 교육열 및 직업에 대한 애착을 사회화시키는데 커다란 방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법적인 평등, 가시적인 평등은 보장된 상태이나 암시적이며 전통적 여성에 대한 차별인식이 철폐되기에는 좀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서구 선진국 여성들이 오랜 기간동안 투쟁을 통해 참정권을 얻어 낸 반면, 소련 여성들은 만인의 평등이라는 혁명적 기치아래 참정권을 갖게 되어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을 정립시킬 기회를 스스로 갖지 못함에 따라, 혁명이후에도 소련여성들은 전통적 여성성으로 남아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여기서는 시기별로 러시아여성들의 정체성 즉 여성성의 변화를 제정러시아, 혁명 전후, 스탈린 시기, 체제안정과 체제전환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여성성의 역사적 연속성이나 단절성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러시아 여성성의 의미를 역사적 맥락에서 고찰한다.

## 전통적 여성성

### 희생과 구원의 상징인 어머니와 성모 마리아

러시아는 여성문제에 관한 한 몇 가지 수수께끼를 갖고 있다. 그중 하나는 어떻게 다른 모든 면에서는 낙후되어 있던 19세기의 러시아가 여성해방에 있어서만은 유럽 내에서 가장 선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남녀평등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던 사회주의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전통적 가부장적 틀은 전혀 사라지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어머니-대지’, ‘어머니-조국’ 하는 식으로 어머니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가 있는가 하면, “닭이 새가 아니듯, 여자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속담처럼 극도의 남존여비 식 사고가 공존하는 곳이 러시아이다. 어머니는 숭배하면서 여성은 비하하는 자기 모순적인 경향, 희생과 구원에 연관시켜서만 여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일방적인 전통이 러시아에는 분명히 존재한다.

희생과 구원의 상징인 어머니상에 대한 동경은 또한 러시아인들의 성모 숭배 전통에서 연유된 것이기도 하다. 기독교 문화권이 제시해 온 마돈나의 이상형과 기존의 신화적인 모성 숭배인 ‘대지의 여신’, ‘대지의 어머니’ 등이 합쳐진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여성은 모성으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인들에게 있어서 여성성이란 곧 모성을 지칭하는 것이며, 반면 모성이 아닌 여성성은 마치 악의 근원이자 상징인 것처럼 간주되었던 것을 쉽게 예술 작품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1)</sup>

전통적인 러시아 여성들의 삶에는 노동과 여가생활, 모성애와 자녀양육, 여성교육과 연애 등의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 이외에 전통적인 러시아 사회 속에서 여성들의 열악한 신분적 상황을 설명한 테렘과 남편의 아내에 대한 구타, 이혼 등이 그 시대의 일반적인 여성성의 형태를 보여준다.

### 테렘

테렘의 기원은 16세기에서 17세기 러시아 귀족 여성들의 삶의 공간이 테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테렘의 기원에 대해 몽고의 통치하에서 귀족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피

1) 단편 『크로이체르 소나타』, 중편 『가정의 행복』 등, 실제로 “바바(baba)”라고 통칭되는 보통 러시아 여성의 전형적인 모습은 거의 중성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강인하며 굳센 모습으로, 남성에게 대립되거나 종속되는, 즉 소위 말해 여성답다고 표현될 수 있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여성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다. 김진영, “영화로 본 러시아 여성”, 『연세여성연구』 제2호, 1996, pp. 124-125.

난처로서 만들었다는 견해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자벨린은 이러한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였다. 그는 러시아 여성들의 테렘에서의 생활은 금욕주의 정신을 강조하는 비잔틴의 종교적 영향력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속세를 떠나 은둔생활 함으로서 수도원적 이상 혹은 수도사적 이상을 실현하고자하는 러시아인들의 종교적 열망에서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로서 키예프공국 시절에 귀족계층 여인들의 수도원 생활은 하나의 유행처럼 여겨졌다. 특히 과부들 가운데 자식이 없을 경우는 수도원에 입문하여 여승이 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속세를 떠나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경건한 삶의 유형으로 인식되면서 이러한 수도원적 삶을 수도원에서만이 아니라 구체적 현실 속에서 실현코자하는 종교적 열망에서 테렘이 출발하였다는 것이다. 즉 수도원적 이상과 현실과의 접목 속에서 여성들의 테렘이 생겨났다는 것이다.<sup>2)</sup>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테렘을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대표적 현상으로 지적하는 당시 외국인들과 러시아 인텔리겐치아들에게 대한 반기라고 볼 수 있다.

다른 견해는 세습귀족들과 공후들, 왕가들과의 정략결혼 등에 사용되기 위해서 처녀들의 순결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테렘을 만들었다는 것이다.<sup>3)</sup> “돈은 어두운 곳에 여인은 좁은 곳에 가두어라”는 17세기의 속담에서 사회에 공개되지 않은 여인의 가치는 높이 평가되었기 때문에 테렘제도가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종교적 열망에 기인하든 혹은 정략결혼을 위한 높은 상품으로써 사용되든 테렘 속의 귀족여성들은 철저히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다는 사실이다.

부유한 보야르들과 왕족들과 가까운 공후들 이외의 다른 계층들에게서 이러한 테렘을 갖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때문에 테렘은 귀족계층의 여성과 그 외 계층의 여성들을 구분 짓는 귀족계층의 전유물임을 의미하는 표시였던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테렘이 귀족여성들의 사회적 특권을 의미하는 표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술한대로 사회로부터 격리당한 폐쇄된 귀족여성들의 삶이 고독과 단조로움, 지루함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사회와 격리됨으로서 여성들로 하여금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은 단절되었으며 이는 여성을 가정의 울타리 속에 가두어두는 전통적인 러시아의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여성의 억압적 구조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2) И. Е. Забелин, Домашний быт русских царств в XVI и XVII столетиях, pp. 423-437.

3) Н. А. Пушкирева, Частная Жизнь русской женщины, p. 45.

## 구 타 (가정폭력)

남편에 의한 아내의 구타는 러시아 전통적인 러시아 사회 속에서 비교적 교육을 적게 받은 소시민들, 상인들, 농민들의 가정에서는 매우 보편적으로 일어났던 현상이었다. “여성의 일상생활은 항상 남편에게 두들겨 맞는 것이다”,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스프는 맛있어진다”라는 속담에서도 남편에 의한 아내의 구타가 얼마나 보편화되었는가를 보여준다.<sup>4)</sup> 이러한 남편에 의한 아내의 구타는 혁명 전까지 변함없이 지속되었고, 전통적인 러시아 여성들의 고단한 삶은, 자살을 택하거나, 혹은 수도원으로 도주로 벗어날 수 있었다. 간혹 남편에게 대항하여 살해하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그 어떤 이유로든지 남편살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간주되었다.

전통적인 러시아 사회에서 여성들이 열악한 신분적 상황에 처하게 된 데에는 정교회의 절대적 영향력 때문이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성경구절에서 원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여자에게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타락의 근원자로서 여성관은 여성에 대한 시각은 중세의 보편적인 세계관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중세 이단과 마술에 대한 편견에 여성이 반드시 결부되는 것은 일반적 특징이었다. 네스토르도 “특히 여성을 통해 사탄적인 마술이 이루어지며 귀신은 여성을 유혹하며 여성은 남자를 유혹 한다”고 지적하였다.<sup>5)</sup>

## 이 혼

이혼은 러시아의 전통적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이혼이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였다. 결혼은 신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는 정교회적 가르침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짐으로서 이혼이란 단순히 부부간의 결혼파기만이 아니라 신의 섭리에 대한 위반으로 해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첫째, 부부 가운데 한사람이 사망할 경우였다. 둘째, 부부 가운데 한사람이 수도원으로 입문하는 경우였다. 수도원으로 입문은 세상과의 결별, 다시 말해 세상에 대한 죽음을 선언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이혼이 허용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악용하여 이혼을 위해 수도원에 보내는 역현상들이 종종 발생하였다. 셋째, 불구자와의 결혼 시 이혼이 허용되었다. 여기서 결혼생활도중 노쇠나, 불치병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해당되지 않았다. 다만 결혼 전에 불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강제로 결혼하였을 경우에 해당되었다. 넷째, 유형이나 감금으로 인하여 배우자중에 한 사람이 장기간 부재할 경우 가능하였다.

4) Н. А. Пушкарёва, Частная жизнь русской женщины р. 189.

5) О. В. Рябов, Русская Философия женственности, (Иванов, 1999), pp. 10-12.

예를 들면 18세기에 이혼사례가 급증하였는데 가장 주요한 원인은 시베리아전쟁 이후 남자들의 장기간의 군복무로 인하여 여인들의 재혼이 증가하였다. 다섯째, 간통의 경우에 이혼이 가능하였다. 이혼사유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원인이 바로 간통이었다. 이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부부간의 정절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십계명의 제6계명을 위반한 것으로 이혼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sup>6)</sup>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혼은 있지만 이혼은 없다”라는 러시아 속담이 이를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혼을 제기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변화되었다. 이혼을 위해서는 부부쌍방간의 합의와 종교 감독국의 이혼허가서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만약에 여성이 이혼을 원할 경우 남편이 이를 거절한다면 현실적으로 이혼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남편이 이혼을 원할 경우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아내를 심하게 구타함으로써 이를 견디지 못한 아내가 수도원으로 친정으로 도주하게끔 하였다.

20세기 와서도 여성의 입장은 예전과 다를 바가 없었다. 러시아여성노동자들의 경제적 자립도는 모든 유럽 국가에서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여성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유리, 도기, 벽돌제작 등 비 숙련 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되었으나 기술훈련을 위한 전문학교도, 여성노동자보호를 위한 보호법도 없었다. 특히 농촌여성들의 생활은 대단히 피폐하여 어떤 의미의 권리조항도 부여되지 않았다. 계급갈등, 경작지 부족, 과중한 세금, 주기적 흉년 등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빈곤이 많은 여성을 매춘의 길로 몰았다.

1843년부터 매춘은 경찰의 엄격한 감시를 받게 되는 신종범죄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짜르 러시아에서는 여성들의 시민권은 전혀 보호되지 않았고 두마선거나, 지방의회 및 지방행정부의 대표를 선출할 때도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특히 러시아민법의 106조, 108조, 179조에는 여성의 의무조항이 명기되었는데, 그 중 한 구절을 인용해 보면 “모든 여성은 가장인 남편에 순응해야 하며, 사랑과 존경, 무조건적 복종을 바쳐야 한다.” 결혼한 여성은 남편의 동의 하에서만 사유재산을 소지 할 수 있었고, 별거할 수 있었다. 이혼절차는 매우 까다롭고 모욕적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그 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 보통의 여성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였으며, 자녀양육권도 남성에게 있었다. 상속권 역시 불평등하였으며, 여성의 모든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 남편의 동의가 필수적이었으므로, 가족 및 사회 안

6) 이러한 시각에 대해 미르노프는 색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1850년대까지의 이혼사유는 대체로 부부간의 장기간의 부재가 주를 이루었다면 20세기초에는 부부간의 부정(부정)이 주요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1841-1850년 사이 이혼 사유 중에 간통이 차지하는 비율은 4%, 시베리아로의 유형이나 장기간의 부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53%였다면, 1905-1912년 사이 간통이 98%, 장기간 부재로 인한 이혼사유가 0.3%에 불과하였음을 지적하였다. B. H. Мирнов, Социальная история России, p. 176. 남석주, “소비에트 정권초기의 여성문제” 『슬라브학보』(슬라브학회, 2001) 제16권 제1호, pp. 419-426 재인용.

에서의 여성의 위치는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당시 러시아여성의 위치는 모슬림 여성과 유사한 점이 많았다. 지참금을 소지하고 결혼하여 아이를 갖고 남편에게 봉사하며 노동하는 생활에 익숙해 있었던 것이다.<sup>7)</sup>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세기말 인텔리겐치아들 가운데 전통적인 러시아의 가부장 사회 속에서 가족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체르니쉴프스키는 1863년에 발표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소설을 통해서 1860년대의 새로운 인간관계와 남녀평등사상을 묘사하였다. 이런 제정 말의 인텔리겐치아들의 당시 가족제도에 대한 비판은 전통적인 가부장 사회 속에서 러시아 여성들의 억압적 상황과 이혼을 터부시한 정교회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1917년 혁명 이후 “이혼에 대한 자유포고령”을 포함하여 새로운 가족법령들이 발표되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직전까지도 농노제도를 고수하고 있던 러시아는 여성의 정치참여에 유달리 인색했다. 여성의 참정권, 교육권에 대한 조심스러운 논의도 짜르 정부에 의해 차단되었으며, 여성들의 전문교육을 위해 1878년 최초로 창설된 베스투제프 학교도 “가정파괴”, “비도덕적 여성의 산출”, “신성 모독”등을 이유로 국가지원이 전무한 상태로 근근이 유지되었다.<sup>8)</sup>

1860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트롭니코바는 저렴한 주택 원조 및 제공을 위한 러시아 최초의 여성운동조직협의회를 구성했다. 몇몇 엘리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초엽까지 러시아여성들의 경제적 자립도는 유럽의 최하위였으며, 계급갈등, 상소권불평등, 남성중심의 결혼 및 양육권, 주기적 흉년 등이 러시아 여성들을 만성적이고 구조적 빈곤에 몰아넣었다.<sup>9)</sup> 인텔리겐치아들의 정통적 가부장제에 대한 보다 더 극적인 변화는 러시아혁명 시기 즈음에 가서야 나타나기 시작했다.

## 혁명시기 러시아 여성

20세기 초, 상당한 지식인 계층의 여성들이 사회주의혁명당 및 기타 급진민주계열의 정당에 가입하였다. 1905년 마침내 여성평등권연맹(Union for Equal Rights Women)이 창립되고, 1906년 이 조직은 국제여성유권자동맹에 합류하였다. 이 조직이 창립되고,

7) 이영애, “미국과 소련의 여성운동과 엘리트 여성의 정치참여”, 『미소연구』제5호, 1991년. pp. 370-371.

8) 체르니쉴프스키도 일반여성의 무감각과 수동성을 떨쳐버린 새로운 여성상의 실례로서 베스투제프 여성들을 꼽았다.

9) 이영애, “미국과 러시아의 여성정치참여 비교분석 -1994년 11월 선거와 1993년 12월 선거를 중심으로”, 『세계지역논총』, 제9권, 1호, 1996, p. 117.

1906년 이 조직은 국제여성유권자동맹에 합류하였다. 이 조직이 창립되기 이전의 러시아 내 여성 활동은 자선, 문화사업에 국한된 것이었으나 이후 정치성을 띤 운동이 전개되었다. 1908년 전 러시아여성의회가 페테르부르크에서 창립되고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혁명의 기운에 가담했다. 1913년 3월 9일 국제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렸으며 1914년 “여성노동자”라는 잡지가 처음으로 발간되었다.

소련에서 모성보호에 관한 논의는 이미 혁명 이전 볼셰비키의 혁명운동 시절에서부터 시작된다. 1914년 볼셰비키의 당 중앙위원회 공식 기관지 『라보뜨니짜(여성노동자)』에서는 여성문제에 관한 일반이론, 여성노동자의 상태, 남녀의 보통선거권의 문제 등과 더불어 모성보호의 문제와 자녀양육시설의 문제들이 다루어졌다.<sup>10)</sup>

1917년 러시아에서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한 이후 세계사에는 자본주의와 다른 또 하나의 체제로서 사회주의 체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사회주의 사회는 자본주의의 여러 모순들을 지양하면서 사적 소유의 폐기와 사회적 소유의 창출을 통해 자본주의적 계급 지배의 극복과 사회 평등을 지향해 왔다.

사회적 소유 형태 하에서는 노동자의 잉여 노동력을 착취하는 자본가 계급이 존재하지 않으며,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해야 하는 노동자 계급 역시 구조적으로 사라진다. 이에 따라 남녀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은 모든 노동을 토해서만 생존하고, 또 노동을 통해서만 자신을 실현하는 평등한 구조가 창출된다.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가 여성에게 주는 함의는 자본가에 의한 여성 노동자의 초과, 착취, 즉 노동자 일반으로서의 착취와 여성으로서 당하는 성 차별적 착취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다.

또한 자본의 요구에 따라 노동 시장을 넘나들게 되는 산업 예비군에서 벗어나 온전한 노동의 주체로서 서는 것이 가능해졌음을 뜻한다. 따라서 가장인 남편이 아내와 자녀를 부양한다는 전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사회적 소유는 노동에 의해 발생하는 잉여가 자본가의 이윤으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확대 재생산과 노동자의 복지로 항상적으로 환원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잉여가 복지로 전환되는 사회주의적 구조 안에서 여성의 해방과 남녀평등을 위한 물질적 기초는 사회 복지 제도 속에서 안정적으로 확보된다.

이외에도 사회적 소유로의 전환은 무제한적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의 논리에 의한 성의 상품화를 부정함으로서 매춘과 성 자극적 상업 광고를 금지시키는 등 여성 해방의 여러 조건을 구조적으로 마련했다. 이렇게 사회주의 사회는 여성에게는 자본주의 사회

10) 한정숙, “혁명, 그리고 여성해방-혁명기 러시아 여성운동에 대한 사적 조망”, 『여성 2』, 창작과비평사, 1988. p. 51.

와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 이념 자체에 특유의 여성 해방 이념이 내재되어 있다.

### 사회주의 여성해방 이념

사회주의의 여성 해방 이념은 사회주의 혁명 이후 레닌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레닌에 의하면 여성 해방의 첫 번째 단계는 법률에서의 불평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며, 둘째 단계는 자본주의적 사유 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사유제의 폐지를 통해 개인적·가족적 단위의 소비 경제가 사회적 단위의 소비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사회 전체 차원에서 가능해진다. 셋째 단계는 이를 기반으로 가사와 양육의 사회화를 성취하고 나아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레닌의 여성 해방에 관한 견해를 기초로 다른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여성 해방 이념은 사유제의 철폐를 통한 사회 구조의 평등적 변화를 기초로 하여 법률적 평등, 가사와 양육의 사회화, 여성의 사회적 진출, 노동 여성과 모성에 대한 보호, 여성에 대한 봉건적 관념의 극복, 매춘의 폐지와 매춘부의 노동자화 등의 전략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성과에서는 이러한 여성 해방이념이 사회주의 건설과 발전 단계에 준하여 선택적으로 혹은 순차적으로 실현되었으며, 각 국가의 역사적 특수성 속에서 각기 다른 우선성을 가지고 구현되어 왔다.<sup>11)</sup>

1917년 혁명에 여성들은 적극 가담하면서 전제왕정의 강압적 통치와 입헌민주당의 카데트에 반대했다. 짜르 러시아 치하에서의 여성 불평등조항은 일거 모두 폐지되고, 모든 여성에게 참정권<sup>12)</sup>이 부여되었으며, 가족 및 결혼관계에 있어서도 여성의 위치는 남성과 동등하게 되었다.

1918년 11월 알만다, 콜론타이, 사모일로바가 중심이 되어 제1차 전러시아 여성노동자·농민의회(The First All-Russian Congress Women Workers and Peasant Women)를 구성하였다. 의회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성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는 것, 즉 가사노동으로부터의 해방, 공공교육기회의 확충, 매춘에 대한 2중적 기준의 폐지 등을 꼽았다.

또한 당이 여성의 평등권을 주장하는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할 수

11) 차인순, "사회주의와 여성현실-소련을 중심으로-", 『여성학 강의』(한국여성연구소, 1991) pp. 256-258.

12) 소련여성들은 급진적 10월혁명의 결과로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주장에 포함되어 참정권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여성만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후일 여성의 사회적 지위상승경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영애, "미국과 소련의 여성운동과 엘리트 여성의 정치참여", 『미소연구』제5호, 1991. p. 383.

13) 이영애, "미국과 소련의 여성운동과 엘리트 여성의 정치참여", 『미소연구』제5호, 1991. pp. 371-372.

있는 모든 행동을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길 것을 요구하였다.<sup>13)</sup>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적극적인 소비에트 건설참여를 촉구하면서 사적인 가사 일을 공적으로 전환시킬 것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비롯한 여성노동 및 모성보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콜론타이<sup>14)</sup>는 제노텔<sup>15)</sup>(당 서기국 여성부) 부장을 지내면서 여타의 여성해방정책과 더불어 역점 사업 중의 하나로 여성노동보호와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sup>16)</sup>

이러한 움직임들 가운데 1920년에는 낙태의 합법화에 관한 법률이 여성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제정되었다. 낙태 자체가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동안의 낙태불법화로 인해 수많은 여성들이 잘못된 시술로 오히려 건강을 해쳐온 것을 감안한 현실적인 모성보호의 조치로 시행되었다.

### 모성보호입법

이와 더불어 1922년에는 본격적인 여성노동보호입법이 제정된다. 임신부에게는 초과근로 및 야간작업의 금지, 임신 5개월 이후에는 동의 없는 출장의 금지, 산전산후 16주(112일)의 유급휴가 등이 주어졌으며, 적을 먹이는 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로 야간, 초과근로 금지 및 수유시간의 확보 등이 권리로 제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어머니가 될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과 직무상 여러 가지 제한조치들이 수반되었다. 여성들에게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작업을 불허했으며, 기타 유해하거나 지하, 광산 등에서의 작업에 여성이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였다. 또 신생아용품 일체를 구매하고 수유 비를 보조

14) 소비에트 정권초기에 있어서 가족정책과 여성해방운동에 대한 마르크스 페미니즘과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다.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에 대한 시각은 일반적으로 “날개 달린 에로스에게 길을”과 “물 한잔 이론”으로 규정되어왔다. 이러한 시각은 콜론타이가 주장한 지나친 성적 평등과 성적 자유에 대한 거부반응 속에서 레닌과 그 뒤의 초기마르크스주의자들, 소비에트 시기의 학자들과 서방 학자들에 의해 규정된 것이다. 1861년 농노해방이후부터 서유럽에서 러시아로 들어온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그 이후에 맑스 엥겔스, 베벨 등의 영향력 하에 형성된 사회주의 페미니즘, 나아가 사회주의 여성해방운동이 어떻게 혁명 전 초기 사회주의자들과 연계되었는가에 대해 역사적으로 그 궤를 추적하였다. 특히 소비에트 정권초기의 급진적인 가족정책은 성적 평등과 자유연애 사상을 낳게 함으로써 전통적인 러시아의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억압된 여성들에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주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콜론타이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시각, 즉 그녀의 “물 한잔 이론”은 지나친 성적 평등과 성적 자유사상을 주장함으로써 소비에트 정권초기에 가족해체와 붕괴, 성 혁명을 낳게 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시각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그는 콜론타이의 “사랑의 자유연합”이나 “사랑의 집단적 동료의식”이 성의 자유사상이라기 보다는 제도 속에서 억압 받아온 여성들과 성차별 속에서 상실된 여성의 인격과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고자 하는 신여성관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녀의 신여성관은 소비에트 정권초기의 가족정책 속에 나타난 본질적인 여성문제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의 가사노동의 사회화, 여성의 남성에 대한 경제적 종속으로부터의 해방, 남녀간의 성적평등이라는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15) 제노텔은 당 중앙위원회 서기국에 속했으며 제노텔의 부장은 당 서기 급이었다. 이 조직은 여성해방을 위한 전국적인 여성조직의 결성을 결의되었고, 그 결과 대회 후 기존의 여성국이 중앙위원회 산하 ‘대여성노동자 선전 선동사업 중앙위원회’로 재조직되었다가 이 위원회가 1919년 가을 제노텔로 승격했다. 여성의 이익을 대변하고 당과 여성대중을 연결하는 유일한 조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큰 영향력을 지니지 못했다.

16) 한정숙, 위의 글, pp. 58-59. 모성보호에 대한 콜론타이의 견해는 혁명 이전 1908년 초기의 평등론적 여성해방론의 입장에서 변화한 것이다.

17) 신경아, 차인순 “일본·스웨덴·소련의 모성보호정책과 현실” 『여성과 사회』, (서울, 한국여성연구소) 1991. pp. 64-65.

하기 위한 국가의 비용지불로 ‘일팔 지불’이 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1922년의 모성보호입법은 이후 모성보호의 기본 틀로 작용했다.<sup>17)</sup>

소련에서의 여성성의 결정은 몇몇 명백한 가정과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의해서 규정되어 왔다. 소련시기에는 가장 중심적인 사항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처럼, 여성의 사회적 생산으로의 편입이 진정한 사회주의의 건설과정이라는 확신이다.<sup>18)</sup> 경제 참여는 정치적 동원 내지는 산업화의 진전과 연관되었다. 공장은 새로운 소비에트 인간들-정치적으로 자각되어 있고, 숙련된 기술을 지닌 건설자들을 만들어냈다. 이에 비해 가족은 처음에는 전통과 후진성의 화신으로 보여 졌다.<sup>19)</sup>

혁명적 불세비키들은 여성을 의존과 고립감에서 탈피시키고, 그들의 정력과 충성을 사적인 영역으로부터 공적인 영역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가정의 경제적 근거를 박탈하고, 가정의 가장 주요한 교육적·사회적 기능을 공적인 서비스로 바꾸는 것이 결정적인 관건이라고 생각했다. 산업의 국유화와 농업의 집단화는 가족에게서 경제력을 박탈했다. 공공교육의 확대와 육아의 제도적인 보장은 아동의 사회화에 대한 가족의 영향력을 감소시켰다. 또한 공공 세탁소와 식당은 가족의 기능을 사회적으로 확대시키는 마지막 고리였으며, 이로써 여성의 노동 참여는 더욱 활발해졌다. 여성의 경제적 독립은 전통적인 가족구조에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여성은 노동과 가정 내 역할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한 기초 위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여성을 정치적·경제적으로 동원한다고 해서 육아가 대신 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모성 그 자체가 사회적 기능으로 변모되었다. 그리하여 소련에서는 초기부터 여성의 생산과 재생산에 대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힘썼다. 단적으로 소련에서는 보수적인 여권주의에서처럼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재규정함으로써가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의 기능 변화를 통해서 여성의 평등을 재현하려 했다.<sup>20)</sup>

실제로 사회주의 혁명은 전통적인 모성의 약화를 가져왔다. 우선 사회주의자들의 여성관이 쉽게 말해 여성해방론자의 그것과 일치하는 점이 많았고, 또 사회주의 이념이 사회 또는 정부라는 일종의 “거대 가족제”를 지향했던 만큼<sup>21)</sup>, 전통적인 의미에서 가족 제도와 여성성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하자면, 여성과 관련한 혁명 후의

18)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핵심은 ‘가족’이 여성 억압의 기초 기제이며, 이 억압적인 가족 구조는 오직 사회 변혁을 통해서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재산관계의 구조가 아니라 진실한 애정에 바탕을 둔 일부일처제를 이상적인 가족관계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적소유와 계급 제도의 철폐를 추구한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계급’ 뿐만 아니라 ‘성별’도 여성 억압을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는 점에서 마르크스 페미니즘과 다르다. 여성문제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결합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한다고 판단한다.

19) Geiger, 1968, p. 52.

20) 게일 W. 라퍼더스, “소련에서의 여성 노동과 가정내 역할간의 상호관련” 『러시아혁명기의 사회와 문화』, (슬라브학회, 1988), pp. 212-213.

21) Clark, Katerina. *The Soviet Novel: History as Ritual*. (Chicago, 1981), p. 115.

제1목표는 모든 여성 인력의 산업화 및 정치화였고, ‘부인’이 아닌 ‘직업여성’ /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정에서의 위치와 어머니로서의 의무는 이차적인 것으로 방치되는 경향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 스탈린 시기의 여성

1920년대와 30년대 소련여성의 사회운동은 수많은 조직을 탄생시켜 정치, 경제, 교육, 문화부문의 여성 활동을 지원하고 유도하였다. 특히 노동자학교는 여성의 직업훈련 및 일반교육을 수행하여 여성교육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교육기회의 확대규모는 1935년 소련학계인사 중 15%가 여성이라는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4년 현재 여성들의 노동력은 비숙련부문에 여전히 치중해 있었다.<sup>22)</sup>

스탈린의 철권통치가 시작되고 1930년대 수많은 남녀가 투옥되거나 수용소로 보내졌다. 뒤 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상당한 인명피해가 있어 여성노동자들의 위치가 새로이 부각되었다. 이전에는 전적으로 남성의 영역이었던 군사, 과학, 중공업부문에서 여성의 위치가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여성노동자의 질과 양 모두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다. 1941년 10월 현재 전체노동자의 45%가 여성이며 기술, 교육, 행정 분야의 책임자위치를 점하고 있는 여성도 다수였다.

군대에서도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여성의 수가 늘어났다. 특수부대요원, 기총소사요원, 포병 등으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전투기조종사로서도 큰 업적을 남겨 전쟁 중 영웅호칭을 받은 여성도 29명에 달하였다. 군의무대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더욱 두드러져 야전군의 관 41%, 군의관 43%, 보조의사 43%, 간호원 100%, 교관 40%가 여성이었다. 약 이천만의 소련시민이 전쟁 중 사망했고, 그 중 많은 남성이 큰 부분을 차지하여 전후성비는 여성이 압도적이었다. 물론 전쟁 중 여성이 남성의 역할을 수행하여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변모, 상승하였으나, 이는 여성이 남녀 모두의 일을 수행하여 한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이었다. 상대적으로 남성의 수가 적어 남성의 우월감은 도를 더해갔다.

전후 급증한 출산율은 다시 급강하하기 시작했고, 자녀양육 및 기타문제를 둘러싼 이혼율이 증가하였다. 전후세대들은 그 전 세대보다 훨씬 다양한 전문분야에 종사하였고 독립심이 강하였으며 신분상승욕구가 강하였다. 이는 높은 교육별 및 직업에 대한 애착으로 나타나 가정에서의 여성의 노동을 이중의 부담으로 느끼게 만들었으나 여전히 남성들은

22) Feiga Blekher, *The Soviet Woman in the Family and in Society: A Sociology Study* (N. Y.: John Wiley & Sons, 1979), p. 14.

가사노동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고 여성들의 사회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레닌이 주장했듯이 여성을 생산적 사회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끝없이 여성의 발목을 잡는 부엌일과 양육책임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많은 여성운동가들에 의해 강하게 제시되었다. 10월혁명 이후 소련여성이 단시일 내에 법적, 정치적 평등을 획득한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소련여성이 혁명 이후 진정한 평등의 위치를 점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형식적, 법적, 제도적, 평등은 구축되었으나, 문화적, 심리적, 내면적 평등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sup>23)</sup>

제1차 5개년 경제계획의 추진(1928년~1932년)과 더불어 시작된 전면적이고 외연적인 공업화는 무엇보다도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가속화하는 객관적 조건을 형성하게 되었다. 외연적인 공업화 과정에서는 노동력의 충원이 필요불가결한데, 가정에만 머물고 있던 잠재적 여성노동력은 그 주요 대상이 되었다.

국가는 여성들의 생산 활동 참여를 고무하기 위해 각 산업별로 여성노동자수를 할당하거나 여성 직종에 관한 법령을 발표하기도 했다.<sup>24)</sup> 특히 2차대전전의 경험은 여성노동력의 전격적인 투입을 요청하였으며, 전면적 공업화 이전 시기인 1922년 전체 노동력 중 25%에 불과하던 여성노동력은 2차대전 이후인 1950년 당시 47%까지 이르게 되었다. 한편 산업노동력으로서 여성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적 지원이 불가피했으며, 가사와 양육의 사회적 담당이 적극 모색되었다.

그러나 정작 작업장에서의 노동보호는 일부 개선되기도 했지만 일부는 악화되거나 유보되었다. 임신부에 대한 보호규정에 있어서 초과근로의 금지는 임신6개월 이후라는 부대조건이 붙었고, 산전산후 유급휴가에는 3년간 노동조합원이라는 자격과 2년간의 노동경력이 조건으로 달렸으며, 이에 미달하는 사람의 수당지급은 해당하는 만큼 적게 지불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1936년 낙태불법화 조치 이후로 잠정적으로 회복되었으나 제2차대전 직전에 다시 11주로 축소 실시되었다. 수유부에 대한 규정도 30-40년대 통하여 무시되었으며, 여성의 야간작업은 전후까지 허용되었다.

### 모성보호법의 무시

모성보호를 위한 직종제한의 경우 1932년에 이르러 구체화되는데 노동인민위원회가 전 연방 노동평의회 동의의 얻어 여성취업금지 목록을 작성했다. 이 목록에서는 여성이 지하작업, 금속주조, 유해화학, 위험한 일(예를 들면 소방수), 그리고 무거운 것을 다루는

23) 이영애, "미국과 소련의 여성운동과 엘리트 여성의 정치참여", 『미소연구』 제5호, 1991. pp. 372-373.

24) G. Lapidus, *Women in Soviet Societ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98-99.

작업(예를 들면 철로 선로작업) 등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 목록은 1978년 노동과정과 기술변화에 따른 새로운 취업금지 목록이 작성될 때까지 몇 가지의 수정을 덧붙인 채로 유지되었으나 실제로 3, 40년대를 거치면서 몇몇 조항은 무시되거나 취소되기도 했다. 신문지상에서 여성 광부와 여성 철도공의 취업은 옹호되었으며, 항만노동에서 여성의 취업은 허용되었다. 이와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전반적인 여성취업의 증가는 이 금지의 영역에서의 여성노동력을 절대적으로 증가시켰다.

이러한 모성보호정책의 악화는 전면적 공업화의 요구와 전시의 노동력 수요의 급증이 보호노동입법의 준수보다 주요 측면으로 부각되면서 산업현장에 대한 법적 통제력을 실제로 약화시킨 때문이었다. 이에 더하여 스탈린의 제노텔 해체를 계기로 한 여성해방 완료선언은 산업현상에서의 모성보호입법의 준수를 보다 느슨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고무적인 것은 악화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모성보호의 새로운 조항들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1949년 1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여성노동자들이 집 근처 작업장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시행되었는데, 이는 원래의 직장에서의 근속년수에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임신부에게도 확대시켰다. 또 생리중인 여성의 경우 의사의 진단 하에 생리 3일 동안 타업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며, 임신부의 경이한 작업이전 역시 의사의 진단 하에 원래의 임금은 그대로 유지된 채로 실시되었다. 한편 여성노동자에 대한 작업규정 중 무게에 관한 제한이 1932년 실시되어 20kg이상의 물건을 손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은 금지되었다.

이처럼 이 시기의 모성보호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나 실제적인 측면에서 발전과 후퇴의 양면성을 띄게 되었다. 1922년 노동법의 규정이 전면적 산업화와 제2차 세계대전을 경유하면서 실제로 무시되는 측면은 빈번하였으며, 기존의 모성보호조항 조차 부대조건이 붙어 실질적으로 적용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일부 모성보호 조항의 구체화와 신설은 모성보호의 실제 내용을 법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sup>25)</sup>

### 전통적 복고화

게일 라피더스는 러시아 혁명이 여성에게 가져다준 것은 결국 동등한 권리가기보다는 동등한 동원의무였음을 보여주고 있다.<sup>26)</sup> 혁명이 내세운 전인민의 정치화를 위한 교육열 덕분에 여성들은 급격한 문맹퇴치율의 신장을 보였고 이와 함께 집밖의 사회에서 산업역

25) 신경아, 차인순 “일본·스웨덴·소련의 모성보호정책과 현실” 『여성과 사회』, (서울, 한국여성연구소) 1991. pp. 66-67.

26) Gail Warshofsk Lapidus, “Sexual Equality in Soviet Policy: A Developmental Perspective”, *Women in Russia* ed., Dorothy Atkinson, et. al., (Stanford Univ. Press, Stanford, 1977), p. 137.

군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위로부터 주어진 평등은 언제나 다시 위로부터 취소될 수 있었다. 스탈린 시대에 등장한 빅토리아풍의 복고적 윤리는 수직적 권위사회의 효과적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 혁명의 선지자들에 의해 가차없이 짓밟힌 가정의 권위가 되살아나고 이에 따라 현모양처라는 전통적 여성상이 의도적으로 고무되었다.

1949년 당중앙위원회 성명은 사회활동가로서 여성뿐 아니라 자녀 생산자, 양육자로서의 여성을 찬양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자연히 혁명 초의 실험적 여성운동에 종식을 고할 수밖에 없었고 사회적 동원과 전통적 가정이라는 두 무거운 짐을 여성들의 어깨에 얹어 놓는 결과가 되어버렸다. 두 부담을 꾸릴 수 있게 해주는 사회적 서비스의 부재, 전통적 가부장제적 생활방식을 고수하는 남편들 틈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승진은 당연히 남성에게 비해 뒤떨어지고 고위정치권, 사회적 권위로의 진입은 자동적으로 봉쇄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레닌의 예견과 달리 결국 평등이라는 혁명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을 열세그룹에 머무르도록 통제할 뿐이다.

혁명은 여성들에게 기회의 제고와 제한이라는 동전의 양면을 동시에 제시했고 이러한 양면성의 비애가 표면적 평등과 내면적 불평등이라는 양면성으로 표출된다.<sup>27)</sup>

## 체제안정기 여성

전후 경제건설에 가한 박차는 경기를 회복시킴과 동시에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게 하고 이에 따라 브레즈네프 정권은 1967년 선진 사회주의로서 자국의 발전단계를 재규정하였다. 이에 앞서 흐루시초프는 스탈린의 여성해방 완료선언을 반복하면서, 남녀의 불평등을 끊임없이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재 선언하였다.<sup>28)</sup>

### 모성보호입법 (보호론)

이 시기의 특징은 모성보호의 내용이 기본적으로는 1922년의 수준으로 회복되고 일부 개선되면서 확대의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존재한다. 경제발전의 성과를 국민복지 확충으로 돌리고자 하는 경제발전의 기본계획이 60년대 말부터 비로소 실시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방향 하에서 스탈린 시기에 악화되었던 일부 모성보호정책을 원래대로 복구, 그리고 확장시킬 수 있었다. 또 하나 모성보호 확대의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60년대 후반부터 심각히 감소되기 시작한 인구-노동력문제에 기인한다.

27) 이인영, "혁명과 언어 그리고 여성" 『러시아혁명의 사회와 문화』, (슬라브학회, 1988) p. 196.

28) B. Holland ed., *Soviet Sisterhood*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1984, pp. 38-49.

2차대전까지 2천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 수와 외연적 공업화 따른 신규 노동력의 요구는 감소하는 출산율에 심각한 문제를 던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련사회는 인구증가를 위해서도 모성보호와 여성들의 모성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게 되었다. 이에 1977년 소련의 신 헌법은 여성의 모성과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보다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제 조건을 창조해야 한다고 새롭게 규정하였다.

임산부에 대한 초과근로 금지조항은 1971년 이르러서 1922년 법의 상태로 복귀했으며, 산전산후 유급휴가는 1956년 3개월의 추가 무급휴가(경력인정)의 신설과 함께 16주로 회복되었다. 1973년에는 산전산후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에 있어서 노동경력과 노조원이라는 자격 조건을 철회하였다. 또 1978년 모성보호를 위한 취업금지 목록이 새롭게 작성되면서 1932년보다 더욱 구체화되었고,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모성보호입법은 1977년 헌법 수정과 더불어 비제조업 분야까지 확장되었다. 이 시기의 보호입법의 강화는 1977년 이전에 이미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 노동자에 대한 제조치가 다양화된 점에서 가장 잘 알 수 있다.

1966년에는 자녀가 1세가 될 때까지 양육을 위해 주어지는 무급휴가를 양자를 입양한 어머니 노동자들에게도 확대시켰으며, 1971년에는 1세에서 8세까지의 자녀를 둔 여성은 반드시 동의아래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음을 법적으로 규정하였고 아픈 자녀를 위한 간병휴가가 유급으로 신설되었다.

1976년과 1981년의 제25차, 26차 당 대회에서는 1985년까지의 경제사회발전계획에서 모성보호의 강화를 위한 보다 새로운 조치를 만들어 나갔다. 1971년 일시로 폐지되었던 집 근처 작업장으로의 이전조항을 단축노동일, 단축노동주 등의 선택적 노동 일정 제속에 포함시켜 복귀시켰다. 또 1981년에는 1세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 노동자에게 부분적 유급 휴가제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모성보호정책의 강화는 70년대 이후 소련의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혁명정권 수립 당시의 모성보호정책은 여타의 여성정책과 관련해볼 때 여성해방과 남녀평등정책의 일환 속에서 수립된 것이었으나 70년대 이후의 그것은 평등론과는 다소 거리를 둔 보호론의 경향을 띠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보호론의 경향은 페레스트로이카를 기점으로 급진적으로 강화되면서 일부 여성해방론자들의 문제제기를 받기 시작했다.<sup>29)</sup>

29) 신경아, 차인순 “일본·스웨덴·소련의 모성보호정책과 현실” 『여성과 사회』, (서울, 한국여성연구소) 1991. pp. 67-69.

30) 여성위원회의 상세한 편제 및 활동에 관하여: Sheila Rowbotham, “The Women’s Movement and Organizing for Socialism” S. Rowbotham, L. Segal & H. Wainwright, *Beyond the Fragments* (London: Islington Community Press, 1979)

### 소련 여성엘리트의 정치참여

1961년 가사노동공영제가 실패한 이후, 흐루시초프는 “1980년대를 향한 공산주의”라는 프로그램아래 여성위원회를 발족하였다.<sup>30)</sup> 흔히 젠소비에트로 통칭되는 여성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다. 주로 가정주부를 구성원으로 한 위원회의 구성은 공개선거에 의해 선출되거나 반드시 선출되어야 위원회 업무를 맡아보는 것이 아닌, 여성의 정치 및 사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자발적인 여성들의 모임이었다.

여성들의 피동적 정치참여가 여성만이 동질성을 구축할 수 있는 조직체의 부재에 있다고 본 시각에 의하면, “여성들은 일반적 여성이 겪는 공통적 문제를 인식할 만한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 한 조직체로써 힘을 모으고 서로 지지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sup>31)</sup> 이런 의미에서 여성위원회의 발족은 여성 스스로 주권의식을 가지고 여성에 의해 운영되는 독자적인 기구의 설립이었다고 평가된다. 여성위원회는 당 기구인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인 여성노동자조합(Commissions for Work Amongst Women)과 구별되는 것이었다. 여성노동자조합이 당의 명령에 따라 여성노동자들의 당면문제를 해결하는 행정기구라면 여성위원회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인민의 참여로 움직이는 여성들의 기구였던 것이다.

여성위원회는 다양한 조직수준을 갖추며 성장하였다. 지역, 구, 시, 주, 공화국 단위로 조직되었으나 흥미롭게도 중앙정치의 본산인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에는 여성위원회가 조직되지 못하였으며 러시아공화국내에도 이 조직은 없다. 여성위원회가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4가지로서 경제, 사회, 정치/교육, 자녀양육부문으로 나뉜다. 소련에서 정치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선전선동의 방법을 사용하여 여기서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게 하고, 또한 지위향상을 동시에 도모하는 위원회의 활동은 각 부문에서 나름대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하겠다.

경제적 측면에서 여성위원회는 직장에서 여성의 위치를 재인식하도록 하는 한편, 작업량의 초과달성을 독려하는 이중의 목표를 수행해 왔다. 정치적 교육은 주로 공식적 과정을 통해 시행되었는데, 소련의 대내외정책의 당면과제와 목표를 수행함에 있어 부여되는 여성의 임무에 관한 교육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 중 “구두잡지(Oral Journal)”라 불리는 교육프로그램이 상당한 인기를 얻어 많은 여성위원회에 의해 실행되었다. 이는 설명되어야 할 정책에 관해 각계의 전문가들이 넓은 강당에 모여 토론 및 질의응답을 벌이는 형식으로 많은 여성노동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자녀양육에 관한 여성들의 관심이 모아

31) Barbara Wolfe Jancar, *Women Under Communism* (London, John Hopkins, 1978), p. 110.

저 교육기관에 대한 감시역할을 맡게 하였다. 당시 각급 학교의 급식 및 위생상태는 지역 여성위원회가 감독하고 있다.

여성위원회가 수행하는 임무의 책임이 적지 않음에 반해 정책결정권한은 거의 없다. 여성위원회가 당 중앙과는 분리된 독립기구임에도, 또한 당으로부터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위원회의 당면과제와 목표는 당과 매우 유사하다. 남성에 의해 주도되는 중앙당의 여성정책이 여성들의 독자적인 시각을 충실히 반영해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당에서 활약하는 여성정치지도자가 전무하다는 사실을 볼 때, 책임만 있을 뿐 권한이 없는 여성위원회의 위상은 당시 소련여성의 위상을 충분히 대변해준다고 하겠다.<sup>32)</sup>

소련 당 기구에 여성의 참여가 거의 없는 현실에 대해 여성들이 남성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덜 감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sup>33)</sup> 그러나 또 다른 분석에 의하면 두 가지 근거에 의하여 이를 설명하려 한다. 첫째, 남성들에 의해 주도된 1917년 혁명이 모든 인민의 평등을 실현하였고, 또한 당 중앙위원회에 여성문제를 전담하는 여성노동자조합이 있어 여성이 당면한 여러 장벽을 무너뜨리려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여성이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은 여성을 위한 정책이 어떻게 결정 되는가 일뿐, 얼마나 많은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가에 관한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지방위원회에서 여성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생활과 직결된 지방위원회에서의 활동이 여성의 정치화에 오히려 긍정적인 지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sup>34)</sup>

이에 관한 소련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렇다. 먼저 노동의 성적분화 정치적 측면에서 여성에 대한 불평등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결국 가정과 육아의 책임을 여성이 맡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일로,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정치적인 활동을 영위할 시간과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둘째, 여성에 대한 전통적 인식이 아직도 견제한 가운데 문화/심리적으로 여성정치지도자에 대한 생경감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여성의 정치의식이 남성의 그것보다 덜 민감하며 의식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상대적인 저항을 느낀다. 결국 당의 공식적 입장은 여성의 미미한 정치참여가 가사의 부담 때문이며 직장가정의 이중노동부담을 해결하면 곧 뒤따라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점차 늘어나는 여성의 사회참여는 상응하는 부작용을 빚어내는데 이는 가정의 문제와

32) 이영애, “미국과 소련의 여성운동과 엘리트 여성의 정치참여”, 『미소연구』제5호, 1991년, pp. 378-380.

33) Stephen White, *Political Culture and Soviet Politics* (London Macmillan, 1979), p. 155.

34) Genia Browning, “Soviet Politics -Where are the Women?” Barbara Holland ed., *Soviet Sisterhood*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5), pp. 155.

사회의 문제로 축약된다. 이는 물론 세계 여성이 공유하는 이중의 부담이라 할 수 있다. 가정에서는 주부는 육아 및 가사의 책임을 혼자 도맡는 사람으로서, 그 주부가 직장에서는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사회에서는 객관적인 능력평가의 대상이 됨으로서 이중의 노동부담을 갖는다. 사회화과정을 돌이켜 보더라도 여성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훈련되어지는 능력과 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능력이 상이할 때가 많으며, 이제까지의 여성성과 상반되는 경우도 생긴다. 결국 소련여성은 산업 및 정치 이데올로기의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는 생활양식의 변천속도 때문에 남성보다 오래 노동하고 적게 휴식하며, 정치 및 사회활동에서 소외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sup>35)</sup>

## 체제 전환기 여성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가 또 하나의 혁명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러시아의 1990년대는 자본주의 혁명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련이 또 한 번의 ‘혁명’을 거쳐 개방된 자본주의 러시아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이 모든 면에 있어서의 향상을 보증해주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 일례가 바로 여성상의 변화 추세다. 이미 고르바초프는 자신의 저서 『페레스트로이카』에서 여성이 가사, 양육, 쾌적한 가정환경 조성과 같은 순수한 여성적 임무로 돌아가야 함을 역설했고, 이것은 물론 개혁자의 발언인 만큼 당연히 개혁적이며 ‘민주적’인 발상인 양 받아들여졌다.

여성의 사회활동은 결국 가정의 붕괴와 출산을 저하를 초래하며, 이는 곧 사회 불안과 모든 사회악의 원인이라는 것이 고르바초프를 위시하여 지식인 계층의 러시아 남성들이 공감하고 있는 생각이었다. 지칠 대로 지쳐 있던 여성들 역시 그러한 의견에 대체로 동의했고, 남성으로부터 보호받는 충실한 주부의 역할에 꽤 매력을 느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요즘 가까운 주위의 30-40대 러시아 여성 중에는 높은 교육과 취업 경험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포기한 채 가정에 안주한 경우를 찾기가 어렵지 않는데, 이는 예전에는 보기 드문 경우이다.

대중 매체 또한 이와 같은 복고 경향을 교묘히 장려하면서 결과적으로 여성의 이미지를 왜곡시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결론이다. 또한 과거 소비에트시기에는 성의 해방은 있었을지 몰라도 개인의 해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태였고, 마침내 개인의 해방이 이

35) 이영애, “미국과 소련의 여성운동과 엘리트 여성의 정치참여”, 『미소연구』제5호, 1991년. pp. 384-385.

36) Posadskaia, Anastasiia. “The Feminine Dimension of Social Reform: from one Forum to the Next (speech at the Second Independent Women’s Forum, Dubna, Nov. 1992)”, in R. Marsh ed., *Women in Russia and Ukraine*. Cambridge, 1996, pp. 298-304.

루어진 오늘날에 와서는 막상 성의 해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러시아 여권론자들의 자기 진단이기도 하다.<sup>36)</sup>

### 여성의 상품화

80년대 말 이후의 시장 경제 도입과 함께 갑작스럽게 범람하게 된 여성의 '상품화' 경향(포르노, 매춘, 광고 등을 통해 강조되기 시작한 수동적 여성성)은 여성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남성들의 가학(페레스트로이카 이후 현저하게 늘어난 강간, 여성에 대한 폭력 등)행위와 정비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sup>37)</sup> 그러면서도 여성은 사회의 약자, 희생물로 여겨지기보다 사회악적 요소(악마적 존재, 무용지물, 남자 또는 아들을 짓누르는 썬 여자/어머니)로 여겨지는 경향이 많고, 그 결과 한 임상심리학자가 러시아 여성들에게 권한 것은 '약하고 희생당한 여자'로서의 이미지 메이킹이었다.<sup>38)</sup> 즉, 오늘날 급증하고 있는 남성들의 폭력이 기존의 공격적이며 남성적인 소련 여성에 대한 거부감의 표현인 만큼, 여성들은 약자의 모습을 가장하여서라도 남성들의 여성 증오 현상에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였다.

소비에트 러시아에서는 금지되어 있던 매춘이 심지어 여성들의 정당한 '경제활동'으로 까지 주장되기에 이른 것 역시 사장경제 논리의 결과이다. 1989년 당시의 소련 측 통계에 따르면, 16-18세 소녀 중 80%가 인터 걸을 모델이나, 영화배우, 혹은 교수의 아내에 버금가는 '명예로운'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와 같은 경향의 저변에는 "나는 최소한 완전한 나의 것을 팔고 있으므로 정당하다"는 자기변호가 깔려 있었다고 한다.<sup>39)</sup>

'여성성'은 이제 성스럽고 숭배해야 할 성질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매매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제 수단이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춘은 더 이상 강요당한 희생이 아니라 선택한 아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의 희생이기도 하다. 전통 러시아 사회에서는 매춘부의 이미지는 상당히 종교적이고 성스러운 것이었다. 가령 도스토예프스키나 톨스토이의 문학이 창조해 냈던 매춘부의 전형은 사회악의 희생양인 동시에 구원의 상징 체였고, 육체의 타락을 통해 영혼의 승화를 얻은 또 하나의 마리아 형이다. 그러나 1980년대 러시아의 매춘부는 『죄와 벌』의 소냐나 『부활』의 카츄샤가 결코 아니다. 그녀의 매춘 행위는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어느 누구도 구원해주지 못하며, 그런 만큼 거기에는 그 어떤 자기희생

37) Attwood, 1996 pp. 262-264.

38) Attwood, 1996. p. 262.

39) 1990년 1월 23일 『뉴욕 타임즈』

40) Goscilo, Helena. "Domostroika or Perestroika? The Construction of Womanhood in Soviet Culture under Glasnost", in T. Lahusen et als. ed., *Late Soviet Culture*. Durham, 1993, pp. 233-255. 1991년 통계에 의하면 총 실업률의 70-80%를 여성이 차지함.

과 승고함도, '부활'에 대한 약속도 없다.

오직 급격히 변화한 러시아의 현실과 그 현실이 안고 있는 비극에 대한 시사이겠지만, 동시에 넓은 의미에서 자본주의 러시아가 겪어야 하는 많은 비극적 문제들에 대한 예고이기도 하다.

80년대 이후 급격히 늘어나게 된 여성들의 매춘 행위와 함께 확인되는 것은 많은 여성들이 실업으로 인해 정당한 생계 수단을 잃게 되었다는 점이다.<sup>40)</sup> 결국 급격한 자본주의화와 함께 러시아 여성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를 상대적으로 위협받게 되었으며, 대신 다른 영역에서, 즉 가정이거나 아니면 남성을 상대로 하는 다른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논리이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당연한 결과인 동시에, 대중 매체를 통해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자본주의 문화의 결과이기도 하다.

페레스트로이카 기간과 시장경제체로의 이행기 초기에는 경제학자들과 인구학자들이 경제 개혁이 여성의 노동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경제 개혁이 노동시장의 확대와 다양화를 가지고 옴으로서 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자기실현의 장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sup>41)</sup> 그러나 오늘날 러시아의 현실은 이러한 추측과는 상당히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실업

체제 전환과정에서 경기가 쇠퇴하자 노동시장이 불안정하여 졌는데, 과거 소비에트 시절과는 달리 완전고용이 달성 될 수 없었고, 실업이 매년 증가하여 갔다. 경쟁에 기초한 시장경쟁체제로의 이행은 대부분의 여성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여성들, 특히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그들이 담당해야 하는 가사노동과 어머니로서의 노동으로 인하여 남성 노동자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졌는데, 경제사정이 악화되었을 때 남성 노동자에 비해 여성 노동자들이 더 쉽게 해고되곤 하였다.

체제 전환기의 경기의 악화는 곧 여성 실업의 증가로 이어졌다. 1991년을 기점으로 여성의 취업률은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1991년 53%를 달하던 여성의 취업률은 1992년에는 48.6%로, 1993년에는 48.2%로, 1995년에는 48%로 감소하였다.<sup>42)</sup> 이는 여성 실업자의

41) 최우익, "현대 러시아의 여성 노동과 기업가 활동", 『사회과학연구』, 1999, 제8편, 별권, p. 149.

42) L. S. Rzhanitsyna and G. P. Sergeeva, 'Zhenshchiny na Rossiiskom rynke truda' SOTsIS, No. 7, 1995, p. 57.

43) V. V. Bodrova, 'Povedenie zhenshchin na rynke truda', Ekonomicheskie i sotsial' nye peremeny: monitoring obshchestvennogo mnenia, No. 6, 1994, p. 41.

44) Л. С. Рзаницина, работающие женщины в условиях перехода России к рынку(Москва, Ра н, 1993) p. 70.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Консепция усущения положения женщин, 14 ф е б. 1996. p. 4.

45) Л. В. Бабаева, Женщины России в условиях социального перелома : Работа, политика, повседневная жизни(Москва, 1997) p. 43.

증가를 의미하는 데 1991년에서 1993년까지 여성 실업자는 11배 이상으로 늘어났다.<sup>43)</sup> 총 실업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초 69.5%, 1993년 초 72.2%, 1994년 중반 65%, 1995년 말 62% 정도의 수준을 보였다.<sup>44)</sup> 이는 실업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의 실업기간도 점차 장기화되는 추세였다. 1992년 여성 노동인구의 4.2%가 정체적인 장기적 실업의 경우였다고 할 때, 1993년에는 그 수치가 26.2%까지 확대되었다.<sup>45)</sup>

실업과 더불어 임금체불과 저임금은 여성의 생활수준의 하락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전통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는데, 1980년대 말엽에는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들의 68%에 미쳤다. 그러나 1992년에 들어가서는 63%로 하락하였다. 산업분야별로 세분화해 볼 때, 1992년 당시 가스, 광산, 석유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남성들의 임금의 48%에서 63%에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교육, 문화, 보건부문에서는 77%에서 91%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았다.<sup>46)</sup>

가계소득의 향상을 위하여 부수적인 취업을 하는 여성은 점차 늘어났다. 이미 공식적인 취업을 하고 있는 여성의 15-20%가 자신의 근무시간 이후에 상업행위를 하거나, 가내에서 재봉이나 자수를 함으로서 부수적인 2차 취업을 하고 있었다. 또한 90%이상의 여성이 부수적인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노동시간을 연장하거나 보다 힘든 업무를 담당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있었다.<sup>47)</sup> 이처럼 여성들은 과거 소비에트 시절과는 달리 가사노동과 직장노동을 병행하기 위한 사회적 배려도 없는 상태에서 악화된 가계경제 사정에 밀려 더 고된 노동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 여성의 위상

페레스트로이카 시절, 여성의 지위에 대한 자유로운 공개토론이 가능하여지자, 과거 공산당의 여성정책에 대한 반발, 반동이 나타났다. “여성을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 여성의 노동력 참여 감소 및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그들의 역할 증대-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다. 그러나 한편 여성을 어머니-노동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 시민들로 보는 견해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sup>48)</sup>

1990년대의 러시아에 있어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일은 가족 내에서 남녀의 역할에 대

46) Л. В. Бабаева, Женщину России в условиях социального перелома : Работа, политика, повседневная жизнь(Москва, 1997) p. 23.

47) Л. В. Бабаева, Женщину России в условиях социального перелома : Работа, Политика, Повседневная жизнь(Москва, 1997) pp. 67-68.

48) Carol Nechemian (1998), p. 15.

한 전통적 관점으로 회귀하는 복고적 분위기가 팽배하였다는 것이다. 즉 전통적 노동의 분업에 따라 남성은 가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가족과 가사에 종사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경제개혁이 러시아의 경제사정을 호전시키면 여성들은 별도로 직업을 가질 필요 없이 가사노동에만 전담하면서 여성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되찾도록 해야 한다는 낙관적 견해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체제전환이 진행되면서 경제구조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인력의 감축이 요구되자 정부당국은 전통적인 여성상을 부각시키면서 여성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93년 의회에서 고려 중이었던 ‘가정, 모성, 부성 그리고 어린이의 보호를 위한 법령’에 따르면 세 자녀 이상을 가진 어머니의 경우 직업이 없어도 실업으로 간주하지 않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여성은 노동시장에 등록할 수도 없으며 실업수당을 받을 수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령은 여성, 모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14살 이하의 아이를 가진 여성의 경우 주당 35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sup>49)</sup> 이 법령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러시아 여성들은 여성의 가정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통적 견해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중반에 이루어진 한 조사에 의하면 ‘여성들의 자연적, 전통적 역할의 숙명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남성들은 쉽게 동의하나, 여성들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남성 노동자의 80%, 남학생의 80%, 그리고 남성 기업가의 76%가 가정 내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지지하였다. 반면에 여성 응답자의 경우, 여성 노동자의 34%, 개별노동 종사자의 47%, 여학생의 48%, 계몽, 교육, 보건, 학문, 문화계 종사자 여성의 50%, 비즈니스 종사자의 60%, 여성 관리자의 66%가 가정 내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여성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이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sup>50)</sup>

## 러시아 페미니즘

러시아 내에서 현대적 의미의 페미니즘 운동이 시작된 것은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지만, 서구식 기준의 페미니즘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아직도 요원한 일이란 점에서 거의 모든 여성학자들은 동의하는 바이다.<sup>51)</sup> 그 어떤 유럽국가 보다도 먼저 활발하게 “여성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그 어떤 곳에서도보다도 빨리 “여성해방”이 실현된 나라인

49) E. Аверина, “При Чем тут Женщину?” Столица, № 27. 1992, pp. 39-40.

50) Л. Ю. Бондаренко, “Роль женщин: От прошлого к настоящим” ОНС, no. 6. 1996, p. 165.

51) Marsh, Rosalind, “The Russian Women’s Movement”, in R. Marsh ed., *Women in Russia and Ukraine*. Cambridge, 1996. pp. 286-68.

러시아에서 성의 정치학, 또는 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그토록 현저하게 낙후되어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물론 이것은 서구식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낙후되어 있다는 말이며, 러시아의 역사적 배경이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사실 서구식 기준과 사고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른다.

서구식 기준으로 보았을 때 ‘반동적’이라 느껴질 수 있는 러시아의 반 페미니즘에 대한 변명은 몇 가지로 추정될 수가 있다. 우선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러시아의 보수적인 여성비하 전통을 들 수 있다. 또한 한때 서구로부터의 모든 것은 “부르주아 반동”으로 취급했던 경향에 따라 서구적 페미니즘을 경원시 하게 되었던 원인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여성해방과 여성평등이 결과적으로 짐 지워준 직장과 가정에서의 이중 부담에 러시아 여성들 자신이 그야말로 지칠 대로 지쳐 버린 상태였음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소련 여성은 해방되었던 것이 아니라 노동력으로 동원되었던 것뿐이며, 그리하여 오히려 시민과 주부로서의 이중 부담만 강요만 당했던 것이라는 사실은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sup>52)</sup>

물론 직장과 가정을 양립시켜야 하는 여성의 문제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것이지만, 러시아처럼 가사 노동의 산업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데다 정상적인 경제, 사회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곳에서의 부담은 다른 어떤 경우와도 비교될 수 없다. 가령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하며, 세탁기, 청소기, 온수 시설 등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집안 일을 혼자 도맡아야 하고, 그런데도 의외로 남자는 선뜻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능력 있는 남자에게 의지해 집안에만 머무를 수 있기를 은근히 꿈꾸는 소련 여성의 심리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여성해방’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는 사회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었다는 점이며, 그로 인해 자연히 ‘여성해방’ 또는 페미니즘이란 것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가 부정적인 영향으로 틀어졌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진정한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부족과 집단적 오판에서 기인할 것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러시아의 보수적인 남성들은 물론 여성들 자신조차 사회 문제의 많은 부분을 “여성해방운동”과 연관시키게 된 결과, ‘여성해방’은 그 근원적인 존재 이유 자체부터 위협받기에 이른 것이다.

1992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두브나에서 제2차 독립여성포럼이 개최되었다. 이곳

52) 라피더스, 게일. “소련에서의 여성 노동과 가정내 역할간의 상호 관련”, 『러시아혁명의 사회와 문화』 서울, 1988년. pp. 211-236. 위의 Attwood 논문과 Sargeant Elena, “The Woman Question and Problems of Maternity in Post-Communist Russia,” in R. Marsh ed., *Women in Russia and Ukraine*. Cambridge, 1996, pp. 269-285.

에서 아나스타샤 포사드스키가 한 기초연설은 흥미롭다. 이 연설을 통해 포사드스카야는 소비에트 여성 역사를 압축적이면서도 통찰력 있게 분석하고, 탈 공산주의시대에 여성이 당면한 문제들을 명확히 제시함과 동시에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여성 운동에 야심에 찬 계획을 제시했다.

그녀는 여성문제는 중요하지 않거나 사회개혁이 진행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개혁 과정 자체를 차지하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포사드스카야는 소비에트 사회주의자들은 ‘개인의 해방이 없는 여성의 해방’을 시도했으며,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에는 그와 반대로 ‘여성의 해방이 없는 개인의 해방’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러시아 페미니즘의 주요 목적은 개인의 해방과 여성의 해방이라는 두 측면을 모두 통합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았다.<sup>53)</sup>

80년대 중후반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러시아 여성운동의 경향은 크게 두 부류<sup>54)</sup> 나뉜다. 그 하나는 서방식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그룹이고, 다른 하나는 성모 마리아를 모델로 하면서 전통적인 여성성의 신성함을 되찾고자 하는 그룹이다.<sup>55)</sup> 전자의 서구식 접근과 후자의 문화 민족적 접근의 공존하에서 러시아 여성의 현 위치는 논의되고 조정되기 시작했다.

상품화된 여성, 서구식 페미니스트, 러시아식 성모상 등 이 모두가 나름대로의 채널을 통해 러시아 여성의 의식을 자극하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비판과 교묘한 이용을 통해 자신의 타당성을 제창하고 있다. “어머니”와 “인터결”은 러시아가 사회주의 혁명에서 자본주의 러시아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선택해 왔던 대표적인 여성상이었고, 이제 앞으로 러시아는 두 여성상을 양극으로 하는 광대한 스펙트럼 속에서 여전히 가장 이상적이고 대표적인 여성상을 찾고 있는 중이다.<sup>56)</sup>

## 결론

러시아 역사를 살펴보면 16세기 중반이 러시아 여성의 지위하락의 시기라면, 18세기 초는 그 반대의 시기라 말할 수 있다. 포트르 대제의 제위 기간 동안, 새로운 것을 향한 개

53) Marsh, Rosalind, “The Russian Women’s Movement”, in R. Marsh ed., *Women in Russia and Ukraine*. Cambridge, 1996. pp. 292-293

54) 서구식 페미니즘 운동을 따르는 따찌야나 마모노바, 나탈리아 말체바와 러시아 정교의 교리를 옹호하는 따찌야나 콜리체바, 율리야 보스네센스카야 사이로 두 파로 갈라지게 된다.

55) Marsh, Rosalind “The Russian Women’s Movement”, in R. Marsh ed., *Women in Russia and Ukraine*. Cambridge, 1996, pp. 286-297. 그들이 발간하는 운동지의 명칭 또한 「마리아」이다.

56) 김진영, “영화로 본 러시아 여성”, 『연세여성연구』제2호, 1996년, p. 137.

혁이 이뤄졌고 이 중에는 여성의 소유권에 대한 복원도 이루어져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렸다. 19세기도 그 나름대로 분수령이라 할 수 있는데, 두드러진 특징은 여성들 자신에 대한 물음을 던지면서 자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시기의 여성은 사회 진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편견이나 제도의 벽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큰 성공을 거두었다.

제 1차 세계대전과 1917년 2월혁명 후, 러시아는 전쟁, 기아, 유행병으로 얼룩진 고통의 시기였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많은 희생자들이 여자였다. 이 시기는 러시아가 오랫동안 영원해오던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사회주의의 과도기였다. 하지만 이 고상한 목표에 반해 결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1917년 2월 러시아의 전제 타도를 하는데 러시아 여성은 아주 큰 역할을 했다. 빵의 부족해짐에 빼제르부르크 여성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시위를 하기 시작했으면, 이를 계기로 짜르는 퇴위당했고 임시정부가 들어섰다. 1917년 10월 혁명으로 볼셰비키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여성의 권위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이뤄졌다. 1918년에 만들어진 헌법에는 성의 평등을 인정했고, 8시간 노동제, 출산휴가의 보장, 이혼제도의 도입, 무료낙태 시술, 사생아들의 권리보장 등, 여러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가 향상됐다. 하지만 뒤이은 법률들은 여성의 이해를 옹호하지 않은 않았다. 그러나 여성들은 거대한 변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큰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초에는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당국에서는 위험한 업무를 금하는 법률이 폐지시키게 되고, 정부는 간섭과 통제로 여성의 생활은 더욱 악화되었다. 1930년대부터는 소비에트 당국이 모성과 양육에 대한 복지혜택이 등한시되기 시작했고 1935년~1944년 기간동안 만들어진 법률은 이혼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제2차대전 기간을 통해서 국가의 모든 자원은 고갈이 되고, 거의 모든 남자들은 전선에 투입되고, 그 공백은 여성들이 차지했다. 공장에서 여성의 노동시간은 하루 10~12시간을 넘기기도 했고, 많은 수의 여성들은 병사, 조종사, 저격요원에 이르기까지 직접 전투에 참가했다. 전쟁이 끝나자 가족이 분해되고, 남성인구가 대폭 감소하는 등, 많은 여성들이 과부가 되고, 독신, 자녀의 사망으로 고통받게 되었다.

새로운 변화는 스탈린 사후 많은 수의 가족에 관한 법률과 칙령이 폐지되고 합법화되었다. 그밖에도 여성의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수단이 강구되었으며, 여성들 자신과 자녀, 그리고 노동여건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 이러한 모든 법과 규율의 제정은 소비에트 여성의 정치적이고 생산적인 측면과 모성적 측면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 조화는 남성과 동등한 의무를 가지면서 가사노동도 여성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었다.

1960년대~70년대의 소비에트 연방에서의 삶은 전쟁 전 식량난과 전쟁 후의 황폐화에 비하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다양한 사회 제반 서비스 시설물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 절약 장치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직장과 가정에서 이중 부담을 짊어져야 했고, 소비에트 연방은 물품이 부족해져갔다. 하지만 러시아 여성들은 경제적 독립을 달성했고,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전문직에 종사했다. 1964년~1985년의 기간동안은 눈에 띄지 않은 계층분화가 소비에트 사회에서 일어났다. 사무직 여성 노동자들과, 특히 대도시의 공장이나 농장 근로자들과는 사뭇 다른 삶을 살았다. 여성에 대한 정치참여는 할당량이라는 형태로 참여를 유도했다.

페레스트로이카로 시작된 경제적, 정치적 개혁은 러시아 여성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경제의 재편으로 실업을 가져왔고, 여성은 해고 1순위의 대상이 되었다. 경제적 기반의 불안정화는 출산율의 감소와 이혼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할당 제도가 폐지되자마자 여성위원들의 숫자는 급속도로 감소했다. 질곡의 역사를 살아온 러시아 여성들이 갖고 있는 여성성은 앞에서 언급한 '어머니'라는 여성성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이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이다.



21세기의 정치상황을 이론과 실제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한 —

# 현대정치이해



격변기의 시대상황에 대응하면서 다면적인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현대의 정치현상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를 위한 기본서!!

**■ 주요목차**

- 1부/ 현대 정치학의 기본
- 2부/ 자유민주주의의 이해
- 3부/ 현대의 정치현상

**교양사회**

조정남 편 / 값 20,000원

특 집 한국의 여성세계 <외국여성>

## ISLAM 이슬람과 젠다

中西久枝 (중동 연구가)

유럽형의 페미니즘과 이슬람 적인 페미니즘의 어느 것을 모색하려 하더라도, 실질적인 여자의 파워는 당시의 사회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발휘될 것이다. 이슬람과 젠다 문제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20 01.9.11에 일어난 미국 동시다발테러 2개월 후, 아프카니스탄의 텔레반 정권이 붕괴되자 마자, ‘불카(전신과 얼굴을 가린 검은 천)를 벗은 아프카니스탄 여성들의 환희’ 라는 제목의 기사가 미디어를 장식했다. 그리고 2002년 3월에는 각 사가 경쟁적으로 ‘텔레반 후의 아프카니스탄에서 여성교육 부활’ 이라는 기사가 국제면을 현란하게 장식했다.

이러한 기사가 게재될 때마다 나는 일종의 불쾌감을 느꼈다. 그것은 그러한 기사가 이슬람 세계 여성이나 젠다에 대한 인식에 암묵적인 편견을 분명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미디어의 보도태도가 당해 사회에서 살아있는 여성들의 현실로부터 얼마나 괴리된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슬람 사원

이 두 가지 기사에 공통되는 것은 첫째, ‘all or nothing’ 식으로 이슬람 여성들의 가리개나 이슬람 사회에서의 교육 문제를 보도하는 경향이다. “이슬람원리주의정권인 텔레반이 없어진 순간, 여성들은 볼카를 벗어 던지고, 교육도 받게 되었다”고 하는 도식은 단순하고 명쾌하기 때문에 얼른 보아서는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것은 이슬람 여성들의 볼카 착용은 이를 그들의 오랜 문화적인 오랜 관습으로 봐야 한다는 사실이며, 또 텔레반 정권아래서도, 여자교육이 보통 민간의 한구석을 교실로 하여 계속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상의 기사에 공통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것이 “벨을 벗는 것이 아프칸 여성 해방과 관련 된다”라든가 “이슬람원리주의가 없으면, 여성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등의 소위 서양사관을 농후하게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벨을 벗는 것이 여성의 해방이다”는 것은 1923년에 새로운 터키공화국이 채용한 세속화정책의 하나였으나, 세속화의 역사가 뉴니버설한 역사의 진전이라고 하는 서양사의 전재가, ‘차돌이 없으면 환희하는 여성들’을 특히 강조하는 뒷모습에서 숨겨져 있다. 또 ‘텔레반 후의 아프카니스탄에서 드디어 여자교육이 부활했다’고 보도하는 것으로, 텔레반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이슬람원리주의가 획일적으로 악한 것으로 인상지우는 의도도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문제인 것은 이런류의 기사는 미, 영국군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에 의해 아프카니스탄 공중폭격이 얼마나 정당한 것이었던가 하는 일종의 정의와 연결된 형태로 보도되고 있는 점이다. 여기서 ‘일종의 정의’라는 것은, ‘반 테러전쟁’을 기치로 국제적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논리다. 이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미국에 의한 정의이며, 그것을 지원하는 참전국들의 정의라고 하는 의미다.

이슬람세계의 벨이나 젠다 문제는 이렇듯 극도로 정치화된 맥락으로 다뤄져, '새로운 전쟁'이 전개하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 패권주의 국가의 '정의'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해도 좋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슬람세계에서 살아있는 여성들은 단순히 '벨을 착용당한 존재'로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각자가 살고 있는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제도 속에서 일정한 자기재량권을 가지고 당당히, 그리고 조용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1979년의 이란 이슬람 혁명후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제도 상 '이슬람사회'라고 여겨지고 있는 이란에서의 젠다 문제를 취급하고 싶다.

## 벨이 나타내는 것과 숨기는 것

이란에서는 팔레비국왕시대인 1960년부터 70년대에 걸쳐, 백색혁명이라 불리는 근대화정책이 추진됐다. 이 시대 이란의 도시지역에서는 미니스커트에 하이힐을 신은 여성도 드물지 않았다. 1979년의 이슬람혁명 후 사태는 일전해 1982년에는 여성들의 벨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벨은 혁명 후 국가의 이슬람화정책의 중요한 내용이 됐고, 벨을 입은 무슬림여성은 이슬람국가체제를 취하는 이란 이슬람공화국이 이상으로 하는 파티마(시아파로 가장 중요한 이맘(선도자의 뜻)아리의 처, 예언자 무하마드의 딸)의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이었다. 벨은 이란뿐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이슬람세계에서도 도시지역에서 잘 눈에 띄는 현상이다. 벨 형태는 검은 한 장의 '차돌'로 전신을 숨기기 때문에 몸의 곡선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레인코트 형 코트(이란에서는 루프슈 표면을 숨기는 뜻)에 스카프(이란에서는 루사리라고 부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루프슈와 루사리의 조합으로 스타일과 색과 형태는 다양하며, 정치상황에 따라서도 변한다.

혁명직후에 시작된 이란-이라크 전쟁 때, 이란에서는 국난을 당하여 여성들은 차들을 걸칠뿐 아니라 좋은 장식을 하지 않고, 화장이나 메뉴쿠어 등도 억제하도록 장려되었으나, 이것은 전쟁시의 정신적 고향을 의도한 것이며, 직접 이슬람의 교의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다. 또 이란에서는 당시 화장품 등의 소위 기호품은 국산이 아니라,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외화를 함부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경제적 배려도 배경에 깔려 있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듯 벨은 일반적으로는 도시지역의 현상이며, 비 도시지역에서는 혁명전이나 혁명후인 오늘날에도, 여성들은 머리에 스카프를 덮어쓰고 있을 정도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혁명전에도 도시지역에서는 약 3할의 여성들이 벨을 쓰고 있

었다. 그 대부분이 차돌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란 여성들 가운데는, 국가정책으로 벨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음과는 상관없이, 벨을 이슬람의 문화적인 것으로 수용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다. 따라서 현재 이란에서는 혁명 후에는 벨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이를 착용하는 여성과, 국가



정책과는 관계없이 스스로의 의사로 벨을 수용하고 착용하고 있는 여성 등, 적어도 두 가지의 여성층이 존재하나, 벨을 착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간의 구별은 불가능하다. 혁명 직후의 이란에서와 같이, 벨의 색이나 스타일을 국가가 어느 정도 통제 - 예컨대 검은 차돌이나 흑, 감, 그린의 루프슈와 루사리를 장려하는 등 - 벨이 균일화하면 할수록, 벨을 착용하고 있는 여성이 벨에서 나타내고 있는 이슬람 적 가치나 아이덴티티는 불가시적이 된다. 특히 혁명후 1980년대의 이란에서는 벨에의 국가통제가 강요되면 될 수록, 여성 활동가들이 벨 가운데서도 가장 공식적이라고 여겨지는 차돌을 착용, 정치집회에 참가하는 현상이 생겨나기도 했다. 당시 풍기단속 경찰의 눈에도 결코 걸리지 않을 정도의 제대로 된 벨이, 여성 활동가들의 정치집회나, 출판활동 등에 참가할 때 자주 착용하던 도구였던 것이다.

터키나 튀니지아에서와 같이, 근대화 과정에서 세속화정책을 추진, 공적공간에서는 벨을 걸치지 않는 것을 장려해 온 사회에서는 개인의 이슬람에의 아이덴티티로서의 자발적인 벨을 걸치지 않는 여성들과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벨을 수용하는 여성과 선택에 맡기면 감히 걸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여성과의 차이가 명확해 진다.

터키와 같이 정교분리를 보다 엄격하게 시행하는 국가의 경우, 벨은 공식적이 아닌 장소나 사적 공간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벨은 이란과는 다른 형태로 정치문제화하고 있다. 1998년, 이미 해산한 과거의 한 국회의원이 벨을 착용하고 국회에 출석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은 그 한 예다. 터키에서는 국회와 같은 정치적인 장소이기도 하며 나라의 입법기관이기도 한 장소에서는 벨을 걸치는 것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터키는 근년 이슬람주의정당이 세력을 넓혀가고 있으며, 정교분리를 어떻게 철저히 화시킬 것인가가 더욱 문제가 되어 있다. 결국 벨 착용으로 국회에 출석한 카베클쿠추 의원의 행위는 헌법위반으로 여겨졌으나, 문제의 본질은 벨 그것이 아니라, 복지당의 세력을 억제하

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또 카발쿠추 의원 자신의 행위는 그 후도 터키에서 언론, 사상의 자유의 문제로서 민주화의 태도에도 문제를 던진 것으로, 일부의 여성 활동가들이 찬미하는 대상도 되었다. 가발쿠추 의원의 국회에서의 벨 착용 자체도, 여당에 대한 일종의 도전으로서 벨을 활용한 측면도 있으며, 벨을 쓴 여성 측도, 벨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한 체제 측도 쌍방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면이 있다.

## 여성의 공적공간에의 진출

벨의 형태는 개인의 재량에 의해 다양하나, 현재 이란에서는 한 발짝 집밖으로 나서면 어떤 형태의 것이든 벨을 착용치 않으면 안 되나, 반대로 집안에서 가족이나 친척들 앞에서는 벨은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 벨은 코란 속에서 '마라람'이라는 용어로 규정되어 있는 집안사람(단순화하면 2촌에서 3촌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외의 남성으로부터 여성들을 '격리' 할 목적으로 착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친자나 여성의 앞에서는 필요 없는 것이다. 여성을 '격리' 한다고 하더라도, 벨 그것이 '이동식 카텐'이기 때문에, 쓰고 있는 한에는 '격리'는 달성된다. 즉 벨을 쓴 여성이 이동하면, 여성의 공적, 사회적인 활동 권은 유연히 확대되어가게 된다.

이란과 같이, 여성이 공적 사회적인 공간에 나가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받아 들려져야 한다고 생각되어지고 있는 사회에서는, 혁명 후에도 벨을 착용하고 있는 한, 여성의 생활공간은 남성의 활동하는 범위와 거의 다르지 않다. 또 벨을 착용하는 것으로 여성의 사회적, 공적 공간에의 여성의 진출 도는 가시화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벨이 전통문화로서 혁명전부터 존재해온 문화적, 사회적 배경은 역력하다. 벨은 상술한 것과 같이 여성을 '알지 못하는 남성' 들로부터 보호한다고하는 발상에서 착용케 되었기 때문에, 예컨대 여성이 혼자 여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않는다. 또 현재 이란에서는 여성도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는 한편, 여성의 직업으로서의 이상적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직종과 직업이 있다. 교사, 간호원, 예술가가 대표적으로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도 사회적으로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전체로 보면 아주 작은 수에 그친다. 특히 여성의 취업 인구는 다른 중동제국과 비교하면 많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10-20%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적다. 그러나 농업종사자 가운데 여성의 취업 인구나 봉제 등의 사적인 경제에 종사하는 여성 취업자가 통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확한 여성의 취업 도는 추측키 어렵다.

한편 혁명후 벨의 의무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남녀의 격리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여성 전문직이 증가된 것도 사실이다. 여성의 신체는 여성이 진단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유에서 혁명 후 종교도시 콤에 여자의과대학이 설립되기도, 관공서의 각 창구도 여성 용 창구가 정비되는 등으로, 공적 기관에서 일 하는 여성의 수는 혁명 후 십년간에 증가했다. 테헤란, 이스파한 등 대도시에서는 여성이 경영하는 택시회사가 수년전에 탄생, 운전수도 여성, 승객도 모두 여성이라는 ‘여성 전용 택시’가 영업하고 있다. 이것도 남성과 여성의 공간은 가능한 한 구별하는 것이 좋다는 발생에서 나온 것은 확실하나, 치한 등에게 위협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여성들 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일반적으로 고용기회는 균등하다고 하더라도, 같은 능력의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지위의 일에 종사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돈벌이가 여성의 결혼생활에서의 역할이라고는 보지 않는 이란과 같은 사회에서는 이것만으로, ‘여성이 살기 어려운 사회’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 가정에서의 여성 파워

### 제도화된 결혼계약서

현대 이란에서는 여성의 지위를 특히 결혼 후 보장하는 제도가 몇 가지 있다. 그 하나가 결혼계약서다. 이란 등 이슬람사회에서는 인간을 악한 존재로 파악하기 때문에, 결혼도 하나의 계약으로 파악, 장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약속을 정해 둔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 결혼계약서는 신랑과 신부사이에 교환되는 계약서로, 결혼자금의 액수, 이혼의 조건, 두 번째 처를 얻을 수 있는가 없는 가 등, 결혼에 관한 사항을 결혼 시에 결정하는 것이다.

결혼계약서에 기재할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메헤리에라고 불리는 ‘결혼자금’이다. 이것에는 선불과 후불이 있으며, 선불에는 결혼 시에, 후불은 결혼 후 이혼까지의 사이에 지불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선불, 후불 모두 금액, 지불방법이 결혼계약서에 기재된다. 선불은 계약 시에 지불되나, 인플레이율이 높은 이란에서는 금화를 몇 장 지불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 금화를 몇 장 받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여성 스스로 적극적으로 교섭, 교섭이 제대로 안될 때는 결혼 후 급히 친정에서 돈이 필요할 때에 지불하기도, 이혼하게 된 경우 남편이 처에 대해 지불하기도 한다. 이 결혼자금의 존재는 여성의 경제보장이 결혼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혼 후의 여성의 생활보장은 전통적인 이슬람 적 발상으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세 가지 상정되어 있다. 하나가 상술한 메헤리에의 후불 분이며, 두 번째가 최

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생활자금, 세 번째가 아이들이 있을 경우, ‘나파카’라고 불리는 ‘우유 값’(현대적 의미에서는 양육비)이다. 이 세 가지 가운데 현대 이란에서 가장 제도화가 진전,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메헤리에다. 이것에는 결혼계약서의 교환이 혁명 후 특히 장려된 것으로부터도 영향하고 있다.

### 젠다 적 역할 분담

유럽에서는 여성 취업의 목적으로 ‘돈벌이’가 중요한 위치를 점하나, 중동 이슬람세계에서는 이란도 포함, 여성이 가계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는 기대되지 않는다. 생활비를 버는 것은 남성의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전통적으로 강하기 때문이다. 여성이 일을 할 경우는, ‘여성인 개인의 재능을 신장하거나, 사회적 공헌을 하기 위해’라고 하는 대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높은 현재의 이란에서는 가계가 해마다 어려워져, ‘돈벌이 위한 일을 하는’ 여성은 특히 도시지역에서 증가경향이다. 비도시지역에서는 농업, 목축도 여성도 일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여성의 취로는 도시지역도 변화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사는 여성의 일이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가사는 이란에서도 젠다 적 역할 분담으로 여성이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남성이 돈벌이하는 것이 사회규범이 되고 있는 사회와 달리, 가족과 가정이 경제, 사회생활상 최우선되고 있기 때문에, 남편(부친)이 가족과 지내는 시간은 압도적으로 많다. 셀러리 맨은 아침 8시부터 3시내지 4시경까지 취업하고 집에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물가고로 부업을 할 경우도 돌아오는 것이 밤 9시, 10시가 되는 경우는 없다. 그 결과 특히 젊은 층에서는 그릇 등을 싣거나, 청소기로 청소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하는 등의 가사노동은 남편이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집에 돌아오면 아들들 보기는 남성이 하는 경우가 잦다.



시장보기는 주말에 가족함께 하는 경우가 많고, 여성보호라고 하는 발상에서, 여성에게 무거운 시장꾸러미를 맡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내가 무엇을 살 것인가 모든 지시를 하고, 지불은 남성이 하는 것이 보통이다. 평일 일과시간 중, 회사에 아내가 전화, ‘돌아오는 길에 무엇 무엇을 사오라’고 부탁, 남편이 메모를 하는 광경은 자주 볼 수 있다. 가족을 대단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사회에서, 아내로부터의 전화는 회의 중에도 연결되는 경우

도 있다. 집으로 돌아올 때 남편이 잡화점에서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여성잡지를 싸서 돌아오는 모습에서도 아내의 보이지 않는 모습이 숨겨져 있다.

### 여성의 발언권

여성은 가정에서는 특히 절대적으로 발언권이 강해, 일상 가정생활에서부터, 집의 매매나 아이들의 결혼 등의 중대한 일의 결정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중매결혼이 일반적인 이란에서는 사람들에게 소개된 뒤에는, ‘모친이 자식을 데리고 상대의 집을 방문, 그 집 딸과 그 가족과 만난다’고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모친이 아이들의 결혼에 커다란 발언권을 가진다.

또 이란사회에서는 연장자를 존경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연장자에 대해서는 친척간이라도 경칭을 사용하여 접대할 정도다. 특히 일가의 장로는 일족으로부터 존경받으나, 여성 쪽이 오래살기 때문에, 이 장로가 여성일 경우가 많다. 정월이나 연중행사에서 가족이나 친척이 한꺼번에 만날 경우는, 할머니가 가장 상석에 안고, 방문객은 먼저 할머니에게 인사하는 것이 통례다. 할머니는 상좌에 당당히 앉아, 주변사람들이 먹을 것 모두를 갖다 바치는 것이 보통이다. 손자나 손자에 이르는 일족의 모든 사항을 ‘가장 옷 어른’인 할머니에게 모두 보고한다.

### 결 어

혁명 후 이란에서는 가족법은 결혼 법, 이혼법 등이 속속 개정돼, 이슬람 적 구조 가운데 여성의 권리를 확대하는 움직임이 이 2,3년 사이에 크게 진전됐다. 거기에는 ‘국가체제가 이슬람 적 가치가 입각한다면, 여성의 권리도 이슬람의 구조 속에서 고쳐져야 한다’고, 여성 활동가들이 빈번하게 요구해 온 것도 큰 작용하고 있다. 벨을 착용한 여성의 권리를 요구해 온 여성 그룹 가운데는 남여동권적인 가치에 입각한 구미형의 페미니즘이 반드시 이란의 토양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 이슬람의 재해석에 의해서만 여성의 권리는 수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그룹도 존재, 서서한 개몽 운동이나 여성 능력향상 프로그램의 추진 등이 행해져 왔다. 그러한 여성 활동가들의 활동이 효과를 봐, 법적인 보장은 혁명전보다도 오히려 진전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란여성의 파워는 그러한 법적개정의 획득과는 다른 곳에서도 존재한다. 그것은 벨을 착용한 스스로의 생활공간을 가변적으로 확대, 공적, 사회적 공간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가는 것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또 결혼계약서라고 하는 제도를 활용하여 선불, 후불을 확실히 정하고 결혼하는 형식도, 가정 내에서의 사적

인 장면에서도 다양한 파워를 발휘하고 있는 정연함과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여성의 생활 태도를 볼 수 있다.

남여동권적인 페미니즘은 개개의 권리를 모두 같이 하는 것이, 여성의 시민권 획득에는 불가결하다고 하는 발상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는 동권의 적분이 남여 평등이 된다고 하는 생각하고 있다. 이슬람 적 가치관에서의 여성보호나 여성의 권리확대는 반드시 남여동권이 되지 않는 면도 있으나, 각각의 개별적인 권리에 남녀 간의 우여곡절은 있다고 하더라도 총체적으로는 여성의 생활이 보장되면 좋다고 하는 발상에 근거하고 있는 듯 여겨진다.

혁명 후 이란에서는 여성은 벨을 착용하면서도 법적권리나 사회참가를 서서히 확대해 가고 있으나, 이 기간 벨 착용이 완화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을 이슬람 적 구조 속에서 여성이 획득할 수 있는 권리는 거의 모두 구비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도 가능하나, 여성들 가운데에는 지금 이상의 권리가 부여되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여성도 많다. 여성의 발언권은 가정 내에서는 강하고, 또 결혼생활에서 경제적인 보장은 되고 있으면서도,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남성 쪽이 여성보다 빨리 출세하는 것은 역시 불평등하다고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도 있다. 이란 여성이 투쟁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슬람적인 것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父權制에서 해방이며,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여성에게는 진정한 시민권 등을 획득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최근 이란에서는 사라, 다라 인형이 발매돼, 화제가 되고 있다. 바비 인형은 '서양이 손상' 되었다고 해, 혁명 후 제도가 일시 중지되었던 시기도 있었으나, 결국은 대표적인 여자용의 인형으로 금일까지 잘 애용되어 왔다. 세라(여자 이름) 다라(남자이름)의 쌍둥이 인형은 어느 것이나 이란의 전통적인 민족의상을 입고 있으며, 세라는 벨을 머리로부터 걸치고 있다. 이것은 이란의 전통문화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파악되나, 이란의 차세대를 담당할 여자들은 금후 바비와 사라의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가 흥미롭다.

가정 내의 이란여성 파워는 혁명 후 시작된 것이 아니라, 팔레비 국왕의 근대화정책 시대로부터 계속되어온 것이다. 거기서 벨을 입은 여성의 공적, 사회적 공간을 확대, 이슬람 적 논리에 근거하여 여성의 권리를 확대해 간 현실은, 혁명 후 결과 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여성들이 스스로 획득한 것이다. 혁명 후 이란 여성들의 단정한 모습을 보면, 그다지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유럽형의 페미니즘과 이슬람 적인 페미니즘의 어느 것을 모색하려 하더라도, 실질적인 여자의 파워는 당시의 사회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발휘될 것이다. 이슬람과 젠다 문제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시대의 논란

## 독재자의 의자에 앉은 해방자

Davia Baran (저널리스트, 오타와 주재)

미국에 의한 이라크공격을 불법적이고 오만하다고 규탄한 사람들은 점령군에 대한 이라크시민들의 애매한 반응에, 일종의 안도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 나라를 주시하고 있던 미디어가 전하는 것은, 점령군의 실태에 분개, 유린되고 있는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 미국정부의 의도는 이미 간파 했다고 하는 이라크 시민들의 불만이다. 점령 제국의 계획에 다소나마 찬동하는 듯한 분위기를 시사하는 보도는 아직 없다. 대부분이 비판일색이다. '전쟁 전보다 더욱 어렵다', '미국인은 사담과 같다'는 등의 말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비교는 구체제에서 조금도 득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욱 개탄스러운 것이다. 현장에 있는 미디어에 신경을 쓰고 있는 점령국들이 심각한 전 정권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부당한 구속, 암네스티 인터내셔널에 의해 고발된 고문사건, 미디어에 대한 규제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점령군에 의한 폭정은 체첸에서의 러시아군,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병사들, 아프카니스탄의 미군들과 비교하면 엄청난 것이 아닐수도 있다.

그러나 무장 저항 행동에 대한 진압 작전은 여러 면에서 지나친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구속된 용의자가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은 흔하다. 미군에 의해 급습된 집에서는 철저히 수색을 당해 가구가 파괴되고, 주인의 금품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미 병의 구두로 얼굴을 구타당했다고 호소하는 이라크 인들도 있다. 구체제의 양태와 동일한 경우도 있다. 최근 무장 저항 세력의 여성이 되고 있는 돌이아에서 농장이 파괴된 사건은 사담 후세인의 군대에 의해 1991년에 파괴되었던 야미농원 사건을 생각해 한다. 수배중인 남편에 대신하여 그 사람의 아내를 구속하는 것은 연대책임을 강요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 사람의 수배자 때문에 그 사람의 가족 모두가 곤욕을 당해도 별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무장 저항 세력도 지지자도,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을 당하거나, 자기 처가 눈앞에서 험한 꼴을 당하는 것, 부모나 자식이 처형되는 등의 일은 절대로 없다고 믿고 있다. 공포의 시대가 지났다는 것은 모두가 마음속으로 이해하고 있다. 때문에 외국 미디어가 개탄하는 점령군의 횡포에 대해, 이라크에서는 형식적인 항의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미디어는 폭력의 확대를 전하나, 주민들 사이에는 무기력이 확산되고 있다. 이 온도차는 지금도 폭력이 일어나는 듯이 말하지는 않더라도,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듯한 상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거기에는 하나의 파라독스가 있다. 항의해야만 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점령당국을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점령

상태를 받아드리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 답을 찾는 것은 이라크 인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구체제와 신 지도부를 대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미국의 문민당국과 군인들은, 독재시대에 사용되고 있던 거점 성역화정책을 채용, 특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들은 대통령령이나 당 소유의 건물 주위를 차단할 뿐 아니라, 일부 호텔, 학교 집단주택 등도 점거했다. 이들의 전략적거점은 엄격한 경제태세로 경비에 나서고 있다. 폭탄을 실은 차에 의한 공격에 대비해, 바그다드는 거대한 콘크리트 요새가 되었다. 이라크 인들에 의하면 그것은 마치 '베를린 장벽' 같은 것이다. 바리케이트가 쳐진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비의 엄격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특권적 신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들 은폐된 건물에 숨어있는 정치권력은 이라크의 일반시민들에게는 안개속에 있으면서 가까이 하기 어려운 것으로 비치고 있다. 진정한 결정권을 가진 것은 단 한 사람. 그 남자, 문민행정관 폴 브레마는 독자적인 경비대에 둘러싸여, 독재시대의 밀정과도 같은 고문에 둘러싸여, 시민들로부터는 단절된 존재다. 그의 생활이나 행동은, 성역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의 이동에는 엄중무장한 경호차 행렬이 호위하고, 그의 통행에는 일반시민들의 불편쯤은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 성벽 속에서, 절차도 극히 불투명한 채 행해지고 있다.

내려진 결정은 대체적으로 자의적임과 동시에, 언제 취소되더라도 전혀 의외가 아니라는 인상을 준다. 지금까지의 결정을 봐도, 상호 모순되거나 후에 철회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결국 이라크 인이 알고 있는 정치라는 것은 지금도 소문이라든가, 억측 등이 중심적인 내용일 수 밖에 없다. 사람들이 볼 때 현재의 잠정통치기구는 과거의 후세인정권아래서의 내각과 같이 미당국에 복종하기만 하는 장식물 이상이 아니다. 이라크의 정치권력은 일반시민들로부터 구조적으로 격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리된 후보정책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점령당국의 의도를 둘러싸고, 수많은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라크의 사람들은 신 지도부에서 구체제 그대로의 정치문화를 읽고 있다. 독재체제 아래서의 체험과 같다고 하는 인상을 받아, 이전과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생각을 하게하고 있다. 미군은 이라크의 부흥축진을 위해 이라크 인들도 치안유지에 협력해 주면 좋겠다고 호소하면서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내걸었다. "우리들에게 평화를, 그렇게 하면 전기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슬로건을 듣고 다수의 이라크 인들은

전기배전이 실제로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즉 그동안의 정전은 미군에 의한 고의적인 제재이상이 아니었던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런 류의 일이, 팔자와 같은 마을에서 어떤 반응을 불러 일으켰을 가는 상상할 수 있다. 이 마을 주민들은 특히 부당한 처우를 받아오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점령당국은 입으로는 나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특정 이익을 우선적으로 지키려 하는 점에서도, 구체제와 비슷하다. 무엇보다 우선되는 것은 새로운 권력엘리트인 미국인들의 안전이다. 점령군은 검문과 같은 위협성이 높은 일은 미 병에 대신하여 이라크 인들을 배치했다. 현장에서의 발표명령은 기준이 너무 완화돼, 다수의 일반시민이 희생 되게 되어 있다.

#### 카오스의 공포

다소의 희생은 필요하다고, 문외한들에게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이 행해지고 있다. 이 말은 무장 저항 행동에 대해서 다소나마 객관적인 분석을 전혀 수용하려 하지 않는다. 무장 저항 행동은 무엇이든 이라크 국민 자체에 대한 공격이라는 것이다. 공식견해로는 '바드 카이'라고 총칭되는 '바스 당원'과 '테러리스트'가, 어쨌든 이라크 국민에 적대행동을 한다고 여긴다. 즉 이라크는 붙잡을 수 없는 적에게 공격당하고 위협당해 꼼짝 못하고 있다. 이 적을 토벌하지 않은 한, 새로운 진보 시대의 막은 열리지 않는다.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들의 고통이 일과성에 지나지 않고, 당국이 이 중대한 전쟁에 몸을 내맡기고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후세인이 이라크에 과한 경제제재에 대해 말해오던 것과 큰 차이가 없다. 브레마에 의하면 중요한 것은 자유다. (---) 폭력이나 물자부족을 극복하는 것, 연합군의 승리덕택에 오늘날 이라크 인들이 향유하고 있는 수많은 권리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죄 없는 사람들의 목숨이 희생되는 것은 관계자 전원에 있어 비극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수는 대단히 한정되어 있다" 실제로 그 수는 알 수 없다. 죽은 사람의 수를 확인하는 조직도 없으며, '失態'에 관한 공식적인 조사도 행해지지 않고 있다.

점령당국은 대개, 이라크에서의 폭력이나 기능부전에 대한 책임을 강력 부인한다. 미국정부는 미디어에 대해, 비밀스러운 것은 기사화하지 않도록 명령하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 인들의 과거나 현재의 고통은 곧잘 선전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학살 현장은 크게 개방했다. 그 때문에 재판에 필요한 정확한 자료 수집이 곤란하게 되었다. 간단히 보면, 국민적 화해의 프로세스 등은 어찌도 좋다는 것이다. 후세인의 자식들의 경우도, 그들이 점거하고 있던 가옥을 쉽게 포위했으면서도, 미군들은 그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라크시민들이 입은 고통은 점령국들이 우선시 하는 이해에 따라 왜곡되고 있다. 막직무를 재개한 경찰기구도, 미군거점을 경호한다고 하는 임무 때문에, 이미 신용을 잃고 있다. 과거 정권에서의 불법행동 등

으로 장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첩보기관도, 애매한 상태로 서서히 재조직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는 이라크에서의 선거일정이 중동의 '민주화'의 상징으로, 부시의 대선 전략에 이용되고 있음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이라크 정치 상황이 얼마나 점령국 측의 이해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바그다드의 미군당국은 과거의 대통령궁의 '디운 알 리아샤'의 특징의 다수를 가지고 있다는, 전혀 예상외의 특이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 기관은 후세인정권 아래서 실권을 한손에 장악하고 있던 악명 높은 기관이었다.

현재도 후세인시대와 같이, 모든 수단을 손에 넣은 실제의 권력중심과, 괴멸상태의 국가기구와는 완전히 분단되고 있다. 일반시민이 무정하게 방출되고 있음에 대해, 특권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호화스러운 건물에 안주하여 호사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들은 헌신적인 무장경비대에 둘러싸여, 구 체제아래서의 약탈 논리와 비슷한 수단에 의해 손에 넣을 수 있는 한 많은 자금을 독점하고 있다. 바로 이 같은 제반 상황이 독재체제와의 계속성을 나타내는 최대의 요인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담의 통치에서 극도의 피해를 경험한 이라크 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남는 일에 필사적이며, 그 밖에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애써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권력에 대해 자기들은 무력하다고 믿는다. 조국의 부와, 운명이 박탈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너무나 순치돼, 인내할 수 없는 일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만다.

이라크 인들이 가진 기대는 바깥사람들이 보면 거의 믿기 어려운 정도의 작고 현실적인 것 밖에 없다. 이러한 정서를 옹변하는 아주 적절한 말이 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우리들의 석유가 탐나는 구나, 사담시대에도 그것으로 결국은 덕이 되지 않았으니, 미국도 그것의 일부는 우리들에게 남겨주면 좋을 걸 ---" 이런 상황에서는 점령군이 어떻게 하든 사태의 개선을 구체화시키면, 예상외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이라크군의 해체와 같은 극적인 것을 포함, 견잡을 수 없는 실책은 억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중요한 고위성직자나 걸출한 부족장이 구속되는 등으로 실정은 계속되고 있다. 차에 타고 있던 이라크 무고한 시민이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사건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이라크에서는 대규모의 폭동은 물론 수 천명단위의 데모마저 일어날 수 없는 듯 하다.

후세인 통치 때 이미 통합성이 와해되어버린 이라크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국민'이라고 부를 수 없을지 모른다. 대부분의 이라크 인들은 지금, 미국이 일찍 철수했을 경우의 내전발발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점령군은 구체제가 향유하고 있던 것과 같은, 최소한의 정통성을 손에 넣고 있다. 즉 카오스의 공포가 그것이다.



## FOCUS



## 중국의 신국방정책

중국인민해방군의 제10차 병력삭감, 2005년 종료

**강**택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국방과학기술 대학 창립50주년 기념식전에서 제9차5개년 계획에서 실시한 인민해방군 병력 50만 명 삭감에 이어, 2005년까지 또 20만 명을 삭감한다고 준엄하게 선언했다. 새로운 군사개혁은 군대의 규모에 대해, 합리성이나 실용성 있는 규모가 적절한 것으로 요구되었으며, 230만 명 규모의 인민해방군은 이들 요구에 한층 가깝게 된다. 세계적인 시야에 볼 때, 세계각국의 국내총생산(GDP)에 접하는 국방비 비율은 일반적으로는 2~4% 전후를 차지하고 있음에 비추어 중국은 1.5%를 차지하고 있다. 2002년의 중국 국방비지출은 1694억4400만원으로,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204억 달러며, 미국 국방비의 약 6%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의 병력감축 후, 한정된 군사비로 어떻게 하여 최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중국 군의 발전에 있어 중요과제가 되고 있다.

### 신중국 성립 후 대규모적인 병력삭감

#### (1) 제1차 삭감

신 중국 성립 초, 인민해방군의 총 병력은 550만 명에 달했다. 전군 참모회의는 1950년6월, 병력을 400만 명으로 규정, 동년의 제대 자는23만9천명 이상이였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抗米援朝’ 전쟁(한국전쟁)이 발발, 병력삭감은 중지. 1951년 말의 병력 수는 인민해방군 역사상 가장 많은 627만 명에 달했다.

#### (2) 제2차 삭감

중앙군사위원회는 1951년11월, 군의 재편회의를 개최, 1954년까지 병력을300만 명 전후로 한다고 규정. 인민해방군의 정수는 약 300만 명으로 축소하는 군사재편계획은 1952년1월, 모택동 국가주석의 승인을 받았다.

#### (3) 제3차 삭감

병력 수는 1953년9월말 시점에서, 약 420만 명으로 감소. 전국국사관계자의 당 고급간부회의는

동년 12월, 병력 수 350만 명으로의 삭감을 결정, 1954년6월까지47만2천명 이상을 삭감, 동년 말에 계획을 달성했다.

#### (4) 제4차 삭감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는 1957년1월, ‘병력 수의 삭감과 군의 질적 강화에 관한 결정’을 가결, 병력의 1/3에 해당하는130만 명의 삭감을 확정. 3년 후의 병력 수는 약 250만 명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 (5) 제5차 삭감

1975년6월24일부터7월5일에 걸쳐 개최된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3년간에 60만 명의 삭감을 결정. 1976년의 병력 수는1975년에 비해 13.6%감소했다. 그 후, ‘4인방’의 실각에 의해 병력삭감, 군의 재편은 정지됐다.

#### (6) 제6~8차 삭감

중앙군사위원회는 1980년3월, 다시 병력삭감을 결정, 부대의 통폐합에 의한 재편성을 실시했다.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는 동년 8월15일, 중앙군사위원회의 ‘군대의 병력삭감-재편계획’을 승인.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는 1982년9월, 다시 병력삭감과 부대재편을 결정했다. 그 후, 중앙군사위원회는 1985년5월말부터6월초에 걸쳐, 병력100만 명의 삭감을 결정. 1987년 초에는 일련의 병력 삭감, 재편작업이 종료됐다.

#### (7) 제9차 삭감

강택민 국가주석은1997년9월, 제5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의 보고 가운데, 1980년대의 병력 100만 명 삭감을 계속, 금후 3년간 다시 50만 명의 병력삭감을 발표. 이 병력 50만 명 삭감은 1999년 말에 달성, 현역 군 간부 20만 명이상이 퇴역, 재취업했다. 그러나 제9차 병력삭감은 신중국성립후의 병력삭감 가운데 간부의 비율이 비교적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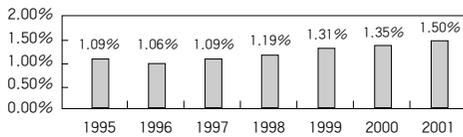
**국방비**

중국의 국방비는 '중화인민공화국국방법'에 근거, 정부에 의해 보장되고 있으며, 모든 국가예산에서 지출된다. 국방비에는 재정할당제도가 실시돼, '중화인민공화국예산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국방비의 예산, 결산은 전인대에서 심의, 승인된다. 국가나 군대의 감사기관은 예산의 집행에 대해 엄격한 감사, 감독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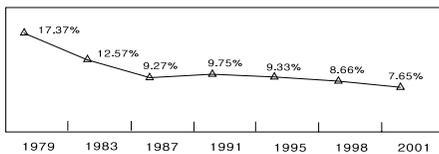
정부는 근래 수년, 재정개혁에서의 통일적인 요구에 근거, 국방비의 관리에 대해서 (1)국방비에 산의 편성방법의 개혁 (2)병기, 장비의 조달자금의 일괄지불 (3)국방에 관계하는 물자의 구입이나, 공사발주, 서비스도입에의 입찰제도의 실시 등 일련의 개혁을 실시. 국방비의 사용이 더욱 공개돼, 보다 공평하고 공정하게 관리되게 되었다.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의해, 중국의 국방비는 증가하고 있다. 국방비의 GDP에서 점하는 비율은 1995년의 1.09%에서 2001년에는 1.5%가 되었다.(표1). 그러나, 중국의 국방비 증가율은 비교적 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보전적 증가의 의미가 강하다. 국방비의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하향경향으로 (표2), 1979년의 17.37%에서 2001년에는 7.65%로 약 10 포인트 감소하고 있다.

2000년과 2001년도의 국방비는 각각 1207억 5400만 원과 1442억 400만 원, 2002년도 국방비에 산은 1694억 440만 원으로 (표3), 각 년의 재정지출에서 점하는 비율은 각각 7.6% 7.65% 8.03%다. 이 수년의 국방비증가의 주된 요인은 다음과 같다.



(표1) 1995~2001년 중국국방비는 GDP에서 분할재정



(표2) 1979~2001년 국방비는 재정지출에서 분할재정

(1)군인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지출증가  
사회경제의 발전이나 도시, 농촌의 주민수입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포함, 군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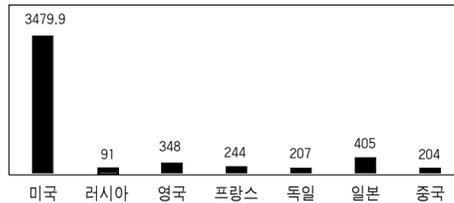
년도	항목	인원생활비	활동추진비	예비운영비	합계
2000년		405.50	412.74	389.30	1207.54
2001년		461.63	485.81	494.60	1442.04
2002년		540.43	540.43	572.78	1694.44

(표3) 1995~2001년 중국국방비는 GDP에서 분할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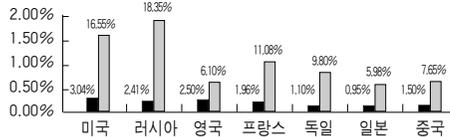
생활수준에 대한 같은 정도의 인상을 보증, 생활 조건을 개선. 부대의 식비기준은 최근 10년간에 5 회에 걸쳐 인상됐고, 또 간부들의 급여는 84%, 사 병수당은 92% 증가하고 있다.

(2)군인의 사회보장제도의 설립과 정비  
시장경제의 요구에 응해, 군인상상보험, 퇴역군 인의료보험, 군인주택수당 등의 제도를 1998년 이후 차례로 설립. 또 정년 퇴직한 군인의 생활비 기준을 조정했다.

(3)군대유지비의 증가  
군대의 상업적 경영활동이 1998년에 정지한 후로, 부대의 군사훈련에 드는 비용이 해마다 증가. 부대의 생활시설이 차차 개선돼, 사무작업의 자동화가 진전됨에 따라, 부대를 유지하기 위한 지출이 증가되고 있다.



(표4) 2002년도 일부국가의 국방비지출액의 비교



(표5) 2001년도 중국국방비는 GDP와 재정지출에서 분할재정 각국과의 비교

주의: ■ 국방비는 GDP에서 분할재정  
□ 국방비는 재정지출에서 분할재정

<계 속 >

(4)국제사회의 반 테러주의에의 동조에 따른 지출의 증가

(5) 현대기술, 특히 이라크기술시대에서 방위 작전능력 강화를 위해, 부분적인 장비의 건설비용의 증가

2002년 중국의 국방비지출액은, 세계적으로도 단연 낮은 수준에 있다.(표4). 또 국방비의 GDP나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에 비해 비교적 낮다(표 5).

### 중국의 국방정책

중국의 국방정책은 방위중심으로, 그 기본목표는 (1)강력한 방위(2)외적의 침략을 방어(3)영토권, 영공권, 영해권이나 해양권익의 방어(4)국가의 통일과 안전의 유지에 두고 있다. 중국의 국방건설은 국가경제건설의 대국에 따라 실시되며, 「平?(평상시와 전쟁시) 결합」, 「軍民結合」에 의해 발전의 길을 걸어오고 있다. 중국은 적극적인 바위전략을 실행, 인민전쟁의 사상을 견지해 간다. 중국은 세계 또는 지역에서의 패권을 추구치 않으며, 해외에의 파병, 군대의 주둔, 외국에서의 군사기지의 건설을 하지 않는다. 중국의 국방건설은 어떤 국가에 대한 것도 아니며, 또 어떤 국가기구를 위협하는 것도 아니다.

중국의 군 통제와 군축에 관한 기본주장

(1)세계각국은 UN헌장을 준수, 국제평화와 안전의 취지, 원칙 및 관계 국제법의 준칙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군의 통제와 군축을 행함과 동시에, 침략을 저지, 지역충돌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 국제관계에서 무력에 호소하거나 무력으로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된다. 국제관계에서의 패권주의나 강권정치를 버리고, 병력삭감에 유

리한 국제적인 환경,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2)군축의 최종목적은 핵병기나 화학병기, 생물병기를 포함 대규모 살상병기의 전면적인 금지, 철폐, 우주병기의 전면적인 금지와 동시에, 실정에 맞는 통상군비의 삭감이다. 많은 우수한 핵병기, 통상무기를 보유하는 대국은 군의 통제나 군축의 실시에 있어, 특별한 책임을 진다.

(3)대규모 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한다. 확산 금지가 최종목표가 아니라, 동 무기의 전면적 금지, 철폐에 의해 비로서 확산방지에 효과가 있다. 또, 확산방지는 세계 각국이 과학기술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정당한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특히 발전도상국의 경제나 과학기술에 대해, 발전을 제한하거나 손해를 가하는 것을 안 된다.

(4)모든 국가들은 정당한 방어능력과 합법적 자위권 가지고 있으며, 군의 통제나 군축의 각 단계에서, 국가의 안전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또 국가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들에게는 군의 통제나 군축의 문제를 토론, 해결할 권리가 있다. 국제적인 군의 통제나 군축은 어떤 국가의 독립이나 주권을 위협해서는 안되며, 또 무력사용에 의한 위협을 해서도, 어떤 국가의 내정에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5)세계 각국, 특히 선진국은 원료, 기술, 군축의 양도를 엄격히 관리, 억제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며, 무책임한 무기양도는 없어야 한다.

(6)세계 각국은 국가들 사이에서 지역 실정에 따라, 협의, 절충아래 행해진 군의 통제나 군축조치에 찬동, 존중, 지지해야 한다.

<출처 : <http://j.peopledaily.com.cn/cehua/20031022/home.htm>>



홍수 방지를 위해 애쓰는 인민해방군



중국의 반 테러특수부대



민병들에 의한 가교훈련

News Relay

## 사담 후세인 체포

서문 / '부시연설문' /  
부레머 이라크행정수반 기자회견 /  
사담체포의 의미- Q&A /  
사담의 일생 / 전쟁의 경과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66)이 8개월간의 도피 끝에 마침내 생포됐다고 폴 브리머 미군정 이라크 최고행정관이 2003년 12월14일 오후3시(이하 현지시간, 한국시간 오후9시)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발표했다.

브리머 행정관은 지난 13일 오후 8시30분께 후세인의 고향인 이라크 북부도시 티크리트에서 16km 떨어진 아드와르에 대한 기습 공격에서 후세인이 체포됐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를 잡았습니다”라는 말로 역사적인 발표를 시작했다. 브리머는 “오늘은 이라크 역사상 위대한 날 중 하나”라며 “수십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잔인한 사람의 손아귀에서 고통 받았으나 그런 시절은 이제 지나갔다”며 “독재자는 죄수가 됐다”고 말했다.

이라크 주둔 미군 최고사령관 리카도 산체스 중장은 외딴 농장의 2m 깊이 참호에 숨어 있던 후세인이 체포될 당시에 아무런 저항 없이 응했다고 밝혔다. 또 후세인은 체포되는 동안 “말을 많이 했고 협조적”이었으며 “100달러짜리 지폐로 미화 75만 달러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후세인 신원확인 작업에 참여한 아드난 파차치 과도통치위원은 후세인이 피곤하고 수척한 모습이었지만 매우 완고하고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파차치 위원은 후세인이 자신은 올바르게 공정한 지도자였다고 강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붉은 새벽 작전’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번 기습작전은 미 육군 보병 제4사단이 이끌었으며 작전 도중 부상자가 없었고 실제로 단 한발의 총알도 발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군은 이날 체포된 후세인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를 언론에 공개했다. 처음 보여준 비디오 화면 속의 후세인은 머리가 길고 그의 트레이드 마크 인 콧수염 대신 흰색 턱수염을 기르고 있는 모습으로 DNA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서인 듯 입을 벌리고 있었으며 다음에는 수염을 깎은 모습이 공개됐다. 후세인의 모습이 공개되자 기자회견장에 있던 이라크인 기자 몇 명은 “후세인에게 죽음을”이라고 외쳤다.

지난 4월9일 연합군이 바그다드에 입성하기 직전 도피한 후세인은 이라크 전범 55명 중 1순위로 2천500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려있었다. 워싱턴의 미국 관리들은

참호 속에서 수염을 기른 남자를 체포한 미군은 처음에 그가 후세인인지를 확인하지 못했으나 곧 후세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이날 아침 일찍 DNA 검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마드리드를 방문중인 압둘 아지즈 알-하킴 이라크 과도통치위 의장은 DNA 검사결과 후세인임이 드러났다고 확인했다.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위원이

자 친미성향의 이라크 국민회의(INC) 의장인 아흐마드 찰라비는 “후세인은 이라크 국민들이 죄상을 알 수 있도록 공개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 국방부가 지원하고 있는 현지 알-이라키야 방송이 전했다. 그러나 후세인을 비밀장소에 구금중인 미군 측은 후세인을 아직 이라크 측에 재판을 위해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은 후세인 체포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주요 전투 종료를 선언한 5월1일 이후 미군병사 19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후세인 잔당세력의 조직적인 저항을 분쇄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14일 정오께 (현지시간, 한국시간 15일 새벽 2시) 대 국민 TV연설을 통해 후세인 체포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며, 우방국 지도자들에게 전화로 후세인 체포 이후 문제를 논의했다고 스킷 메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메클렐런 대변인은 또 “이라크 인들은 마침내 후세인이 (권좌에) 복귀하지 못하게 됐음을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후세인 체포소식은 이란 관영 IRNA 통신이 이날 오후 이라크 과도통치위원인 쿠르드족 지도자 잘랄 탈라바니의 말을 인용해 첫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 등 우방국 지도자들도 일제히 후세인의 체포사실을 확인하고 환영했다. 블레어 총리는 “후세인 체포는 이라크에서 더 나은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것”이라며 후세인이 이라크 인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이라크 법정에서 재판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라크 현지에서는 14일 아침부터 후세인 전 대통령이 체포됐다는 소문이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 지역에 퍼돌았다. 후세인 체포 소문이 퍼들자 일부에서는 하늘로 총을 쏘면서 이 같은 소문을 축하했고, 바그다드에서도 주민들이 축포를 쏘았다.



## 부시 대통령 연설문

(2003년 12월 14일, 일요일, 오후 12시 43분)

어제 2003년 12월 13일, 바그다드 시 각 오전 8시 30분경 미군은 사담 후세인을 생포했다. 그는 티크리트 외곽 농가 근처에서 발견되었고, 전격적인 기습작전은 사상자 없이 수행되었

다. 지금 이라크 전 독재자는 그가 수백만에게 부인했던 정의에 직면할 것이다.

후세인 체포는 자유 이라크 정권 수립에 결정적인 사건이다. 후세인 체포로 그에게는 끝장을, 그의 이름으로 학대, 살해를 당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비극도 끝장을 봤다. 현재의 폭력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이 있는 바트주의

자(Baathist)들에게는 한때 누렸던 부패 권력과 특권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남녀 모두 자유인으로 살기를 염원했던 절대 다수의 이라크 시민들은 후세인 체포로 확실하게 고문실과 비밀경찰의 소멸을 보장 받을 것이다.

오늘 오후, 이라크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한다. 즉, 더 이상 여러분은 사담 후세인의 지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자유의 편을 든 모든 이라크인은 승리했다. 여러분들의 국가 주권, 여러분들의 위대한 미래에 대한 존엄, 그리고 모든 이라크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기회 등 여러분들의 목표와 우리 연합군의 목표는 동일한 것이다.

이라크 역사의 한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기는 끝났고, 희망찬 날이 도래했다. 모든 이라크인은 이제 단결하고, 폭력은 거부하여 새로운 이라크를 건설할 수 있다.

어제 성공리에 끝난 임무에 대해 현재 이라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번 군사행동은 광막한 나라에서 독재자의 발자국을 찾아 정보 분석가들의 눈부신 업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작전은 용감한 전투 병력의 노련함과 정확성으로 완수되었다. 우리의 남녀 군인 그리고 우리 연합군은 붕괴한 정권의 구성원을 추적하면서, 또한 이라크 국민에게 희망과 자유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온갖 난관을 겪었으며, 그들의 임무는 계속되며 위험도 계속될 것이다. 오늘 나는 국가를 대표하여 우리 군 병력에게 감사를 하며 또한 축하를 한다.

또한 모든 미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한다. 사담 후세인의 체포는 이라크에서 폭력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동의 가슴에 자유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무고한 사람을 계속 살해하고자 하는 테러리스트들과 우리는 아직도 마주 대하고 있다. 그러한 사람들이 미국 국민의 직접 위협 대상자이나, 그들은 격퇴될 것이다.

인내와 결의와 단합된 행동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그것이 향후 나아갈 우리의 전략이다. 테러에 대한 전쟁은 다른 양상의 전쟁이다. 체포는 체포, 세포조직은 세포조직, 그리고 승리 또 승리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안보는 불굴의 정신과 자유의 성공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그래서 미합중국은 이 전쟁을 승리할 때까지는 안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라크 국민에게 신의 축복이, 그리고 미국에 하느님의 가호가 있기를 기원한다.

## 이라크의 미국 최고행정관

### 폴 브레머(L. Paul Bremer)의 기자회견 전문

(2003년 12월 14일 오후 1시 24분)

**브레머** ; 여러분, 우리는 그를 체포했다.(We got him)

사담 후세인은 티크리트 남부 약 15km에 위치한 아드와르 시의 한 지하 땅굴에서 12월 13일 오전 8시경, 일요일에 체포되었다. 통치 위원회 위원장 대리, 파차치(Pachachi)박사와 산체스(Sanchez)중장이 발표하기 전에 이라크 국민에 몇 마디 언급하고자 한다.

오늘은 이라크 역사상 위대한 날이다. 수십 년간, 여러분 수십만은 이 잔혹한 사람의 손아귀에서 고통을 겪었다. 수십 년간, 사담 후세인은 시민 여러분을 분열시키고, 반목케 하였다. 수십 년간, 그는 여러분 이웃을 위협하고, 공격을 했다. 이제 그 날들은 영원히 끝이 났다. 지금은 미래로, 희망의 미래로, 화해의 미래로 눈길을 돌릴 때이다. 이라크의 장래, 여러분의 장래는 이보다 더 희망으로 가득 차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독재자는 범죄인이다. 경제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몇 개월이 지나면, 여러분 앞에 독립정부의 전망이 보일 것이다.

사담 후세인의 체포로서,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과거 정권에서 일해 왔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냉혹한 저항을 끝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온 것이다. 이제, 화해와 희망의 정신으로 그들의 무기를 놓게 하고, 시민 동료로서 새로운 이라크의 건설과업에 여러



분과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을 나서게 하자. 지금은 이라크 인, 아랍 인 쿠르드 인, 수니파, 시아파, 기독교도와 투르크 멘 모두가 번영, 민주의 이라크를 건설하고 이웃과 함께 평화를 도모할 때이다. 자, 파차치 박사?

**아드난 파라치(통역을 통하여)** ; ...화해를 통해서, 모든 이라크 인은 새로운 이라크, 즉 자유와 평등의 이라크를 건

설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주권과 권위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한다면, 적당한 시기에 이라크가 국제무대에 돌아올 수 있음을, 통치 위원회를 대표하여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고맙다.

**리카르도 산체스 중장** ; 여기 모든 분들에게는 오후 인사를, 그리고 모든 미국 국민에게 아침 인사를 드린다.

짧게 말씀 드리고 나서 질문에 답하겠다. 오늘은 이라크 국민과 연합군에 위대한 날이다. 지난 밤, 대략 오전 8시, 현지 시각에 레이 오디어노(Ray Odierno)소장 지휘의 제 4 보병사단의 병력과 특수 작전 연합군 합동으로 '붉은 새벽 작전(Operation Red Dawn)' 을 개시, 전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체포했다.

이는 티크리트시 근처 벽촌의 농가에서 감시,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중 이루어졌다. 사상자는 없었으며 단 한 방의 총탄도 발사되지 않았다. 사담 후세인 포로는 다변이었으나 현재 협조를 하고 있다. 그를 체포한 작전 전반에 대해 개요를 지금 설명하겠다. 사전 지식을 위해서, 이 지도는 이라크 서부지역, 사담 후세인이 체포된 인근 티크리트시와 아드와르 시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정보원의 밀고, 정보 분석가들의 탁월한 노력, 역류자들의 심문을 통해서 사담 후세인 활동 범위를 좁혀 나갔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밤, 벽촌 농가를 급습, 그 곳에서 사담을 체포하였다. 어제 약 10시 50분 경, 사담 후세인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였다. 아드와르 시 근처, 두 곳의 유탄 장소가 확인되었다. 작전상 이 위치는 '올버린 1' (Wolverine One)과 '올버린 2' (Wolverine Two) 로 표시되었다.

제4보병사단의 제 1여단 전투 부대가 사담 후세인의 살해 혹은 체포 작전에 투입되었다. 짐 히키(Jim Hicky) 대령이 지휘한 레이더 여단, 4 사단의 제1여단 전투 부대 등 대략 600 병력이 참여하였다. 그 병력에 기갑, 공병, 포병, 항공과 특수 작전 부대가 배속되었다. 지난 밤, 오후 6시 경에 어둠을 틈타, 전광석화로 레이더 여단 병력은 아드와르(Adwar) 목표물을 향했다. 오후 8시경, 연합군이 두 곳의 목표물을 급습하였으나, 처음에는 목표물을 찾아내지 못했다. 제1 여단 전투 부대가 그 지역 수색조로 선발, 집중적인 수색을 개시하였다. 그 후 연합군은 '올버린 2' 북서쪽에 위치한, 한 의 심스러운 장소를 발견했다. 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구내에, 철 구조물에 기대어 진 진흙 오두막이었다. 수색과정에서 잠복호가 발견되었는데, 그 잠복호의 입구는 벽돌과 쓰레기로 위장되어 있었다. 그 호의 덮개를 제친 후, 수색을 하던 중, 그 호의 바닥에 숨어 있는 사담 후세인이 발견되었다. 호의 깊이는 약 1.8미터 내지 2.4미터로서, 그 안에는 한 사람이 누울만한 공간이 있었다.

사담이 체포될 때, 저항은 없었다. 지난 밤 9시 15분 경, 사담 후세인이 안전 장소로 이송된 후, 그 호와 주변에 대한 수색은 계속되었다. 기습 결과 AK-47 2개, 권총 하나, 100볼 지폐로 된 750,000볼 그리고 흰색과 오렌지색의 택시 한대가 발견되었다.

2명의 이라크인이 사담 후세인과 연루되어, 이들 역시 구금되었다. 사담 후세인은

연합군 관리하의 모처에 구금되어 있다. 짤막한 비디오를 보여 주겠다. 여러분이 보는 것은 사담 후세인이 발견된 호의 장면이다. 이것이 공기 배출구와 선풍기이며 불박이 십자형으로 만들어져, 그는 이것으로 지하에서 지낼 수 있었다. 이 사람이 오늘 건강진단을 받았던 사담이다.

사담의 건강진단 결과, 어떤 외상도 없었으며, 현재 건강은 양호하다. 다음 보여줄 것은 여러분의 원편에 체포 당시 사담의 사진이다. 오른 편에 면도를 끝낸 사담의 모습이다. 다음엔 슬라이드. 지금 보는 사담은 역사적 모습으로 나의 왼쪽에 있다. 사담의 체포로, 새로운 이라크가 규정되는 순간이다. 사담 후세인의 구금은 이라크 국민을 위한 화해의 시작이며, 이라크 재탄생을 알리는 징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공으로 이라크 국민에게 종지부를 내린 것이다. 마지막 각오를 하겠다. 사담 후세인은 과거 35년 이상 저질렀던 악행, 즉 이라크 국민에 대한 고문, 테러, 중상과 착취를 자행하는 권좌로 다시는 복귀할 수 없을 것이다. 사담 후세인의 테러 통치로 점철했던 이라크 역사의 장은 이제 영원히 막을 내린 것이다.

#### 이제 질문을 받겠다. 예, 여자 기자분이 먼저?

**Q** 금주 초, 전범 재판소가 구성되어 어떤 혐의자든 이라크 관리로 넘길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그렇게 할 계획은? 그리고 조건은 무엇인지. 사담을 이라크 인에게 넘기기 전에 이라크 교도소에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산체스 : 이 시점에는 결정된 바 없다. 앞으로 계속 지금처럼 사담을 처리하겠다. 그러한 문제는 머지않아 결정될 것이다.

**Q** (통역) ; 사담 후세인에 관해서, 그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텔레비전에 그를 방영할 가능성은 있는가? 언제 이라크 정부, 즉 이라크 단일 정부, 어느 누구의 간섭 없는 이라크 통치를 보게 될 것인가?

파차치(통역) ; (알아들을 수 없다) 과도시기에 있어서의 이라크. 그리고 6월 말 이전에 완전 독립, 주권을 가진 이라크 정부가 수립될 것이다. 이 문제는 장래에 더 논의될 것이며, 전쟁과 반인류 범죄를 저지른 자를 재판에 회부할 특별 법정이 세워질 것이다. 또한 이 법정에서 어떻게 사담 후세인을 처리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되풀이 하고 싶은 것은 통치 위원회를 소집하여 오늘을 국민의 날로, 모든 이라크인의 공휴일로, 이라크의 공식적인 독립의 날로 선포하겠다.

**Q** (통역) ; 하느님의 은총이 있기를. 이러한 기쁨도 현재의 상황을 보면 두려움이 앞선다. 나는 이라크 인, 이라크 민간인으로서 우리가 어디에서 있는지, 이라크 국민

은 어디에 서 있는지 걱정이 든다. 사담 정부는 국민이 시샘하는 정부였다. 사담에게 벌을 어떻게 줄 것인가? 사담 정부는 국민에게 몇 가지 범죄를 저지른 정부였다. 그리고 이 새 정부는 그러한 범죄자들을 재판하는 정부이다. 당신 생각에 사담 후세인의 체포의 결과로서 연합군의 작전은 끝났는가?

산체스 ; 사담 후세인의 체포 후, 연합군에 대한 적대 행동이 종료될 것인가 하는 질문인가? 지금은 이라크 역사상, 이라크에 안보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의 과정에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시점이 그러한 공격을 근절하는데 적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공격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이라크 국민과 우리 연합군의 협조로 여기 이 나라에, 위험 없는 안정된 환경으로 한층 더 다가섰다고 생각한다.

**Q** 사담이 체포되었을 당시와, 이후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의 건강상태,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있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달라.

산체스 ; 아니, 지금은 말할 수 없다.

**Q** 체포대가로 누군가 현상금을 받으러 왔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어떻게 체포를 피할 수 있었는지와 그가 이 곳에서 얼마동안이나 보냈는지 말해 달라.

산체스 ; 이 장소에 그가 얼마동안 있었는지 알 수 없다. 도피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 심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Q** 현상금은?

산체스 ; 그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보를 줄 수 없다.

**Q** 그가 체포될 당시, 함께 있었던 두 사람에 관한 정보를 줄 수 있는가?

산체스 ; 그 두 사람에 대한 정확한 신원은 갖고 있지 않다.

**Q** 그가 협조적이라고 말했다. 그 말은 사담이 그의 추종자들에게 그만두라고 어떤 언질을 줄 것 같다는 이야기인가? 그렇게 하라고 그에게 요청하거나, 그와 비슷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건가?

산체스 ; 아니다. 지금은 하지 않았다. 그는 구치시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어젯밤 신체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협조적이었다.

**Q** (통역) ; 지금은 그저 기쁘기 때문에 질문을 생각해 내기가 어렵다. 말해야 한다면, 새로운 시작을 기대한 나머지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 그것뿐이다.

산체스 ; 고맙다.

**Q** (마이크가 꺼짐)

산체스 ; 질문은 사담 후세인을 체포할 당시 어떤 무기류나 서류를 몰수했느냐에 관한 것인데, 지금 이 시각 그 현장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 답변이다. 그리고 정보가 입수하는 대로 국민에게 그 사실을 알리겠다. 맨 뒷쪽에 있는 분?

**Q** (통역) ; 만일 사담 후세인의 건강이 나빠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면, 법정에서 서는 것을 연기할 것인가?

**A** (미상) ; 산체스 장군이 처음에 답변한 것처럼, 사담이 언제, 어떻게 재판을 받을 것이냐, 또 그가 재판을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Q** 사담이 거기에서, 즉 그 자리에서 게릴라를 지휘해야 했는지의 가능성에 대해, 좀 알고 싶다.

산체스 ; 미안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Q** 비디오에서 보았던 그 땅굴에서 그가 게릴라를 지휘하고 있었는지의 가능성에 관한 질문이다.

산체스 ; 이 시점에서, 그걸 단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심문과정에서 뭔가 정보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희망하고 있다.

**Q** (통역) ; 지금 사담 후세인을 구금하고 있다. 그를 이라크 특별 법정에서 넘길 것인가?

산체스 ; 몇 차례 답변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진행 중이라,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 시점에 결정된 바 없다.

**Q** (통역) ; 오늘은 새로운 민주 이라크의 위대한 날이다. 오늘 우리는 연합군에 도움을 준 형제들, 친애하는 브레머 대사 각하, 도와준 형제들과, 공동묘지 시대를 초래케 한 범죄자, 사담 후세인의 체포에 전력을 다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깊은 감동과 애정을 표한다. 통치 위원회에 질문인데, 이 괴물을 체포한 후, 이라크 국민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이라크 인은 더 많은 도움과 조력을 받을 가치가 있다. 평화와 사랑의 이라크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귀하와 연합군이 이를 해주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노력이 성취되고, 약속이 이행되기를 바란다.

파라치(통역) ; 우리는 이라크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과도기간 동안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과도기간 동안의 준비를 거친 후 이라크는 주권 국가가 될 것이며, 이 나라가 자유로 충만될 수 있도록 우리는 행정을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선거, 총선거 준비 작업을 할 것이고, 이라크 국민을 위해 민주 헌법을 제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라크 국민의 국민투표에 붙여, 헌법의 통과, 비준 후에 이라크 합법정부는 수립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다.

**Q** 그의 체포를(알아들을 수 없음)하게 한 어제 아침 입수한 정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가? 그가 근방에 살면서 한 집에 머물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려 달라.

산체스 ; 그가 그 지역에 얼마 동안이나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의 상세한 정보가 없다. 정보를 어떻게, 어디에서, 언제 입수했느냐 하는 건데, 그 정보를 입수한 후, 사단과 여단의 사령관에게 통보했고, 그래서 글자 그대로 2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응답했다. 여단은 1시간 30분 안에 응답, 그들 병력을 배치 그리고 집행....

**Q** 그것은 밀고였나?

산체스 ; 그건 정보였다. 얼마동안 활동하고 있었던 분석가들의 분석을 거친 정보, 기소 가능한 그런 정보였다. 훌륭한 분석 작업이었다.

**Q** 장군,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언제 포로와 만날 것인가? 그리고 브레머 씨, 사담 후세인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전화를 걸었는데 상황을 말해 줄 수 있는가?

산체스 ; 사담 후세인과 공식적으로 만났느냐 하는 건데, 이 시점에 계획된 바 없다. 그러나 지난 밤 그를 데려왔을 때, 그리고 신분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와 함께 있었다.

**Q** (마이크가 꺼짐)

산체스 ; 아니다, 직접 아니다, 여기자? 오, 미안, 미안하다. 대사의 몫이었다.

브레머 ; 지난 14, 15시간의 상황을, 매 분마다의 상황은 나중에 할 것이다.

산체스 ; 지난 밤 조금 눈을 붙였다. 예?

**Q** (통역) ; 체포 후, 군은 DNA 테스트를 했다한다. 확인해 주겠는가? 언제 TV화면에 그의 모습을 내 보내겠는가?

산체스 ; 있었는데... 미안하다. 첫 부분이 뭐였는지?

**Q** (통역) : DNA.

산체스 ; DNA 테스트 말인가? 예. OK. 신원에 관해 좀 더 결정적인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 본 것처럼, 분명 사담 후세인이다. 그리고 다른 구금자를 통해서 그에 관한 분명한 신원 확인을 했다. 예, 뒤에 있는 분?

**Q** (통역) ; (알아들을 수 없다) 사담 후세인의 체포 후, 사담 후세인을 계속 여기에 둔다든가 아니면 이라크 밖으로 이동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비디오클립을 다 보여 줄 수 있는가? 고맙다.

산체스 ; 적절한 시기까지, 우리는 밝힐 수 없는 장소에 그를 계속 붙들어 놓을 것이다. 예, 여기자?

**Q** 브레머 대사에게 질문하고 싶다. 후세인 씨를 보았는가? 그를 데려 온 어젯밤, 그 시각에 둘이 함께 있었나?

브레머 ; 아니다. 이직 그를 보지 않았다.

**Q** (통역) ; 사담 후세인의 체포로, 다른 관리들의 체포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혹은 그쯤에서 중지하겠는가?

산체스 ; 질문은 여기서 중지할 것이냐에 관한 것인데. 물론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계속 진행시킬 것이다. 우리는 아직 할 일이 많다. 전 정권 일부 분자들의 신원확인도

아직 진행 중이고, 엄청난 파괴도 발생되고 있으며 이라크 국민을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사담 후세인에게 했던 방식으로 우리는 계속 그들을 추적해서 잡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건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이다. 단 하루라고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업이다. 이 나라에 안보와 안정을 가져올 때까지 우리는 늦추지 않을 것이다.

예, 여기자, 뒤에 있는 분?

**Q** 산체스 장군, 사담 후세인을 보았을 때, 그에 대한 인상은 어땠나? 그는 깜짝 놀랐는가? 분노는? 배가 고프거나 충격을 받았는가?

산체스 ; 우리에게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려고 했었던 것 같다. 지쳤고, 운명에 체념한 사람인 것 같았다. 맨 뒤쪽에 있는 분?

**Q** 사담 체포에 대한 어떤 보복으로, 앞으로 공격이 증가될 것이라 생각 하는가? 오늘 칼리디야의 폭탄사건은 이런류의 공격이라 보는가?

산체스 ; 예, 모두 칼리디야에서 폭탄 사건이 있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20명의 이라크 인이 살해되었고 부상당했다. 정정한다. 20명이 부상, 10명이 살해되었다. 이러한 전 정권 분자와 테러리스트들의 국민, 국가에 대한 공격의 재개다. 그리고 보복이 증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그건 대답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분자들이 하시라도 공격을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패퇴시킬 것이다.

예, 이쪽 분?

**Q** 대통령이 사담 후세인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전화로 통보 받았을 때, 기억할 만한 반응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브레머 ; 백악관에 직접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체스 ; 뒤쪽에 있는 분?

**Q** (통역) ; TV 보도에 의하면 그의 아내가(알아들을 수 없음) 연합군을 안내, 체포케 했다는데, 이 보도의 정확성은?

산체스 ; 루머다. 다음?

**Q** (통역) ; (알아들을 수 없다) 사담 후세인을 조사하고 심문하게 되는가?

산체스 ; 사담을 언제 조사하고, 그를 언제 심문할 것인가라는 질문인가? 그 질문이 맞는가? 얼마 동안?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때까지이다.

**Q** (통역) ; 내 질문은, 이라크에서는 사형이 일시 중지된 걸로 알고 있다. 사담에게 사형선고가 가능할 것인가? 법정은, 법정은 공개 재판이 될 것인가?

파차치(통역) ; 이 문제는 특별 법정의 몫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에게 다 짐하고 싶은 것은 법정은 공개되고 공정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피고인에게 변호사가 가능할 것이다. 과거 정권을 반대한 사람들에게 선고하고, 몇 분 내에 처형하는 그러한 법정은 되지 않을 것이다.

**Q** 군대가 도착했을 때, 사담 후세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는가? 두 번째로 이제 사담을 체포했으니, 예상보다 일찍이 이 나라를 떠날 것인가?

산체스 ; 더 빨리 떠날 것이냐는 질문인가?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가 완수된 후, 떠날 시간이 되면 언제든지 떠날 것이며, 그 때는 이 나라에 안보와 안정을 가져올 것이다. 사담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 그는 숨고 있었다. 그게 바로 발견했을 당시 그가 체포를 피하려고 애를 쓰면서, 하고 있었던 일이다. 모두 대단히 고맙다. 마지막 질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국에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한다.

---

## 사담 체포의 의미

**Q** 사담 후세인의 체포에 따른 영향은 어떤 것인가?

**A** 지속적인 영향이 무엇인지 확실치 않다. 단기적으로는 12월13일 미군과 연합군정의 주요 목표인 이라크 전 독재자의 체포로 공격 저항세력을 조직하고 그의 권좌 복귀를 획책하는데 혹시 있을지도 모를 사담의 역할은 무력화된 것이다. 심리적 영향은 심대할 것이다. 즉 이라크인은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 사담의 컴백을 기대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체포의 결과로 이라크의 미군의 사기가 올라갈 것이고 저항세력의 결의를 손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정치적 면에서는 부시대통령은 체포의 결과로 광범위한 신임을 받을 것이다.

**Q** 이로 인해 반란 세력이 영향을 받았다는 어떤 징후라도 있는가?

**A** 아니다. 미 관리들은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는 공격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경고한 바가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공격을 서두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12월 15일 이라크 경찰서 밖에서 자살 차량 폭탄사건이 발생, 최소 6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부상당했다. 그러나 미 관리들은 시간이 가면 사담 체포로 인하여 충성과 잔당의 사기는 떨어지고, 이라크인은 고무 받아 연합군이 반란 세력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단기적으로 공격이 발생하는 이유는?

**A** 사담 충성 파들은 보복공격을 가할 지도 모른다. 이외에도 반란 세력으로 시담 지지자, 바트당의 전 구성요원 등 많은 그룹들이 있다. 외국 지하드가 가세한 이슬람 급진파 비밀 조직이 미국을 공격하는 그룹에 속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들이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사담 후세인을 체포했다고 해서 이라크 내의 폭력이 종식된 것은 아니다.”라고 부시 대통령은 사담 체포 후, 12월 14일 연설에서 언급했다. “중동의 가슴에 자유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무고한 사람을 계속 살해하고자 하는 테러리스트들과 우리는 아직도 마주 대하고 있다.”

**Q** 사담은 반란 세력을 조종하고 있었나?

**A** 초기의 보고에 의하면 반란세력에 대한 그의 직접적인 역할은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 휴대폰, 라디오와 기타 통신수단이 그에게 없었으며, 그의 모습을 볼 때 반란 세력을 지휘했다기 보다는 은신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보다 정신적지지 목적으로 그곳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사담을 체포한 부대, 제4 보병 사단 사령관인 레이먼드 오디어노(Major General Raymond Odierno) 소장의 의견이었다. “그가 조정 노력을 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주간지 타임이 보도했다. 그러나 저항세력 지도자들의 바그다드 회합의 회의록이 들어 있는 서류가방이 사담과 함께 발견되었다. 그래서 그 정보로 추가 체포에 이미 들어갔다고 미 관리는 밝히고 있다.

**Q** 질문: 사담에게 어떤 통신수단도 없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A**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하려고만 했다면 메시지를 통해서 저항 조직과 통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금으로 750,000불이 함께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일부는 말하고 있다. “사담 후세인의 가족과 그의 친위 세력이 하고 있었던 일종의 하나는 지금을 제공하여 사람들을 나가게 해서 연합군과 이라크 국민에 적대적인 행동에 개입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막을 내렸으니 다행한 일이다.” 라고 도널드 럼스펠드(Donald H. Rumsfeld) 국방장관이 언급했다.

**Q** 이라크 내의 외국 지하드 숫자는?

**A** 분명치 않다. 그러나 미 관리들은 수백의 전사들이 이라크에 잠입, 이라크 이슬람 주의자 세력이 가담하여 연합군과 싸우고 있다고 추정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의 알카에다 지도자들이 이라크의 미군과의 전투에 자원을 이동시키기로 전략적 방침을 정했다고 뉴스위크가 보도 했으며, 지하드의 유럽-이라크 이송 루트에 관해 뉴욕 타임즈는 보도했다. 그러나 태반의 반란 병사들이 이라크인 것 같다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Q** 사담 체포에 대해 이라크 국민의 반응은?

**A** 수천 명이 거리에 나와 국기를 흔들며 춤을 추고 축포를 쏘고 있다. 절대적인 대다수의 이라크 인이-특히 이라크 내에서 억압받던 시아파 다수와 쿠르드 소수-사담의 체포로 안도와 고무를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전 독재자가 돌아올 수 있다는 전반적인 두려움 때문이었을 거라며 사담의 체포는 더 많은 이라크 인이 이라크를 지키고 재건설하려는 연합군에 동참하는 용기를 얻을 것이라고 미 관리와 일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Q** 모든 이라크 인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는가?

**A** 아니다. 사담 정권으로부터 대부분 혜택을 누렸던 수니파가 우세한 지역과 인근에서는 분위기가 훨씬 어둡다고 언론은 시사하고 있다. 사담이 발견된 근방 티크리트에서 “우리의 피와 영혼으로 사담, 당신을 지킬 것이다”라고 구호를 외치는 수백의 사담을 지지하는 대학생들의 항의집회를 경찰은 12월 15일 해산시켰다. 바그다드의 수니 지역의 한 가게주인은 뉴욕 타임즈에게, “우리 이라크인, 천만 명의 사담들은 지도자가 있든, 없든 간에 미국인을 몰아낼 것이다.”고 말했다. 그들이 인구의 15-20퍼센트에 불과하지만 사담의 충애를 수니파는 한 몸으로 사담 통치하의 경제와 정치를 지배하고 있었다.

**Q** 체포는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

**A** 지난 달 미 관리는 최신 정보를 활용, 사담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즉 보디가드, 궁정에서 일했던 사람과 부족 지도자 등을 체포, 심문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담의 체포는 12월 12일 씨족 구성원의 한 사람을 체포, 심문했는데 그가 심문 과정에서 사담이 숨어 있는 티크리트 외곽 농가의 위치를 알려 주었다 한다. 바그다드의 새로운 정보 공유 프로그램, 즉 CIA 요원, 특수 군사작전 팀, 국방성 정보국과 제4 보병 사단 소속 600명의 군인과 모두 합동하여 체포 과업을 완수했던 것이다.

**Q** 사담의 체포는 정보 수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A** 분명치 않다. 사담은 값을 따질 수 없는 귀중한 정보원일 것이다. 지금까지 그는 심문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고 언론은 지적하고 있다. 그가 무리수를 두어서라도 입을 열 수 있게만 한다면, 그래서 그가 말한 내용이 신빙성 있다고 심문자들이 판단한다면 저항 세력, 이라크의 대량 파괴 프로그램(WMD), 혹은 알려진 대로 알 카에다와 다른 테러리스트들과의 연관성에 대한 정보를 그로부터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Q** 사담의 체포는 WMD 수색에 영향을 줄 것인가?

**A** 그가 만일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 예컨대 이라크나 그 밖의 곳에서 생물 무기를 위한, 이른바 “씨종자” 등에 대해 심문자들에게 솔직히 털어 놓아, 그래서 비축 무기를 찾아내거나 그의 핵 야망이 밝혀진다면, 그의 체포로 이라크가 WMD를 보유,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는 행정관의 주장은 확인될 수가 있다.

**Q** 그의 체포로 기타 정권 충성 파들의 체포가 속도를 낼 것인가?

**A** 다시 말하지만, 그건 심문의 결과에 달려 있다. 사담은 도피중인 정권 구성원들의 행방에 대해 정보를 줄 수 있다. 다른 이라크 인들도 이제는 대담하게 나서서 유사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다. 사담 정권의 55명 최고위 구성원 중 -미군은 이를 ‘고가치(高價値) 목표물’이라 부른다- 13명은 자유로운 상태이다. 미국의 타격 리스트 중 제1은 사담의 측근 보좌관으로서, 미국의 관리가 저항세력의 조직책으로 판단하고 있는 이자트 이브라힘 알 도우리(Izzat Ibrahim al-Douri)이다.

**Q** 미 정보기관의 충격은?

**A** 거듭되는 실패로 전보기관의 신뢰성이 위협을 받아 왔는데 체포로 인하여 해명이 된 것 같다고 일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CIA와 다른 정보기관들은 9월 11일

공격의 예측과 예방에 실패, 이라크의 WMD 위협의 과대평가, 막강한 수사력 투입과 수백만 불의 현상금에도 불구하고 오사마 빈 라덴이나 사담의 체포를 실패함으로써 비판을 받았다. 부시 대통령은 그의 12월 14일 연설에서 “광막한 나라에서 독재자의 발자국을 찾은 정보 분석가들의 눈부신 업적”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Q** 체포는 미국과 동맹국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A** 관계는 따뜻해질 것이다. 전쟁을 반대했던 세계 지도자들까지도 잔혹한 독재자의 체포를 축하했고, 이라크와 그 지역에 새로운 안정의 단계를 기할 것이라는 희망을 표명했다. 이라크 전쟁의 강력한 반대론자였던 프랑스와 독일의 지도자들은 비동맹 국가들을 이라크 재건설 계약에서 배제하는 정부 결정에 대한 최근의 양심을 버리고 미국을 칭찬하였다. 체포는 과거의 “손실 일부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기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대외관계 워싱턴 프로그램 위원회의 국장 대리, 리 페인스테인(Lee Feinstein)은 말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사담의 기소를 국제화시키기로 결정한다면-유엔에 명확한 역할을 맡기고 사담의 죄상을 낱알이 세계에 밝힌다면-유럽 국가들은 진행과정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Q** 점령을 국제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도움을 줄 것인가?

**A** 정부가 최근의 국제적 지지를 활용, 다른 국가들이 이라크 재건사업에 기여할 수 있게만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 말처럼 유럽 동맹국들과 ‘손을 내밀며 화해’ 하는 기회가 다시 온 것이다.” 대외관계 위원회의 비상근 선임 연구원인 로런스 콕(Lawrence J. Korb)의 말이다. 우리의 동맹국가가 이라크재건과 부채 감면에 조력하는 대가로 그들이 필요한 것, 예컨대 2004년 6월 연합 과도정부가 철수한 후 유엔의 행정관을 파견, 선거 과정을 감시하는 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자발적인 태도에 상당 부분 달려 있다.

**Q** 국내 정치 영향은?

**A** 부시에게는 “그것은 확실한 사기진작”이라며 콕은 말한다. “사담 체포로 대통령을 비판하기가 한층 더 어렵게 되었고 민주당 반대 진영을 분열시키고 있다.” 한편 다른 사람들은 시기상조이고, 선거일자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벤트의 색깔은 변하는 법이다.” 대외관계 위원회의 제임스 린제이(James M. Lindsay)와 부위원장, 모리스 그린버그(Maurice R. Greenberg)위원장의 말이다. “내년에 이라크가 잘 나간다면 대통령은 영웅이 된다.

그렇지 않다면, 비판자들로부터 못매를 당할 것이다.”

(외신종합 ; 2003년 12월 15일)

## 사담 후세인의 일생



1937/04/28 : 바그다드 북부 티크리크 사막도시의 촌락에서 출생.

1955 : 바그다드로 이주, 그 곳 한 민족주의 학교에서 수학.

1956 : 아랍 바트 사회주의자 당에 입당하나, 바그다드 군사 학교에 입학은 거절당한다.

1959: 압둘 카심 카심(Abdul Karim Qassim)수상 암살 계획에 참여.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후세인은 시리아로 도주, 그 후 이집트로 도주하여 이집트의 가멜 압델 나세르(Gamel Abdel Nasser)대통령의 보호를 받는다. 카이로에서 법률 공부.

1963 : 이라크 바트당(Baathist Party)은 카심(Qassim)수상을 전복, 6개월의 혼란을 거친 후, 다시 쿠데타 발생. 공산주의 반대 운동으로

6,000명의 이라크 인이 처형됨.

1964 : 반정부 기도로 투옥. 옥중에서 바트당의 부 서기장으로 선출. 1967년 감옥 탈출.

1968년 : 후세인의 친척인 아흐메드 하산 바크르(Ahmed Hassan Bakr) 장군 주도로 바트주의자들이 권력 장악. 쿠데타에서 후세인은 주요 역할 수행, 혁명 통솔 위원회의 부의장, 부위원장, 쿠르드족(Kurds) 반군과 수석 회담 주도.

1970 : 쿠르드 민주당의 지도자인 무스타파 바르자니(Mustafa Barzani)와 평화협정 서명. 1년 후, 쿠르드족은 다시 반란을 일으키나, 이란의 지지철회로 반란은 실패.

1973 : 바크르(Bakr)에 대한 쿠데타 미수 후, 후세인은 국내 안보기관의 장악을 강화.

1975 : 이란과 이라크는 샤투 알 아랍(Shatt al Arab) 수로를 둘러싼 국경분쟁의 종식 조약에 서명.

1979 : 7월, 바크르(Bakr)의 대통령 직 사임으로 후세인이 권력을 이양 받음.

1979 : 이슬람 혁명으로 이란 국왕(Shah) 축출 당 함.

1980 : 이라크가 이란의 항공기지를 공격한 후, 9월 이란-이라크 전쟁이 발발한다. 양국 사이에 수 개월간 군사 충돌 격화.

1981-1984 : 이라크는 이란 군에 겨자탄과 신경가스를 사용하다.

1980년대

2월-9월: 쿠르드족에 대한 이라크 군사작전으로 이라크 북부지역에서 50,000-100,000명의 사망자가 발생됨. 이라크는 화학 무기를 사용하고, 대량 처형, 강제 이주를 시킨다.

1988/03 : 일부 쿠르드족 민병대와 이란 인과의 전투 후, 이라크 군부는 할랍자(Halabja)의 쿠르드족 촌락에 독가스와 신경가스를 투하, 5,000명을 살해.

1988/08 : 이란-이라크 전쟁 교착상태로 종결. 약 1백만 명의 병사가 8년간의 전투에서 전사.

1990/08/02 :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략하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즉각 철수를 요구하고 이라크에 경제적 제재 조치 단행.

1990/11/29: 이라크 인의 쿠웨이트 축출을 위한 "모든 필요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유엔 결의안 채택.

1991년 ; 걸프 전쟁

01/17 : 연합군, "사막의 폭풍 작전"(Operation Desert Storm)으로 이라크에 공습을 시작.  
 02/24 : 100시간의 지상전으로 쿠웨이트에서 이라크 인을 축출하다.  
 03/03 : 모든 화학, 생물과 핵무기를 포기하며, 쿠웨이트를 승인하고, 쿠웨이트 인 행방불명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휴전 조항을 이라크가 수용.  
 03월-04월 : 잔여 공화국 수비대가 이라크의 남부와 북부에서의 반란을 진압. 터키와 이란 국경에서 인도적 재앙이 발생하다.  
 04월 : 연합군 공군기 정찰의 안전 구역이 북부 쿠르드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되다. 유엔은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감시하기 위해 조사 프로그램을 수립.  
 1992 : "비행 금지" 구역이 남부 시아파 인들 보호 위해 설정.  
 1993 : 미국은 바드다드의 이라크 정보 사령부에 쿠르즈 미사일을 발사. 쿠웨이트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의 암살이 미수 사건 발생.  
 1998/10 : 이라크는 유엔 무기 감시단과 모든 협력을 단절하다. 12월, 감시단의 철수 후 미국과 영국은 "사막의 여우 작전"(Operation Desert Fox)개시. 폭탄을 투여, 대량 살상 무기는닉 추정 지 파괴.

## 이라크 전쟁의 경과

2002/11 : 유엔은 결의안 1441을 통과, 후세인에게 무장해제의 "최후 기회"를 주며 감시 조건을 세운다. 11월 후반 감시단은 이라크로 복귀한다. 유엔은 특히 과학자들의 접근에 관한 후세인 정부를 비판하며, 감시를 계속할 의향을 표명하다.

2003/02 : 감시단이 불법적인 '알 사무드 2 미사일'(Al Samoud 2 missile) 을 찾아낸 후, 이라크는 그것들을 파괴한다. 미국은 후세인 정부가 과거 보유했던 생, 화학 무기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

안보리 국가 간, 수 주일의 숙의와 막후 공작 등을 거친 후에도, 후세인의 무장해제를 위한 군사 조처 승인의 2차 결의안이 프랑스와 러시아 비토 위협으로 통과하지 못한다. 미국은 유엔 결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력으로 이라크를 무장해제 시키기로 언급한 후, 쿠웨이트에서 군사증강을 계속.

### 2003년 전쟁

03/20 : 미국은 후세인과 측근들이 회합을 한 것으로 추정하는 바그다드 주택에 진지 파괴용 폭탄 투하로 전쟁을 개시, 그러나 후세인은 도주.

03/21 : 약 140,000명의 미국과 영국 군대가 쿠웨이트에서 이라크로 진군.

03/24 : 바그다드 남쪽 60마일까지 미군은 진주하고, 후세인은 알 자지라(Al-Jazeera) 텔레비전에 모습을 나타내 "승리는 곧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고 국민에게 연설.

04/07 : 미군이 바그다드 국제공항을 접수한 후, 미국은 재차 후세인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주택을 폭격한다. 몇 구의 시체는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되었으나, 후세인의 것은 없었다.

04/09 : 바그다드가 함락되고 노략이 자행된다. 후세인의 흔적은 없다.

07/22 : 후세인의 아들, 우다이(Uday,39세)와 쿠사이(Qusay,37세)가 모술(Mosul)의 은신처에서 미군의 습격으로 살해.

12/13 : 미군과 특수 작전 부대가 티크리트의 한 농가를 급습, 지하 굴에 숨어 있는 후세인 체포, 구금.

< 외신 종합 >

## Archives

- 여성차별철폐 국제협약
- 여성차별철폐 국제협약 의정서
  - 북경선언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G.A. res. 34/180, 34 U.N. GAOR Supp. (No. 46) at 193, U.N. Doc. A/34/46,  
entered into force Sept. 3, 1981)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Noting that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reaffirms faith in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person and in the equal rights of men and women,

Noting that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ffirms the principle of the inadmissibility of discrimination and proclaims that 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and that everyone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therein,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including distinction based on sex,

Noting that the States Parties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have the obligation to ensure the equal rights of men and women to enjoy all economic, social, cultural, civil and political rights,

Consider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concluded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specialized agencies promoting equality of rights of men and women,

Noting also the resolutions, declarations and recommendations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and the specialized agencies promoting equality of rights of men and women,

Concerned, however, that despite these various instruments extensiv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ontinues to exist,

Recalling that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violates the principles of equality of rights and respect for human dignity, is an obstacle to the participation of women, on equal terms with men, in the politica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life of their countries, hampers the growth of the prosperity of society and the family and makes more difficult the full development of the potentialities of women in the service of their countries and of humanity,

2.

Concerned that in situations of poverty women have the least access to food, health, education, training and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and other needs,

Convinced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based on equity and justice will contribute significantly towards the promotion of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Emphasizing that the eradication of apartheid, all form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colonialism, neo-colonialism, aggression, foreign occupation and domination and interference in the internal affairs of States is essential to the full enjoyment of the rights of men and women,

Affirming that the 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 relaxation of international tension, mutual co-operation among all States irrespective of their social and economic systems,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in particular nuclear disarmament under strict and effective international control, the affirmation of the principles of justice, equality and mutual benefit in relations among countries and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of peoples under alien and colonial domination and foreign occupation to self-determination and independence, as well as respect for national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will promote social progress and development and as a consequence will contribute to the attainment of full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Convinced that the full and complete development of a country, the welfare of the world and the cause of peace require the maximum participation of women on equal terms with men in all fields,

Bearing in mind the great contribution of women to the welfare of the family and to the development of society, so far not fully recognized, the social significance of maternity and the role of both parents in the family and in the upbringing of children, and aware that the role of women in procreation should not be a basis for discrimination but that the upbringing of children requires a sharing of responsibility between men and women and society as a whole,

Aware that a change in the traditional role of men as well as the role of women in society and in the family is needed to achieve full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Determined to implement the principles set forth in the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for that purpose, to adopt the measures required for the elimination of such discrimination in all its forms and manifestations,

Have agreed on the following:

PART I

Article 1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Convention, the term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shall mean any distinction, exclusion or restriction made on the basis of sex which has the effect or purpose of impairing or nullifying the recognition, enjoyment or exercise by women, irrespective of their marital status, on a basis of equality of men and wome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civil or any other field.

Article 2

States Parties condemn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all its forms, agree to pursue by all appropriate means and without delay a policy of eliminating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to this end, undertake:

- a) To embody the principle of the equality of men and women in their national constitutions or other appropriate legislation if not yet incorporated therein and to ensure, through law and other appropriate means, the practical realization of this principle;
- b) To adopt appropriate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including sanctions where appropriate, prohibiting all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c) To establish legal protection of the rights of women on an equal basis with men and to ensure through competent national tribunals and other public institutions the effective protection of women against any act of discrimination;
- d) To refrain from engaging in any act or practice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to ensure that public authorities and institutions shall act in conformity with this obligation;
- e) To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by any person, organization or enterprise;
- f) To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legislation, to modify or abolish existing laws, regulations, customs and practices which constitut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g) To repeal all national penal provisions which constitut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rticle 3

States Parties shall take in all fields, in particular in the politica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fields, all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legislation, to ensure the full development and advancement of women, for the purpose of guaranteeing them the exercise and enjoyment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n a basis of equality with men.

Article 4

1. Adoption by States Parties of temporary special measures aimed at accelerating de facto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shall not be considered discrimination as defined in the present Convention, but shall in no way entail as a consequence the maintenance of unequal or separate standards; these measures shall be discontinued when the objectives of equality of opportunity and treatment have been achieved.

2. Adoption by States Parties of special measures, including those measures contained in the present Convention, aimed at protecting maternity shall not be considered discriminatory.

#### Article 5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 (a) To modify the social and cultural patterns of conduct of men and women, with a view to achieving the elimination of prejudices and customary and all other practices which are based on the idea of the inferiority or the superiority of either of the sexes or on stereotyped roles for men and women;
- (b) To ensure that family education includes a proper understanding of maternity as a social function and the recognition of the common responsibility of men and women in the upbringing and development of their children, it being understood that the interest of the children is the primordial consideration in all cases.

#### Article 6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legislation, to suppress all forms of traffic in women and exploitation of prostitution of women.

### PART II

#### Article 7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the political and public life of the country and, in particular, shall ensure to women, on equal terms with men, the right:

- (a) To vote in all elections and public referenda and to be eligible for election to all publicly elected bodies;
- (b) To participate in the formulation of government policy and the implementation thereof and to hold public office and perform all public functions at all levels of government;
- (c) To participate i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associations concerned with the public and political life of the country.

#### Article 8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o women, on equal terms with men and without any discrimination, the opportunity to represent their Governments at the international level and to participate in the work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Article 9

1. States Parties shall grant women equal rights with men to acquire, change or retain their nationality. They shall ensure in particular that neither marriage to an alien nor change of

nationality by the husband during marriage shall automatically change the nationality of the wife, render her stateless or force upon her the nationality of the husband.

2. States Parties shall grant women equal rights with men with respect to the nationality of their children.

### PART III

#### Article 10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order to ensure to them equal rights with men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in particular to ensure, on a basis of equality of men and women:

- a) The same conditions for career and vocational guidance, for access to studies and for the achievement of diplomas in educational establishments of all categories in rural as well as in urban areas; this equality shall be ensured in pre-school, general, technical, professional and higher technical education, as well as in all types of vocational training;
- b) Access to the same curricula, the same examinations, teaching staff with qualifications of the same standard and school premises and equipment of the same quality;
- c) The elimination of any stereotyped concept of the roles of men and women at all levels and in all forms of education by encouraging coeducation and other types of education which will help to achieve this aim and, in particular, by the revision of textbooks and school programmes and the adaptation of teaching methods;
- d) The same opportunities to benefit from scholarships and other study grants;
- e) The same opportunities for access to programmes of continuing education, including adult and functional literacy programmes, particularly those aimed at reducing, at the earliest possible time, any gap in education existing between men and women;
- f) The reduction of female student drop-out rates and the organization of programmes for girls and women who have left school prematurely;
- g) The same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actively in sports and physical education;
- h) Access to specific educational information to help to ensure the health and well-being of families, including information and advice on family planning.

#### Article 11

1.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the field of employment in order to ensure, on a basis of equality of men and women, the same rights, in particular:
  - (a) The right to work as an inalienable right of all human beings;
  - (b) The right to the same employment opportunities, including the application of the same criteria for selection in matters of employment;
  - (c) The right to free choice of profession and employment, the right to promotion, job security and all benefits and conditions of service and the right to receive vocational training and retraining, including apprenticeships, advanced vocational training and recurrent training;

- (d) The right to equal remuneration, including benefits, and to equal treatment in respect of work of equal value, as well as equality of treatment in the evaluation of the quality of work;
  - (e)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particularly in cases of retirement, unemployment, sickness, invalidity and old age and other incapacity to work, as well as the right to paid leave;
  - (f) The right to protection of health and to safety in working conditions, including the safeguarding of the function of reproduction.
2. In order to prevent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n the grounds of marriage or maternity and to ensure their effective right to work, States Parti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 (a) To prohibit, subject to the imposition of sanctions, dismissal on the grounds of pregnancy or of maternity leave and discrimination in dismissals on the basis of marital status;
  - (b) To introduce maternity leave with pay or with comparable social benefits without loss of former employment, seniority or social allowances;
  - (c) To encourage the provision of the necessary supporting social services to enable parents to combine family obligations with work responsibilities and participation in public life, in particular through promoting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a network of child-care facilities;
  - (d) To provide special protection to women during pregnancy in types of work proved to be harmful to them.
3. Protective legislation relating to matters covered in this article shall be reviewed periodically in the light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knowledge and shall be revised, repealed or extended as necessary.

#### Article 12

1.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the field of health care in order to ensure, on a basis of equality of men and women, access to health care services, including those related to family planning.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o women appropriate services in connection with pregnancy, confinement and the post-natal period, granting free services where necessary, as well as adequate nutrition during pregnancy and lactation.

#### Article 13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other areas of economic and social life in order to ensure, on a basis of equality of men and women, the same rights, in particular:

- (a) The right to family benefits;
- (b) The right to bank loans, mortgages and other forms of financial credit;
- (c) The right to participate in recreational activities, sports and all aspects of cultural life.

Article 14

1. States Parties shall take into account the particular problems faced by rural women and the significant roles which rural women play in the economic survival of their families, including their work in the non-monetized sectors of the economy, and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to women in rural areas.
2.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rural areas in order to ensure, on a basis of equality of men and women, that they participate in and benefit from rural development and, in particular, shall ensure to such women the right:
  - (a) To participate in the elaboration and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planning at all levels;
  - (b) To have access to adequate health care facilities, including information, counselling and services in family planning;
  - (c) To benefit directly from social security programmes;
  - (d) To obtain all types of training and education, formal and non-formal, including that relating to functional literacy, as well as, *inter alia*, the benefit of all community and extension services, in order to increase their technical proficiency;
  - (e) To organize self-help groups and co-operatives in order to obtain equal access to economic opportunities through employment or self employment;
  - (f) To participate in all community activities;
  - (g) To have access to agricultural credit and loans, marketing facilities, appropriate technology and equal treatment in land and agrarian reform as well as in land resettlement schemes;
  - (h) To enjoy adequate living conditions, particularly in relation to housing, sanitation, electricity and water supply,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PART IV

Article 15

1. States Parties shall accord to women equality with men before the law.
2. States Parties shall accord to women, in civil matters, a legal capacity identical to that of men and the same opportunities to exercise that capacity. In particular, they shall give women equal rights to conclude contracts and to administer property and shall treat them equally in all stages of procedure in courts and tribunals.
3. States Parties agree that all contracts and all other private instruments of any kind with a legal effect which is directed at restricting the legal capacity of women shall be deemed null and void.
4. States Parties shall accord to men and women the same rights with regard to the law relating to the movement of persons and the freedom to choose their residence and domicile.

## Article 16

1.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all matters relating to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 and in particular shall ensure, on a basis of equality of men and women:
  - (a) The same right to enter into marriage;
  - (b) The same right freely to choose a spouse and to enter into marriage only with their free and full consent;
  - (c) The sam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during marriage and at its dissolution;
  - (d) The sam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s parents, irrespective of their marital status, in matters relating to their children; in all cases the interests of the children shall be paramount;
  - (e) The same rights to decide freely and responsibly on the number and spacing of their children and to have access to the information, education and means to enable them to exercise these rights;
  - (f) The sam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with regard to guardianship, wardship, trusteeship and adoption of children, or similar institutions where these concepts exist in national legislation; in all cases the interests of the children shall be paramount;
  - (g) The same personal rights as husband and wife, including the right to choose a family name, a profession and an occupation;
  - (h) The same rights for both spouses in respect of the ownership, acquisition, management, administration, enjoyment and disposition of property, whether free of charge or for a valuable consideration.
2. The betrothal and the marriage of a child shall have no legal effect, and all necessary action, including legislation, shall be taken to specify a minimum age for marriage and to make the registration of marriages in an official registry compulsory.

## PART V

## Article 17

1. For the purpose of considering the progress mad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Convention, there shall be established a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consisting, at the time of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of eighteen and, after ratification of or accession to the Convention by the thirty-fifth State Party, of twenty-three experts of high moral standing and competence in the field covered by the Convention. The experts shall be elected by States Parties from among their nationals and shall serve in their personal capacity, consideration being given to 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 and to the representation of the different forms of civilization as well as the principal legal systems.
2.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by secret ballot from a list of persons nominated by States Parties. Each State Party may nominate one person from among its own nationals.

3. The initial election shall be held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Convention. At least three months before the date of each election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address a letter to the States Parties inviting them to submit their nominations within two months. The Secretary-General shall prepare a list in alphabetical order of all persons thus nominated, indicating the States Parties which have nominated them, and shall submit it to the States Parties.
4. Elections of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held at a meeting of States Parties convened by the Secretary-General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At that meeting, for which two thirds of the States Parties shall constitute a quorum, the persons elected to the Committee shall be those nominees who obtain the largest number of votes and an absolute majority of the votes of the representatives of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5.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for a term of four years. However, the terms of nine of the members elected at the first election shall expire at the end of two years; immediately after the first election the names of these nine members shall be chosen by lot by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6. The election of the five additional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hel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2, 3 and 4 of this article, following the thirty-fifth ratification or accession. The terms of two of the additional members elected on this occasion shall expire at the end of two years, the names of these two members having been chosen by lot by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7. For the filling of casual vacancies, the State Party whose expert has ceased to function as a member of the Committee shall appoint another expert from among its nationals,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Committee.
8.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with the approval of the General Assembly, receive emoluments from United Nations resources 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the Assembly may decide, having regard to the importance of the Committee's responsibilities.
9.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provide the necessary staff and facilities for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the functions of the Committee under the present Convention.

#### Article 18

1. States Parties undertake to submit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for consideration by the Committee, a report on the legislative, judicial, administrative or other measures which they have adopted to give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and on the progress made in this respect:
  - (a) Within one year after the entry into force for the State concerned;
  - (b) Thereafter at least every four years and further whenever the Committee so requests.
2. Reports may indicate factors and difficulties affecting the degree of fulfilment of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Convention.

#### Article 19

1. The Committee shall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2. The Committee shall elect its officers for a term of two years.

Article 20

1. The Committee shall normally meet for a period of not more than two weeks annually in order to consider the reports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 of the present Convention.
2. The meetings of the Committee shall normally be held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or at any other convenient place as determined by the Committee.

Article 21

1. The Committee shall, through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port annually to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on its activities and may make suggestions and general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examination of reports and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States Parties. Such suggestions and general recommendations shall be included in the report of the Committee together with comments, if any, from States Parties.
2.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transmit the reports of the Committee to the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for its information.

Article 22

The specialized agencies shall be entitled to be represented at the consider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such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as fall within the scope of their activities.

The Committee may invite the specialized agencies to submit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area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heir activities.

PART VI

Article 23

Nothing in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affect any provisions that are more conducive to the achievement of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which may be contained:

- (a) In the legislation of a State Party; or
- (b) In any other international convention, treaty or agreement in force for that State.

Article 24

States Parties undertake to adopt all necessary measures at the national level aimed at achieving the full realization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nvention.

Article 25

1.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open for signature by all States.
2.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s designated as the depositary of the present Convention.
3. The present Convention is subject to ratification.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4.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open to accession by all States. Accession shall be effected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access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26

1. A request for the revision of the present Convention may be made at any time by any State Party by means of a notification in writing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2.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shall decide upon the steps, if any, to be taken in respect of such a request.

Article 27

1.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f depos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twentie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2. For each State ratifying the present Convention or acceding to it after the deposit of the twentie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its own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rticle 28

1.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receive and circulate to all States the text of reservations made by States at the time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2. A reservation incompatibl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not be permitted.
3. Reservations may be withdrawn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o this effect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then inform all States thereof. Such notification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n which it is received.

Article 29

1. Any dispute between two or more States Part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present Convention which is not settled by negotiation shall, at the request of one of them, be submitted to arbitration. If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the request for arbitration the parties are unable to agree on the organization of the arbitration, any one of those parties may refer the dispute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by request in conformity with the Statute of the Court.
2. Each State Party may at the time of signature or ratification of the present Convention or accession thereto declare that it does not consider itself bound by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other States Parties shall not be bound by that paragraph with respect to any State Party which has made such a reservation.
3. Any State Party which has made a reserv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is article may at any time withdraw that reservation by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30

The present Convention, th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of which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have signed the present Convention.

UNITED  
NATIONS



여성에 대한 모든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조약  
(약칭 : 여성차별철폐조약)

1979년12월18일,  
제34차 UN총회 채택

이 조약체결국은, UN헌장이 기본적 인권, 인간 존엄 및 가치, 남녀권리의 평등에 관한 신념을 확인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세계인권 선언이, 차별은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음과,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이며, 또 성에 의한 차별 그 밖의 어떤 차별도 없을 것을 동 선언이 주장하는 모든 권리 및 자유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을 천명하고 있음에 유의,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의 체결국이 모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의 향유에 있어 남녀에 평등한 권리를 확보할 의무를 가진 것에 유의, UN 및 전문기관의 주최아래 각국이 체결한 남녀의 권리와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조약을 고려, 또, UN 및 전문기관이 채택한 남녀의 권리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결의, 선언 및 권고에 유의, 그러면서, 이들 다양한 문서에도 불구하고 여자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려,

여자에 대한 차별은 권리의 평등원칙 및 인간 존엄의 존중에 반하는 것이며, 여자가 남자와 평등의 조건으로 자국에서 자국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활동에 참가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며, 사회 및 가족변역의 증진을 저해하는 것이며, 또 여자의 잠재능력을 자국 및 인류에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 완전히 개발하는 것을 한층 곤란하게 하는 것을 상기, 궁핍한 상황에서는, 여자가 식량, 건강, 교육, 고용을 위한 훈련 및 기회 및 다른 필요로 하는 것을 향유할 기회가 가장 적을 것을 우려, 형평 및 정의에 기반 한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의 확립이 남녀평등의 촉진에 크게 공헌하는 것을 확신,

아파트헤이트 등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침략, 외국에 의한 점령 및 지배 및 내정간섭의 근절이 남녀 권리의 완전한 향유에 불가결하다는 것을 강조, 국제평화 및 안전을 강화하고, 국제긴장을 완화하며, 모든 나라 (사회 체제 및 경제체제의 무엇을 불문하고)의 사이에 상호협력, 전면적이고 완전한 군비축소를 달성, 특히 엄중하고 효과적인 국제관리아래서의 핵 군비의 축소를 달성, 제 국 간에서 정의, 평등 및 상호호혜의 원칙을 확인, 외국지배아래, 식민지지배 또는 외국점령 아래 있는 인민의 자결권 및 인민의 독립의 권리를 실현하고 국가주권 및 영토보존을 존중하는 것이, 사회의 진보 및 발전을 촉진, 나아가서는 남녀의 완전한 평등 달성에 공헌하는 것을 확인,

나라의 완전한 발전, 세계복지 및 이상으로 하는 평화는, 모든 분야에서 여자가 남자와 평등한 조건으로 최대한 참가할 것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확신, 가족의 복지 및 사회의 발전에 대한 종래 완전하게 인정되지 않았던 여자의 커다란 공헌, 모성의 사회적 중요성 및 가족 및 자녀 양육에서의 양친의 역할에 유의, 또 출산에서의 여자의 역할이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자녀 양육에는 남녀 및 사회전체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 사회 및 가정에서의 남자의 전통적 역할을 여자의 역할과 함께 변경하는 것이 남녀의 완전한 평등달성에 필요한 것을 인식, 여자에 대한 차별의 철폐에 관한 선언에 들어있는 제 원칙을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여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제1부**

**제1조** 이 조약에서의 ‘여자에 대한 차별’이란 성에 근거한 구별, 배제 혹은 제한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그 밖의 어떤 분야에서든, 여자(혼인 여부를 불문하고)가 남녀평등을 기초로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혹은 행사하는 것을 방해 혹은 무효로 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체결국은 여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비난, 여자에 대한 철폐하는 정책을 모든 적당한 수단으로, 또 지체 없이 추구할 것을 합의, 및 이를 위해 다음을 약속한다. (a)남녀의 평등의 원칙이 자국의 헌법 그 밖의 적당한 법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을 정해, 또 남녀의 평등의 원칙의 실제적인 실현을 법률 그 밖의 적당한 수단에 의해 확립할 것. (b)여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적당한 입법 그 밖의 조치 (적당한 경우에는 제재를 포함)을 취할 것. (c)여자의 권리의 법적 보호를 남자와의 평등을 기초로 확립, 또 권한의 있는 자국의 재판소 그 밖의 공공 기관을 통해 차별이 되는 어떤 행위로부터도 여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을 확보할 것.(d)여자에 대한 차별과 어떤 행위 또는 관행도 배제, 또, 공공 당국 및 기관이 이 의무에 따라 행동할 것을 보호할 것. (e)개인, 단체 또는 기업에 의한 여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 (f)여자에 대한 차별이 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을 수정 또는 폐지하기 위해 모든 적당한 조치(입법을 포함)를 취할 것. (g)여자에 대한 차별이 되는 자국의 모든 형벌규정을 폐지 할 것.

**제3조** 체결국은 모든 분야 특히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분야에서, 여자에 대한 남자와의 평등을 기초로 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행사 및 향유 할 것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자의 완전한 능력개발 및 향상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당한 조치(입법을 포함)를 취한다.

**제4조** 1. 체결국이 남녀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잠정적인 특별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 조약에 정의하는 차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단 그 결과로서 어떤 의미에서도 불평등 한 또는 개별의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이들 조치는 기회 및 대우의 평등의 목적이 달성될 때 폐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2. 체결국이 모성을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 (이 조약에 규정하는 조치를 포함)을 취하는 것은 차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체결국은 다음 목적을 위해 모든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a)양성 어느 쪽의 열등 성 혹은 우월성의 관념 또는 남녀의 정형화된 역할에 근거한 편견 및 관습 그 밖의 모든 관행의 철폐를 실현키 위해, 남녀의 사회적 및 문화적인 행동양식을 수정 할 것. (b)가정교육에서, 사회적 기능으로서의 모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 및 자녀 양육 및 발육에서의 남녀의 공동책임에 대해서 인식에 포함하는 것을 확보할 것. 모든 경우, 자녀들의 이익은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6조** 체결국은 모든 형태의 여자의 매춘 및 여자의 매춘에서의 착취를 금지하기 위해 모든 적당한 조치(입법을 포함)를 취한다.

**제2부**

**제7조** 체결국은 자국의 정치적, 공적 활동에서의 여자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기 위한 모든 적당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여자에 대한 남자의 평등조건으로 다음 권리를 확보한다. (a) 모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 투표할 권리 및 모든 공공선거에 의한 기관에 선거될 자격을 가질 권리 (b)

정부의 정책 책정 및 실시에 참가할 권리 및 정부의 모든 단계에 공직에 취임 및 모든 공무를 수행할 권리 (c)자국의 공직 또는 정치적 활동에 관계있는 비 정부기관 및 비 정부단체에 참가할 권리

**제8조** 체결국은 국제적으로 자국 정부를 대표할 뿐 아니라, 국제기관에 참가할 기회를, 여자에 대해 남자들과 평등한 조건과 어떤 차별도 없이 확보키 위한 모든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제9조** 1. 체결국은 국적취득 변경 및 보유에 관해 여자들에 대해 남자들과 평등한 권리를 부여한다. 체결국은 특히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결혼중의 남편의 국적변경이 자동적으로 아내의 국적변경을 변경, 아내를 무국적자로 만들거나 또는 남편의 국적을 아내에게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확보한다.

2. 체결국은 자녀들의 국적에 관해, 여자에 대해서 남자들과 평등한 권리를 부여한다.

### 제3부

**제10조** 체결국은 교육 분야에서 여자에 대한 남자들과의 평등한 권리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특히 남녀평등을 기초로 다용사항을 확보할 것을 목적으로, 여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a) 농촌 및 도시의 모든 종류의 교육시설에서의 직업지도, 수학기회 및 자격증서의 취득을 위한 동일한 조건, 이러한 평등은 취학전 교육, 보통교육 및 고등교육 및 모든 종류의 직업훈련에서 확보되어야 한다. (b)동일의 교육과정, 동일의 시험, 동일 수준의 자격을 가진 교직원 및 동일한 학교시설 및 설비를 향유할 기회. (c)모든 단계 및 모든 형태의 교육에서 남녀의 역할에 대한 정형화된 개념의 철폐를, 이 목적의 달성을 조장할 남녀공학 그 밖의 종류의 교육을 장려하는 것에 의해, 또 특히 교재용 도서 및 지도계획을 개정함과 동시에 지도방법을 조정함으로써 행할 것. (d)장학금 그 밖의 교육 원조를 향유할 동일한 기회 (e)계속 교육계획(성인대상 및 실용적인 식자교육을 포함), 특히 남녀간에 존재하는 교육상의 격차를 가능한 조속히 감소할 것을 목적으로 한 계속 교육계획을 이용할 동일의 기회 (f)여자의 중도 퇴학 을 감소시키며 조기 퇴학한 여자들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 (g)스포츠 및 체육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동일의 기회 (h) 가족의 건강 및 복지의 확보를 위한 특정한 교육적 정보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나 조언을 포함)를 향유할 기회

**제11조** 1. 체결국은 남녀평등을 기초로 한 동일의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목적으로 고용분야에서의 여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한 모든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a)모든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서의 노동의 권리 (b)동일의 고용기회 (고용에 관한 동일의 선고기준의 적용을 포함)에 대한 권리 (c)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승진, 고용의 보장 및 노동에 관한 모든 급여 및 조건에 대한 권리 및 직업훈련 및 재훈련 (견습, 상급직업훈련 및 계속적 훈련포함)을 받을 권리 (d)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보수(수당을 포함) 및 동일대우에 대한 권리 및 노동의 질의 평가에 관한 취급의 평등에 대한 권리 (e)사회보장(특히 퇴직, 실업, 상병, 장애, 노령 그 밖의 노동 불능의 경우의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및 유급휴가에 대한 권리 (f)작업조건에 관한 건강 보호 및 안전 (생식기능의 보호를 포함)에 대한 권리.

2. 체결국은 결혼 또는 모성을 이유로 하는 여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또 여자에 대해서 실효적인 노동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을 목적으로 하는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a)임신 또는 모성휴가를 이유로 하는 해고 및 결혼여부에 근거한 차별적 해고에 제재를 과하여 금지하게 할 것. (b)급료 또는 이것에 준하는 사회적 급부를 수반하고 또 종전의 고용

관계, 선임 및 사회보장상의 이익 상실을 수반하지 않은 모성휴가를 도입하는 것. (c)부모가 가정책임과 직업상의 의무 및 사회적 활동에의 참가를 양립시키는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한 필요한 보조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특히 보육시설 망의 설치 및 충실을 촉진하는 것에 의해 장려할 것. (d)임신 중의 여자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종류의 작업에 대해서는 당해 여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를 할 것.

3 이 조약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보호령은 과학 및 기술상의 지식에 근거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필요에 따라 수정하기도, 폐지하기도 또는 그 적용을 확대하기도 할 수 있다.

**제12조** 1. 체결국은 남녀평등을 기초로 한 보건 서비스(가족계획에 관한 것을 포함)를 향유할 기회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건 분야에서의 여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키 위한 모든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결국은 여자에 대해서 임신, 분만 및 산후 기간 중에 적당한 서비스(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및 임신 및 수유기간 중에 적당한 영양을 확보한다.

**제13조** 체결국은 남녀평등을 기초로 동일의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목적으로, 다른 경제적 및 사회적 활동분야에서의 여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a)가족급부에 대한 권리 (b)은행대출, 저당 그 밖의 형태의 금융상의 신용에 대한 권리 (c)레크리에이션, 스포츠 및 모든 측면에서의 문화적 활동에 참가할 권리

**제14조** 1. 체결국은 농촌 여자가 직면할 특별한 문제 및 가족의 경제적 생존을 위한 중요한 역할(화폐 화되지 않은 경제부문에서의 노동을 포함)을 고려하여, 농촌 여자에 대한 이 조약의 적용을 확보키 위한 모든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2. 체결국은 남녀평등을 기초로 농촌 여자가 농촌의 개발에 참가 및 개발에서 생긴 이익을 향유할 것을 확보할 목적으로, 농촌여자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한 모든 적당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이들 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확보한다. (a)모든 단계에서 개발계획의 작성 및 실행에 참가할 권리 (b)적당한 보건서비스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 카운셀링 및 서비스를 포함)를 향유할 권리 (c)사회보장제도에서 직접적으로 이익을 향유할 권리 (d)기술적인 능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 종류(정규여부를 불문)의 훈련 및 교육(실용적인 지식에 관한 것을 포함) 및 특히 모든 지역서비스 및 보급 서비스로부터의 이익을 향유할 권리 (e)경제 분야에서의 평등한 기회를 고용 및 자영을 통해 얻기 위해, 자조적 집단 및 협동조합을 조직할 권리 (f)모든 지역 활동에 참가할 권리 (g)농업신용 및 대부, 유통기구 및 적당한 기술을 이용할 권리 및 토지 및 농지개혁 및 입식계획에서의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h)적당한 생활조건 (특히 거주, 위생, 전력 및 물의 공급, 운수 및 통행에 관한 조건)을 향유할 권리

#### 제4부

**제15조** 1. 체결국은 여자에 대해 법률 앞에 남자와의 평등을 인정한다.

2. 체결국은 여자에 대해, 민사상 남자와 동일의 법적 능력을 부여하며, 또 이 능력을 행사할 동일한 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체결국은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할 때 여자에 대해 남자와 평등의 권리를 주며, 재판소에서의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여자를 남자와 평등하게 취급한다.

3. 체결국은 여자의 법적 능력을 제한하려는 법적 효과를 가진 모든 계약 및 다른 모든 사적

문서(종류를 불문하고)를 무효로 할 것에 동의한다.

4. 체결국은, 개인의 이동 및 거주 주소의 선택의 자유에 관한 법률에서 체결국은 개인의 이동 및 거주 주소의 선택의 자유에 관한 법률에서 남녀에 동일한 권리를 부여한다.

- 제16조** 1. 체결국은 혼인 및 가족관계에서의 모든 사항에서 여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당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남녀평등을 기초로 다음 사항을 확보한다. (a)혼인을 할 동일의 권리 b)자유롭게 배우자를 선택하고 자유롭게 완전한 합의에 의한 혼인을 할 동일의 권리 (c)혼인 중 및 혼인의 해소 때의 동일의 권리 및 책임 (d)자녀에 관한 사항에서의 부모(혼인하고 있는 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모로써의 동일의 권리 및 책임. 모든 경우에서 자녀의 이익은 가장 우선이다. (e)자녀의 수 및 출산의 간격을 자유롭게 책임을 가지고 결정할 동일의 권리 및 이들 권리의 행사를 가능케 하는 정보, 교육, 및 수단을 향유할 동일의 권리 (f) 자녀의 후견 및 양자 맺기 또는 국내법령에 이에 유사한 제도가 존재할 경우에는 그 제도에 따른 동일의 권리 및 책임. 모든 경우, 자녀의 이익은 최우선 된다. (g)남편 및 청의 동일의 개인적 권리(성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 (h)무상 유산을 불문하고, 재산의 소유하고, 취득하고, 운용하고, 관리하고, 이용하고 처분할 것에 관한 배우자 및 쌍방의 동일한 권리
2. 아동의 혼약 및 혼인은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또 혼인초소연령을 정하며 공공의 관공소에 혼인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입법을 포함)가 취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 제5부

- 제17조** 1. 이 조약의 실시에 관한 진척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여자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이 조약의 효력발생 때는 18명으로, 35번째 체결국에 의한 비준 내지는 가입 후는 23명의 덕망 있고 또 이 조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충분한 능력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은 체결국의 국민들 가운데서 체결국에 의해 선출되는 것으로, 개인의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그 선출에 있어서는 위원의 배분이 지리적으로 공평하게 이뤄짐과 더불어 다른 문명형태 및 주요한 법체계가 대표되는 것을 고려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체결국에 의해 지명된 사람들의 명부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각 체결국은 자국민 가운데에서 1사람을 지명할 수 있다.
3. 위원회 위원의 최초의 선거는 이 조약의 효력발생일 후 6개월을 경과했을 때 행한다. UN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위원선거일로부터 적어도 3개월 전까지, 체결국에 대해, 자국이 지명하는 사람의 이름을 2개 내로 제출할 것을 서류로 요청한다. 동 사무총장은 지명된 사람의 알파벳순에 의한 명부(이들을 지명한 체결국명을 표시한 명부로 한다)를 작성, 체결국에 송부한다.
4. 위원회의 위원의 선거는 UN사무총장에 의해 UN본부에서 소집되는 체결국 회합에서 행한다. 이 회합은 체결국의 2/3를 정족수로 한다. 이 회합에서는 출석하고 투표할 체결국의 대표에 의해 행해진 투표의 최다수로 또 과반수를 얻어 지명된 사람을 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단지 최초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가운데 9명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종료되며, 이들 9명의 위원은 최초 선거직후, 위원회의 위원장에 의해 재비 뽑기로 선발된다.

6, 위원회의 명의 추가적인 위원의 선거는 35번째의 비준 혹은 가입 후 2에서 4 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이 때 선출된 추가적인 위원 가운데 2명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하며, 이들 2명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에 의해 재비 뽑기로 선발된다.

7, 체결국은 자국의 전문가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졌을 경우는, 그 공석을 보충키 위해,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자국민들 중에서 다른 전문가를 임명한다.

8, 위원회의 위원은 UN총회가 위원회의 임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동 총회의 승인을 얻어, UN의 재원에 보수를 받는다.

9, UN사무총장은 위원회가 이 조약에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이나 편의를 제공한다.

**제18조** 1, 체결국은 다음의 경우, 이 조약의 실시를 위해 취해진 입법, 사법, 행정상 그 밖의 조치 및 이들 조치에 의해 결과 된 진보에 관한 보고를, 위원회의 검토를 위해 UN사무총장에게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a) 당해 체결국에 대해 이 조약이 효력을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 (b) 그 후는 적어도 4년, 또는 위원회가 요청할 때.

2, 보고에는 이 조약에 근거한 의무 이행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요인 및 장애를 기재할 수 있다.

**제19조** 1, 위원회는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2, 위원회는 임원을 2년 임기로 선출한다.

**제20조** 1, 위원회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선출되는 보고를 검토하기 위한 원칙으로 매년 2주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회합한다.

2, 위원회의 회합은 원칙적으로 UN본부 또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다른 적당한 장소에서 개최한다.

**제21조** 1, 위원회는 그 활동에 있어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해 매년 국제연합총회에 보고하며, 또 체결국에서 얻은 보고 및 정보의 검토에 근거한 제안 및 일반적 성격을 가지는 권고를 행할 수 있다. 이들 제안 및 일반적 성격을 가진 권고는 체결국에서 의견이 있을 경우는 그 의견과 같이 위원회의 보고에 기재한다.

2, UN사무총장은 위원회의 권고, 정보용으로, 여성의 지위위원회에 송부한다.

**제22조** 전문기관은 그 임무의 범위 내에 있는 사항에 관한 이 조약의 규정의 실시에 대한 검토 시, 대표를 보낼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는 전문기관에 대해, 그 임무의 범위 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이 조약의 실시에 대한 보고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6부**

**제23조** 이 조약의 어느 규정도,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규정으로 남녀평등의 달성에 한층 공헌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a) 체결국의 법령 (b) 체결국에 대해서 효력을 가진 다른 국제조약 또는 국제협정

**제24조** 체결국은 자국에서 이 조약이 인정하는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키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제25조** 1, 이 조약은 모든 나라에 의한 서명을 위해 개방해 둔다. 2, UN사무총장은 이 조약의 기탁자로서 지정된다. 3, 이 조약은 비준되지 않으면 안 된다. 비준서는 UN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4, 이 조약은 모든 나라에 의해 가입하게 하기 위해 개방해 둔다. 가입은 가입서를 UN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뤄진다.

**제26조** 1, 어떤 체결국도 UN사무총장 앞으로의 서면에 의한 통고에 의해, 언제든지 조약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UN총회는 하나의 요청에 관해 취해야할 조치가 있을 때는, 그 조치를 결정한다.

**제27조** 1, 이 조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내지는 가입서가 UN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 후 30일째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조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내지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비준 혹은 가입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 비준 내지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째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8조** 1, UN 사무총장은 비준 또는 가입 때 행해진 유보의 서면을 수령하고 또 모든 나라에 송부한다. 2, 이 조약의 취지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유보는 인정하지 않는다. 3, 유보는 UN사무총장 앞으로의 통고에 의해 언제든지 철회하는 가능하며, 동 사무총장은 그 철회를 모든 나라에 통보한다. 이렇게 하여 통보된 통고는 수령된 날 효력을 발생한다.

**제29조** 1, 이 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체결 국간의 분쟁에서 교섭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은, 어느 분쟁 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중재에 회부된다. 중재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중재 조직에 대해서 분쟁당사국이 합의에 도달치 못할 경우에는, 어느 분쟁당사국도, 국제사법재판서 규정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분쟁을 위탁할 수 있다.

2, 각 체결국은 이 조약의 서명 내지 비준 또는 이 조약에의 가입 때, 하나의 규정에 구속되지 않을 것을 선언할 수 있다. 다른 체결국은 그러한 유보를 가진 체결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3, 두 개의 규정에 근거하여 유보를 한 체결국은 UN사무총장 앞으로의 통고에 의해, 언제든지 그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제30조** 이 조약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를 다같이 정문으로 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에 기탁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명칭은 정당하게 위임을 받아 이 조약에 서명한다. (서명생략)

UN총회 / 여성차별철폐 국제협약 의정서

UNITED  
NATIONS

A



General Assembly

Distr.  
GENERAL

A/RES/54/4  
15 October 1999

Fifty-fourth session  
Agenda item 109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without reference to a Main Committee (A/54/L.4)]

**54/4.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e General Assembly,*

*Reaffirming* 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sup>1</sup> and the Beijing Declaration<sup>2</sup> and Platform for Action,<sup>3</sup>

*Recalling* that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pursuant to 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supported the process initiated by the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with a view to elaborating a draft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sup>4</sup> that could enter into force as soon as possible on a right-to-petition procedure,

<sup>1</sup> A/CONF.157/24 (Part I), chap. III.

<sup>2</sup> *Report of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Beijing, 4-15 September 1995*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96.IV.13), chap. I, resolution 1, annex I.

<sup>3</sup> *Ibid.*, annex II.

<sup>4</sup> Resolution 34/180, annex.

A/RES/54/4  
Page 2

*Noting* that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also called on all States that have not yet ratified or acceded to the Convention to do so as soon as possible so that universal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can be achieved by the year 2000,

1. *Adopts and opens for signature, ratification and accession*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the text of which is annexed to the present resolution;
2. *Calls upon* all States that have signed, ratified or acceded to the Convention to sign and ratify or to accede to the Protocol as soon as possible;
3. *Stresses* that States parties to the Protocol should undertake to respect the rights and procedures provided by the Protocol and cooperate with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t all stages of its proceedings under the Protocol;
4. *Stresses* also that in the fulfilment of its mandate as well as its functions under the Protocol, the Committee should continue to be guided by the principles of non-selectivity, impartiality and objectivity;
5. *Requests* the Committee to hold meetings to exercise its functions under the Protocol after its entry into force, in addition to its meetings held under article 20 of the Convention; the duration of such meetings shall be determined and, if necessary, reviewed by a meeting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Protocol,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General Assembly;
6. *Requests* the Secretary-General to provide the staff and facilities necessary for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the functions of the Committee under the Protocol after its entry into force;
7. *Also requests* the Secretary-General to include information on the status of the Protocol in her or his regular reports submitted to the General Assembly on the status of the Convention.

*28<sup>th</sup> plenary meeting  
6 October 1999*

#### ANNEX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Protocol,*

*Noting* that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reaffirms faith in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person and in the equal rights of men and women,

*/...*

*Also noting* that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sup>5</sup> proclaims that 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and that everyone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therein,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including distinction based on sex,

*Recalling* that the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sup>6</sup> and o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prohibi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

*Also recalling*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sup>4</sup> ("the Convention"), in which the States Parties thereto condemn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all its forms and agree to pursue by all appropriate means and without delay a policy of eliminating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Reaffirming* their determination to ensure the full and equal enjoyment by women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to take effective action to prevent violations of these rights and freedoms,

*Have agreed as follows:*

#### *Article 1*

A State Party to the present Protocol ("State Party")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e Committee")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 *Article 2*

Communications may be submitted by or on behalf of individuals or groups of individuals, under the jurisdiction of a State Party, claiming to be victims of a violation of any of the rights set forth in the Convention by that State Party. Where a communication is submitted on behalf of individuals or groups of individuals, this shall be with their consent unless the author can justify acting on their behalf without such consent.

#### *Article 3*

Communications shall be in writing and shall not be anonymous. No communication shall be received by the Committee if it concerns a State Party to the Convention that is not a party to the present Protocol.

#### *Article 4*

1. The Committee shall not consider a communication unless it has ascertained that all available domestic remedies have been exhausted unless the application of such remedies is unreasonably prolonged or unlikely to bring effective relief.

---

<sup>5</sup> Resolution 217 A (III).

<sup>6</sup> Resolution 2200 A (XXI), annex.

A/RES/54/4  
Page 4

2. The Committee shall declare a communication inadmissible where:
  - (a) The same matter has already been examined by the Committee or has been or is being examined under another procedure of international investigation or settlement;
  - (b) It is incompatibl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 (c) It is manifestly ill-founded or not sufficiently substantiated;
  - (d) It is an abuse of the right to submit a communication;
  - (e) The facts that are the subject of the communication occurred prior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Protocol for the State Party concerned unless those facts continued after that date.

*Article 5*

1. At any time after the receipt of a communication and before a determination on the merits has been reached, the Committee may transmit to the State Party concerned for its urgent consideration a request that the State Party take such interim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avoid possible irreparable damage to the victim or victims of the alleged violation.
2. Where the Committee exercises its discretion under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this does not imply a determination on admissibility or on the merits of the communication.

*Article 6*

1. Unless the Committee considers a communication inadmissible without reference to the State Party concerned, and provided that the individual or individuals consent to the disclosure of their identity to that State Party, the Committee shall bring any communication submitted to it under the present Protocol confidentially to the attention of the State Party concerned.
2. Within six months, the receiving State Party shall submit to the Committee written explanations or statements clarifying the matter and the remedy, if any, that may have been provided by that State Party.

*Article 7*

1. The Committee shall consider communications received under the present Protocol in the light of all information made available to it by or on behalf of individuals or groups of individuals and by the State Party concerned, provided that this information is transmitted to the parties concerned.
2. The Committee shall hold closed meetings when examining communications under the present Protocol.
3. After examining a communication, the Committee shall transmit its views on the communication, together with its recommendations, if any, to the parties concerned.

*L...*

4. The State Party shall give due consideration to the views of the Committee, together with its recommendations, if any, and shall submit to the Committee, within six months, a written response, including information on any action taken in the light of the views and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5. The Committee may invite the State Party to submit further information about any measures the State Party has taken in response to its views or recommendations, if any, including as deemed appropriate by the Committee, in the State Party's subsequent reports under article 18 of the Convention.

#### *Article 8*

1. If the Committee receives reliable information indicating grave or systematic violations by a State Party of rights set forth in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shall invite that State Party to cooperate in the examination of the information and to this end to submit observations with regard to the information concerned.

2. Taking into account any observations that may have been submitted by the State Party concerned as well as any other reliable information available to it, the Committee may designate one or more of its members to conduct an inquiry and to report urgently to the Committee. Where warranted and with the consent of the State Party, the inquiry may include a visit to its territory.

3. After examining the findings of such an inquiry, the Committee shall transmit these findings to the State Party concerned together with any comments and recommendations.

4. The State Party concerned shall, within six months of receiving the findings, comments and recommendations transmitted by the Committee, submit its observations to the Committee.

5. Such an inquiry shall be conducted confidentially and the cooperation of the State Party shall be sought at all stages of the proceedings.

#### *Article 9*

1. The Committee may invite the State Party concerned to include in its report under article 18 of the Convention details of any measures taken in response to an inquiry conducted under article 8 of the present Protocol.

2. The Committee may, if necessary, after the end of the period of six months referred to in article 8.4, invite the State Party concerned to inform it of the measures taken in response to such an inquiry.

#### *Article 10*

1. Each State Party may, at the time of signature or ratification of the present Protocol or accession thereto, declare that it does not recognize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provided for in articles 8 and 9.

*L...*

A/RES/54/4  
Page 6

2. Any State Party having made a declar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may, at any time, withdraw this declaration by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Article 11*

A State Party shall take all appropriate steps to ensure that individuals under its jurisdiction are not subjected to ill treatment or intimidation as a consequence of communicating with the Committee pursuant to the present Protocol.

*Article 12*

The Committee shall include in its annual report under article 21 of the Convention a summary of its activities under the present Protocol.

*Article 13*

Each State Party undertakes to make widely known and to give publicity to the Convention and the present Protocol and to facilitate access to information about the views and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in particular, on matters involving that State Party.

*Article 14*

The Committee shall develop its own rules of procedure to be followed when exercising the functions conferred on it by the present Protocol.

*Article 15*

1. The present Protocol shall be open for signature by any State that has signed, ratified or acceded to the Convention.
2. The present Protocol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by any State that has ratified or acceded to the Convention.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3. The present Protocol shall be open to accession by any State that has ratified or acceded to the Convention.
4. Accession shall be effected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access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16*

1. The present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ten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

2. For each State ratifying the present Protocol or acceding to it after its entry into force, the present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its own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rticle 17*

No reservations to the present Protocol shall be permitted.

*Article 18*

1. Any State Party may propose an amendment to the present Protocol and file 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cretary-General shall thereupon communicate any proposed amendments to the States Parties with a request that they notify her or him whether they favour a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for the purpose of considering and voting on the proposal. In the event that at least one third of the States Parties favour such a conference, the Secretary-General shall convene the conference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Any amendment adopted by a majority of the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at the conference shall be submitted to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for approval.

2. Amendments shall come into force when they have been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and accepted by a two-thirds majority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Protocol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3. When amendments come into force, they shall be binding on those States Parties that have accepted them, other States Parties still being bound by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Protocol and any earlier amendments that they have accepted.

*Article 19*

1. Any State Party may denounce the present Protocol at any time by written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by the Secretary-General.

2. Denunciation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continued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Protocol to any communication submitted under article 2 or any inquiry initiated under article 8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denunciation.

*Article 20*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inform all States of:

- (a) Signatures, ratifications and accessions under the present Protocol;
- (b)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Protocol and of any amendment under article 18;
- (c) Any denunciation under article 19.

*Article 21*

1. The present Protocol, of which th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United Nations.

2.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transmit certified copies of the present Protocol to all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 25 of the Convention.

...

UNITED  
NATIONS



## 여성에 대한 모든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조약 선택의정서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UN총회는 「빈 선언 및 행동계획」 및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을 재확인, 북경행동강령이 빈선언 및 행동계획에 의거하여, 청원권에 대해 가급적 신속하게 발표할 수 있도록 <여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조약> 선택의정서의 작성을 목적으로, 부인의 지위위원회가 착수한 프로세스를 지지한 것을 상기하고, 북경행동강령은 또, 동 조약의 비준 혹은 아직 가맹하지 않은 전 가맹국들에 대해서 가급적 빨리 이를 행하고, 동 조약의 보편적 비준이 2000년까지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유의하면서,

1. 이 결의안에 부속하는 동 조약선택의정서를 채택, 이것을 서명, 비준 및 가입을 위해 개방한다.
2. 동 조약의 서명, 비준 혹은 가입한 전 가맹국들에 대해, 가급적 신속하게 선택의정서의 서명 및 비준 혹은 가입을 하도록 요구한다.
3. 선택의정서 체결국은 동 의정서에 정한 권리 및 수속을 준수함과 동시에, 동 의정서 체결국은 동 의정서에 정한 권리 및 수속을 준수함과 동시에, 동 의정서에 의한 수속의 전 단계에서, 여자차별철폐위원회와 협력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4. 또, 선택의정서에 의한 그 임무 및 기능수행에서, 위원회는 계속하여 비 선택 성, 중립성 및 객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도 강조한다.
5. 위원회에 대해, 선택의정서 발효 후, 조약 제 20조에 의해 개최되는 회합은 물론, 동 의정서에 정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도록 요청한다. 이 회의의 개최기간은 총회의 승인을 얻을 것을 조건으로, 의정서 체결국 회의에 의해 결

정되고, 또 필요할 경우 재검토 된다.

6. 사무총장에 대해, 선택의정서발효 후, 위원회가 동 의정서에 의한 기능을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필요한 요원과 시설을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7. 또 사무총장에 대해, 총회에 대해서 동인이 제출하는 조약의 형상에 관한 정기보고 가운데, 선택의정서의 현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한다.

여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조약 선택의정서

이 의정서의 체결국은, UN헌장이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남녀동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고 있음을 유의, 또, 세계 인권선언이,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이며, 또 존엄 및 권리에 대해서 평등하며, 동시에 누구도 성별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어떤 차별을 받음이 없이, 그 가운데 내포되고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을 선언하고 있음에도 유의, 국제인권규약 및 그 밖의 국제인권기본문서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것을 상기, 또 여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의 철폐에 관한 조약(「조약」으로 지칭)에 있어, 그 체결국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비난함과 동시에,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할 정책을 지체 없이 취할 것에 합의하고 있음도 상기, 여성에 의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하고 평등한 향유를 확보, 이들의 권리와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행동을 취할 결의 재확인,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이 의정서의 체결 국(「체결 국」)은, 제2조에 근거 제출된 통보를, 여자차별철폐위원회(「위원회」)가 수리하고 심의할 권한을 가진 것을 인정한다.

**제2조** 통보는 체결국의 관할아래 있는 개인 또는 집단으로, 조약에 정한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의해, 또 그에 대신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인 또는 집단을 대신하여 통보를 제출할 경우는, 당해 개인 또는 집단의 동의를 얻어 행한다. 단지 동의가 없더라도 신청인이 당해 개인 또는 집단에 대신하여 행동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제한은 없다.

**제3조** 통보는 문서로 하며, 익명이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조약 체결국이기는 하나 이 의정서 체결국이 아닌 것에 대한 어떤 통보도 수리해서는 안 된다.

**제4조** 1. 위원회는 이용하여야 할 모든 국내적 구제조치를 취한 것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보를 검토하지 않는다. 단지 모든 구제조치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효과적인 구제 전망이 없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통보를 수리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

1. 동일 문제가 위원회에 의해 이미 심의되었으며, 혹은 다른 국제적 조사나 해결절차로 이미 심의되었거나 또는 심의 중 일 때.
2. 통보가 조약 규정에 저촉될 경우
3. 통보가 분명히 근거를 결여했거나 또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을 때.
4. 통보제출의 권리의 남용일 때.
5. 통보 대상이 된 사실이 당해 체결국에 대해 본 의정서가 발효하기 이전에 발생했다. 단 관련사실이 이 시기 이후도 계속되고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 1. 통보가 수리되고부터 시비의 결정에 도달하기까지의 어떤 시점에서, 위원회가 당해 체결국에 대해, 통보의 대상이 된 권리침해의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미칠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토록 요청, 그 긴급한 검토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위원회에 의한 본 조 제1항에 정한 재량권의 행사는, 해당하는 통보의 수리 가능성 또는 시비에 관한 결정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

**제6조** 1. 위원회가 해당 체결국에 대하여 조회를 하지 않고, 통보가 수리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를 제외하고, 또 통보의 본인 개인 또는 집단이 당해 체결국에 대해 그 신원의 개시에 동의하고 있음을 조건으로, 위원회는 이 의정서에 근거하여 제출된 통보에 관해, 극비로 당해 체결국의 주의를 환기토록 한다.

2. 통보를 수리하는 체결국은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설명서 또는 성명서를 제출, 사실관계 및 당해 체결국에 의해 취해진 구제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분명히 한다.

**제7조** 위원회는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해, 또는 그것에 대신하여, 및 관계 체결국에 의해 제출된 모든 정보에 따라, 이 의정서에 근거 수립된 통보를 검토한, 이 경우 이 정보가 당사자에 전달된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위원회는 이 의정서에 근거 통보를 검토할 때는 비공개 회의로 한다.

2. 위원회는 통보를 검토 후, 통보에 관한 의견을 권고가 있으면 이것과 같이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3. 당해 체결국은 위원회의 의견을 만약 있다고 하면 그 권고와 함께 충분히 검토하고, 6개월 이내, 위원회에 위원회의 의견 및 권고에 대응한 행동에 대한 정보도 포함, 답변서를 제출한다.

4. 위원회는 당해 체결국에 대해, 동 국이 그 의견 또는 만약 있다고 하면 권고에 따라 강구되는 조치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출토록 촉진할 수 있으나,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정보는 조약 제18조에 의거 당해 국이 추후 작성할 보고서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 1. 위원회는 체결국에 의해 조약에 정해진 권리의 중대하고 조직적인 침해를 시사하는 믿음만한 정보를 획득한 경우에는, 당해 체결국에 대해 정보의 검토에 대한 협력 및 이 목적을 위한 관계정보에 관한 견해의 제출을 촉구한다.

2. 위원회는 당해 체결국이 제출한 견해나 그 밖의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이것들을 고려, 조사를 실시, 위원회에 긴급보고 하도록 한 사람 내지 복수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충분한 근거 및 당해 체결 국의 동의가 있을 경우, 조사를 위해 동국의 방문을 포함할 수 있다.

3. 관계 조사의 결과를 검토, 위원회는 어떤 주석 및 권고가 있으면 이것을 첨부하여, 이들 조사결과를 당해 체결국에 송부한다.

4. 당해 체결국은 위원회가 송부한 조사결과, 주석 및 권고의 수리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견해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5. 이러한 조사결과, 주석 및 권고의 수리가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견해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6. 관계조사는 극비로 행하며, 수속의 모든 단계에서 당해 체결 국의 협력이 요청된다.

**제9조** 1. 위원회는 관계 체결국에 대해, 이 의정서 제8조에 근거 행해진 조사에 따라 취해진 어떤 조치도, 조약 18조에 근거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에 딸, 제8조4항 있는 6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당해 체결국에 대해 관계조사 따라 취해진 조치에 대해 통지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

**제10조** 1. 각 체결국은 이 의정서 서명 또는 비준, 혹은 이에 가입할 때, 제8조 및 9조에 정한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을 것을 선언할 수 있다.

2. 본 조 1항에 의한 선언을 할 때 체결국은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해 언제라도 이 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

**제11조** 체결국은 그 관할아래 있는 사람이 이 의정서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를 한 결과로 학대 혹은 협박을 받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12조 위원회는 조약 제21조에 근거 그 연차보고 속에 이 의정서에 근거 그 활동의 개요를 포함한다. 제13조 각 체결국은 조약 및 이 의정서를 공포하고 널리 주시지킴과 함께 특히 당해 체결국이 관계하는 사안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 및 권고에 관한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제14조** 위원회는 스스로의 절차규칙을 정해, 이 의정서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때는 이것에 따른다.

**제15조** 이 의정서는 조약에 서명, 이것을 비준 내지는 이것에 가입 한 국가에 의해 서명하기 위해 개

방해 든다.

1. 이 의정서는, 조약의 비준 국 및 가입 국에 의한 비준에 회부된 것이다. 비준서 기탁 처는 UN사무총장으로 한다.
2. 이 의정서에는 조약의 비준 내지 가입한 국가를 위해 개방해 둔다.
3. 가입은 가입 서를 UN사무총장에 기탁하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 16조** 1. 이 의정서는 UN사무총장에 10번째의 비준서 혹은 가입서가 기탁되는 때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의정서 발효 후에 비준 내지는 가입하는 각 국에 대해, 이 의정서는 자국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7조** 이 의정서에 대해서는 어떤 유보도 인정되지 않는다.

**제18조** 1. 어떤 체결국도 이 의정서에 대한 수정을 제안, 이것을 UN사무총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무총장은 이것을 수리, 어떤 수정안도 체결국에 통보함과 동시에, 당해 수정안에 관한 토의 및 표결을 목적으로 한 체결국회의의 개최를 원하는가의 여부를 동인에 통지하도록 요청한다. 체결 국의 1/3이 참석하는 회의를 원할 경우, 사무총장은 UN의 주최에 의해 이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에 출석, 또 투표할 체결 국의 과반수에 의해 채택된 어떤 수정안도 UN 총회에 제출돼, 그 승인을 받는다.

2. 수정조항은 UN총회에서 승인되고 또 이 의정서 체결국의 2/3에 의해 각 국의 헌법에서 정한 과정을 거쳐 비준된 시점에서 효력을 발생한다.

3. 수정조항은, 그 발효의 시점에서, 이것을 받아들인 체결국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지나, 그 밖의 체결 국에 대해서는 이 의정서의 규정 및 이전에 받아들인 수정조항이 있으면 그 수정조항이 계속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제19조** 1. 어떤 체결국도 UN사무총장에 대해 서면 통고를 하는 것으로 이의정서를 파기할 수 있다. 파기는 동 사무총장이 통고를 수리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제2조에 근거 제출된 통보, 또는 파기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제8조에 의거 개시된 조사가 있을 경우, 파기는 이것에 대한 이 의정서 조항의 적용 계속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20조** UN사무총장은 다음 사항을 모든 가맹국들에 대해 통지한다.

- A, 이 의정서의 규정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 B, 이 의정서의 발효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발효의 일.
- C,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파기

**제21조** 1. 이 의정서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를 정본으로 하여 UN의 공식기록보관소에 기탁한다.

2. UN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인증사본을 조약 제25조에 있는 모든 나라에 송부한다.

〈1999年10月6日, UN총회에서 채택〉

**북경선언**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15 September 1995)

**INDEX**

Beijing Declaration

Platform for Action

Chapter 1	Mission Statement
Chapter 2	Global Framework
Chapter 3	Critical Areas of Concern
Chapter 4	Strategic Objectives and Actions
Chapter 5	Institutional Arrangements
Chapter 6	Financial Arrangements

**BEIJING DECLARATION**

1. We, the Governments, participating in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2. Gathered here in Beijing, in September 1995, the year of the fiftie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United Nations,
3. Determined to advance the goals of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 for all women everywhere in the interest of all humanity,
4. Acknowledging the voices of all women everywhere and taking note of the diversity of women and their roles and circumstances, honouring the women who paved the way and inspired by the hope present in the world's youth,
5. Recognize that the status of women has advanced in some important respects in the past decade but that progress has been uneven, inequalities between women and men have persisted and major obstacles remain, with serious consequences for the well-being of all people,

6. Also recognize that this situation is exacerbated by the increasing poverty that is affecting the lives of the majority of the world's people, in particular women and children, with origins in both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domains,

7. Dedicate ourselves unreservedly to addressing these constraints and obstacles and thus enhancing further the advancement and empowerment of women all over the world, and agree that this requires urgent action in the spirit of determination, hope, cooperation and solidarity, now and to carry us forward into the next century.

*reaffirm our commitment to:*

8. The equal rights and inherent human dignity of women and men and other purposes and principles enshrin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o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o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in particular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s well as the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9. Ensure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human rights of women and of the girl child as an inalienable, integral and indivisible part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10. Build on consensus and progress made at previous United Nations conferences and summits - on women in Nairobi in 1985, on children in New York in 1990,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Rio de Janeiro in 1992, on human rights in Vienna in 1993,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in Cairo in 1994 and on social development in Copenhagen in 1995 with the objectives of achieving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

11. Achieve the full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Nairobi Forward-looking Strategies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12. The empowerment and advancement of women, including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religion and belief, thus contributing to the moral, ethical, spiritual and intellectual needs of women and men, individually or in community with others and thereby guaranteeing them the possibility of realising their full potential in society and shaping their lives in accordance with their own aspirations.

*are convinced that:*

13. Women's empowerment and their full participation on the basis of equality in all spheres of society, including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access to power, are fundamental for the achievement of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

3.

14. Women's rights are human rights;
15. Equal rights, opportunities and access to resources, equal sharing of responsibilities for the family by men and women, and a harmonious partnership between them are critical to their well-being and that of their families as well as to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16. Eradication of poverty based on sustained economic growth, social development,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ocial justice requires the involvement of women i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equal opportunities and the full and equal participation of women and men as agents and beneficiaries of people-centred sustainable development;
17. The explicit recognition and reaffirmation of the right of all women to control all aspects of their health, in particular their own fertility, is basic to their empowerment;
18. Local,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peace is attainable and is inextricably linked with the advancement of women, who are a fundamental force for leadership, conflict resolution and the promotion of lasting peace at all levels;
19. It is essential to design, implement and monitor, with the full participation of women, effective, efficient and mutually reinforcing gender-sensitive policies and programmes, including development policies and programmes, at all levels that will foster the empowerment and advancement of women;
20. The participation and contribution of all actors of civil society, particularly women's groups and networks and other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nd community-based organisations, with full respect for their autonomy, in cooperation with Governments, are important to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follow-up of the Platform for Action;
21.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tform for Action requires commitment from Government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mak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mmitments for action, including those made at the Conference, Government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cognize the need to take priority action for the empowerment and advancement of women.
- We are determined to:*
22. Intensify efforts and actions to achieve the goals of the Nairobi Forward-looking Strategies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by the end of this century;
23. Ensure the full enjoyment by women and the girl child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take effective action against violations of these rights and freedoms;

24.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liminate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the girl child and remove all obstacles to gender equality and the advancement and empowerment of women;
25. Encourage men to participate fully in all actions towards equality;
26. Promote women's economic independence, including employment, and eradicate the persistent and increasing burden of poverty on women by addressing the structural causes of poverty through changes in economic structures, ensuring equal access for all women, including those in rural areas, as vital development agents, to productive resources, opportunities and public services;
27. Promote people-centred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sustained economic growth through the provision of basic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literacy and training, and primary health care for girls and women;
28. Take positive steps to ensure peace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and, recognizing the leading role that women have played in the peace movement, work actively towards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under strict and effective international control, and support negotiations on the conclusion, without delay, of a universal and multilaterally and effectively verifiabl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which contributes to nuclear disarmament and the prevention of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in all its aspects;
29. Prevent and eliminate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30. Ensure equal access to and equal treatment of women and men in education and health care and enhance women's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s well as education;
31. Promote and protect all human rights of women and girls;
32. Intensify efforts to ensure equa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women and girls who face multiple barriers to their empowerment and advancement because of such factors as their race, age, language, ethnicity, culture, religion, or disability, or because they are indigenous people;
33. Ensure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including humanitarian law, in order to protect women and girls in particular;
34. Develop the fullest potential of girls and women of all ages, ensure their full and equal participation in building a better world for all and enhance their role in the development process.

*We are determined to:*

35. Ensure women's equal access to economic resources including land, credit, science and technology, vocational training,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markets, as a means to further the advancement and empowerment of women and girls, including through the enhancement of their capacities to enjoy the benefits of equal access to these resources, inter alia, by mean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36. Ensure the success of the Platform for Action which will require a strong commitment on the part of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at all levels. We are deeply convinced that economic development, soci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re interdependent and mutually reinforcing componen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is the framework for our efforts to achieve a higher quality of life for all people. Equitable social development that recognizes empowering the poor, particularly women living in poverty, to utilize environmental resources sustainable is a necessary found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e also recognize that broad-based and sustained economic growth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s necessary to sustain social development and social justice. The success of the Platform for Action will also require adequate mobilization of resources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s well as new and additional resources to the developing countries from all available funding mechanisms, including multilateral, bilateral and private sources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financial resources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national, subreg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a commitment to equal rights, equal responsibilities and equal opportunities and to the equal participation of women and men in all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bodies and policy-making processes; the establishment or strengthening of mechanisms at all levels for accountability to the world's women;

37. Ensure also the success of the Platform for Action in countr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 which will require continue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ssistance;

38. We hereby adopt and commit ourselves as Governments to implement the following Platform for Action, ensuring that a gender perspective is reflected in all our policies and programmes. We urge the United Nations system, regional an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other relevant regional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all women and men, as well a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ith full respect for their autonomy, and all sectors of civil society, in cooperation with Governments, to fully commit themselves and contribute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Platform for Action.

(이하 생략 - )

**UNITED  
NATIONS**

**‘북경선언’ 과 同 ‘행동강령’**

1995년9월15일 1백81개국 2천5백여 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북경에서 열린 유엔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북경선언’(Beijing Declaration)과 ‘행동강령’(Platform for Action)은 전세계 여성들의 평등, 발전, 평화를 증진시킬 것을 결의하여 세계 여성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역사적의 문헌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북경선언’은 “여성의 권리가 곧 인권”이라고 전제하고 “우리는 여성에 대한 권한 부여와 의사결정 과정 및 권력에의 접근을 포함한 사회 모든 영역에서 동등에 기초한 여성의 완전한 참여가 평등, 발전, 평화를 이룩하는데 기본이 되고 있음을 확신

한다”고 강조했다. 또 21세기 세계여성들의 행동규범과 지침이 될 행동강령 속에 포함된 ▲빈곤 ▲보건 ▲교육 ▲폭력 ▲경제 ▲전쟁과 갈등 ▲환경 ▲인권 ▲정책결정 등 12개 분야에 관한 시각과 여성차원에서의 處方’을 제시하고 있는 데서도 그 같은 측면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경선언과 동 행동강령을 채택한 유엔 제4차 세계여성대회의 성과는 이를 대체로 세 가지로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는 평가된다. 즉 여성들에 대한 실제적 권능 부여(Empowerment of Woman)와 동등(Equality)개념의 도입, 그리고 여성의 주류화(Mainstreaming) 전략 등이 그것이다.

**북경선언**

(1995년 9월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유엔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

1. 우리,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각국 정부들은
2. 유엔 창립 50주년을 맞는 1995년 9월 여기 북경에 모여,
3. 모든 인류를 위하여, 전 세계의 모든 여성을 위한 평등, 발전, 평화의 목적을 증진시키기로 결정하고,
4. 전 세계 모든 여성의 목소리를 인정하며 여성과 그들의 역할 및 환경의 다양성에 주목하는 한편, 앞서 길을 닦아 놓은 여성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세계의 청소년에 존재하는 희망에 의해 고무되며,
5. 여성의 지위가 지난 10년간 다소 중요한 측면에서는 진전을 보았으나 그 진행이 고

르지 못하였으며, 남녀간의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주요 장애요인은 만인의 행복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아직도 잔존하고 있음을 인지하며,

6. 또한 이러한 상황이 세계의 대다수 사람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내적인 또는 국제적인 영역 모두에서 연유하는 빈곤에 의해 악화되고 있음을 인지하며,

7. 이러한 압박과 장애요인들을 표명하고, 그리하여 전 세계 여성의 발전과 힘의 증진에 진일보합에 있어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며, 이는 현재에 그리고 위를 차세기로 이끌고 가기 위해 결단, 희망, 협력 및 결속의 정신에 입각한 즉각적인 행동을 필요로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우리는 다음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8. 유엔헌장에 천명된 남녀 평등권과 인간 고유의 존엄성 및 기타 목표와 원칙을 재확인하고, 세계인권선언과 기타 국제인권문서,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선언과 발전에 관한 권리뿐 아니라 특히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아동권리협약을 재확인한다.

9. 양도할 수 없고, 완전하며, 불가분한 모든 인권의 한 부분으로서의 여성과 여아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도모한다.

10. 앞서 평등, 발전, 평화의 달성을 목표로 열렸던 유엔회의들과 정상회의들 - 1985년 나이로비의 여성에 관한, 1990년 뉴욕의 아동에 관한, 1992년 리우의 환경에 개발에 관한 1993년 비엔나의 인권에 관한, 1994년 카이로의 인구와 개발에 관한, 그리고 1995년 코펜하겐의 사회개발에 관한 회의들에서 도달했던 합의와 진전을 재확인한다.

11. 나이르비 여성발전 미래전략의 완전하고도 효과적인 이행을 이룩한다.

12. 사상, 양심, 종교와 믿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여성의 힘의 증진과 발전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그리하여 개인적으로나 사회공동체적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도덕적, 윤리적, 정신적, 지적요구를 충족시키며, 사회에서 그들의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해주고, 그들의 욕구에 따라 그들의 삶을 영여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한다.

우리는 다음을 확신한다.

13. 사회 전반에 걸쳐 평등에 기초한 여성의 힘의 증진과 완전한 참여는, 의사결정과정과 권력에의 접근을 포함하여, 평등, 발전, 평화를 이룩하는데 주요하다.

14. 여성의 권리는 곧 인권이다.

15. 평등권, 자원에 대한 기회와 접근, 남녀에 의한 가족에 대한 책임의 공유와 이들 사이의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는 민주주의를 공고히 할 뿐 아니라 이들 자신의 행복과 이들 가족의 행복에 필수적이다.

16. 지속적인 경제성장, 사회개발, 환경보호 및 사회정의에 근거한 빈곤의 근절은 경제, 사회개발 및 기회균등에 여성의 개입과 인간 중심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에 남녀 공히 수혜자와 시혜자로서의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를 필요로 한다.

17. 모든 여성들이 그들 건강의 모든 측면, 특히 출산을 조정하는 그들의 권리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재확인인 여성의 힘을 증진하는데 근본적인 것이다.

18. 지방, 국가, 지역 및 세계적인 평화는 성취될 수 있으며 이는 모든 차원의 리더십, 분쟁해결 및 영속적인 평화 증진에 원동력인 여성의 발전과 뿔 수 없이 연관되어 있다.

19. 여성의 완전한 참여로 개발정책과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차원에서 여성의 힘의 증진과 발전을 촉진할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상호보강적인 성인지 정책과 프로그램을 입안하고, 이행하며, 모니터 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20. 그들의 자율성이 전적으로 존중되는 가운데 정부와 협력 하에 이루어지는 시민사회의 모든 활동주체들, 특히 여성그룹 및 네트워크, 기타 비정부기구들 및 지역사회단체들의 참여와 기여는 행동강령의 효과적인 이행과 조치에 중요하다.

21. 행동강령의 이행은 정부와 국제사회로부터의 공약을 필요로 한다. 회의 중에 취한 공약을 포함하여, 행동을 위한 국가, 국제적인 공약을 하므로써 정부와 국제사회는 여성의 힘의 증진과 발전을 위한 우선적인 조치를 택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우리는 다음을 결성한다.

22. 금세기 말까지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행동을 증대한다.

23. 여성과 여아에 의한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도모하고 이러한 권리와 자유의 침해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24.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양성평등과 여성의 발전 및 힘의 증진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한다.

25. 평등을 향한 모든 조치들에 남성이 전적으로 참여하도록 촉진한다.

26. 고용을 포함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증진하고, 경제구조변화를 통하여 빈곤의 구조적 요인들을 표명하고, 농촌지역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이 생산적인 자원, 기회와 공공서비스에 증대한 발전주체로서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도모함으로써 빈곤에 대한 여성의 지속적이고 늘어나는 부담을 근절한다.

27. 기초교육의 제공, 평생교육, 문해와 훈련, 소녀와 여성을 위한 일차보건의료를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포함한 인간 중심적 지속가능한 개발을 ??? =====

UN인권위원회특별보고서

UNITED  
NATIONS

**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Distr.  
GENERAL

E/CN.4/2003/75  
6 January 2003

Original: ENGLISH

---

COMMISSION ON HUMAN RIGHTS  
Fifty-ninth session  
Item 12 (a) of the provisional agenda

**INTEGRATION OF THE HUMAN RIGHTS OF WOMEN  
AND THE GENDER PERSPECTIVE**

**VIOLENCE AGAINST WOMEN**

GE.03-10100 (E) 140103

E/CN.4/2003/75  
page 2

### Executive summary

Since the creation of the mandate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in 1994 the world has achieved greater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gender-based violence, and more effective measures are being developed to confront the proble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made great strides in setting standards and elaborating a legal framework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women from violence. While at the normative level the needs of women are generally adequately addressed, the challenge lies in ensuring respect for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existing law and standards. Much more remains to be done to create and sustain an environment where women can truly live free from gender-based violence.

The report documents key developments at the internation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The Special Rapporteur welcomes the many efforts at standard-setting and norm creation at the international level and the array of activities and initiatives taken by States aimed at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including the adoption of amendments to relevant laws, and educational, social and other measures, including national information and awareness-raising campaigns.<sup>1</sup> In addition to the existence of laws, mechanisms for enforcing rights and redressing violations are also of crucial importance. Recent developments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in the prosecution of those responsible for violence against women are very important steps in the fight against impunity, not only because the perpetrators are brought to justice, but also because of the general deterrent effect such developments will hopefully have.

Despite the progress, in general States are failing in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 to effectively prevent, investigate and prosecute violence against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continues in the family, in the community, and is perpetrated and/or condoned by the State in many countries.

The report emphasizes that violence is a multifaceted problem, with no simple or single solution. Violence must be addressed on multiple levels and in multiple sectors of society simultaneously, taking direction from local people on how women's rights may be promoted in a given context. By working on the improvement of data and statistics on violence against women, adopting special legislation that guarantees equal protection of the law and enforcement of its provisions, Governments can put in place the building blocks of a system that can respond more effectively to gender-based violence. The allocation of resources, support to research and documentation on causes and consequences of gender-based violence, education and prevention programmes to support efforts to increase community responsibility, making information on women's rights readily available and creating partnerships between Governments and NGOs are also necessary important steps.

Lastly, the Special Rapporteur sets out her conclusions, challenges for the future, and several recommendations highlighting the need to address (a) root causes of violence, including women's poor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status, which constrains knowledge of their rights and access to options and resources, (b) equal access to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c) impunity for gender-based violence. It is the view of the Special Rapporteur that the greatest challenge to women's rights comes from the doctrine of cultural relativism and that the articulation of sexual rights is the final frontier for the women's movement.

E/CN.4/2003/75  
page 3

## CONTENTS

	<u>Paragraphs</u>	<u>Page</u>
Introduction .....	1 - 6	4
I. DEVELOPMENTS (1994-2002) .....	7 - 14	5
II. ARMED CONFLICT .....	15 - 25	6
III. VIOLENCE IN THE FAMILY .....	26 - 36	9
IV. SEXUAL VIOLENCE/RAPE .....	37 - 46	11
V. SEXUAL HARASSMENT .....	47 - 50	13
VI. TRAFFICKING .....	51 - 60	14
VII. RELIGIOUS EXTREMISM AND HARMFUL TRADITIONAL PRACTICES .....	61 - 70	16
VIII. CONCLUSIONS .....	71 - 83	19
IX. RECOMMENDATIONS .....	84 - 104	21

**Introduction**

1.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at its fifty-eighth session, in its resolution 2002/52, welcomed the work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and took note of her report on cultural practices in the family that are violent towards women (E/CN.4/2002/83 and Add.1-3).
2. Ms. Radhika Coomaraswamy will complete her term of office as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n 2003. In this context, her final report to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looks back at the period of development (1994-2002) and subjects it to review. The purpose is to present a "State of the World" report so that her successor may have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assess the future direction and activity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general and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 particular. It focuses on developments at the internation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aimed at eliminating violence against women since 1994 when the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was created.
3. The Special Rapporteur draws the attention of the Commission to addendum 1 to the present report, which contains a detailed review of international, regional and national developments and best practices and which should be read together with this report. Furthermore, addendum 2 to the report contains summaries of general and individual allegations, as well as urgent appeals transmitted to Governments, and their replies thereto.

E/CN.4/2003/75

page 4

#### **Working methods**

4. In order to provide a systematic review of global developments, the Special Rapporteur requested information on efforts to eliminate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from Governments, specialized agencies, United Nations organs and bodies, and inter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cluding women's organizations, and academics. The Special Rapporteur expresses her gratitude to all who kindly provided information, which contributed significantly in the preparation of her report.<sup>2</sup> The Special Rapporteur also constituted a research team to assist her in reporting to the Commission. The results of their research are also included in the present report.<sup>3</sup>

#### **Country visits**

5. The Special Rapporteur regrets that her visit to the Russian Federation (Republic of Ingushetia and Chechnya) with respect to the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Chechnya, scheduled for 2002, did not take place. The joint visit with the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was postponed for the second time, in September 2002, by the Government, for security reasons. The Special Rapporteur remains concerned about the situation and hopes that the visit will take place in 2003.

6. The Special Rapporteur postponed visits to Turkey,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Mexico due to personal circumstances and hopes that the visits can be rescheduled for 2003.

### **I. DEVELOPMENTS (1994-2002)**

7. The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ncluding its causes and consequences, was created in 1994 after a decade of international activism and concern.<sup>4</sup> The history of women's rights in the United Nations system has been a reflection of the diverse concerns of women throughout the world and their joint effort to mak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ore sensitive to the needs and rights of women.

8. The struggle for women's rights within the United Nations system may be divided into three important phases, each signalling a major gain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women. The first phase occurred soon after the creation of the United Nations with emphasis on vindicating the civil rights of women. Resolutions and declarations called for women's political rights, including the rights of citizenship and the right to vote.

9. The second phase, in the 1960s and the 1970s, culminated in the adop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e Convention"). Structured around the elusive concept of equality, the Convention asserted the equality of women with men and the right of women to be treated equally in every sphere of life. Focusing on political and civil rights as well as economic and social rights, the Convention urged States to take positive measures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education, health, employment and the family to ensure that women enjoyed full equality with men. In article 5 the Convention confirmed its transformative project by requiring States to take measures to combat cultural practices and stereotypes that result in women's subordination.

E/CN.4/2003/75

page 5

10. Ironically, violence against women (VAW) was not to become an international priority until the late 1980s. Since the issue was taboo in many societies where the private sphere was insulated from scrutiny, it took a decade of activism by women's groups to impress up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VAW was a universal harm that required international standard-setting and scrutiny. In 1991 both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and the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decided that the problem of VAW was important enough to warrant further international measures. As a consequence,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adopted general recommendation No. 19 on VAW in 1992.

11. Finally, in 1993 at the Vienna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women's rights were recognized as human rights. States resolved in 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to take action to fight VAW worldwide. Within six months of the Conference, the General Assembly proclaimed the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the Declaration"), in its resolution 48/104 of 20 December 1993 and the pos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was created in 1994 by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held in Beijing in 1995 reiterated the strides taken in Vienna, making VAW the centrepiece of its Platform for Action.

12. Another important development was the entry into force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in 2000. It entitles CEDAW to consider petitions from individual women or groups of women who have exhausted national remedies. It also entitles the Committee to conduct inquiries into grave or systematic violations of the Convention. Other human rights treaty monitoring bodies are integrating a gender perspective into their work in their examin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and also regularly adopt concluding observations relating to VAW.

13. At the regional level, the Declaration of the Advancement of Women in the ASEAN Region was signed in 1988; the Inter-American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Punishment and Eradic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Convention of Belém do Para) wa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in 1994. In the same year,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established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of women. The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appointed a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of women in Africa in 1998. The European Union Presidencies have, since 1998, placed violence against women on the political agenda and adopted a number of recommendations. The African Union is currently developing an Additional Protocol on women's rights in Africa to 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The League of Arab States launched the Arab Women's Organization in 2002 and a number of conferences to debate women's rights and strategies to improve women's status in the region have taken place.

14. When the post of Special Rapporteur was created in 1994, VAW was widespread and unchallenged. International women's groups lobbied Governments to place VAW during armed conflict and by the State; in the family, such as domestic violence and cultural practices; and in the community, such as rape, sexual harassment, religious extremism and trafficking, on the international agenda. All these concerns became part of the Special Rapporteur's mandate.

UNITED  
NATIONS



## 여성폭력을 둘러싼 10년

- UN인권위원회특별보고자 쿠마라스우미의 최종보고서 -

### 개 요

여성에 대한 폭력, 그 원인과 결과에 관한 조사임무가 1994년에 창설된 이래, 세계는 젠다에 근거한 폭력에 대해 보다 커다란 인식과 이해를 획득, 이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키 위해 유효한 방안이 개발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한 법적구조와 기준의 설정에 커다란 진전을 이룩했다. 기준의 설정에 있어서는 여성의 요구에 대해 대체적으로 적절한 대책이 행해지고 있는 한편으로, 남은 과제는 현존하는 법과 기준이 유효하게 적용돼, 존중되도록 보증하는 일이다. 여성이 진정 젠다에 근거한 폭력으로부터 해방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그것을 유지키 위해서는 더욱 많은 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이 보고는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레벨에서의 주요한 발전을 기록한 것이다. 특별보고자는 국제적인 레벨에서 행해진 기준설정과 규범 창설에의 노력을 환영, 여성에 대한 폭력의 철폐를 위해 국가가 행한 관련법의 개정채택, 정보발신이나 의식향상 캠페인 등의 교육적, 사회적 대책 등의 행동과 지도력을 환영한다. 기존의 법률에 더해, 권리 행사나, 위반의 단속 제도는 아주 중요하다. 여성에 대한 폭력 책임자의 소추를 진전시키는 최근의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진전은 불 처벌에 대한 투쟁의 중요한 일보이나, 그 이유는 범죄자에 제재가 가해질 뿐 아니라, 이들의 진전이 일반적인 억지효과를 가진다고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제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효과적으로 저지, 수사, 소추할 국제적 의무의 이행에 태만하고 있다. 여성이나 소녀에 대한 폭력은, 가정이나 사회에 존재하고 있으며, 또 많은 나라에서는 국가에 의한 폭력이 행사되거나 또는 운존되고 있다. 이 보고는 폭력이 다방면적인 문제며, 단순하고 단일적인 해결은 아니라고 점을 강조한다. 폭력에 대해서는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다방면에서 동시에 대책이 취해져야 하며, 특정 상황아래서 어떤 대책이 여성의 권리 진전에 유익할 것인가는 그 지역 사람들이 선도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데이터와 통계를 개선, 평등한 보호와 적용을 보증할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정부는 젠다에 근거한 폭력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수 있다. 자원의 배분, 조사에의 지원, 젠다에 근거한 폭력의 인과관계의 기력, 사회의 책임을 증가시키는 노력을 지지할 교육과 방지 프로그램, 여성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정부와 NGO와 연계, 라는 것도 필요시 되는 중요한 스텝 이다.

끝으로 최종보고자는 결론과 미래의 과제를 a, 폭력의 원인이며, 또 여성의 권리에 대한 지식이나 선택지나 자원의 입수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여성의 빈곤한 경제, 사회적, 정치적 지위, b, 형사사법제도의 평등한 이용기회의 보호, 젠다에 근거한 폭력의 불 처벌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 권고를 추가하고 있다. 여성의 권리의 가장 커다란 과제는 문화상대주의의 원칙에서 생기는, 그래서, 여성운동의 남은 개척분야는 성적 권리의 명확한 표현이라는 이 두 가지 점이 특별보고자의 견해다.

### 서 문

인권위원회 제58회기는 결의 2002/52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그 원인과 결과에 관한 특별보고자'의 연구를 환영, 가정에서의 문화적 관행이 여성에 대해서 폭력적이라는 보고에 유의했다. (E/CN.4/2002/83 and Add.1-3)

라디카 쿠마라스우미씨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특별보고자로서의 임기를 2003년에 종료한다. 따라서 인권위원회에의 그녀의 최종보고는 발전의 기간(1994-2002)을 회고, 평가한 것이다. 그 목적은 '세계의 현상' 보고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에 의해 그녀의 후계자가 국제사회 일반, 그리고 특히 인권위원회의 미래에의 방향성과 활동을 검토함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는 것이었다. 보고서는 특별보고의 임무가 창설된 1994년이래의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 전개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철폐를 목적으로 한 진전에 초점을 맞췄다.

특별보고자는 본 보고의 부록1(E/CN.4/2003/75/Add.1), 본서에서는 제2장에 위원회의 주의를 환기한다. 이것은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레벨에서의 진전과 최량의 실천에 관한 보다 상세한 조사보고이며, 본 보고와 같이 읽어야 할 것이다. 또 부록2(E/CN.4/2003/75/Add.2)는 일반적 및 개별적 입장과 개요와, 정부에 대해 보낸 긴급애플과 그것에 대한 회답이다.

### 연구방법

세계적인 발전의 체계적인 보고를 제공기 위해, 특별보고자는 제 정부, 특별기관, UN기관, NGO, 여성단체를 포함한 비정부조직, 및 대학교수에 대해, 여성에 대한 폭력, 그 원인과 결과를 철폐할 노력에 대한 정부를 요구했다. 특별보고자는 보고 작성에 대단히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별보고자는 위원회에의 보고를 도울 조사팀을 창설했으나, 그 조사의 성과도 본 보고에 포함되고 있다.

### 국가방문

특별보고자는 2002년에 예정되어 있던 체첸공화국정세에 관한 러시아연방(인구시공화국 및 체첸공화국)에의 방문이 실현되지 못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사무총장대리와 국내경제난민을 공동 방문할 계획은 2002년9월에 당해 정부에 의해, 안전을 이유로 두 번째 연기되었다. 특별보고자는 이 지역의 정세를 계속하여 우려하고 있으며, 2003년에 방문이 실현될 것을 기원하고 있다. 특별보고자는 개인적 사정에 의해, 터키, 이란, 이슬람공화국 그리고 멕시코에의 방문을 연기했으나, 2003년에는 다시 방문이 이뤄질 것을 희망하고 있다.

**여성관계 진출통계 국제 비교**

인구  
Population

\* 년도(year)  
단위 : 천명당, 연령 (Unit : Per 1000 Persons, Age)

	조출생률(명) Crude Birth Rate		조출생률(명) Crude Mortality Rate		영아사망률 (2000-2005명)	조혼인율(명) Crude Marriage Rate		조혼인율(명) Crude Divorce Rate		합계출산율 (2000-2005명)	영아사망률 (2000-2005명) Life Expectancy	
	연도 Year		연도 Year		Infant Mortality Rate	연도 Year		연도 Year		Total Fertility Rate	여 F	남 M
한국		13.		5.2	7		7.0		2.5	1.51	79.1	71.8
일본		4		7.8	3		6.2		1.9	1.33	85.0	77.8
터키		9.3		6.8	39		7.6		0.5	2.30	73.2	68.0
오스트리아		21.		9.4	5		4.8		2.2	1.24	81.5	75.4
벨기에		8		10.	4		4.3		2.6	1.48	81.9	75.7
체코		9.5		2	5		5.2		2.3	1.16	-	-
덴마크		11.		10.	5		6.6		2.5	1.65	79.1	74.2
핀란드		3		7	4		4.7		2.7	1.55	81.5	74.4
프랑스		8.7		11.	5		4.8		2.0	1.80	82.8	75.2
독일		12.		1	5		5.2		2.3	1.29	81.1	78.0
그리스		4		9.5	6		6.4		0.9	1.24	81.2	75.9
헝가리		11.		9.2	9		4.5		2.6	1.20	-	-
아이슬란드		2		10.	5		5.6		1.8	1.90	81.8	77.1
아일랜드		12.		4	6		4.9		-	2.02	79.6	74.4
이탈리아		6		9.8	5		4.7		0.5	1.20	81.9	75.5
룩셈부르크		9.5		14.	6		4.9		2.4	1.76	80.9	74.6
네덜란드		10.		2	5		5.6		2.0	1.50	81.0	75.6
노르웨이		9		6.7	5		5.3		2.1	1.70	81.9	76.0
폴란드		9.4		8.5	9		5.7		1.1	1.26	78.0	69.8
포르투갈		15.		10.	6		6.8		1.4	1.45	79.6	72.6
스페인		3		1	5		5.0		0.9	1.13	82.3	75.4
스웨덴		14.		8.8	3		4.0		2.4	1.29	82.6	77.6
스위스		2		8.9	5		4.9		2.5	1.38	82.3	75.9
영국		9.3		10.	-		5.1		2.9	1.61	80.7	75.7
캐나다		13.		1	5		5.1		2.3	1.58	81.8	75.7
멕시코		0		9.9	28		7.4		0.5	2.49	76.4	76.4
미국		12.		10.	7		8.3		4.2	1.93	80.4	74.6
호주		7		8	5		6.0		2.9	1.75	82.0	76.4
뉴질랜드		13.		8.9	6		5.3		2.7	1.97	80.7	75.3

주 : 1)1995-2000

Note : 1)1995-2000

출처 : 통계청, 「국제통계연감」(2002).  
통계청, 「2000 인구동태통계연보」(2001).

Source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ternational Statistics Yearbook (2002).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nual Report on the Vital Statistics, New Report (2001).

출생아수 및 출생성비  
Live Births and Sex Ratio

\* 년도(year)  
단위 : 명, 여아 100명당 남아수  
(Unit : Persons, Per Hundred Female)

	연도 Year	출생 Live-births			성비 Sex Ratio
		계 Total	여 Female	남 Male	
한국	2000	636,780	302,983	333,797	110.2
일본	1998	1,203,147	585,733	617,414	105.4
싱가포르	1998	43,838	21,225	22,612	106.5
대만	2000	305,312	-	-	-
프랑스	1996	734,338	357,335	377,003	105.5
독일	1997	812,173	395,167	417,006	105.5
이탈리아	1995	525,609	254,613	270,996	106.4
네덜란드	1998	199,408	97,271	102,137	105.0
스웨덴	1997	90,502	43,991	46,511	105.7
영국	1997	725,810	353,806	372,004	105.1
캐나다	1997	348,598	169,624	178,974	105.5
멕시코	1998	2,668,428	1,322,244	1,345,837	101.8
미국	1998	3,944,046	-	-	-
호주	1996	253,834	123,262	130,572	105.9
뉴질랜드	1998	55,349	26,766	28,583	106.8

출처 :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2002)

Source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ternational Statistics Yearbook (2002).



도서안내

정치 이데올로기라는 기제를 통해 규명한 현대의 정치현상

## 현대정치이념구조

■ 주요목차

- 현대의 정치이념
- 소련의 정치이념
- 중국의 정치이념
- 개도국의 정치이념

조정남 저 / 값 15,000원

**교양사회**



취학률  
Enrollment Ratio

\* 년도(year)  
단위 : % (Unit : Percent )

	연도 Year	초등교육 Primary Level			중등교육 Secondary Level			고등교육 Tertiary Level		
		계 Total	여 Female	남 Male	계 Total	여 Female	남 Male	계 Total	여 Female	남 Male
한국	1997	94	95	94	-	-	-	68	52	82
중국	1997	123	123	122	70	66	74	6	-	-
홍콩	1995	94	95	93	73	76	71	-	-	-
일본	1997	101	101	101	-	-	-	-	-	-
필리핀	1997	117	-	-	78	-	-	-	-	-
싱가포르	1996	94	93	95	74	-	-	39	-	-
터키	1996	107	104	111	58	48	68	21	15	27
오스트리아	1996	100	100	100	103	102	105	48	49	48
벨기에	1995	103	102	103	146	151	142	56	57	55
프랑스	1996	105	104	106	111	111	112	51	57	45
독일	1996	104	104	104	104	103	105	47	44	50
이탈리아	1996	101	100	101	95	95	94	47	52	42
네덜란드	1996	108	107	109	132	129	134	47	46	48
노르웨이	1996	100	100	100	118	116	121	62	71	53
스페인	1996	109	108	109	120	123	116	51	56	47
스웨덴	1996	107	107	106	140	153	128	50	57	43
영국	1996	116	116	115	129	139	120	52	56	49
캐나다	1995	101	101	103	105	105	105	88	95	81
멕시코	1996	114	113	116	64	64	64	16	15	17
미국	1995	102	101	102	97	97	98	81	92	71
호주	1997	101	101	101	153	155	150	80	83	77
뉴질랜드	1997	101	101	101	113	116	110	63	73	53

출처 : 통계청, 「국제통계연감」(2002).

Source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ternational Statistics Yearbook (2002).

여교사비율 및 성별 인구 10만명당 고등교육자수

Female Teacher Ratios and Number of the Third Level Students per 100,000 Persons

\* 년도(year)

단위 : %, 명 (Unit : Percent, Persons)

	연도 Year	여교사 비율 Primary Level			연도 Year	인구10만명당 고등교육기관 학생수 Number of the Third Level Students per 100,000 Persons	
		초등 Primary Level	중등 Secondary Level	고등 Tertiary Level		여자 Female	남자 Male
한국	2001	67.6	45.0	16.3	1997	4601	7521
중국	97/98	48	37	-	1996	327	610
홍콩	95/96	76	50	25 <sup>3)</sup>	1994	1442	1817
일본	97/98	62	33 <sup>4)</sup>	22 <sup>4)</sup>	1994	2716	3579
필리핀	96/97	-	-	53 <sup>1)</sup>	1995	3404	2564
싱가포르	1996	-	-	31 <sup>5)</sup>	1995	2250	2790
터키	96/97	-	41	33	1994	1520	2391
오스트리아	96/97	84	56	27	1995	2816	3132
벨기에	93/94	72	53	36	1994	3384	3608
프랑스	96/97	79	59	34	1995	3850	3337
독일	96/97	81	49	29	1995	3387	2986
이탈리아	95/96	94	64	29	1995	3197	3004
네덜란드	96/97	60	29	24 <sup>3)</sup>	1995	2986	3370
노르웨이	90/91	63	-	28 <sup>4)</sup>	1995	4564	3758
스페인	95/96	66	52	32	1995	4164	3854
스웨덴	96/97	73	59	35	1994	3049	2566
영국	96/97	81	55	30 <sup>6)</sup>	1995	3102	3170
캐나다	95/96	67	67	34 <sup>4)</sup>	1995	6329	5658
멕시코	96/97	-	-	-	1994	1469	1704
미국	95/96	86	56	39	1995	5844	4820
호주	1997	77	51 <sup>2)</sup>	31 <sup>2)</sup>	1996	5608	5495
뉴질랜드	1997	82	58	42	1996	4990	4014

주 : 1)80/81 2)92 3)93/94 4)94/95 5)95 6)95/96

출처 : 통계청, 「국제통계연감」(2000, 2001, 2002).

Note : 1)80/81 2)92 3)93/94 4)94/95 5)95 6)95/96

Source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ternational Statistics Yearbook (2000, 2001, 2002).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별 분포

Distribution of Women Workers by Status of Employment

\* 2000 년도(year)

단위 : % (Unit : Percent)

	전체 Total	고용주,자영업자 Employers and Self-employed workers	임금근로자 Employees	무급가족종사자 Unpaid Family Workers
한국	100.0	60.8	19.7	19.5
호주	100.0	89.3	9.6	1.1
핀란드	100.0	91.6	7.9	0.6
독일	100.0	92.1	6.4	1.5
일본	100.0	81.6	7.8	10.6
멕시코	100.0	54.6	21.0	24.4
뉴질랜드	100.0	85.3	13.4	1.3
폴란드	100.0	75.2	18.2	6.6
포르투갈	100.0	75.4	21.1	3.5
스웨덴1)	100.0	93.9	5.6	0.5
오스트리아	100.0	87.8	8.2	4.0
체코	100.0	88.7	10.3	1.0
아이슬란드	100.0	89.0	10.4	0.5
아일랜드1)	100.0	90.9	7.3	1.8
헝가리	100.0	89.6	9.4	1.0
노르웨이	100.0	95.0	4.8	0.2

주 : 1) 1999년 통계

Note : 1) Figures of 1999.

출처 : ILO, 「노동통계연감」(2001).

Source : ILO,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2001).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Economic Activity Rate of Women by Age

\* 2000 년도(year)

단위 : % (Unit : Percent)

	전체1) Total	15- 19	20- 24	25- 29	30- 34	35- 39	40- 44	45- 49	50- 54	55- 59	60+ 60+
한국	48.3	60.3	78.1	72.6	66.9	68.1	74.4	74.6	66.1	47.2	7.3
호주	54.9	51.8	73.9	79.9	79.5	79.5	80.9	79.4	71.0	53.4	9.0
캐나다	59.5	36.4	66.2	75.2	80.3	86.0	89.9	87.9	88.2	65.3	5.4
핀란드	56.6	5.9	46.9	79.3	77.9	79.2	80.6	79.3	73.8	52.0	3.4
프랑스	47.3	28.0	67.8	74.7	76.1	77.8	80.2	79.3	71.6	55.9	4.5
독일	48.2	16.6	72.7	69.9	57.1	61.4	69.3	71.8	68.2	58.7	20.4
일본	49.3	12.5	60.8	55.9	48.5	59.1	63.4	64.6	55.2	50.8	29.8
멕시코	39.0	30.0	42.9	46.6	46.1	47.6	48.4	43.5	37.3	32.9	17.4
네덜란드	53.9	61.2	79.0	83.0	77.4	74.5	73.8	69.5	57.7	38.9	3.9
뉴질랜드	56.4 <sup>2)</sup> </SU&NBSP: (font)>	53.0	66.6	69.0	64.9	71.3	79.0	81.6	72.9	59.2	10.8
폴란드	49.7	9.0	58.5	74.5	79.1	82.4	83.2	78.6	60.6	31.7	7.9
포르투갈	53.4	21.9	58.8	82.1	82.1	81.7	77.4	75.4	62.0	47.8	19.2
스웨덴	75.5	34.2	60.5	78.1	83.8	85.5	88.5	87.2	85.7	79.4	48.2
미국	61.9	51.3	73.3	77.1	75.6	75.8	78.7	79.1	74.1	61.2	16.4

주 : 1) 15세 이상 2) 16-64세

Note :1) 15 year and over 2) 16-64 year

출처 : ILO, 「노동통계연감」(2001).

Source : ILO, 「Yearbook of Lavbor Statistics」(2001)

여성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  
Distribution of Women Workers by Industry  
\* 2000 년도(year)

단위 : % (Unit : Percent)

	전체 Total	농림어업,수산업 Agriculture, Hunting, Forestry & Fishing	광업 Mining & Quarrying	제조업 Manufacturing	전기,가스, 수도업 Electr., Gas & Water	건설업 Construction	도·소매업 Wholesale/ Retail Trade	음식·숙박업 Restaurants & Hotels	운수, 통신 Transportation & Communication	금융, 보험 Financing & Insurance	부동산임대사업 Real estate & Business Services	공공·개인·사회 서비스업 및 기타 Other Community, Social & Personal Service & etc
한국	100.0	12.5	0.0	17.5	0.1	1.5	20.5	15.1	1.6	4.5	4.7	21.9
호주	100.0	3.4	0.2	7.8	0.3	2.2	21.0	6.4	3.9	4.7	11.9	38.1
핀란드	100.0	3.9	0.1	12.5	0.5	0.9	12.1	4.9	4.2	3.1	9.1	48.8
독일	100.0	2.2	0.1	15.2	0.3	2.4	17.6	4.5	3.7	4.3	8.7	41.0
뉴질랜드	100.0	5.9	0.1	10.5	0.3	1.4	17.0	7.1	4.2	4.0	10.1	39.5
폴란드	100.0	18.3	0.7	16.2	0.8	1.4	16.5	2.5	3.4	4.0	3.5	32.7
포르투갈	100.0	14.2	0.0	22.1	0.0	1.0	14.4	7.0	1.7	1.5	4.6	33.5
스웨덴 <sup>1)</sup>	100.0	1.2	0.1	10.1	0.4	0.9	11.6	3.3	4.0	2.4	9.8	56.4
오스트리아	100.0	6.5	0.1	12.9	0.3	1.7	21.2	9.0	4.0	4.4	9.0	30.9
체코	100.0	4.3	24.3	1.0	1.9	15.9	4.3	5.6	3.1	5.8	6.5	27.3
아이슬란드	100.0	4.7	0.0	10.7	0.4	0.6	15.2	5.0	5.8	7.5	4.7	45.5
헝가리	100.0	3.8	22.5	1.1	1.2	16.1	4.1	5.0	3.2	5.4	7.8	29.8
노르웨이	100.0	2.3	0.6	7.2	0.4	1.1	14.9	4.5	4.8	2.4	7.6	54.5
캐나다	100.0	1.9	0.4	9.3	0.4	1.2	17.0	8.3	5.1	5.8	11.5	39.2
네덜란드	100.0	2.4	0.1	8.0	0.2	1.3	18.3	4.7	3.8	3.7	11.8	45.7

출처 : ILO, 「노동통계연감」(2001).  
Source : ILO,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2001).

국가별 남녀평등 지수  
Gender Development Index

\* 년도(year)

단위 : 세, %, \$ (Unit : Age, Percent, Dollar)

	GDI순위 GDI Rank	평균수명 Life Expectancy 2000		문자해독률(%) Adult literacy rate 2000		초·고등취학률(%) Combined primary,secondary and tertiary gross enrollment ratio 1999		1인당 실질 GDP GDP per capita		HDI순위 HDI rank	HDI순위- GDI순위 <sup>1)</sup> HDI Rank minus GDI rank1)
		여 F	남 M	여 F	남 M	여 F	남 M	여 F	남 M		
한국	29	78.6	71.2	96.4	99.1	85	95	10791	23884	27	-2
호주	1	81.1	76.1	99.0	99.0	118	114	20977	30449	5	4
벨기에	2	81.5	75.2	99.0	99.0	111	107	16784	38005	4	2
노르웨이	3	81.5	75.6	99.0	99.0	99	95	23454	36510	1	-2
스웨덴	4	582.2	77.2	99.0	99.0	107	95	19690	28961	2	-2
캐나다	5	81.5	76.0	99.0	99.0	98	96	21456	34349	3	-2
미국	6	79.9	74.1	99.0	99.0	99	91	26259	42246	6	
아이슬란드	7	81.5	76.8	99.0	99.0	91	86	22361	36758	7	
핀란드	8	81.1	73.9	99.0	99.0	108	99	20657	29550	10	2
네덜란드	9	80.8	75.4	99.0	99.0	100	104	17635	33822	8	-1
영국	10	80.2	75.2	99.0	99.0	112	100	17931	29264	13	3
일본	11	84.4	77.4	99.0	99.0	81	83	16601	37345	9	-2
프랑스	12	82.4	74.7	99.0	99.0	96	93	18715	30022	12	
덴마크	13	78.7	73.8	99.0	99.0	101	94	22835	32518	14	1
스위스	14	82.0	75.6	99.0	99.0	81	87	19197	38550	11	-3
오스트리아	15	81.1	74.9	99.0	99.0	89	90	17914	36057	15	
독일	16	80.7	74.5	99.0	99.0	93	95	16904	33653	17	1
아일랜드	17	79.2	74.0	99.0	99.0	93	89	17078	42815	18	1
멕시코	49	76.0	70.0	89.5	93.4	70	71	4978	13152	54	
필리핀	63	71.3	67.3	95.1	95.5	84	80	2933	4994	77	4
터키	71	72.4	67.3	76.5	93.5	55	68	4379	9516	85	1
중국	77	72.8	68.5	76.3	91.7	73	73	3132	4773	96	3

주 : 1) GDI순위는 146개국, HDI순위는 175개국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HDI순위와 GDI순위의 차는 HDI순위를 조정한 후 계산하였음.

출처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2002).

Note : 1) The HDI ranks used in this column are those recalculated for a universe of 175 countries.

Source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2002).

국가별 남녀권한 척도  
Gender Empowerment Measure

\* 년도(year)

단위 : %, \$ (Unit : Percent, Dollar)

	GEM순위 GEM rank	의회여성점유율(%) Seats held in parliament(% women)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 Administrators and managers(% women)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 Professional and technical workers (% women)	실질여성 GDP GDP per capita
한국	61	5.9	5	34	10,791
노르웨이	1	36.4	25	49	23,454
아이슬란드	2	34.9	27	35	22,361
스웨덴	3	42.7	29	49	19,690
덴마크	4	38.0	23	50	22,835
핀란드	5	36.5	27	56	20,657
네덜란드	6	32.9	27	46	17,635
캐나다	7	23.6	35	53	26,259
독일	8	31.0	27	50	16,904
뉴질랜드	9	30.8	38	54	16,203
호주	10	26.5	26	48	20,977
미국	11	13.8	45	54	26,259
오스트리아	12	25.1	28	49	17,914
스위스	13	22.4	22	42	19,197
벨기에	14	24.9	19	50	16,784
스페인	15	26.6	32	45	11,791
덴마크	16	17.1	33	45	22,835
아일랜드	17	13.7	34	50	17,078
필리핀	38	17.2	35	66	2,933
멕시코	35	15.9	24	41	4,978
터키	63	4.2	9	36	4,379
중국	-	21.8	-	-	3,132

주 : 1) GEM순위는 66개국을 대상으로 함.

출처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2002).

Note : 1) The GEM ranks used a universe of 66 countries.

Source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2002).

국가별 평등기회 척도  
Equal Opportunity Index

\* 년도(year)

단위 : 순위, 점수 (Unit : Rank, Score)

	순위 Rank	점수 Score
한국	45	4.91
태국	1	8.15
에스토니아	2	8.08
베네수엘라	3	80.5
룩셈부르크	4	8.05
아르헨티나	5	7.82
캐나다	6	7.78
포르투갈	7	7.72
싱가포르	8	7.66
칠레	9	7.45
아이슬란드	10	7.36
핀란드	11	7.34
필리핀	12	7.33
터키	13	7.25
대만	14	7.17
네덜란드	15	7.16
홍콩	16	7.12
호주	17	7.07
오스트리아	18	7.04
스위스	19	6.91
브라질	20	6.87
콜롬비아	21	6.70
이탈리아	22	6.68
뉴질랜드	23	6.67

그리스	24	6.63
벨기에	25	6.51
미국	26	6.48
독일	27	6.42
슬로베니아	28	6.41
멕시코	29	6.40
스웨덴	30	6.33
프랑스	31	6.25
노르웨이	32	6.11
중국	33	6.09
말레이시아	34	6.06
아일랜드	35	6.04
스페인	36	6.03
이스라엘	37	5.85
덴마크	38	5.74
슬로바키아	39	5.59
체코	40	5.56
영국	41	5.53
인도	42	5.45
러시아	43	5.12
일본	44	5.09
헝가리	46	4.89
인도네시아	47	4.89
폴란드	48	4.82
남아공	49	4.30

주 : 점수가 높을수록 기회가 평등한 국가임.

출처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2002).

Source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2002).

국가별 성희롱과 폭력  
Harassment and Violence Index

\* 년도(year)

단위 : 순위, 점수 (Unit : Rank, Score)

	순위 Rank	점수 Score
한국	42	6.15
오스트리아	1	9.19
핀란드	2	9.17
룩셈부르크	3	8.98
아이슬랜드	4	8.90
싱가포르	5	8.83
덴마크	6	8.77
스웨덴	7	8.66
노르웨이	8	8.63
홍콩	9	8.57
캐나다	10	8.49
칠레	11	8.43
호주	12	8.42
에스토니아	13	8.35
스위스	14	8.34
뉴질랜드	15	8.33
독일	16	8.33
포르투갈	17	8.25
체코	18	8.17
터키	19	8.09
네덜란드	20	8.03
아일랜드	21	8.00
벨기에	22	7.86
슬로바키아	23	7.83

이스라엘	24	7.60
미국	25	7.60
이탈리아	26	7.57
태국	27	7.57
그리스	28	7.52
대만	29	7.42
헝가리	30	7.41
프랑스	31	7.28
스페인	32	7.26
말레이지아	33	7.18
일본	34	6.93
영국	35	6.92
중국	36	6.88
인도	37	6.86
멕시코	38	6.57
베네수엘라	39	6.47
슬로베니아	40	6.47
필리핀	41	6.29
아르헨티나	43	6.11
폴란드	44	6.01
브라질	45	5.76
인도네시아	46	5.11
러시아	47	4.92
남아공	48	4.82
콜롬비아	49	4.19

주 : 점수가 높을수록 성희롱과 폭력이 없는 국가임.

출처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2002).

Source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2002).













